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18
증 권 신 고 서	19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2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2
요약정보	23
1. 핵심투자위험	23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77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77
1. 공모개요	77
2. 공모방법	77
3. 공모가격 결정방법	80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8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96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8
III. 투자위험요소	187
1. 사업위험	187
2. 회사위험	200
3. 기타위험	212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241
V. 자금의 사용목적	242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44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322
I. 회사의 개요	322
1. 회사의 개요	322
2. 회사의 연혁	326
3. 자본금 변동사항	329
4. 주식의 총수 등	329
5. 정관에 관한 사항	330
II. 사업의 내용	335
1. 사업의 개요	335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40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40
4. 매출 및 수주상황	341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342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343
7. 기타 참고사항	344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48
1. 요약재무정보	348
2. 연결재무제표	348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48
4. 재무제표	348
5. 재무제표 주석	354
6. 배당에 관한 사항	376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76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376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377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377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379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379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379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381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381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84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386
VI. 주주에 관한 사항	390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394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394
2. 임원의 보수 등	395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398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399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0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400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400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00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400
XI. 상세표	403
【 전문가의 확인 】	404
1. 전문가의 확인	404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404

정정신고(보고)

2024년 03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미술품 투자계약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02월 29일	증권신고서(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최초 제출
2024년 03월 22일	[정정]증권신고서(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차 정정("붉은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은 기재내용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자진정정으로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정사항은 "붉은 파란색"을 사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단순 오타, 띄어쓰기, 표현의 수정 등 문서 교정 사항은 본문에 직접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라.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	아니요	기재정정	(주1)	(주1)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아니요	기재정정 (오타삭제)	(주2)	(주2)
2. 회사위험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아니요	기재정정	(주3)	(주3)
3. 기타위험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아니요	기재정정	(주4)	(주4)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I. 사업의 내용				
4. 매출 및 수주상황	아니요	기재정정	(주5)	(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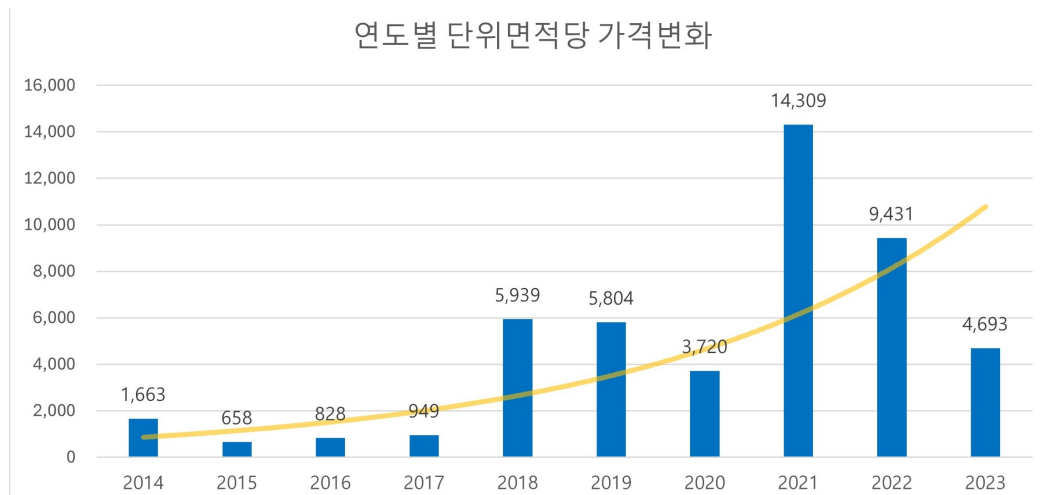
(주1) 정정 전

(생략)

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당사는 같은 기간 거래사례의 단위면적당(cm^2/USD)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cm^2/USD) 변화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m^2/USD	1,663	658	828	949	5,939	5,804	3,720	14,309	9,431	4,693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볼 때, 2018년도와 2021년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이후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당사는 같은 기간 거래사례의 단위면적당(cm^2/USD)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cm^2/USD) 변화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m^2/USD	1,663	658	828	949	5,939	5,804	3,720	14,309	9,431	4,693



(주1) 거래사례들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총계를 분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볼 때,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큰 폭의 상승 이후 일정 기간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큰 폭의 상승 후에 조정기를 거치는 일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4년에 비하여 조정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직전 3개연도에 비하여 5배 이상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이 있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2018년에 비하여 일종의 조정기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다시 2020년에 비하여 4배 이상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이 있는 후,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조정기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2018년과 2021년에서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그 직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2014년에 비하여 2018년이, 2021년에 비하여는 2021년이, 각 3배 가량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2017년, 2020년, 2023년에서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를 살펴볼 때에는, 2020년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2017년보다 높고, 2023년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2020년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1. 사업위험

(생략)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술품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소득 구분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양도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와 배치되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법규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미술품 매매거래 시 양도 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항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2020. 12. 29.>

(출처: 소득세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 차익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2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율 비교]

종합소득세율		기타소득세율(주)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6%	20%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과세표준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과세표준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과세표준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과세표준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과세표준 1,000,000,000원 초과	45%	

(주)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에 의거 20%로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과 국내 생존 원작자의 작품의 경우 비과세 되며,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9000만원+ 1억원 초과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90%까지)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과세 당국은 미술품에 대한 세율 완화를 통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미술품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이 상승할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시에는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에 대하여 미술품의 양도소득과 달리 투자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 실무의 전문가인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법률 해석에 관한 전문가인 법무법인(유) 세종과 세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1. 사업위험

(생략)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술품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소득 구분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양도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와 배치되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법규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미술품 매매거래 시 양도 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항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2020. 12. 29.>

(출처: 소득세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 차익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2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율 비교]

종합소득세율		기타소득세율(주)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6%	20%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과세표준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과세표준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과세표준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과세표준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과세표준 1,000,000,000원 초과	45%	

(주)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에 의거 20%로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과 국내 생존 원작자의 작품의 경우 비과세 되며,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9000만원+ 1억원 초과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90%까지)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과세 당국은 미술품에 대한 세율 완화를 통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미술품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이 상승할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시에는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에 대하여 미술품의 양도소득과 달리 투자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 실무의 전문가인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법률 해석에 관한 전문가인 법무법인(유) 세종과 세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3) 정정 전

2.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주요 재무안전성 지표는 유동비율 126%, 당좌비율 59%, 부채비율 122% 등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요약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당사의 당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2020년부터 2022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단위: 원

과목	제 6 기 (2023.12.31)	제 5 기 (2022.12.31)	제 4 기 (2021.12.31)	제 3 기 (2020.12.31)
자산				
1. 유동자산	2,060,151,102	1,485,329,469	353,576,124	159,237,205
현금및현금성자산	848,049,767	353,189,139	299,902,815	96,913,691
기타유동자산	1,212,101,335	1,132,140,330	53,673,309	62,323,514
2. 비유동자산	906,535,960	1,054,713,908	551,833,642	153,384,874
자산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부채				
1. 유동부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2. 비유동부채	-	-	-	-
부채총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자본				
1. 자본금	1,132,501,500	1,070,703,100	55,833,000	52,499,000
2. 자본잉여금	5,640,010,609	4,507,004,840	1,522,863,590	1,026,637,590
3. 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1,264,693,738	947,744,610
자본총계	1,336,199,458	2,497,969,876	314,002,852	131,391,980
부채및자본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과목	제 6 기 (2023.12.31)	제 5 기 (2022.12.31)	제 4 기 (2021.12.31)	제 3 기 (2020.12.31)
매출	77,728,954	395,825,636	318,977,462	105,250,064
영업이익(손실)	(2,437,739,124)	(1,852,233,748)	(331,247,933)	(252,984,956)

당기순이익(손실)	(2,356,574,587)	(1,815,044,326)	(316,949,128)	(273,271,567)
이자비용	9,237,704	18,261,638	2,249,705	20,433,537

한편, 당사의 2024년 1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연간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1백만원, 영업손실 187백만원입니다.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유동비율	126%	3530%	60%	88%
당좌비율	59%	3530%	60%	88%
부채비율	122%	2%	188%	138%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또한 당기의 사업재편안에 대한 제재 면제에 따라, 사업재개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상, 당사의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신용 등급 등의 하락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1,630,487,604원은 당사의 기초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일상적 운전자금에 속하는 미지급비용, 당기에 매각된 미술품들의 판매대금으로서 종전 공동구매 구매자들에게 분배될 예수금,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단기대여금 653백만원은 당사의 종전 자회사였던 (주)엠펙스에 대여되었으나 2023년말 현재 모두 변제되었고 당사는 2023년 3월 경 해당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말 현재 당사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 약39백만원은 결산시점에서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에 따르는 미술품 보관료나 임원 보험 등 당사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을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미수금 420백만원은 당사가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미정산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투자자 예치금 등을 외부 에스프로 제공 기관인 (주)나이스페이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2023년말 현재 당사가 투자자 예치금 등을 모두 반환한 이상 같은 목적의 미수금은 없습니다. 2023년말 현재 당사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 140백만원은 위 미수금 420백만원 중 당사가 참여한 공동구매나 수수료 등으로, 당사가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사업만을 영위하는 이상 향후로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등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고,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하였던 기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 체계 등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잉여금이 결손금을 초과하고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우선주 주주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회사인 아트폼스(주)와 아트네이티브(주) 으로부터 2023년말 현재 합계 3,500백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받아 유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자산의 적절한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빠르게 결손금을 해소하며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

습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당사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1개월동안 매출액 1,151백만원, 영업손실 187백만원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따라 빠르게 재무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 청약계좌를 통하고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100%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 대금이 미납입될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 미달된 실권주에 대해 전액 당사가 인수하게 되며, 이 때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도산 위험 발생시에는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된 미술품은 회사의 재산과 별개로 취급되어 투자자는 보호되며,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 (주)케이옥션의 청산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신용 등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회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이행, 공시 등의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2.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26%, 당좌비율 59%, 부채비율 122% 등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요약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당사의 당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2020년부터 2022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단위: 원

과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2020.12.31)
자산				

1. 유동자산	2,060,151,102	1,485,329,469	353,576,124	159,237,205
현금및현금성자산	848,049,767	353,189,139	299,902,815	96,913,691
기타유동자산	1,212,101,335	1,132,140,330	53,673,309	62,323,514
2. 비유동자산	906,535,960	1,054,713,908	551,833,642	153,384,874
자산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부채				
1. 유동부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2. 비유동부채	-	-	-	-
부채총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자본				
1. 자본금	1,132,501,500	1,070,703,100	55,833,000	52,499,000
2. 자본잉여금	5,640,010,609	4,507,004,840	1,522,863,590	1,026,637,590
3. 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1,264,693,738	947,744,610
자본총계	1,336,199,458	2,497,969,876	314,002,852	131,391,980
부채및자본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과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2020.12.31)
매출	77,728,954	395,825,636	318,977,462	105,250,064
영업이익(손실)	(2,437,739,124)	(1,852,233,748)	(331,247,933)	(252,984,956)
당기순이익(손실)	(2,356,574,587)	(1,815,044,326)	(316,949,128)	(273,271,567)
이자비용	9,237,704	18,261,638	2,249,705	20,433,537

한편, 당사의 **2024년 2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연간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2백만원, 영업손실 347백만원**입니다.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유동비율	126%	3530%	60%	88%
당좌비율	59%	3530%	60%	88%
부채비율	122%	2%	188%	138%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또한 당기의 사업재편안에 대한 제재 면제에 따라, 사업재개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상, 당사의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신용 등급 등의 하락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1,630,487,604원은 당사의 기초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일상적 운전자금에 속하는 미지급비용, 당기에 매각된 미술품들의 판매대금으로서

종전 공동구매 구매자들에게 분배될 예수금,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단기대여금 653백만원은 당사의 종전 자회사였던 (주)엣플렉스에 대여되었으나 2023년말 현재 모두 변제되었고 당사는 2023년 3월 경 해당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말 현재 당사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 약39백만원은 결산시점에서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에 따르는 미술품 보관료나 임원 보험 등 당사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을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미수금 420백만원은 당사가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미정산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투자자 예치금 등을 외부 에스프로 제공 기관인 (주)나이스페이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2023년말 현재 당사가 투자자 예치금 등을 모두 반환한 이상 같은 목적의 미수금은 없습니다. 2023년말 현재 당사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 140백만원은 위 미수금 420백만원 중 당사가 참여한 공동구매나 수수료 등으로, 당사가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사업만을 영위하는 이상 향후로는 투자자 산 처분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등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고,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하였던 기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 체계 등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 잉여금이 결손금을 초과하고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우선주 주주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회사인 아트포스(주)와 아트네이티브(주) 으로부터 2023년말 현재 합계 3,500백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받아 유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자산의 적절한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빠르게 결손금을 해소하며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말 기준 당사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1개월동안 매출액 1,152백만원, 영업손실 347백만원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따라 빠르게 재무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 청약계좌를 통하고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100%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 대금이 미납입될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 미달된 실권주에 대해 전액 당사가 인수하게 되며, 이 때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도산 위험 발생시에는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된 미술품은 회사의 재산과 별개로 취급되어 투자자는 보호되며,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 (주)케이옥션의 청산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신용 등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회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이행, 공시 등의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생략)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전산 시스템 등 지원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증권화나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발행,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등이 법제화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3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3)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나 양식의 사용 대

상이 아니며, 『증권·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활성화된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증권의 양도와 양수 방법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양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의 양수도에 따르는 승낙에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따르는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확정일자에 관한 비용은 양수도 당사자인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초자산의 처분과 공동사업의 청산으로 인한 기대이익 이외에 증권의 유통 가능성은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전매 방식 제한과 증권의 환금성 저하가 곧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생략)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야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전산 시스템 등 지원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증권화나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발행,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등이 법제화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4항은 전자증권 또

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3)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 「전자등록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7호) 제1-3조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13일자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나 양식의 사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활성화된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증권의 양도와 양수 방법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양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의 양수도에 따르는 승낙에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따르는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확정일자에 관한 비용은 양수도 당사자인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초자산의 처분과 공동사업의 청산으로 인한 기대이익 이외에 증권의 유통 가능성은 보장

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전매 방식 제한과 증권의 환금성 저하가 곧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2024년 1월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 2024년 1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1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그로 인한 기초자산의 양도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가. 매출실적

(1)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매출유형	품목	증권신고서제출일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증권발행부문	상품, 용역매출	기초자산(미술품)	1,150,970	-	-	-
기타 부문(주1)	용역 및 기타매출	조각투자 중개 등	-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0,970	77,729	395,826	318,977

(주1) 기타 부문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중개업을 통한 매출 등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로 조각투자 중개를 하고있지 않으며, 관리중인 잔존 조각투자의 매각(청산손익 분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매출유형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상품	1,126,196	-	-	-
용역 및 기타매출	25,775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1,970	77,729	395,826	318,977

(후략)

(주5) 정정 후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2024년 1월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 2024년 2월말 기

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2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그로 인한 기초자산의 양도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가. 매출실적

(1)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매출유형	품목	2024년 2월말 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증권발행부문	상품, 용역매출	기초자산(미술품)	1,150,978	-	-	-
기타 부문(주1)	용역 및 기타매출	조각투자 중개 등	1,502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2,480	77,729	395,826	318,977

(주1) 기타 부문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중개업을 통한 매출 등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로 조각투자 중개를 하고있지 않으며, 관리중인 잔존 조각투자의 매각(청산손익 분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매출유형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월말 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상품	1,150,978	-	-	-
용역 및 기타매출	1,502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2,480	77,729	395,826	318,977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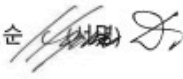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3 월 21 일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대표이사 도현순 

신고업무 담당이사 주재승 

증권신고서

(투자 계약 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02월 29일	증권신고서(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최초 제출
2024년 03월 22일	(정정)증권신고서(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차 정정("붉은 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2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대 표 이 사 : 도 현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전 화) 02-6959-1909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담당이사 (성 명) 주 재 승
 (전 화) 02-6959-190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0,28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28,000,000 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투자계약증권) 】

1. 본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개별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가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형태 등으로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상법」에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증권(예: 주식, 채권)과는 달리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개별 투자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와 위험이 상이해지는 비정형적 특징**이 있으므로, 첨부서류인 투자계약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계약증권은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자산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시장수요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기초자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횡손, 도난, 위작 등의 위험** 등이 존재하며, 기초자산 **매각 곤란시 예상보다 보유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공동사업자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성과는 공동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도산시 투자자의 지위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도산위험이 절연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사업구조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구조가 민법 등 소관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사업구조를 변경**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규제 위험)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기보고서 등 발행후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해상충 방지 또는 불건전행위 방지 관련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다른 증권(주식 등)과 **법적인 보호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규 외에도 기초자산 등 투자계약내용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규제 준수 등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관련 업무 절차 및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⑤ (환금성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또는 다른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은 중도매각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도 큼니다.

4. 회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증권발행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서류중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이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국·영국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비상장증권 등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자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7. 회사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구조 관련 증선위 제시요건 구비) 발행회사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등 증선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22.11.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증선위의 사업구조 재편 관련 요건

② (첨부서류 제출 강화) 외부감사보고서 등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모 첨부서류를 강화하여 제출

③ (발행후 공시 실시)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투자계약증권 및 발행인 현황 관련 자체적인 정기·수시공시 체계 마련

8.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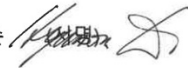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2 월 29 일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대표이사 도현순



신고업무 담당이사 주재승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 경기 불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주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한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위한 물색,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를 거쳐 기초자산의 처분과 투자계약의 청산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순환적 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이나 경기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투자자 심리 위축, 기초자산 수요 침체에 따르는 회수 및 청산 가능성의 축소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둔화 또는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성 및 당사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시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안원 기준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추고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 시스템 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IT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관리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 실시간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청약에 의한 투자자 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재산적 피해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사업의 관련법령 위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소송·분쟁의 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과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는 민법상 공유 및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인 경우)·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사업의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한있는 유관기관에 의하여 그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준법감시인력 및 당사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관련 소송·분쟁 제기 가능성을 현실화될 가능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 의사표시, 공동사업의 탈퇴 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공동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시까지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되,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권한은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합니다.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체결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투자자 총회를 두고, 투자자 전원(공동사업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가 공모총액의 100%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기초자산 처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관련 위임계약을 취소하거나 기초자산의 분할청구 등으로 공동사업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 또는 공동사업의 중단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의 사유로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 모델 관련 위험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는 다수 있으나 국내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사업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미승계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위 구매고객 이탈 시 매출 하락 위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술품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한 미술품 공급 축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물색과 취득에 필요한 능력(미술품 소싱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주)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미술품 소싱을 포함하는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술품 소싱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축소 위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의 진입이 늘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자산 거래 및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 고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 또는 매출이 계속되는데 비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은 지연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투입되는 당사 자금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축소위험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 인력 유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위험 및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영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는 과거 미술품 조각 투자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해 본 경험이 없으며,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에 따르는 손익을 배분해 본 경험 역시 없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운영이 검증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공동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계약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가 외부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의 주된 운영자가 되며,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대상자의 재무상황과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을 고려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소송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사업자의 도산 관련 위험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당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한 독립적 제3자와의 청산 업무 관련 위탁계약, 청산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마련, 동산인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등을 통하여 도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도산 위험은 모든 사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계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수리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공모가격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희망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약 90.95%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5%를 차지합니다. 발행인은 발행제비용을 자신의 위험으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발행인의 이익으로 삼으므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며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예측진술의 포함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 환경, 공동사업의 운영 경과,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이 포함된 시장의 추세나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일반청약자에게 증권을 배정함에 있어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배정, 추첨 배정, 균등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하나 청약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 1인의 본 증권 청약한도는 3,000만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매각시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 참여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원칙과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통제 규정, 분쟁해결기구를 두는 등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공동사업의 수행과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 보유로 인하여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당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당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금액을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이 때, 당사는 발행제비용 중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항목들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발행제비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당사의 이익으로 하는 공모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특정 작가 1인의 단일 미술품을 대상으로 기초자산을 취득·보관·관리·매각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인 작가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과 그에 대한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자산인 미술품 거래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기초자산이 유통되고 현금화되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기초자산의 청산 가능성이나 청산시기, 또는 청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술품 시장의 회복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가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 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가능성과 수익률, 공동사업의 청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과거 미술품 거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미술품의 시장의 범위, 수요층에 따라서도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에 따르는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하며,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발행제비용 등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거래 사례 등에 대

한 조사는 주로 국내 또는 국외의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실패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패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초자산인 미술품 투자에 있어 내재적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미술품의 위작 위험, 작품의 손상 위험, 분실 위험, 도난 위험 등 기초자산인 미술품 자체에 내재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인한 장기 보유 위험 및 투자계약증권 만기 연장 위험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이룬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시장 가치와 수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판매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이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인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하게 되실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 연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위험

공동사업은 생산자이자 창작자인 작가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전 과정에서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과 관련된 위험 미술품은 2027년 7월 26일부터 「미술품진흥법」에서 정하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대상("재판매보상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가능성은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금 미보장과 관련된 위험 본 공모에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러.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와 투자계약은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의 처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2

(단위 : 원, 주)

증권 기본정보					
증권명칭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AT-CONDO-002)	10,280	100,000	100,000	1,028,000,000	일반공모
공동사업구조					
권리구조		수익구조		중도환매 방법	
소유권(공유)		매각		없음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명		사업 내용		회사와의 관계	
(주)투게더아트(공동사업 운영자)		미술품 취득, 관리 (보관), 매각, 손익배분		본인	
(주)케이옥션 (공동사업 참여자)		미술품 보관업,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중개업		특수관계인(최대주주)	
				2018.07.30 부터 (약 5년 7개월)	
				2005. 9. 15. 부터 (약 18년 5개월)	
기초자산					
기본정보		매입처 · 매입방식		매입가액	
				가치산정근거	
				처분방식	

① 작가 : 조지 콘도(George Condo) ② 작품명 : The Horizon of Insanity ③ 제작시기 : 2001년 ④ 재질 : 캔버스에 오일(Oil on canvas) ⑤ 작품크기 : 152.4 x 121.9cm(100호)	매입처: 소더비 경매사(Sotheby's) 매입방식: 선매입	934,951,942	내부평가 : ① 취득처, 기초자산의 진위, 기초자산 상태에 확인과 검증을 거치고, ②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11]건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시장성, 내재가격, 적정 취득가격을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① 제일감정평가법인, ② 한국기업평가(주) ③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①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계약 제22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제38조의2(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따라 기초자산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발행인 재량에 따라 처분 ② 투자계약증권 만기일 경과시 : 투자계약 제41조의2(기초자산 매각에 대한 특칙)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포괄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행인 재량에 따라 처분 ③ 위 ①과 ② 외의 경우 : 투자자총회의 결의(처분정족수에 의한 투자자 전원 동의)에 따라 처분

기초자산 관련 시장			
시장명	운영주체	거래량	거래규모
글로벌 미술시장 (단위: 건/USD)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기관 등	37,800,000	67,800,000,000
투자자 보호장치			
소유권 입증수단 및 보관위치 확인방법 (또는 공동사업자와의 도산절연 장치)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등	

① 소유권 입증수단: - 확정된 투자자명부의 공증(사서인증 및 확정일자) - 발행인 플랫폼 아트투게더" (https://weshareart.com)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확인 ② 보관위치확인: 발행인 홈페이지에 게재 ③ 도산절연 - 청약금(청약증거금): 도산절연된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실명계좌, 집금계좌를 연동한 계좌체계를 통하여 분리보관(NH투자증권) - 기초자산: 미술품 보관위탁계약((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④ 기타: 변경사항 공시	①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발행인의 공동사업 잔액 대비 5% 이상으로 누적하여 적립하며, 별도의 분리된 금융기관신탁계좌에 특정금전신탁(NH투자증권) ② 미술품 보험: 보관회사(주)케이옥션) ③ 청산대리인지정: 법무법인(유) 세종/(주)케이옥션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 수수료
① 발행 및 운영수수료: 없음 ② 처분시(공제) - 성과보수(성과보수제): 매각차액(청산가액)이 공모총액의 8%를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20%(VAT 별도) - 매각차액이 공모총액 대비 8%이하일 경우 성과보수 없음	없음	① 발행분담금: 925,200원 ② 자문수수료(감정평가, 법률검토의견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수): 16,461,500원(VAT 포함) ③ 사서인증비용: 1,200,000원 ④ 예비비: 37,230,679원(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산의 운송, 전시, 분쟁해결, 계좌관리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유보) ⑤ 발행인 매매차익: 37,230,679원

인수(주선) 여부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모집공모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3일	2024년 03월 26일	2024년 04월 03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기초자산 선매입 비용	934,951,942
발행제비용	93,048,058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①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본 공모로 인하여 모집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본 공모로 모집되는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인이 본 공모로 발행되는 잔여증권을 전부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의 잔여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② 투자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에 기재된 수수료만을 부담합니다. ③ 미술품 보관료 및 보험료는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부담합니다.

【 Q&A 】

[일반사항 관련]

Q. Q&A의 구성

A. 본 증권신고서의 Q&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 분야에 따라 나누어진 Q.문항에서 당사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한 답변을 찾아 본 증권신고서의 본문 내용에 앞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Q&A의 구성	
분야	Q 문항
일반사항 관련	Q-일반-1. Q&A의 구성
	Q-일반-2. 투자하면 투자대상 및 발행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받게 되나요?
	Q-일반-3. 채권적 청구권은 무엇인가요?
	Q-일반-4. 투자계약증권은 법적규율에서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일반-5.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례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있나요?
	Q-일반-6. 청약은 선착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나요?
	Q-일반-7. 투자와 관련한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이 있나요?
	Q-일반-8.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피해야 하나요?
	Q-일반-9.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투자대상 자산매입 관련	Q-자산-1. 회사는 투자대상(예: 미술품)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Q-자산-2. 투자계약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Q-자산-3.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Q-자산-4. 투자대상자산의 외부평가 가격이나, 시가는 어떤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나요?
	Q-자산-5.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

	나요?
수익/비용 관련	Q-수익/비용-1.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창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수익/비용-2. 투자대상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Q-수익/비용-3.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나요?
	Q-수익/비용-4. 투자계약증권의 수익금 배분구조 및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 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투자자보호관련	Q-투자자 보호-1. 발행인이 선택한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은 법 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인가요?
	Q-투자자 보호-2.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Q-투자자 보호-3. 발행인 파산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되나요?
	Q-투자자 보호-4. 투자이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정기적/수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해상충 관련	Q-이해상충-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자 중 발행인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 인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격 및 조건을 정하나요?
	Q-이해상충-2. 어떤 상황에서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나요?
	Q-이해상충-3. 발행인도 투자계약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행인 이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우위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게 되지 않나요?

Q-일반-2. 투자하면 투자대상 및 발행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받게 되나요?

A-1. 공동사업 참여로 인한 권리 일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이 되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시는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보관한 후 종국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에 따르는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계약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투자하셔야 하며, 투자계약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당사(이하, “발행인”, “발행회사”, “공동사업 운영자”, “당사”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며,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와 함께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까지 기초자산의 취득과 보관, 그리고 처분을 맡게 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자가 되며, 공동사업을 선관주의 의무에 의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공동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기준에 부합하게 선정합니다.

A-2. 투자자가 가지는 구체적 권리와 그 범위 등에 대한 요약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 또는 당사와의 관계에서 기

초자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또한, 당사가 기초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다른 투자자 또는 당사와 준공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의 범위에서 투자자는 당사에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의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까지에 한하여 위임하고, 당사를 통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임약정과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과 특약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해지나 철회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A-3. 증권신고서 중 투자자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부분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투자자가 위임하는 권리와 의무의 상세한 내용, 분쟁의 해결, 공동사업의 구조,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과세에 관한 사항,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와 관련된 사항,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는 첨부 서류로 투자계약서 및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된 처분문서, 진술서, 계약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일반-3. 채권적 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1. 채권적 청구권의 의미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물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대세적인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행위(계약)를 통해 인정되는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계약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A-2.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의 채권적 청구권

본 투자계약증권에서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그 청산금의 배분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때 투자자가 가지는 청산금에 대한 배분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A-3. 기초자산 운용수익 등 채권적 청구권의 예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아니나, ①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은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수익을 구매할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의 주요한 권리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또는 ② 기초자산의 대여(렌탈) 등 기초자산의 처분이 아닌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증권의 주요한 권리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4.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자산 운용수익의 배제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사업구조를 확인할 때까지 기초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채권적 청구권을 증권의 중요한 권리로 포함하거나 당사의 사업수단으로 삼을 계획이 없습니다.

Q-일반-4. 투자계약증권은 법적규율에서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

본 증권신고서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6가지 증권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A-2.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계약증권은 그 발행회사(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운영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즉,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른 증권의 종류와 구분됩니다.

A-3.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공동사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으로만 발행될 수 있는 종류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법령해석 회신문 일련번호 14005).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기타 증권 유형으로 발행될 수는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 이론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가 당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후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SPC가 보유하고 투자자는 SPC의 채권자 또는 출자자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공동사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취득가액 이하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SPC가 투자자에 대해 잔존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손익을 귀속받는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증권”이란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5항).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제3자에 신탁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가 공동소유하는 구조이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서도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과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증권예탁증권"은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 당사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른 권리는 별도의 기초자산의 가격 등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탁받은 증권에 관한 권리도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과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 투자자와 당사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익명조합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직접 취득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그 운용수익만을 배분받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투자계약에 따라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기초자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배제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3호).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에 따라 전원의 합의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그 전원의 합의로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의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하는 한편,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처분계획을 중단시키고 직접 처분 상대방, 가격, 시기를 정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또한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언제든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위임을 해지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투자계약 제22조, 제38조 제2항),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전원의 합의로 직접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의 운용·배분 방법으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직접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에 대해 의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당사가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통해서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의 목적은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다른 증권의 발행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A-4. 본 증권신고서에서 사용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단위

투자계약증권의 1단위를 칭하는 명칭을 정한 법률 또는 규칙 등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용어 사용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1단위의 증권을 ‘주’로 표시합니다. 이 때의 ‘주’ 또는 ‘주수’는 출자 관계에 있어 ‘좌’나 ‘좌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Q-일반-5.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례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있나요?

A-1.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에서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투자상품과 비교될 수 있는 용어로 집단투자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집단투자기구의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동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을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정의하거나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15. 에서는 “투자증권”(投資證券; investment security)”을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서’(a certificate that represents investment equit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투자증권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권을 주권과 별도로 칭하는 명칭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9년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하여 전자기록이전권리와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토큰증권(STO)를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권의 종류가 아닌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수단으로서의 결과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종의 자율규제단체로서 일본STO협회가 “전자기록이전권리 등의 발행시장을 담당하는 기간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section/235>) 제235조 (Section 235)에서 집합투자체제(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등에서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영국의 집합투자체제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서의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지시’는 영어 ‘일상적 지배권’(day to day control)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영국에서 집합투자체제 이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미국의 법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에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별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8조 (Article 8)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때, 투자계약증권

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의도”(..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them for investment)로 취득된 증권이 일종으로 정의됩니다. 1933년 제정된 미국 연방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합쳐서 “연방증권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a)에서는 주식, 사채, 기타 투자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증권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6년 미 연방대법원의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판결에서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관계 없이 “투자자가 (i) 오직 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ii)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 (iii) 공동사업에 (iv)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 거래 또는 (사업)구조는 투자계약”(an invest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whereby a person invests his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and is led to 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이라고 하여 이른바 “Howey 기준(Howey Test)”이 제시된 이후로, 동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투자증권 또는 집단투자기구 지분은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이나 신탁수익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에 출자한 자본금 또는 수익권에 관한 증권 중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으로 사용되나 미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일본과 미국에서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국의 FSMA 등 관련 법령에서는 집합투자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증권 종류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역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검토한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증권 6가지 종류 중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을 두고 있으면서도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미국, 영국의 법률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관련 법령들에 대한 원문, 영문본, 국문 번역본 등을 제공하므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해외 법제에 관하여서는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련 연구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시기인 2008년 11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경위 및 그 입법에 있어 영향을 미친 해외의 입법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합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관계를 “부분과 전체”로 보는 것이 입법의도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것은 아니나, 우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종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받은 후 다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사례에서, “본 수익증권은 신탁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하는 신탁 수익증권으로서 (i)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자금을 투자대상에 운용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및 (ii) 투자자로부터 주식형태로 자금을 유치하여 특정자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 등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투자회사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① 증권 발행의 주체, ② 자금 모집의 주체, ③ 이용하는 비히클(vehicle)에 따라 종전 집합투자기구와 신종 증권을 구분하여 보충성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2006년 6월 30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에서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하였다고 하며, 미국의 Howey기준을 원용하였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설명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을 투자계약증권의 예로 들며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구)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투자계약증권을 신종 증권이자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으로 설명하며 같은 예시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위에서 본 2014년 3월 16일자 유권해석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기구”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에 걸쳐 당사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Q-일반-6. 청약은 선착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나요?

A-1. 청약의 개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청약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외의 투자자에 대하여서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전체 발행증권 중 [10]%에 해당하는 증권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당사는 증권을 우선 배정 받음으로서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책임 있는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투자자와 당사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의 방식은 균등배정, 비례배정, 추첨배정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각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으로, 비례배정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배정을 희망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배정 및 추첨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A-2. 구체적인 청약의 방식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필한 후, 당사와 계좌지원·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의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NH투자증권(주)와의 사이에서 계좌 체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당사에 납입하게 됩니다. 당사의 청약계좌는 위 전용계좌를 통하여만 입금이 가능한 “집금계좌”이며, 당사는 집금계좌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을 지급 받지 아니합니다.

구체적 청약의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4. 나.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 청약에 있어 실명계좌의 이용: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AML)관련 의무의 준수,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명계좌 이용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필요한 투자자의 실명계좌체계(이하 "실명계좌체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CDD/EDD/KYC) 및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금융회사 등에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그외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의 준수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금융당국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인가된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실명계좌체계 지원을 받는 것이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에 관련된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아직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없고 지명채권 양수도의 방식으로만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나, 향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T) 등의 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비실명 금융자산의 유통이 제한될 여지가 많을 것이어서 투자자의 제한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도 증권의 발행과 배정 시점부터 실명계좌체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당사의 판단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A-3-2. 실명계좌체계 등으로 지원되는 사항

실명계좌체계는, ① 투자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NH투자증권에 개설하는 "청약 전용 계좌", ② 당사가 NH투자증권에 개설하는 계좌로서,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자의 청약금을 수령하는 전용계좌로서 정해진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집금 계좌", 그리고 ③ 집금계좌에 각 용도 별로 입금과 출금이 지정되어 있는 전용계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실명계좌체계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④ 집금계좌로 수령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 기간 내에는 당사가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좌로만 출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A-3-3. 청약증거금 등이 가지는 예치금적 성격과 환불의 보장

실명계좌체계 및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당사는 청약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그 환불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는 청약의 철회, 단수주의 발생, 기타 어떠한 사정으로 증권이 배정이 되지 못하여 투자자가 당사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명칭이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체계를 사용하게 되므로, 예치금의 반환 액수나 반환받아야 하는 투자자의 숫자, 반환 대상 투자자에 대한 또 다른 실명 인증이나 별도의 추가 계좌 정보 제공 없이 예치금 반환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당사가 다른 방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금융계좌를 제공받아야 하는 위험, 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수 없는 위험, 투자자에게 적시에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위험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구조재편 및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승인 받았으므로, 투자자 예치금의 반환 보장은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A-3-4. 실명 계좌체계의 개요 및 실명 계좌체계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비용 대비 편익

투자자는 당사에 실명 계좌체계를 지원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당사 청약 전용 실명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청약을 위하여는 NH투자증권이 실명 계좌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청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실명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투자자는 NH투자증권이 요구하는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당사는 이 절차를 통해, 청약자와 증권의 배정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 1인당 청약 전용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한 계좌 개설 수수료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인지세 300원을 합하여, 합계 1,400원을 최초 계좌 개설 1회에 한하여 계좌개설 수수료로 NH투자증권에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실명계좌체계 지원에 따르는 대가로 매 청약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자의 실명계좌 인증 절차와 계좌 개설 수수료는 다른 방식, 예컨대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여 1회성 가상계좌를 투자자에게 발급해 드리는 경우에 비하여 투자자는 청약을 위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최초에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투자자가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실명계좌체계를 통한 투자자 보호나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등에서 오는 투자

자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 개설된 투자자의 당사 청약 전용 실명 계좌는, 향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 계약증권의 청약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4. 증권 배정의 구체적 방식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배정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그 배정 과정에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당사는 배정물량 중 [10]%를 당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공모총액을 초과하는 청약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배정물량 중 [10]%를 균등배정 방식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합니다. 나머지 배정물량 [80]%는 비례배정 방식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한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 때, 균등배정 또는 비례배정 방식에 의한 배정물량이 청약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추첨배정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를 5사6입하는 등 잔여주를 최소화하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총액에 미달하는 청약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물량 중 [10]%를 균등배정 방식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증권은 비례배정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을 통하여 배정되고 남은 청약물량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배정합니다.

이 때, 총 균등배정 방식의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균등배정 방식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총 청약자 수가 발행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하거나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4. 마. 청약 결과 배정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 금융실명제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위한 노력 등

당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약금의 지급이나 환불을 위하여는 금융회사등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며,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투자자가 청약 기간 내에 청약을 취소하여,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당사로부터 환불 받아야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당사는 투자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환불의 대상자가 청약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당사가 확인하고 동시에 투자자가 환불금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도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와 동법 제6조는 공중협박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계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실지명의(이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필수로 하고, 고객확인제도 (KYC, EDD/CDD) 및 실명확인에 관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계좌체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명확인을 거친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실명계좌로만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계좌 개설 절차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금융실명제를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제도에 따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Q-일반-7. 투자와 관련한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이 있나요?

A-1. 최소투자금액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1주당 가액은 100,000원입니다. 투자자는 1주 이상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투자금액은 100,000원입니다.

당사는 해외 사례들에 대한 검토,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의 공동사업 구조 및 자금의 사용목적,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투자금액을 미화 100달러에 가까운 100,000원으로 정하되 최소투자단위는 1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가 검토한 구체적 해외 사례들에 관하여서는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 9. 본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 유형」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A-2. 최대투자금액

당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증권의 청약에 있어서는 1인의 투자자가 [300]주,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최대청약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의 배정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인 당사를 제외한 1인의 투자자가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의 최대청약한도 및 증권의 취득 제한은 투자와 관련된 최대 금액이 됩니다.

Q-일반-8.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피해야 하나요?

A-1. 청약이 가능한 투자자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청약을 받지 아니하고,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에 투자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계좌관리를 위한

계약을 맺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받습니다.

A-2.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 등

당사는 투자자 회원에 대하여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거칠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 그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에게만 청약에 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상품 중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만 투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니시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2등급 내지 5등급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청약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 성향 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실시하게 되며, 투자 성향 분석을 완료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투게더아트 회원의 투자적합성 테스트 결과는 2년간 보관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당사의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시기 위한 투자적합성 테스트 질문지 예시와 투자적합성 테스트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트투게더] 투자계약증권 투자적합성 테스트

[사전질문]

Q. 아트투게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희망하시나요?

1. 희망합니다.
2. 희망하지 않습니다.

Q. 고객님의 투자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본질문]

Q.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1. 만 19세 미만
2. 만 19세~만 40세
3. 만 41세~만 50세
4. 만 51세~만 64세
5. 만 65세~만 79세
6. 만 80세 이상

Q. 고객님의 연소득(급여, 금융소득 등)금액은 어느정도 되시나요?

1. 5천만원 이하
2. 5천만원 초과~7천만원
3. 7천만원 초과~1억원
4. 1억원 초과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

1. 상법에 투자자 권리 관련 근거가 있는 주식 등과 같이 정형적이다.
2. 발행인과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정해지므로 매투자마다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Q.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

1.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다.
2. 일반회사로서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다.

Q. 증권신고서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1.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의 기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Q.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지?

1. 발행회사에 의해 원금이 보장된다.
2.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Q.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1. 증권시장과 같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신뢰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등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 근거를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1.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기업은 투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증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Q. 일반투자자의 투자계약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권고하는 투자수준은?

1. 본인의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 본인의 자산 상황 등과 관련없이 장악한도 최대치까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권리행사가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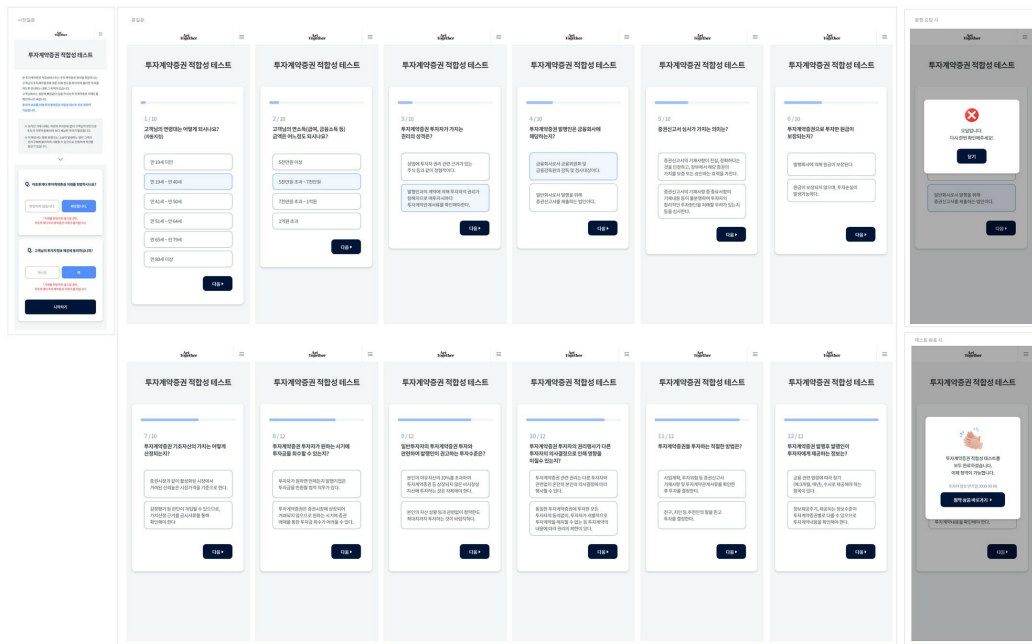
1.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는 다른 투자자와 관련없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2.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있다.

Q. 투자계약증권을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1. 사업계획, 투자위험 등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2. 친구, 지인 등 추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Q.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1.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예:3개월, 매년),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2. 정보제공주기, 제공되는 정보수준이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3. 해외 사례에서의 투자범위 제한

해외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들에서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 순자산 또는 연소득의 10% 이내에서만 비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A-4.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

당사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투자성향분석의 결과 등을 숙지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 또는 연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을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 등 비상장 증권에 투자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시다는 점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위험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일반-9.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

당사에서는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증권을 양수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당사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A-2. 활성화된 유통시장의 부존재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에 따라, 제한된 방식으로의 증권 양수도나 기타 환금성 관련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유통 노력과 유통에 대한 투자자의 협조 의무

투자계약서 제19조(증권의 시장성 제한과 유통 노력 등)에 따라 당사는 증권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적법한 양도가 가능한 공개 또는 비공개 시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하 “유통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투자자는 본 증권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본 증권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발행의 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3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3)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 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대상 자산매입 관련]

Q-자산-1. 회사는 투자대상(예: 미술품)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A-1. 기초자산의 취득처

당사는 기초자산을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by's)사를 통하여 선매입 하였습니다.

A-2. 미술품의 유통, 미술품 시장, 그리고 미술품 시장의 참여자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미술품을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은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또는 개인인 미술품 컬렉터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이 때,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 중 작가가 미술품을 창작(제작)한 후 주로 초대받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전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화랑(갤러리), 그리고 다수의 화랑들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박람회장 격이 되는 아트페어를 합쳐서 미술품의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이 다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미술품들을 모아 주로 호가 경매의 방식으로 판매 가격과 구매자(낙찰자)를 결정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을 미술품 시장의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화랑이나 아트페어가 미술품의 전시 뿐 아니라 재판매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화랑과 아트페어 등은 1차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2차 시장에 해당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은 주로 미술품의 현재 소장자들로부터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데, 이 때 다양한 작가들이 제작한 미술품을 짧은 기간 내에 분류하고 감정하며, 다수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들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미술품의 운송과 보관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술품의 유통 체계, 정보의 관리, 회계 처리,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조세의 신고와 납부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물적·인적 노하우가 필요하여 1차 시장에 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인정받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유통 또는 보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진위나 감정 제도가 있지 않은 미술품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즉, 인정받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운영하는 미술품 경매에서 판매된 미술품의 경우에는 그 공개된 거래가격(낙찰가격)이 유사한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미술품 경매회사가 판매한 미술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ertificate of Warranty)나 미술품 경매회사와의 거래계약서 등은 미술품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A-3. 미술품의 진위나 가치에 대한 판단 등

미술품의 창작예술품으로, 원칙적으로는 단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Unique) 것입니다. 미술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제작하는 판화 등도 미술품에 속하나, 판화 역시 작가가 고유한 기법과 예술성을 담겨 있고, 각 작품별로 작가의 서명 및 에디션 번호(Edition No.) 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미술품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모든 미술품의 진위와 가치는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품의 직전 소장처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유통경로

(provenance)를 확인하는 것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작가가 해당 미술품과 같거나 유사한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화랑의 전시또는 판매 기록, 해당 미술품의 전시 이력이 기재된 인쇄된 도록(Catalogue), 작가가 확인한 확인서나 보증서 등의 서면, 작품의 거래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나 송금 내역, 작가나 작가를 위한 비영리기관 등이 제작한 작가의 전작 도록(Catalogue Resonee) 등은 미술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어 줍니다. 국내 또는 국외의 인정 받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거래된 기록이 있거나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역시 신뢰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유통경로나 그 미술품이 진품임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미술품의 가치에도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당수의 미술품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인의 소장품으로 공개되지 않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시점에서 공개되거나 알려진 미술품이 그 다음 시점에서 공개되거나 알려진 미술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미술품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해당 미술품을 판단하기 위한 시점 이전에 거래된 유사한 미술품의 거래사례에 비추어 비교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래사례들이 해당 미술품과 비교할 수 있을지를 추출해 내고, 그 거래사례들이 실제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나 요인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진위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개된 거래사례나 공개되지 아니한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미술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도, 미술품 시장과 미술품 유통에 대한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4. 당사의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선정 과정 요약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의 공개된 경매 출품 기록을 검토하고, 개별 미술품의 진위 여부, 유통 경로, 미술품 취득에 필요한 총 비용을 확인하여,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자산들의 후보들을 선정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검토하여,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로부터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보증서와 팩트 시트(Fact Sheet)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려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항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등을 중개인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로는 (주)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 외 9개사가 있으며, 상위 2개 회사인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이 연간 미술품 경매의 낙찰액 또는 출품액을 기준으로 할 때 90% 이상의 미술품 경매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로는 소더비(Sotheby's)사, 크리스티(Christie's)사, 필립스(Phillips)사가 합산하여 9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중개업, 미술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합니다. 기초자산이 될 투자대상 자산 취득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는 미술품 가격, 운송료, 보험료,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작성 가격 등이 모두 포함되

며, 당사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Q-자산-2. 투자계약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1. 공모가액의 결정

투자계약증권 1주당 가액은 100,000원이며,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가격에 발행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공모총액으로 삼아, 이를 발행하는 증권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액으로 합니다.

당사는 발행제비용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또는 분담금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는 발행제비용의 상세한 내역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부담하며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비용은 기초자산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료, 기초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료 등입니다.

공모가액의 결정에 관한 상세한 기재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총액의 사용계획에 관하여서는 「제1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결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과 거래사례에 대한 분석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 결정은 당사의 자체적 평가에 더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미술품이 공개된 경매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된 사례들을 선정한 후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 기초가 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기초자산에 관하여 511회의 공개된 거래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거래사례 분석 요약		
(기초자산) 작가명	주제 및 재질	당사가 분석한 거래사례
George Condo	The Horizon of Insanity, 캔버스에 오일	511회

Artprice와 Artnet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이용되는 해외 미술품 가격정보 제공 DB로, 각 DB는 약 1,700만건 이상의 미술품 경매기록에 대한 정보를 거래사례로 제공해주고 있고, 당사 역시 해당 미술품 가격정보 제공 DB들을 활용하여 약 1,700만건 이상의 미술품 경매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를 획득한 후에는 거래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술품의 작가, 작품의 재질, 작품의 제작연도, 작품의 주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거래에 참여한 미술품 경매회사, 거래의 시기, 작품의 크기, 작품의 입체성, 작가의 전시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전문적 시각에서 비계량적 또는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계량적 방식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에 대한 당사의 진술 등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적 방식으로 당사는 기초자산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공개된 거래사례를 모두 확인하되, 최근 3년과 1년 내의 거래사례를 다시 한 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한 작가가 창작(제작)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해외 발행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서 분석한 거래사례를 모두 확인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당사는 일정기간의 거래 사례를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해외 미술품 경매기록 유료 제공 DB 등에서 확인하여 추가되는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된 결과를 포함하여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사례 전체를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분석한 거래사례는 미술품의 거래 사례를 동등한 수준의 미술품 경매기록 제공 DB에서 검색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외의 제3자가 검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품의 적정한 취득 가격을 추정하거나, 향후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미술품 가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유통에 관한 인적 노하우와 계량적 분석을 통한 물적 노하우를 함께 도입하여 공동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미술품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위와 같은 계량적 분석 요소들이나 방법, 모형들은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미술품 가격 추정에 대한 예시를 말할 뿐,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 가치의 절대적 가치나 향후 투자수익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른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에 의한 미술품 가격추정 모형 등을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을 추정·평가·검증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술품 가격 추정을 위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미술 전문가에 의한 거래사례 선정 절차를 대신해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알고리즘 또는 그에 따르는 분석 결과들이 가지는 정확성은 미술 전문가를 대체할 만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알고리즘 종류나 방법 역시 확립되지 않고 다양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거래사례법 등에 비하여 더 나은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3.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에 대한 독립된 제3자의 검토들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지출에 관한 증빙, 기초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취득과 관련된 처분문서나 증빙자료 등을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제시하고,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법률검토의견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료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거나, 매 반기 및 분기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당사 재무제표의 주식사항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기초자산을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 역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주식사항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한 재고자산(미술품)’이 다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내부평가 이외에 이른바 국내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속하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서, 신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미술품 가치평가 의견서를 받았으며, 해당 보고서들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중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 및 첨부서류인 「기초자산 관련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그 원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산-3.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에 있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1호에서는 “토지등”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하여, 미술품이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3호는 “감정평가업”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외부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 외부평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된 것입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13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이며 설립 이후 감정평가법인으로서 5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당사로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이사인 감정평가사이며, 미술품에 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가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사실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발급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라고 판단합니다.

A-3. 한국기업평가(주)의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주)는 기업 또는 유가증권의 신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 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 분석’, ‘본건 작품(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본건(기초자산) 작품 가치평가’를 용역수행 범위로 하여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및 기초자산에 대한 경매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미술품 시장, 작가, 2014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유사작품 미술품 경매시장 낙찰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과 분석의 방법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도에 비추어 해당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4-15조(투자계약증권의 평가)에 따라 ① 취득원가, ② 채권평가회사, ③ 회계법인 중 하나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동 가이드라인 제4-24조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투자계약증권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4. 외부평가의 한계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예술창작품은 그 자체로 유일한 것이고, 개인적 선호 또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유로 외부평가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해당 미술품의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표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비단 미술품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 외의 재산권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가격으로 실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절차 등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되 유찰이 있는 경우 경매의 시작가격을 하향하기 위한 기준으로 외부평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매 절차나 신탁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매 절차에서도 외부평가는 동일한 한계를 보입니다.

이처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가까운 가치를 표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에 관련된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산-4. 투자대상자산의 외부평가 가격이나, 시가는 어떤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나요?

A-1. 일반적인 변동 요인

기초자산이 속하는 미술품 시장의 변화, 미술품 자체의 내재적 위험, 금리 변동 등 유동성 요인, 미술품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나 훼손,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선호도 차이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시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A-2. 미술품 시장과 미술품의 시가 변동 요인을 주식시장과 비교하는 경우

미술품의 시가를 다른 자산들과 비유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미술품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유하자면, 주식은 매 영업일에 다수 대 다수가 거래되는 주식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 결제능력을 가진 구매자와 판매자 각자가 제시하는 호가와 수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같은 주식을 주문할 수 있고, 여러 범위의 가격을 동일한 주식에 대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역시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시가는 이른바 하한가나 상한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도로 하나, 그 범위 내에서도 1거래일 내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유동성과 관련된 요인과 특정 주식이나 주식 시장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시가를 말할 때에는 당해 거래일의 일시적 가장 높거나 낮은 거래가액을 말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수 년간 해당 주식의 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 이른바 200일선, 100일선, 50일선, 20일선 등의 거래 추세, 이동평균선 등 거래 추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해당 주식의 가진 내재 가치나 장래의 성장 가능성 등을 함께 분석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그 적절한 시가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단 1개의 유일한 작품이 있을 뿐이므로, 미술품의 판매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상에 의하여,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되는 가격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1인이며 거래되는 미술품 또한 1점입니다. 판매자가 다수가 될 수 없으므로, 다수와 다수가 만나는 공개적인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거래시장이 없으므로 가격은 공개적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드물고,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구매희망자를 찾기 위하여 그 미술품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가격이 제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케이옥션이 미술품 경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출품되는 미술품의 가액에 따라 주로 구분되어 매월 1회 가장 고가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저 경매와, 격주 간격의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매주 개최되는 위클리 온라인 경매가 있습니다. (주)서울옥션 역시 케이옥션의 메이저 경매와 유사한 규모의 미술품 경매를 연4회에서 8회 가량, 그리고 다수의 온라인 경매를 개최하는데, 서울옥션의 사업보고서에서 정기적 개최의 시기를 공시하거나 표준화하고 있다는 기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필립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인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뉴욕, 홍콩, 런던 등에서 연속하여 개최되는 각 미술품 경매 회사마다 주로 주요 아트페어의 개최 시점에 맞추어 연 4회 가량 개최하는 미술품 경매가 가장 큰 규모이며, 온라인 미술품 경매는 불규칙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이 전자등록제도 등에 힘입어 거래가 체결되는 즉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판매자의 주식계좌에서 구매자의 주식계좌에 대체 입고될 수 있는데 비하여, 미술품의 거래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별도로 대금의 지급, 미술품에 대한 특별한 포장, 국경을 넘는 경우 그 운송을 기다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령 후의 작품 상태 확인 등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술품의 거래시장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거래의 당사자, 거래의 대상, 거래 시장이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대금의 지급과 작품의 인도 사이에서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품 거래의 특징으로 인하여 미술품은 거래 비용이 다른 물건에 비하여 높을 수 있고, 미술품 경매회사 등 이러한 미술품 거래 다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가는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따라 1거래일 내에서도 셀 수 없을 만큼 변할 수 있는 반면에, 미술품의 시가는 동일한 미술품 거래가 아닌 주로 유사한 미술품의 공개된 거래 사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사한 미술품이 출품된 경매의 간격을 최소 주기로 하게 됩니다. 즉,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시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미술품의 거래 사례는 국내에서는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주기에, 해외 미술품은 해외 주요 경매사의 경매 주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A-3. 미술품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여 보는 경우

미술품 시장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보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거래의 대상이 주로 단수로 1개라는 점이나, 최종적인 거래 당사자들이 구매자와 판매자 각 1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래를 위하여 수 차례의 이른바 임장을 통하여 거래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거래비용에 속하는 중개수수료와 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 비용이 주식 거래에 비하여 높다는 점, 거래 시작부터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까지의 기간이 주식 거래에 비하여 비교적 길다는 점,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거래사례에 따라 시가가 변동하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많다는 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길다는 점, 실물이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진다는 점, 1개의 거래 대상물임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의 거래대금이 오간다는 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실제 거래에 있어 입지·층·방향·학군·거래방식·거래조건 등이 영향을 미쳐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미술품도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색상·표현·질감·거래방식·거래조건 등이 영향을 미쳐 실제 거래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미술품과 부동산 거래의 공통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1회의 거래 사례 뿐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가격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 거래의 주기, 거래가 이루어진 간격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까지를 함께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등기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증명이 가능한 부동산과 다르게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실물의 인도와 점유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나, 위치의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은 그 보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양도 뿐 아니라 취득과 보유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에는 취득과 보유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부동산과 미술품 거래의 차이점입니다.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장기간 신뢰성을 인정 받은 미술품 경매회사나 상당한 지명도나 신뢰도를 인정 받은 화랑의 보증서 등은, 마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 이력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공신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케이옥션, 서울옥션,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으로부터 발행된 보증서나 거래계약서는 해당 미술품의 거래 이력에 관한 일종의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비용은 각 미술품 경매회사 등에 위탁수수료, 낙찰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이유가 되며, 향후 그 미술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A-4. 미술품의 시가 변동 요인, 시가 변동 주기 및 미술품 자산가치의 상승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발행인의 의견

발행인은 주식 시장에 비하여 미술품의 시가 변동 주기는 매우 길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외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은, 그 실제 거래의 종결까지 소요되는 운송과 통관 등을 생각하면 해외 미술품 경매의 직전 낙찰 사례 등이 아직 거래의 완결에 이르지도 않을 수 있어, 지나치게 가까운 간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케이옥션과 서울옥션등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공개된 약관상 낙찰대금의 지급 기한을 7영업일에서 30영업일 정도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20일 정도까지의 분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으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등에서 미술품의 일반적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나 평균 수익률 등을 확인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충분한 보유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지수에 비하여 미술품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연구한 결과나 해외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에서도 미술품의 보유기간을 수 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시가 변동 주기를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가깝다고 비유하고자 하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공개하는 미술품 경매회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로서 그 거래 대상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하여 10년, 5년, 3년, 1년 등 일정한 기간 내의 가능한 모든 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근의 거래 사례 역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나,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 1건 또는 2건 등이 그 미술품 전체의 시가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빈번한 거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해당 작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거래 가액과 총 거래가액, 총 거래 건수 등을 함께 분석합니다. 또한, 작가에게 중요한 전시회의 개최 예정이나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랑 등과의 전속 계약, 그 외 특별히 작가가 높거나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건이나 사안들을 확인하여 거래 사례의 변경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당사의 판단에 미술품 거래사례가 특별히 낮거나 높아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거래가액의 변경 추세가 더욱 중요한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나 상승률 등을 사용하는 등 당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당사는 미술품이 거래된 지역이 환율이나 조세 또는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사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거래 사례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그 외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사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 그리고 본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 운영인력으로 기재된 인력들은 모두 주식을 하한가에 취득하여 상한가에 매도하기를 바라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최저 가격에 매수하여, 최고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대체투자자산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운영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품의 소유라는 일종의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특별한 경험, 냉철한 객관성을 중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는 미술품과 금융투자상품 모두 생소한 일반 투자자를 상상하며, 되도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구조와 기초자산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으며, 그 고민의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할지 또는 얼마나 상승할지 보장하거나 작품 가격의 하락 없이 원금의 반환 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 모두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모두 진실되게 기재하고자 하였고,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가 직접 재고자산으로 이를 매입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선정되었으며, 그 보관과 처분에 있어서도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가 직접 보관하고 처분할 때와 동일한 기준과 기회에 따를 것입니다.

Q-자산-5.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1. 미술품의 가격 조회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의 작품이 그 생산자인 작가가 생산한 유일한 상품으로 봅니다. 다만, 주로 동일한 작가, 재질, 주제 등을 기초로 하여 유사한 거래 사례를 공개된 미술품 경매회사의 거래기록 기타 미술품 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또는 국외 DB서비스 업체 등을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케이옥션이 회원에 대하여 최근 미술품 경매 결과 등을 제공하며, 그 외 미술품 경매회사나 미술품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에서는 소더비 경매사, 크리스티 경매사, 필립스 경매사 등이 최근 미술품 경매기록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 내역은 아트프라이스(Artprice, 이하 “Artprice.com”) 또는 아트넷(Artnet, 이하 “Artnet.com”) 등의 해외 미술품 경매기록 유료 제공 DB 등을 통하여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tprice.com은 833,500여 명 작가에 대한 전 세계 7,200개 미술품 경매회사의 16,788,800건의 미술품 경매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Artnet.com은 1985년부터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판매된 약 1,700만건의 미술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2. 미술품 가격 정보의 한계와 실제 미술품 유통 정보에 기반한 정보의 제공

이처럼, 단순히 미술품의 경매 낙찰기록에 포함되는 개별 미술품의 거래금액들을 저장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 1천만건의 미술품 경매 낙찰기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가 있으므로, 그러한 DB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상 추가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유통시장에 대한 진술서와 미술품 가격에 대한 근거를 담은 진술과 외부평가 기관이 조사한 글로벌 미술시장 및 국내 미술시장에 대한 자료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투자자들이 미술시장과 미술품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3. 미술품 시장의 동향과 정보에 대한 보고서 조회

Artprice.com은 개별 미술품의 가격 정보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미술품 시장 동향, 주요 국가별 또는 작가별 거래 동향, 주요 미술 사조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에서는 2011년부터 “아트 앤 파이낸스 리포트(Art&Finance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미술품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딜로이트의 홈페이지(<https://www2.deloitte.com/lu/en/pages/art-finance/articles/art-finance-report.html>)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트페어로 평가되는 아트바젤(Art Basel)과 세계적 투자은행인 UBS 역시 매년 미술품 시장에 관한 분석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홈페이지(<https://theartmarket.artbasel.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해당 리포트에서는 세계 미술시장의 동향과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1년 12월까지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MARKET)월간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고, 매년 “미술시장조사”라는 이름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의 가장 최신판은 2023년 12월에 발간된 “2023 미술시장조사(2022년 기준)”이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옥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매 사업연도말, 반기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미술품 경매시장과 미술품 상품시장에 관한 분석이나, 이익률, 향후 전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경매, 중개, 판매에 따르는 회계처리기준의 대강 역시 주석으로 역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수익/비용 관련]

Q-수익/비용-1.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창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초자산의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한 후, 보관·관리한 후, 최종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청산합니다. 이 때, 미술품의 최종 매각가격에서 매각과 관련된 비용, 제세공과금 및 당사의 성과보수(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투자자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A-2. 그 외의 수익창출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는 미술품의 대여(렌탈) 등 기초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공동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 충분한 수단이 마련될 때까지는, 동산인 기초자산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운용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별도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수시공시에 준하여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시와 투자자가 투자계약 및 기초자산에 관하여 통지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에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2. 투자대상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투자계약에 따르는 위임(매각의 경우 공모총액의 100%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따라 당사가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과 동시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투자계약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매각(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필요한 권한을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사업 청산시까지 당사에 위임하는 '중요한 권리의무의 위임'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기초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제공합니다.

Q. 투자계약증권의 투자구조에서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1. 증권에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

증권에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증권에의 취득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청약하시는 투자자는 증권배정일에 확정된 증권 배정 수량에 비례하여 청약증거금에서 대체되어 증권취득대금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사는 공모총액에 포함된 발행제비용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비용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기초자산 취득비용과 발행제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원은 발행에 따르는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공모총액에서 기초자산 취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0.95%입니다.

A-2.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 대금 이외에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을 청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공동사업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공모총액의 108% 초과로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가 수취하는 성과보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처분손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으로 공동사업의 청산 전까지 추가적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없으며,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매각에 관련된 비용, 제세공과금, 성과 보수를 차감한 처분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투자수익 등의 분배 과정에서 비용의 정산 및 청산 수수료 등 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3. 미술품 판매에 있어 화랑(갤러리) 또는 아트페어에서의 유통 비용

일반적으로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받아 전시하여 판매하는 화랑은 그 작품의 판매대금을 작가 또는 작품의 판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판매자와 배분하여 나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랑이 수취하는 비율이 유통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트페어의 경우에는 그 참가의 주체가 주로 화랑이 되므로,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나 시설 이용료를 제외하고 난 후, 판매된 작품의 대가를 작가 또는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한 자와 나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4.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판매에서 위탁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미술품 경매회사는 다수의 미술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전시한 후 주로 경매의 방식에 의하여 판매합니다. 1회의 미술품 경매를 무사히 치뤄내기 위해서 미술품 경매회사들은 ① 미술품을 위탁할 다수의 판매자들을 물색하여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각자 다른 크기·주제·작가·재질·무게 등을 가진 수십에서 수백점을 운송하여, ③ 미술품의 전시와 보관에 적합한 장소에서 보관한 후, ④ 미술품에 관한 진위 확인, 가격에 대한 추정, 그 외 구매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그 후 ⑤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미술품 경매를 홍보하고 다수의 구매희망자를 물색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⑥ 미술품의 실물을 일정기간 전시한 뒤에 ⑦ 주로 호가에 의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미술품의 판매를 진행하고, ⑧ 낙찰자인 구매자로부터는 구매 대금의 수령을, 위탁자인 판매자에게는 판매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며 관련된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제반 세금의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⑨ 대금의 정산이 완료된 미술품은 구매자인 낙찰자에게 운송하고, 판매되지 않은 미술품은 다시 경매 절차를 반복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수행하는 복잡 다단한 업무들을 위하여 미술품의 조사와 확인, 보관과 운송, 관련된 조세와 회계에 관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회사들을 통한 유통을 화랑이나 아트페어와 분리하여 미술품의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의 판매는 미술품이 체계적 절차를 거쳐 유통되었다는 점, 전시 기간 중 대중에 의한 미술품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 판매와 구매의 이력이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점 때문에,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유통된 미술품은 그 자체로 미술품에 대한 일종의 유통이력 보증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가 호가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공하는 미술품에 관한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Certificate of Warranty) 또는 미술품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그 미술품 경매회사와의 사이에서 경매를 통한 거래와 유사한 신용도나 신뢰도를 인정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이 주요한 미술품 경매회사로 분류되고, 해외에서는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이 주요한 미술품 경매회사로 분류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는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한 판매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구매자로부터는 낙찰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위탁수수료(Consignment Commission; Seller's Premium)와 낙찰 수수료(Buyer's Premium)를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미술품의 구매나 판매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수수료율들은 각 미술품 경매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약관 또는 계약상 수수료율들이며, 할인 등은 개별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회사	국가	위탁수수료	낙찰수수료	구간(현지통화)	비고
케이옥션	한국	11%	16.5%	낙찰가 무관	VAT포함
서울옥션	한국	11%	19.8%	낙찰가 무관	VAT포함
아트데이	한국	11%	13.2%	낙찰가 무관	VAT포함
Christie's	뉴욕	미공개	26.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6.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6.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Sotheby's	뉴욕	미공개	26.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USD 1,0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USD 4,5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6.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GBP 800,001 - 3,8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GBP 3,8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6.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HKD 7,500,001 - 40,0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HKD 40,000,000 초과	VAT별도
	모든 지역	미공개	+1%	낙찰가 무관	VAT별도
Phillips	뉴욕	미공개	27.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7.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7.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Bonhams	뉴욕	미공개	28.0%	USD 5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USD 50,001 - 1,0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8.0%	GBP 4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GBP 40,001 - 8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8.0%	HKD 4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HKD 400,001 - 7,5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위탁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모두 공개하나, 해외주요 경매사들은 낙찰수수료만 공개하고 위탁수수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각 계약에 따라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요 경매사들에 대해서 고액의 미술품일수록 위탁수수료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을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수료 중에서 위탁수수료는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추후 공동사업의 청산시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 투자자에게 청산으로 인한 손익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Q-수익/비용-3.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나요?

A.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자자산인 미술품의 기간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관료와 보험료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산 보관료와 보험료의 당사 부담 원칙은 당사가 기초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 이익을 같이할 유인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모손실의 대상이 아니며, 공동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투자자의 기대이익에 있어서는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Q-수익/비용-4. 투자계약증권의 수익금 배분구조 및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는 경우, 당사는 처분손익을 배분합니다.

투자자는 처분손익에서, ①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 ②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 ③ 제세공과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원을 배분받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이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당사는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기초자산이 공모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산가액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 이익에 비례(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에 대하여 20%, VAT 별도)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투자계약증권에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 미술품인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대상이 아니며,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처분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미술품 양도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세원을 분류하여 기타소득의 지급자인 당사가 본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20%)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투자계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시 투자소득세가 부

과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세원 분류에 관한 해석,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법원의 판례 등으로 이러한 과세의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과세와 투자수익 등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 중 과세에 관한 사항 및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A-1. 기초자산의 관리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보관 프로그램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음으로 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도산 위험에서 제한적이나마 기초자산을 분리하고 당사의 다른 재산과 기초자산의 혼장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주요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펫,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미술품은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술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옥션은 총 한도 1,900억원의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A-2. 수익금의 관리

투자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 외에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공동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은 비용에 대한 계산과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한 후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

Q-투자자 보호-1. 발행인이 선택한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 받은 방식인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인도와 점유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 부동산과는 달리 특별히 등기 또는 등록하는 수단이 없고, 동산은 「민법」 제188조에 따라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때, 「민법」 제189조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90조에 따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A-2. 공유지분권에 대한 입증방식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기초자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르는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투자자는 공유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당사는 그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를 공유지분에 대한 입증수단으로 보고 이를 「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위치를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목적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까지 당사에 그 보관·관리·매각에 대한 중요한 권리의무를 위임하여 당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행위하게 되며, 그 위임의 철회나 해지 등에는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A-3. 투자자의 기초자산 관람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을 전시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에는 투자자는 당사를 통하여 요청함으로써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케이아트스페이스는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한 기초자산 관람의 세부 절차를 투자자에게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며, 관람 가능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의 이용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당사는 청약 기간 중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23에 소재한 (주)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공개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약이 종료된 후의 기초자산 관람과 관련하여서는, 청약 종료 후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활성화되는 '관람 신청' 메뉴를 통하여 개별 투자자가 단독으로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때 단독 관람의 장소는 서울 성동구 자동차길에 위치한 케이아트스페이스 내 단독 관람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신청하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당사는 단독 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의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4. 투자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

당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사업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구조에 포함된 공유지분 입증수단이나 도산절연 여부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투자자 보호-2.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술품 전문 수장고로, CCTV 등의 보안시설과 더불어 가스 소방시설 등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포함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주)케이옥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보험가입금액은 1,900억원입니다. 당사와 케이옥션은 개별 기초자산 각각이 보험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케이옥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면책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면책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보험사의 면책 여부 및 면책 비율이 별도로 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 전쟁, 남북전쟁, 정치적 위험 및 테러
- 파괴행위 및 테러
- 서기 2000년 문제
- 정부의 제재
-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학, 생물화학, 전자자기무기, 사이버 공격
- 선제 손상

-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 오기 및 누락(10억원 한도 내에서는 적용됩니다)

Q-투자자 보호-3. 발행인 파산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되나요?

A-1.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기간 중 당사에 도산 또는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당사 도산사유와의 절연을 위해, 청약기간 중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청약기간 매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A-2. 당사의 사업중단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에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조건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기초자산의 보관 및 처분에 관하여서도 별도로 사업중단 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동산으로 그 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당사가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당사의 도산 사유로부터 제한적으로나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파산 등 도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도산 등 사업중단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투자자 보호-4. 투자이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정기적/수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1.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의 운영

당사가 운영하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명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투자자에게 정기공시, 수시공시, 자율 공시, 조회 공시를 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시로 갈음합니다.

A-1-2.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당사의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사내이사	주재승	준법감시인	공시책임자(정)

이사/COO	신규식	운영/공시	공시담당자(부)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당사의 공시담당자는 코스닥 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A-1-3.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설비와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현황 및 계획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발행공시만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DART 시스템을 통하여 하게 되고, 유통에 관련된 공시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와 내부정보관리는 상장회사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직과 인적 자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A-2. 각 공시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시관련 업무규정」에 의한 공시사항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공시 : 사업연도말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8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 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주1)

(주1)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공시부터 포함한다.

(2) 분·반기말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6	회사의 정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수시공시

당사는 아래 수시공시의 공시사항에 대하여서는 정하여진 공시 시기에 관계 없이 가능한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KRX)에 향후 당사가 본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수시공시 시한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수시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 (주2)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 (주3)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4) 자율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	

(5) 조회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주1)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주2) 회사는 조회공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관련]

Q-이해상충-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자 중 발행인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격 및 조건을 정하나요?

A.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 있는 특수관계인의 공동사업 참가

공동사업 참여자 중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당사)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주)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미술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합니다.

(주)케이옥션은 국내 미술품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 전문 사업자로서 당사는 향후 기초자산의 처분이나, 그 처분을 위한 전시 기타 제반 업무에 있어 케이옥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포괄적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에 따라 관계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당사 반기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에 각 첨부하는 외부감사인

의 당사 분·반기 검토 보고서 또는 기말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Q-이해상충-2. 어떤 상황에서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의 공유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구조하에서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자면 공모자금에서 미술품 취득대금을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발행제비용에서 확정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기초자산 처분으로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 중 10%를 우선배정받아 취득하고,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 잔여 증권을 배정받아 취득하게 되므로 당사가 취득한 증권에 관하여 당사는 투자자와 동일하게 손실과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공동사업이 청산될 때, 투자계약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가액이 모집총액 대비 108%를 상회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받는 이익에 비례하여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청산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이해상충-3. 발행인도 투자계약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행인이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우위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게 되지 않나요?

A-1.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우선배정 받아 취득하며, 청약이 공모예정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 증권 역시 배정받아 취득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증권 취득은, 청약한 투자자들이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공모 청약에 참여한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서,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A-2.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시 및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조사한 정보와 투자자위험요소들을 상세하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1주당 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AT-CONDO-002)	10,280	100,000	100,000	1,028,000,000	일반공모
청약기간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2024년 3월 26일 ~ 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3일		2024년 3월 26일	2024년 4월 3일

투자계약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종 류	권리내용	수량	모집(매출)가 액	모집(매출)총 액
(주1)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 (AT- CONDO-002)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로, 그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및 처분손익을 귀속받을 권리	10,280	100,000	1,028,000,000

- (주2) 투자계약증권의 권리내용(계약이 표창하는 공동사업의 내용과 의결권, 수익분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 포함)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부 II. 증권 주요 권리내용」 및 「제1부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산정 근거는 「제1부 II. 9.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4)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 (주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당사가 실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는 신주모집 10,280주(공모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투자계약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 공모]

구 분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10,280	100%	-
합계	10,280	100%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증권수]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9,252주	90%	100,000원	925,200,000원	-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1,028주	10%	100,000원	102,800,000원	-
합계	10,280주	100%	100,000원	1,028,000,000원	-

-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주2) 본 건 공모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전체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나머지 90%를 배정합니다.
- (주3)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 수는 300주 입니다.
- (주4) 당사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 (주5)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아래 모집의 방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며 단수주 등의 경우에 추첨 배정 할 수 있고, 단수주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합리적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6)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은 환불일에 환불됩니다. 이 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7)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의 배정에 있어 동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주8)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9) 균등방식 배정수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다만,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 공모	10,280주	100%	-
합계	10,280주	100%	-

[모집 세부내역]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9,252주	90%	100,000원	925,200,000원	-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1,028주	10%	100,000원	102,800,000원	
합계	10,280주	100%	100,000원	1,028,000,000원	-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청약이 실시됩니다. 청약의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진행됩니다.
- (주2)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3) 당사는 계좌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서 투자자 본인의 실명으로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당사와의 계좌연동 서비스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을 접수합니다.
- (주4)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을 위한 집금계좌로만 납입 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증권 취득 및 배정일까지 분리보관됩니다.
- (주5) 금번 모집에서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인수 또는 주선은 없습니다.
- (주6)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주7)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있어 당사가 기 발행한 후 매출하는 증권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1) 수요예측 미 실시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가격의 결정 절차

금번 공모에 있어서 공모가격은 나.공모가격산정개요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된 공모가격에 대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고, 공모가격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당사는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초자산의 진위 및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진위 평가 과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한 진위를 유통경로(provenance),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보증서 등,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관계, 미술품 상태(condition)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의 작품들에 대하여 공개된 직전 10년간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후, 거래량의 변화 추이, 유사 작품의 최근 가격, 해당 작품의 최근 경매가격과 그 변화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작품 취득을 위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때, 작품의 크기나 색상이 미치는 영향, 작품의 비례미와 균형미 등 정성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1,700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이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거래된 사례들에 관하여 거래 가격, 경매의 장소, 경매회사, 제작연도, 재질,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제시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등 공개된 거래 정보 전체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거래사례는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거래된 511건으로, 해당 미술품들의 연도별 거래량 변화, 거래금액 변화,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들의 시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당사는 5년 내 거래된 작품 중 도상과 크기가 유사한 6점의 미술품을 직접 비교 그룹(peer group)으로 선정하여 비교사례법으로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가 직접 비교그룹으로 삼은 미술품은 기초자산과 동일 작가(George Condo)의 미술품들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사는 기초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 상태 등에 이상이 없고, 취득 금액이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평가를 받아 당사의 내부평가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들의 기초자산 취득가액 적절성 평가는 「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내역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내부평가]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 (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 (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

[외부평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진위 소견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주3)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3) 1982년부터 국공립 기관 및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11건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도상과 크기가 유사한 거래사례 6건을 직접 비교그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동일한 화폐단위와 cm² 단위 가격으로 환산한 후 cm² 단위면적의 평균값(average)과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는 1,037,929,764원부터 1,135,305,898원으로, 기초자산 취득금액인 934,951,942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묘사 없이 작가가 상상한 허구의 인물을 표현한 것으로서그 인물의 표정과 구도 면에서 유사 작품 대비 대등하거나 혹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11건	934,951,942 (1,028,000,000)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 (2014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의 거래사례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
	6건	1,037,929,764~ 1,135,305,898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감정평가를 위한 동료 평가사 심사 등 충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며,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품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이 인정된 담당 감정평가사가 세계 미술품 시장과 국내 미술품 시장의 동향,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변동, 주요 물가지수, 조지 콘도 작품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거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1,057,218,437원 ~ 1,110,520,784원으로 산정하여 각 감정평가서와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평가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주)제일감정평가법인	533건	1,0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2건(최종 1건)		
한국기업평가(주)	645건	1,057,218,437~1,110,520,784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7건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작품 실사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기 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작품은 조지 콘도(George Cond, 1957~)의 작품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934,951,942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1,028,000,000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1부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기초자산의 가치에 관한 부분과 「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본 공모에 있어서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때, 기초자산의 선정과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도인과의 협상, 당사의 영업현황,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산업전망,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가격	100,000원
공모가격 결정방법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매매차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 등을 합산하여 공모로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금번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제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2) 발행제비용의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금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10,280주
주당 모집(매출)가액		100,000원
모집(매출)총액		1,028,000,000
청약기일	개시일	2024년 3월 26일
	종료일	2024년 4월 1일
청약증거금		주당 모집가액의 100%
청약단위		1주
청약한도		300주
납입기일		2024년 4월 3일
청약취급처 및 청약금 취급처		(주6)

청약기일 및 청약시간

- ① 일반청약자 청약일 및 청약시간: 2024년 3월 26일 10시 00분 ~ 2024년 4월 1일 16시 00분
 - ②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한 온라인 청약만 진행되므로 청약기일 내에는 주말 및 야간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약 결과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평일 영업시간(오전 10시 ~ 오후 6시)내에 이메일(info@weshareart.com)을 통한 1:1 문의를 통하여 청약 결과와 입금확인 등의 안내가 가능합니다.
-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주당 공모가액은 100,000원이며, 별도의 수요예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약단위

일반청약자의 1인당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게더아트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3) [일반청약자 배정수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 증거금을]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주)투게더아트	9,252주	300주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 방법 - (3) 일반 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일반청약자 청약증권별 청약단위]

청약증권수	청약단위
1주 이상 ~ 300주 이하	1주

청약증거금

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주5)

② 청약증거금은 투자자 명부 확정일(2024년 4월 3일)에 청약금이자 증권 납입금액으로 대체하되, 배정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여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증권은 발행인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거나 매출인 경우 매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명부 확정일(2024년 4월 3일)에 계좌관리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괄 반환 요청합니다. 다만, 반환 대상 투자자수가 과대한 경우 2영업일 범위 내에서 청약증거금 반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③ 당사에 선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증거금 납입을 진행합니다.

청약취급처

(주)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청약금 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증거금 예치계좌	NH투자증권 [강남]지점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명	NH투자증권
	예금주	(주)투게더아트
	계좌번호	207-01-918198
※ 본 납입과 관련하여 수표로 입금시 환불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투자자명부 확정 등의 일정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수 있음에 따라 납입대금 납부시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6)

(주1) 청약금 납입계좌로의 청약금 입금은 NH투자증권에서 당사의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투자자 실명으로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청약 전에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일반 청약자 납입일 및 납입시간 : 2024년 3월 26일 오전 10시 00분 ~ 2024년 4월 1일 오후 04:00분

(주3) 위 계좌는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한 “집금계좌”이며, 납입된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일까지 당사가 NH투자증권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주4) 투자자께서는 청약금 납입 전에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하신 경우에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방법
청약공고	2024년 3월 26일	①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배정공고	2024년 4월 3일	①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 ②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 (주1) 청약공고는 2024년 3월 26일 (주)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 (주2) 배정공고는 2024년 4월 3일 (주)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 명의자로 계좌관리기관인 NH투자증권에서 본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 자이어야 하며,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실명 확인 후 가입하여 투자성향분석을 완료한 후,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해당 청약취급처에 소정의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NH투자증권(주)에서 계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관리처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2) 청약서에는 투자계약서와 첨부문서 기타 청약자가 필수로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하는 문서가 투자관계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본 증권신고서에는 청약서에 포함될 투자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청약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 전용계좌에서 청약과 함께 집금계좌인 청약증거금 납입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납입된 청약증거금은 당사와 NH투자증권이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

약에 따라 증권 취득일까지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에 있어 미성년자의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청약자격 및 한도	■ 자격: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 제한 없이 청약가능 ① 청약 마감일 전일까지 계좌관리기관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자 ②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가입한 후,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자 ③ 투자계약서(첨부분서 일체 포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 자 ④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청약한도 : 최소 1주(10만원), 최대 300주(3,000만원)
배정	■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10%에 해당하는 1,028주를 선배정 ■ 10,28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선배정된 1,028주(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252주(90%)에 대하여 일반 청약자로부터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받음 ■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전체 모집 증권수 중 1,028주(10%)를 균등배정하고, 8,224주(80%)를 비례배정 ■ 청약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수량만큼 전량 배정하되, 잔여분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배정 ■ 단수주는 당사가 추첨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 ■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을 제외한 투자자 1인이 과반수 취득 금지
업무 수수료등	■ 청약수수료 : 없음 ■ 대체(출고)수수료 : 없음
청약방법	■ 청약증거금이 계좌관리기관에 청약자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계좌(당사 청약 전용 계좌가 개설되고, 그 청약 전용 계좌에 청약증거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 ■ 청약 취급처인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약 가능

온라인 청약절차	■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본인 인증 후 회원 가입 → 약관 동의 → "온라인 청약" → "투자 성향 분석"(투자 적합성 테스트, 2년마다 갱신)→ “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AT-CONDO-002) 공모 청약” 신청 → 청약 가능 여부 확인 → “투자 계약하기” 선택 → “투자설명서 교부” 선택 → “청약수량” 입력 → “신청” → “청약/취소내역 조회” ■ 투자자는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투자설명서를 클릭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에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 증거금	10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주1) 본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에 관하여서는, 일반투자자 1인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청약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본 증권의 배정도 300주를 초과하지 못하며 발행인인 당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1인의 투자자가 50%를 초과하여 배정받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주2) 본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은 경쟁률에 따라 청약신청 물량보다 적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3) 본 증권신고서에는 청약서에 포함될 투자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주4) 투자자는 청약시 청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주)NH투자증권 지점을 통하여 고객이 사전에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의 청약 전용 고객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시 고객이 당사 집금계좌로 납입한 청약증거금 해당 금원은 투자자가 임의로 출금하거나 (주)투게더아트의 다른 투자계약증권 구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5) 당사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당사 청약 전용의 고객계좌에서, 당사가 청약을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집금계좌로만 납입받습니다.
- (주6) 청약증거금은 당사와 NH투자증권과 사이에서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청약기간 종료 후 투자자 명부가 확정되고, 청약금 납입일과 환불일이 도래할 때까지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 (주7) 당사와 NH투자증권이 체결한 오픈뱅킹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청약을 위하여 개설되는 집금계좌는 청약 목적으로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며, 당사가 임의로 사용목적이나 출금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 성향 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며, 투자 성향 분석을 완료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투게더아트 회원의 투자적합성 테스트 결과는 2년간 보관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아트투게더] 투자계약증권 투자적합성 테스트

[사전질문]

Q. 아트투게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희망하시나요?

1. 희망합니다.
2. 희망하지 않습니다.

Q. 고객님의 투자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본질문]

Q.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1. 만 19세 미만
2. 만 19세~만 40세
3. 만 41세~만 50세
4. 만 51세~만 64세
5. 만 65세~만 79세
6. 만 80세 이상

Q. 고객님의 연소득(급여, 금융소득 등)금액은 어느정도 되시나요?

1. 5천만원 이하
2. 5천만원 초과~7천만원
3. 7천만원 초과~1억원
4. 1억원 초과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

1. 상법에 투자자 권리 관련 근거가 있는 주식 등과 같이 전형적이다.
2. 발행인과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정해지므로 매투자시마다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Q.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

1.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다.
2. 일반회사로서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다.

Q. 증권신고서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1.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의 기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Q.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지?

1. 발행회사에 의해 원금이 보장된다.
2.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Q.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1. 증권시장과 같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신뢰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등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 근거를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1.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기업은 투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증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Q. 일반투자자의 투자계약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권고하는 투자수준은?

1. 본인의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 본인의 자산 상황 등과 관련없이 청약한도 최대치까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권리행사가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는 다른 투자자와 관련없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2.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있다.

Q. 투자계약증권을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1. 사업계획, 투자위원 등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2. 친구, 지인 등 추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Q.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1.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예:3개월, 매년),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2. 정보제공주기, 제공되는 정보수준이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주8)

투게더아트_투자 적합성 테스트 화면

-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기간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이며, 투자자 총회의 처분정족수 결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9) 사업 운영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투자계약 또는 투자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판매시장을 통해 기초자산을 처분한 후 즉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기간 중 기초자산 관람

금번 청약 기간 동안 당사는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관람 기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 중(휴일 포함)인 2024년 3월 26일 ~ 2024년 4월 1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장소에서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23, (주)케이옥션 1층 전시장
관람 방법	별도의 관람 신청 또는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람 장소에 비치됩니다. 주차가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주1) 당사는 청약 기간 중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23에 소재한 (주)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공개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2) 청약이 종료된 후의 기초자산 관람과 관련하여서는, 청약 종료 후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활성화되는 '관람 신청' 메뉴를 통하여 개별 투자자가 단독으로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때 단독 관람의 장소는 서울 성동구 자동차길에 위치한 케이아트스페이스 내 단독 관람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신청하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당사는 단독 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의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금번 청약시 미성년자에 대한 청약이 제한되는 외에는 별도의 청약이 제한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 청약취급처 및 청약금 취급처

(1) 청약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연락처	(전화) 02-6959-1909

- (주1) 당사는 본·지점에서의 청약을 요청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금 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증거금 예치계좌	NH투자증권 [강남]지점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명	NH투자증권
	예금주	(주)투게더아트
	계좌번호	207-01-918198
※ 본 납입과 관련하여 수표로 입금시 환불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투자자명부 확정 등의 일정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 수 있음에 따라 납입대금 납부시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청약금 납입계좌로의 청약금 입금은 NH투자증권에서 당사의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청약 전에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 명부의 확정, 환불금의 반환, 증권의 발행과 교부 등

구분	적요
투자자 명부 확정	2024년 4월 3일
환불일	2024년 4월 3일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 취득	2024년 4월 3일

- (주1) 청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주2) 환불금은 환불일에 일괄하여 계좌관리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됩니다. 다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범위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3) 투자자 명부 확정일에 당사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합니다.
- (주4) 발행인은 투자자명부 중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증권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열람 및 교부합니다.
- (주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발행된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또는 그와 동등한 증권의 등록방법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그에 관련된 사항을 청약취급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주6)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원본 1부를 동일하게 청약취급처에 보관합니다.

마. 청약 결과 배정방법

(1) 배정비율

전체 모집 증권수인 10,28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에 선배정된 1,028주(10%)를 제외하고 일반투자자에게 9,252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배정단위는 [300]주입니다.

(주1) 당사는 1인당 최대 청약단위를 1인당 최대 배정단위와 동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은 공모가액 100,000원으로 발행회사가 투자계약서 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별첨 2] 증권의 배정 방법

1.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약 기간 내 청약증거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가 청약한 수량에 해당하는 증권을 배정합니다.
2. 전체 모집 증권수인 10,28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1,028주(10%)를 우선 배정(이하 "우선 배정")합니다.
3. 공모 절차에서 청약하는 투자자에게 9,252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배정 단위는 [300]주입니다.
4. 청약 완료일에 우선 배정되는 증권을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의 본 증권의 모집 수량 [9,252주에 대한 배정방식은 다음의 각 순서에 의합니다. 이 때, 청약방식은 균등배정, 비례배정, 추첨배정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 배정 및 추첨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가. 일반 투자자에게 9,252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청약단위는 [300]주입니다.
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배정물량 중 약 10%인 [1,028]주를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균등 배정")
(2) 전체 배정물량 중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우선 배정과 균등 배정을 제외한 나머지 80%인 [8,224]주를 투자자의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비례 배정")
(3) 위 (1) 내지 (2)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하고 남은 증권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배정
5.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7. 상기 배정 방식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당사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시, 투자자의 청약 순서, 청약 수량 등 다른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은 2024년 4월 3일에 (주)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환불일은 2024년 4월 3일입니다. 이 때, 계좌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의 환불 요청은 환불일에 일괄로 이루어지나 환불 대상자의 수가 과다한 경우 2영업일 범위에서 환불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주)투게더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구분	투자설명서 교부 형태
발행인 본·지점내방	■ (주)투게더아트의 본·지점에서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아래 온라인 청약만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으신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지점을 내방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온라인을 통하여 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고,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완료한 이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투게더아트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2024년 4월 3일)에 청약금이자 증권의 취득대금으로 대체하되, 증권 배정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여 위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 증권은 발행회사인 (주)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에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아. 기타의 사항

1) 증권교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자등록된 증권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증권의 매매(양수도)개시일

본 투자계약증권의 매매(양수도)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기타 활성시장이 없으며,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므로 동 절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할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당사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계약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별첨]은 투자계약의 일부입니다.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⑤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주요 내용

- 1)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2) 권리행사 절차

1) 처분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2) 의결권은 투자자총회를 통하여 행사합니다.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투자자 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중단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모총액 100%미만의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권리행사 통지 방법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 청산계획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의 해결

- (1)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투자계약서]

제55조(해석)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어, 그 해석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공동사업 운영자 「서비스 약관」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이 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본 투자계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된다.

(2)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구조

(1) 공동사업의 구조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매각한 후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로 하며,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8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수행한 기초자산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중요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다른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투자자와 운영자, 참여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22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로 본다.

제24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작성·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열람·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비용·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처분에 관한 권한
-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 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권리내용에 대해 발행 후 조정 가능사유와 그 조정절차

투자자총회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당사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권한 위임 등을 해지, 철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등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3) 조정 내용의 통지·공고방법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5.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기초자산의 중국적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지급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청산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수취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관계서류」에 포함된 투자계약서에 성과보수의 구체적 예시를 기재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총액 대비 청산시가*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모집 총액

6. 과세에 관한 사항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과세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기타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체계와 세원 분류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과세

(1) 기타소득세의 과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당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 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원천징수 세율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4)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
- 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나) 비과세대상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계약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에 관한 과세 등

본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기타소득세의 안분비례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이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승낙하면서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때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25퍼센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 아닌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나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2022. 12. 31. 일부 개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

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6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2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9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1) 공시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8.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방법과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에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에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에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에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에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⑦ 증권에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되는 작품의 사진들 일체,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쳐,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

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url)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첨부되어 제출되는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팩트 시트(Fact Sheet),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에 저작물의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사진, 컨디션 리포트, 팩트 시트, 감정평가서 등을 투자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URL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주소
https://weshareart.com/goods/subscription/image/dart?id=u2dlGxXhjNt4Q4k3vzQqsw%3D%3D

가. 기초자산 요약 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고유명칭(작품명)	The Horizon of Insanity	
생산자(작가)	조지 콘도(George Condo)	
생산연도(제작연도)	2001	
생산국가(작가 국적)	미국	
취득가액	934,951,942원	
취득시기	2024년 2월 23일	
보관장소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1. 크 기: 152.4 x 121.9 cm, 100호 2. 재 질: 캔버스에 오일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

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전면 및 후면 사진은 위 「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URL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해당 URL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권을 배정 받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사진에 대한 무단 전재, 복제, 배포는 금지됩니다.

(주2) 기초자산의 취득시기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일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에 대해 회사가 조사한 사항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생산자와 작품에 대한 안내사항

1. 기초자산의 요약

작 품 명(고유명칭) : The Horizon of Insanity
작 가 명(생 산 자) : 조지 콘도(George Condo)
제작연도(생산연도) : 2001
생산국가(작가국적) : 미국
취득(예정)가액 : 934,951,942원
취득(예정)시기 : 2024년 2월 23일
보 관 장 소 :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
1. 크 기: 152.4 x 121.9 cm, 100호
2. 재 질: 캔버스에 오일

2.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 작가(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지 콘도는 신 입체파, 또는 심리적 입체주의(Psychological Cubism) 화풍으로 잘 알려진 미국 현대 예술가입니다. 1957년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태어나 1970년 후반까지 미술사와 음악 이론을 수학했으며, 1980년대에는 앤디 워홀 팩토리에서 조수로 활동하며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와 등과 함께 뉴욕 현대미술을 주도했습니다. 콘도는 주로 왜곡된 인물 초상과 조각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불안과 덧없음을 기괴하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런 내적 요소를 한 작품에 담아내는 심리적 입체주의를 개척하며 1900년대 초반의 입체주의 화풍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1984년부터 약 40년간 스프루스 마거스(Spruth Magers),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Hauser & Wirth Gallery) 등의 메가 갤러리를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퐁피두 센터 등 세계 유수의 기관 컬렉션에 영구 소장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경력 전반에 걸쳐 비평가들과 슈퍼컬렉터들의 호응을 받아왔고, 카니에 웨스트 등 미국 유명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기도 하며 현재 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작가입니다.

나.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The Horizon of Insanity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존재적 초상화(Existential Portraits) 연작 중 한 점으로, 초상화라는 전통적인 회화 장르와 허구의 초현실주의적인 캐릭터들을 결합함으로써 인물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그러진 표정의 캐릭터는 형태가 왜곡되고 비틀려 있으며, 인물의 구도와 배경과의 조합은 유럽의 고전초상 회화 요소를 담으면서도 콘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초현실적인 형태의 기괴한 형상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여과 없이 투영하며, 동시에 미묘한 유쾌함과 장난스러움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요소들을 가상의 캐릭터에 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아름다움 대한 개념과 초현실주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도의 독창적인조형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 작품(기초자산)의 출처(Provenance)와 진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당사는 기초자산을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by's)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소더비가 작가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당사가 매입한 것으로 작품의 진위와 유통 경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 [기타 첨부] 매매계약서* 참조

4. 기타 기초자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

가. 작품의 전면 사진 및 후면 사진 등

나. 매매서류(매도인 제공)

다. Fact Sheet(매도인 제공)

라. Condition Report(매도인 제공)

마. Studio Letter(매도인 제공)

바. 감정평가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상기 조사한 내역들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초자산의 복제물에 해당 하는 기초자산의 사진들 일체,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투자계약서에서 기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타 첨부]로 표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투자계약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고,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저작물은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만 이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5. 열람 가능한 당사 홈페이지의 URL 주소

[<https://weshareart.com/goods/subscription/image/dart?id=u2dlGxXhjNt4Q4k3vzQqsw%3D%3D>]

6. 기타

가. 공동사업 운영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기간 중 또는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의 실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의 전시기간과 전시장소는 증권신고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당사가 아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일반적 진술에 기재한 팩트 시트(Fact Sheet),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일반적 진술

1. 기초자산의 범위

가. 발행인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예술창작품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이 위 가. 내지 나. 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거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2.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의 진위

가. 발행인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의 ‘진위(眞僞)’ 여부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나. 발행인은 전항에 있어 진위 여부를, “그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봅니다.

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 미술품을 창작한 예술가

(2) 미술품의 제목

(3) 기초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미술품이 (1)과 (2)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사정들

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등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등

가.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매도인, 미술품의 최초 창작자인 예술가, 그 외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그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판단 근거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보증서는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취지는 미술품이 2. 나. 내지 다. 와 같은 의미에서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 발행인은 보증서의 효력이나 권위가 그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의 지위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보증서는 다른 보증서에 비하여 그 효력과 권위가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간주합니다.

－ 미술품의 창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미술품에 대하여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를 수행한 미술품 경매회사가 보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다만, 이 경우, 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 Sotheby's, Christie's, Phillips, 국내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된 회사에 준하는 신용을 가진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된 문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시가 이루어진 화랑(Gallery)에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이 때, 발행인은 인쇄된 도록(Catalogue) 또는 작가의 전작도록(Catalogue raisonne)에 기재된 내용 등을 조사하거나, 화랑의 신용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의 유통 이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로부터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

라. 미술품 경매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는, 제공되는 보증이 ‘제한 보증(limited or restricted warranty)’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제한 보증은 2. 의 가. 내지 나. 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가 약관 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범위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제한 보증은 미술품 경매회사가 거래계에서 가지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상 권리의무로 해석되며, 발행인은 제한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의 신용과 연동

되는 높은 수준에서의 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외의 문서

가. Fact Sheet : 발행인은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출처(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Fact Sheet을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Fact Sheet에 기재된 내용들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Fact Sheet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나. Condition Report : 발행인은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ndition Report에 기재된 내용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Condition Report를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

(1) 미술품 시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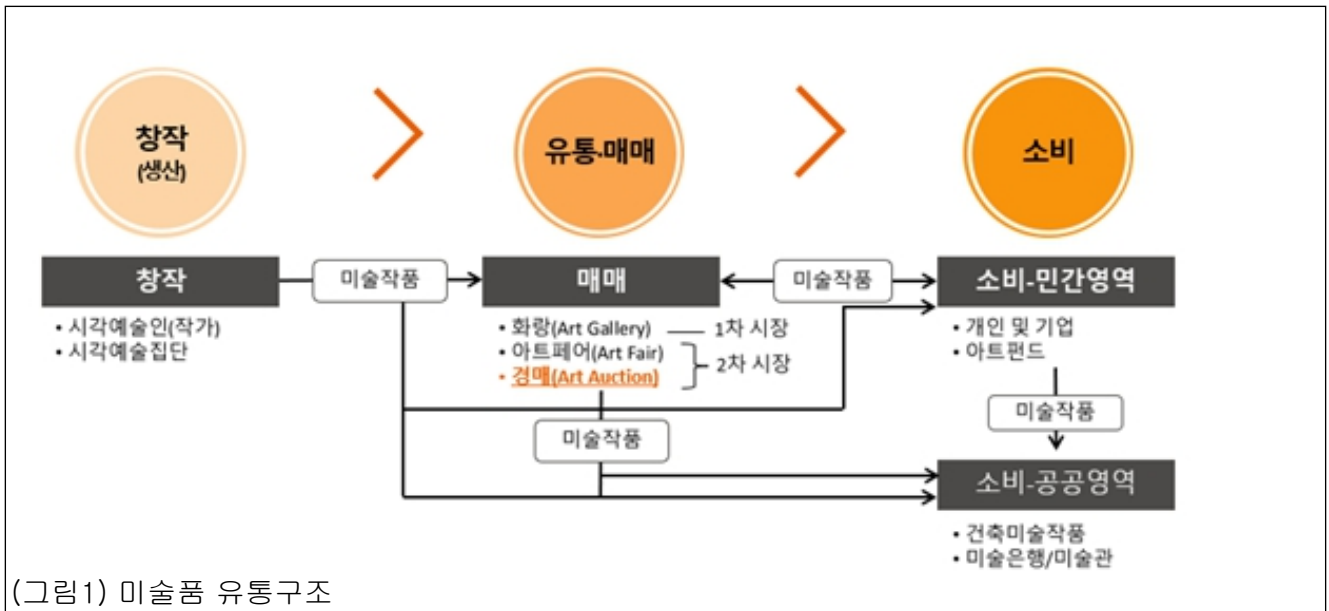
가) 미술품 유통구조 요약

일반적 관점에서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생산(창작)단계에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 유통단계에서 1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화랑(Gallery), 아트페어(Art Fair) 및 2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경매회사(Art Auction), 소비단계에서 미술품의 최종적인 소비자인 컬렉터(Collector)로 구성됩니다.

미술관이나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이나 파생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컨설팅 또는 아트펀드도 미술품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나, 아트컨설팅은 주로 컬렉터의 소비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아트펀드는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미술품은 대부분 제작자인 창작자로부터 소비자인 컬렉터에게 직접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유통 단계에서 1차 시장인 화랑에서의 전시를 거쳐 컬렉터의 손에 1차로 소비되었다가, 다시 한번 그 컬렉터가 2차로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생산(창작)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

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역사

미술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미술품을 상품으로 보고 그 유통 또는 미술품 거래시장의 연혁을 다루는 것은 학문적 논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술시장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근대의 상징인 화폐를 매개로 하여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 즉 근대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거래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서기 1254년에 미술품 경매에 관한 칙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기 1522년에는 앙리 2세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미술품 경매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드루오 국립경매원과 에뛰드 따장이라고 불리는 경매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한국 미술품 거래시장의 발전

우리 미술은 수천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술품이 본격적으로 유통의 한 분야가 되어 시장으로서 형성된 것은 불과 한 세기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에는 선물, 교환, 상찬 등 우리 고유의 미술품 유통 형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문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취미나 품격 도야, 화원 화가들이나 관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문 제작, 서민이나 무명 작가들에 의한 민화나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제한적인 방식에 그쳤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미술품이 유통되는 특정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1913년 해강 김규진이 현재의 서울 중구 소공동 인근에 ‘고금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옛 명화와 근대의 작품을 전시하고 표구하는 서화관 겸 지물포를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화랑은 1950년대 중반 반도호텔 내에 설치된 반도화랑으로서, 이후 1970년에 반도화랑을 이은 현대화랑이 상호를 바꾸어 출범하며 최소한의 컬렉터를 확보해 나가는 상업화랑이라는 근대식 개념의 갤러리가 됩니다. 현대화랑은 이후 1973년 9월에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미술유통 전문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현대화랑의 개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화랑들이 개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미술 장식 품 의무화, 1988년 올림픽,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부를 축적한 컬렉터 층의 성장 등으로 대규모 전시가 활발해지고 국제아트 페어 참여 등 국제적으로

무대가 넓어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작품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유통시장은 소더비와 크리스티로 대표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입니다. 소더비는 174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0개국에 걸쳐 연 600회의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고 그에 부대되는 와인, 보석, 시계, 위스키, NFT에 이르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크리스티가 런던에서 첫 경매를 실시한 이후, 현재 뉴욕, 런던, 홍콩, 파리, 제네바를 거점으로 하여 전 세계 46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소더비와 유사하게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되 그에 부수되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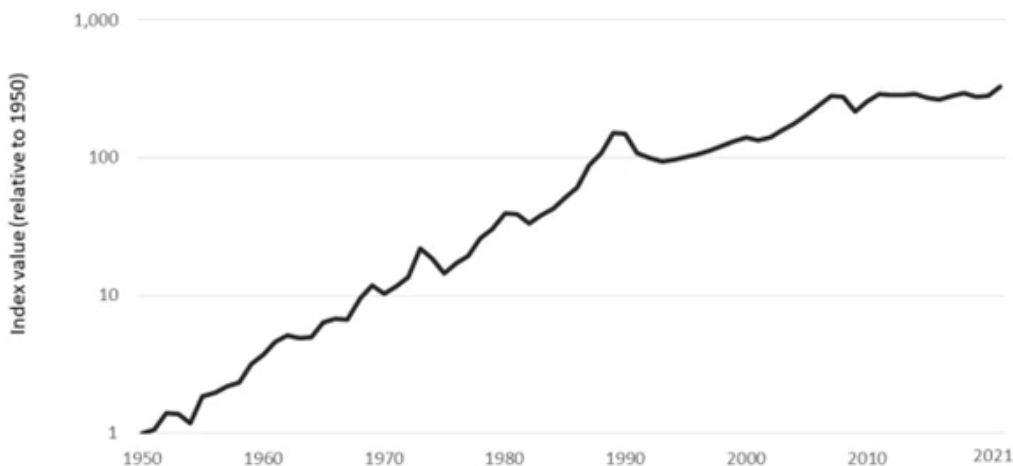
나)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세스 아트 인덱스(Mei & Moses Art Index, 이하 “메이 모세스 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 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수의 195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계 미술 시장 장기 추세선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The graph below shows the Sotheby's Mei Moses Index for the broader art market from 1950 to 2021. The index benchmarks at 1 in 1950 and shows the trajectory in demand for the overall market,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8.5%.

THE SOTHEBY'S MEI MOSES ALL ART INDEX: 1950-2021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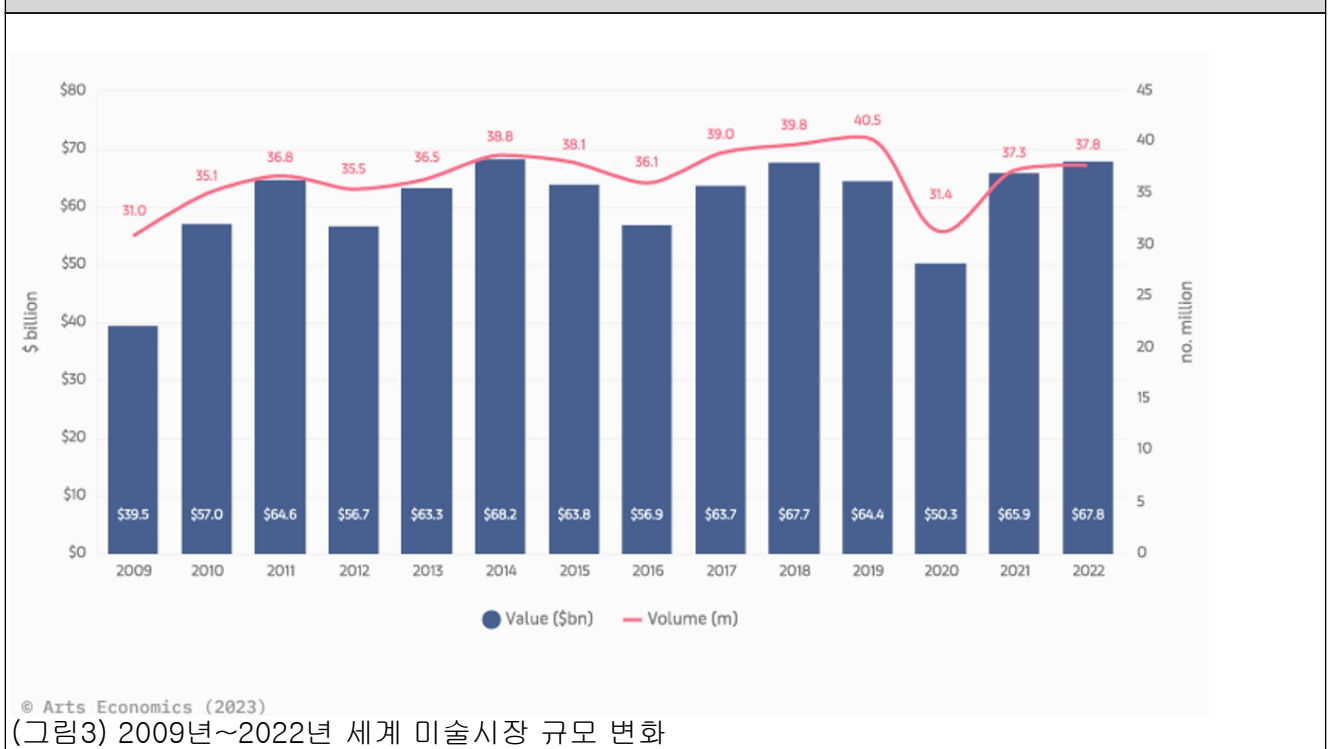
(출처: <https://www.sothebys.com/en/the-sothebys-mei-moses-indices>)

(주1) 2016년 소더비 경매사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메이 지앤핑 교수와 마이클 모세스 교수가 만든 메이 모세스 지수를 인수하였고, 이후 소더비 홈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세스 지수는 181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술품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의 지수를 1로 하여, 작품의 소재와 작가의 화풍, 그에 따르는 반복매매(repeat-sales)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가격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세스 지수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금융사나 뉴욕 타임스 또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언론사에서 미술시장의 규모나 변화, 수치 등에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2) 메이 모세스 지수는 미술품을 공개시장에서 구매하고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한 후(holding period), 다시 공개된 시장에서 동일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복매매라고 정의한 후, 해당 반복 매매사이에서 현출된 이익(Realized Return)을 중심으로 미술품 시장 규모의 증가를 부동산 가격 분석에 사용되는 ‘케이스 쉐일러 부동산 지수(Case-Shiller Real Estate Index)’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점, 매매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상품의 특성이 표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미술품과 부동산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60,000건 이상의 반복 매매사례를 위와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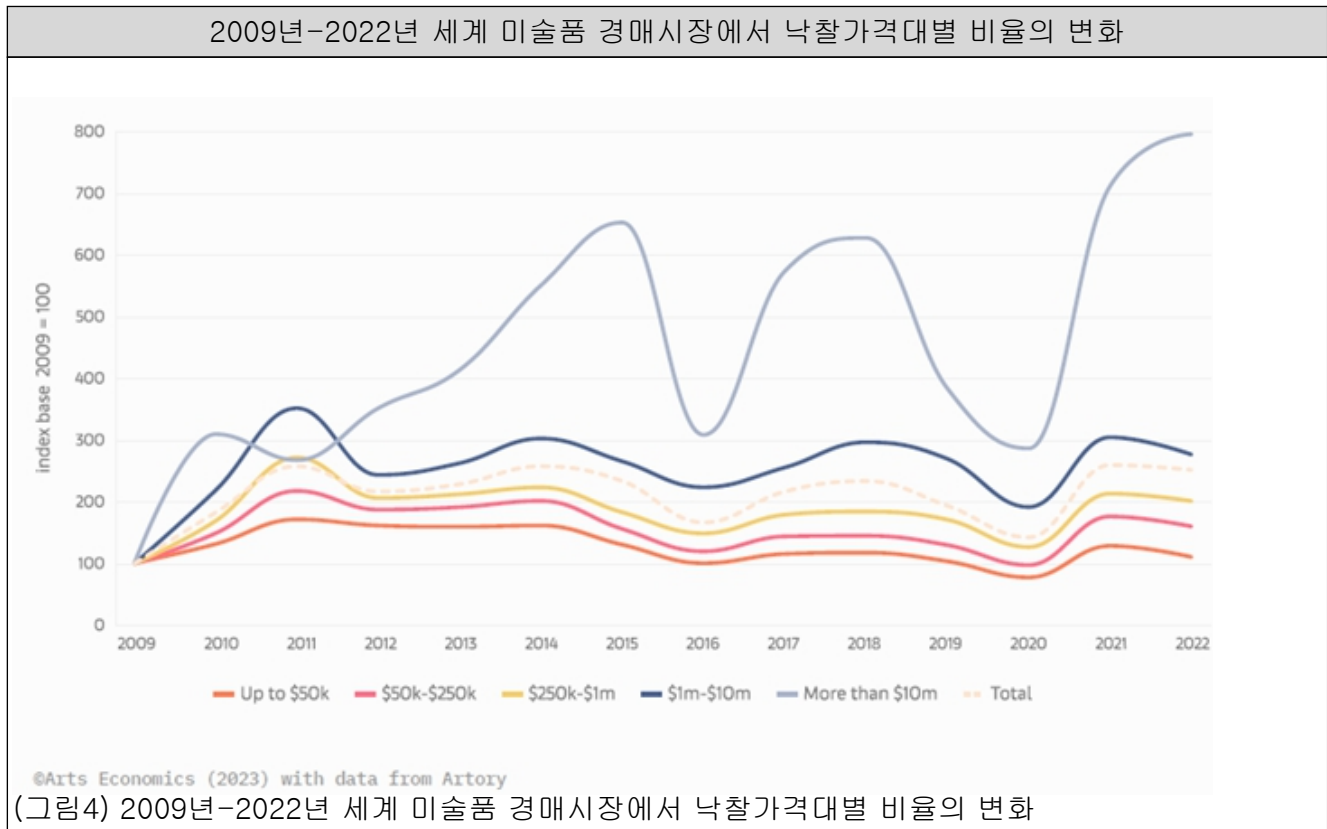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간의 범위를 좁혀 전체 세계 미술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약 45.3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의 시장에서 약 678억 달러(약 77.8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약 503억 달러(약 57.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해지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간 미술 시장 규모는 평균 660억달러(약 75.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2022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2023” 제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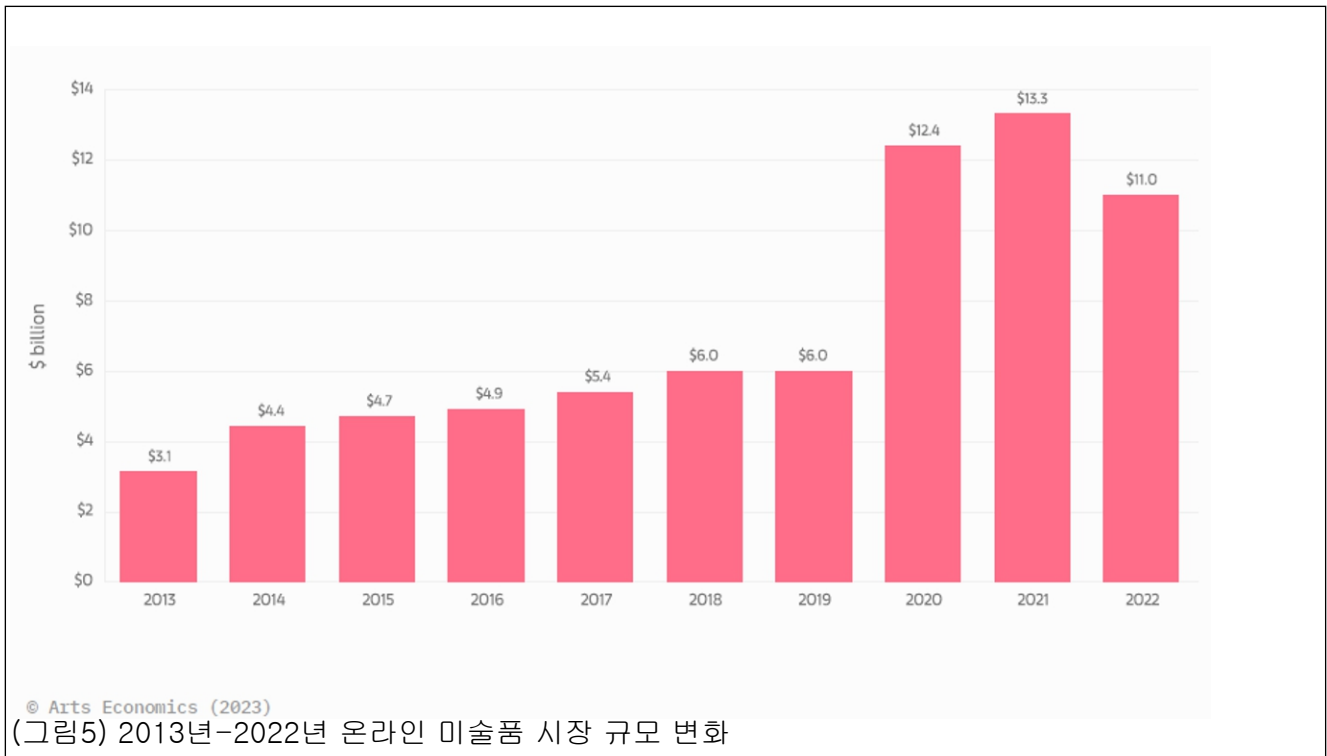
한편, 함께 과거 소수의 딜러들과 최고급 갤러리들에서만 다뤄졌던 초고가 미술품들[피카소(Picasso)나 모네(Monet), 싸이 톰블리(Cy Twombly),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이 공개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고가 미술품의 낙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2023” 제173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점에서 온라인 미술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판매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6.9조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글로벌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2022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2023” 제31면]

(3) 국내 미술품 시장

전체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8.066억원이었으며, 이 중 화랑 및 경매를 통한 거래는 각각 4,464억원, 2,345억원으로 화랑과 경매를 통한 미술품 거래 비중이 84.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유통 영역	화랑	210,308	238,733	168,628	179,393	153,872	300,772	446,449
	경매회사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3	234,523
	아트페어	4,447	2,568	4,182	3,314	2,392	7,310	5,969
	소계	342,553	390,583	323,957	298,527	271,562	646,545	686,940
공공 영역	건축물 등	36,805	87,932	106,454	97,361	96,537	97,092	97,953
	미술은행	1,956	2,054	2,293	2,558	2,158	1,557	1,686
	미술관	15,155	13,674	15,520	16,227	14,603	11,076	20,018
	소계	53,916	103,660	124,267	116,146	113,297	109,725	119,657
합 계		396,469	494,243	448,224	414,673	384,859	756,270	806,597

(출처: '2023 미술시장 실태조사(2022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지원센터)

(4) 미술품 시장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

발행인은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미술품과 경기 변동의 관계 혹은 미술품의 유통에

관한 연구가 순수미술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는 대부분 미술품을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연구하고, 미술품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각종 지수, 특히 주가 지수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 ~ 2008년까지의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을 회귀분석 방법의 일종인 특성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로 분석한 2011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준우 교수의 연구가 최초로 미술시장을 가격이라는 요소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가격 지수를 토대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수는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주요한 연구들				
저자	수익률	표본 크기	기간	표본
Baumol(1986)	0.55%	1,198	1652-1961	세계 유명 작가
Goetzmann(1993)	3.20%	3,329	1715-1986	세계 경매 시장
Renneboog & Spaenjers(2013)	4%	110만	1951-2007	세계 경매 시장
Agnello & Pierce (1996)	9.30%	15,216	1971-1992	66명의 미국 작가
Mei & Moses (2002)	4.90%	4,896	1875-2000	세계 경매 시장
Renneboog & Van Houtte (2002)	7.60%	10,598	1970-1997	71명의 벨기에 작가
Kraeussl & Logher (2010)	10%	24,524	1985-2008	러시아 미술 시장
Kraeussl & Logher (2010)	5.70%	7,172	1990-2008	중국 미술 시장
Kraeussl & Logher (2010)	42.20%	2,859	2002-2008	인도 미술 시장
Taylor & Coleman (2011)	6.60%	4,360	1982-2007	호주 원주민 작가
Higgs & Worthington(2005)	6.96%	37,605	1973-2003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Worthington & Higgs (2006)	4.82%	30,227	1973-2003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Garay (2019)	4.30%	5,961	1969-2014	69명의 베네수엘라 작가
남준우 (2011)	23.74%	3,503	1998-2008	한국 경매 시장
신정원 (2019)	2.9~16%	46,192	2007-2018	한국 경매 시장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미술품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와 대상, 기간, 표본이 되는 시장과 대상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미술품 투자는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기간으로, 어떠한 시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여도 현재까지 양(+)의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비하여 작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미술품의 특성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거나 미술품 수요자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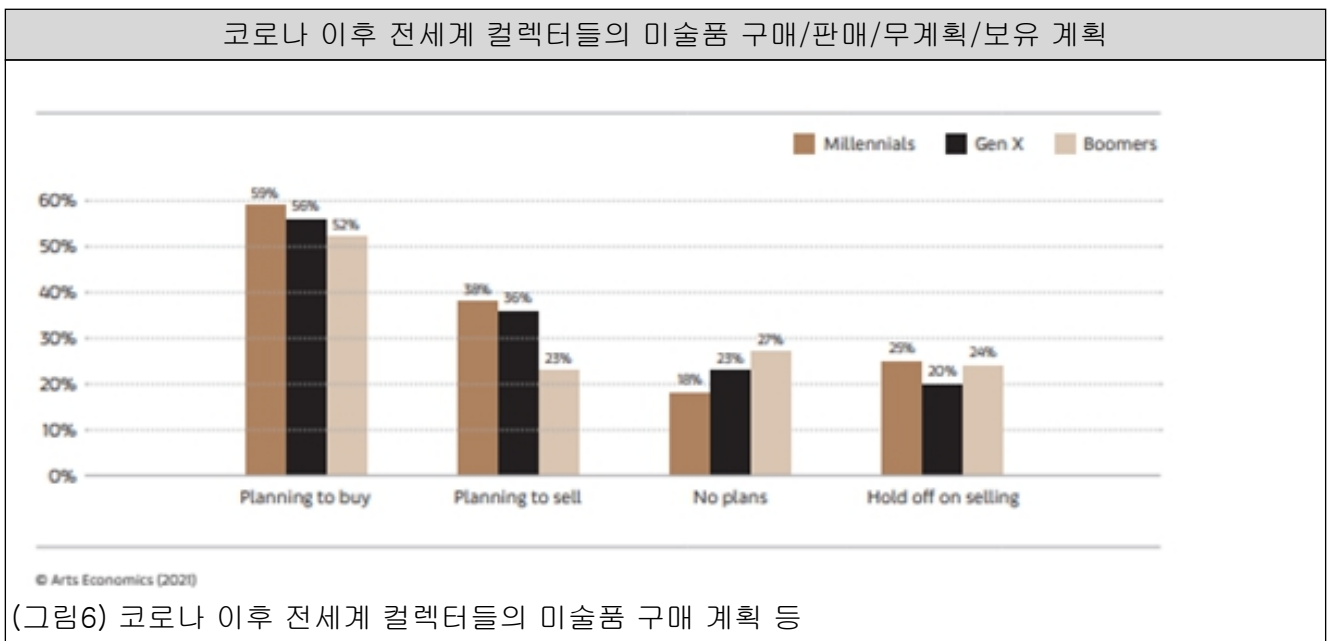
수요들에 비하여 경기 민감도가 적다라는 점을 든 연구 결과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 ① 미술품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수익률은 시간대와 분석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미술품 시장은 실물경제의 투자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경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미술품 수요자는 다른 시장 수요자들에 비하여 그 민감도가 적기는 하나 경기에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5) 미술품 시장의 향후 전망

백신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2021년 3분기 이후의 미술시장에서, 전 세대에 걸친 미술시장의 소비자 즉 컬렉터들은 미술품을 구매할 계획이 50%가 넘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술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미술시장은 수요 의사가 공급 의사보다 많은, 전세계적으로 수요 주도의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출처: Art Basel 2021/UBS “The Global Art Market in 2020” 제304면)

라.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

(1) 내부평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평가는 다음의 각 단계를 밟게 됩니다.

내부평가 절차 단계의 요약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 (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 (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도 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

가) 평가방법론

당사가 기초자산의 내부평가에 사용한 평가방법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론

가. 평가방법론에 대한 요약

- (1) 당사는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2) 거래사례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래 기재된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활용합니다.
- (3) 미술품의 가치평가에 있어 알려진 국내 또는 국외의 자료들과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4) 알려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미술품 가치평가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참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5) 각 미술품 경매사, 국가, 위탁수수료/낙찰수수료(buyer/seller premium), 부가가치세(VAT),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s), 낙찰가격(realized price), 제작연도, 판매량 등의 요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비교하고, 각 요소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6) 미술품의 크기는 인치, 센티미터, 호수에 기초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 때, 미술품의 호수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로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지 않으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크기에 기초하여 가격을 산정하거나 가능하는 잣대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 (7)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하여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단위가격(㎢) 또는 1호당 가격을 기초자산의 면적이나 호수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위가격(㎢)은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호당 가격은 1호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등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 판매량 변화에 따르는 시장성이나 미술품 가치에 대한 비교와 분석, 단위면적당 가격의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9)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가격에 대한 방법론이, 기초자산의 처분시기 및 기초자산의 처분가격 등 공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전략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10) 다만, 미술품의 절대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확립된 방법론은 당사가 검토한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사의 기초자산 취득가격 평가의견에는 당사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 당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론을 미술품의 특성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2) 평가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환산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이 서울외국환중개가 제공하는 기간별 매매기준율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1달러(USD)에 1,344 원(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였습니다. 환산 환율은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평가에 있어 환산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정 환율	
환율	1달러(USD)/1,344원

- (13) 미술품 시장 일반에 관하여 당사는 다음 각 주요 지수를 전제사실로 사용합니다.

주요 지수 인용 요약	
1999. 12. 31. ~ 2022. 12. 31. 근현대 미술품 연평균 가격 상승률	12.6%
위 기간 미국 S&P 500 의 연율화 수익률	9.0%
글로벌 미술시장 연간 판매액(2022년)	약 678억 달러

(출처: The Art market 2023 Art Basel & UBS; Masterworks.io.)

(주1) 미국 S&P 500 지수의 1999. 12. 31. ~ 2022. 12. 31. 배당금 재투자(dividends reinvested)를 가정한 연율화된 수익률(annualized return)입니다.

(주2) 근현대 미술품의 연율화된 가격 상승률에 관하여는 근현대 미술품의 범위와 분류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Artprice에서 제공하는 Artprice 100 과 미국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회사인 Masterworks에서 제공하는 가격지수가 대표적입니다. Masterworks에서 제공하는 근현대미술품 가격지수는 Citi Bank Private Bank의 Art Advisory & Finance 에서 발간하는 자료에서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Masterworks가 미국 SEC의 승인을 얻어 Reg. A.에 의하여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서 전제사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대체투자자산으로 기능하는데 충분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객관적 지표들에 제시하되, 상기 지수들을 기초자산의 내재가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나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으며, 미술품 시장 전체의 장기적 성장성에 비추어 미술품이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삼기기에 충분하다는 참고 자료로만 삼고 있습니다.

나. 거래 사례 선정

(1) 거래 사례 선정 기준

가) 작가 및 재질 : 기초자산과 동일한 작가(George Condo,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 중 공개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작품

나) 주제와 구성 : 주제, 기법, 표현 방식, 크기 등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 기초자산에서만 발견되는 유사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

The Horizon of Insanity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존 재적 초상화(Existential Portraits) 연작 중 한 점으로, 초상화라는 전통적인 회화 장르와 허구의 초현실주의적인 캐릭터들을 결합함으로써 인물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그러진 표정의 캐릭터는 형태가 왜곡되고 비틀려 있으며, 인물의 구도와배경과의 조합은 유럽의 고전 초상 회화 요소를 담으면서도 콘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초현실적인 형태의 기괴한 형상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여과 없이 투영하며, 동시에 미묘한 유쾌함과 장난스러움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요소들을 가상의 캐릭터에 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아름다움 대한 개념과 초현실주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도의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 다만, 거래사례의 시장성을 확인하거나 주제와 구성에 대한 대조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사례들을 대조군으로 추가

라) 해외나 국내에서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에 대한 증권 발행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그 발행 사례에 포함된 거래 사례들이나 주된 기재사항들

마) 동일한 작가와 재질, 주제와 구성을 가진 미술품으로 평가일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10년간 ARTPRICE.COM과 ARTNET.COM에 의하여 공개된 거래사례들

나) 거래사례의 수집과 분석

당사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4년 1월 부터 2023년 12월까지 동일 작가(George Condo)의 낙찰 작품 511점을 1,700만점 이상의 해외 미술품 거래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인 Artprice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가) 당사가 비교와 분석을 위하여 검토한 거래사례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아래 [511]건입니다.

나) 거래사례 목록

경매일자	경매사	작품명	제작년도	크기(cm)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3-12-15	Bonhams	The Frenchman	1985	21.6 x 15.6	52,064
2023-12-14	Christie's	Face with Hand	1983	40.6 x 30.5	32,760
2023-12-07	Sotheby's	Tête de Prosciutto	1991	24 x 14.2	27,470
2023-12-06	Phillips	Gray Portrait (The End of Vietnam)	1989	117.5 x 86.6	111,830
2023-11-29	Christie's	The Stockbroker	2002	243.8 x 203.2	1,598,197
2023-11-28	Christie's	Red Screaming Woman	2019	193 x 188	1,258,536
2023-11-16	Sotheby's	Female Composition	2006	165.1 x 152.4	508,000
2023-11-16	Sotheby's	The Second Life	1985	188.6 x 121.9	571,500
2023-11-15	Sotheby's	Existential Traveler (Girl in Blue Box)	1996	203.2 x 203.2	850,000
2023-11-15	Phillips	The King	1984	45.7 x 40	63,500
2023-11-15	Sotheby's	The Good Old Days	2015	198.1 x 188	1,775,000
2023-11-15	Phillips	Still Life	1984	34.9 x 28.3	50,800
2023-11-15	Phillips	Religions of its Time	1986	50.2 x 61	190,500
2023-11-15	Phillips	Torro	1984	34.3 x 27.9	82,550
2023-11-14	Phillips	Eyes Wide Open	2022	127 x 117.5	1,391,000
2023-11-10	Christie's	The Psychoanalytic Puppeteer Losing His Mind	1994	200 x 149.9	1,197,000
2023-11-10	Christie's	Big Oil Money	2017	30.5 x 22.9	264,600
2023-11-07	Christie's	Monumental Abstract Self-Portrait	2018	213.4 x 203.2	3,438,000
2023-10-19	Stair Galleries	Untitled		35 x 27	20,480
2023-10-14	Christie's	Visions of the Dying Bird Species	1990	129 x 102.6	122,346
2023-10-13	Phillips	Seated Harlequin	2007	134 x 117	1,079,034
2023-10-13	Christie's	In the Brothel	2007	125.7 x 105.4	2,251,529
2023-10-12	Sotheby's	Untitled	2016	173.1 x 188.6	3,652,803
2023-10-05	Sotheby's	Female Portrait with Blue Eyes (藍眼睛女士肖像)	2013	134.6 x 106.7	1,262,687
2023-10-03	Sotheby's	Untitled (Still Life)	1987	38.4 x 31.1	25,400
2023-09-27	Phillips	Maestro	1984	33 x 27.9	30,480
2023-09-23	Christie's	Facial Composition on Green Sky	1997	152.5 x 121.5	742,335
2023-09-20	K-Auction	The Arrival	2004	91.4 x 91.4	545,337
2023-08-23	K-Auction	The Departure	2004	91.4 x 91.4	568,695
2023-07-13	Phillips	Visitation	1992	183.5 x 91.2	138,222
2023-07-13	Phillips	Untitled	2000	18.1 x 14.5	91,592
2023-06-29	Christie's	Portrait of Marie Antoinette's Three Eyes	1989	130 x 100.5	127,283

거래사례_01

거래사례_02

2022-11-17	Sotheby's	Portrait of Elegant Woman	2007	127 x 107.3	882,000
2022-11-16	Phillips	Untitled	1987	45.7 x 37.8	37,800
2022-09-30	Sotheby's	Figure Composition 1	2008	127 x 116.8	302,400
2022-09-30	Sotheby's	Don Quixote's Alter Ego	1985	88.9 x 88.9	163,800
2022-09-28	Phillips	White + Grey Composition	1989	104.1 x 88.9	289,800
2022-07-28	Holly International	Untitled (无题)	1983	135 x 119.5	306,871
2022-07-26	Beijing Yongle International	Girl on Crimson Background (深红色背景前的女子)	2000	17.5 x 12.7	102,050
2022-07-20	Christie's	White Insects	1986	109.2 x 99.6	113,400
2022-07-19	Sotheby's	Portrait Composition	1985-86	90.2 x 90.2	75,600
2022-06-30	Phillips	Black Jack Sally	2006	165.1 x 152.4	985,147
2022-06-30	Sotheby's	Female Portrait	2007	40.5 x 30.5	383,586
2022-06-29	Christie's	Variation on Ingres	1996	61 x 51	151,417
2022-06-29	Christie's	The Little harlequin of orange Flowers	1994	18 x 14	42,133
2022-06-28	Christie's	Linear Composition	2009	132.1 x 106.7	1,881,358
2022-06-22	Phillips	The Strangers	2009	122 x 112	722,295
2022-06-22	Phillips	Transparent Female Forms	2009	198.1 x 289.2	4,656,068
2022-06-21	Phillips	Green Seated Woman	2006	137.5 x 116.8	690,193
2022-06-08	Sotheby's	Untitled	1985	17.8 x 13.7	63,000
2022-05-27	Christie's	The accountant	1994	61 x 45.5	208,684
2022-05-20	Sotheby's	Untitled	1982-84	50.7 x 61.5	126,000
2022-05-20	Sotheby's	Clock	1984	49.8 x 45.7	176,400
2022-05-20	Sotheby's	Memories of Bozo's Father	2009	101.6 x 91.5	1,008,000
2022-05-20	Sotheby's	The Screaming Smoker	2020	142.2 x 127	2,228,000
2022-05-20	Sotheby's	Ten Small Portraits	2001	18.1 x 13.9	1,159,200
2022-05-19	Phillips	Untitled	1985	159.4 x 87.3	504,000
2022-05-19	Phillips	Untitled	2007	106.7 x 106.7	816,500
2022-05-13	Christie's	Untitled	1985	110.5 x 100.3	327,600
2022-05-13	Christie's	Human Landscape / Thought Trap	1983	55.9 x 41.9	90,720
2022-05-13	Christie's	The Diver	2001	152.4 x 121.9	756,000
2022-05-13	Christie's	Untitled	1984	65.4 x 54.3	163,800
2022-05-13	Christie's	French Maid with Red Hair	2005	43.8 x 38.4	327,600
2022-05-10	Area Casa d'Aste	Memorized Hall	1984	50 x 60	63,247
2022-05-10	Christie's	Tumbling forms	2015	198.1 x 188	2,820,000

거래사례_03

2022-11-17	Sotheby's	Portrait of Elegant Woman	2007	127 x 107.3	882,000
2022-11-16	Phillips	Untitled	1987	45.7 x 37.8	37,800
2022-09-30	Sotheby's	Figure Composition 1	2008	127 x 116.8	302,400
2022-09-30	Sotheby's	Don Quixote's Alter Ego	1985	88.9 x 88.9	163,800
2022-09-28	Phillips	White + Grey Composition	1989	104.1 x 88.9	289,800
2022-07-28	Holly International	Untitled (无题)	1983	135 x 119.5	306,871
2022-07-26	Beijing Yongle International	Girl on Crimson Background (深红色背景前的女子)	2000	17.5 x 12.7	102,050
2022-07-20	Christie's	White Insects	1986	109.2 x 99.6	113,400
2022-07-19	Sotheby's	Portrait Composition	1985-86	90.2 x 90.2	75,600
2022-06-30	Phillips	Black Jack Sally	2006	165.1 x 152.4	985,147
2022-06-30	Sotheby's	Female Portrait	2007	40.5 x 30.5	383,586
2022-06-29	Christie's	Variation on Ingres	1996	61 x 51	151,417
2022-06-29	Christie's	The Little harlequin of orange Flowers	1994	18 x 14	42,133
2022-06-28	Christie's	Linear Composition	2009	132.1 x 106.7	1,881,358
2022-06-22	Phillips	The Strangers	2009	122 x 112	722,295
2022-06-22	Phillips	Transparent Female Forms	2009	198.1 x 289.2	4,656,068
2022-06-21	Phillips	Green Seated Woman	2006	137.5 x 116.8	690,193
2022-06-08	Sotheby's	Untitled	1985	17.8 x 13.7	63,000
2022-05-27	Christie's	The accountant	1994	61 x 45.5	208,684
2022-05-20	Sotheby's	Untitled	1982-84	50.7 x 61.5	126,000
2022-05-20	Sotheby's	Clock	1984	49.8 x 45.7	176,400
2022-05-20	Sotheby's	Memories of Bozo's Father	2009	101.6 x 91.5	1,008,000
2022-05-20	Sotheby's	The Screaming Smoker	2020	142.2 x 127	2,228,000
2022-05-20	Sotheby's	Ten Small Portraits	2001	18.1 x 13.9	1,159,200
2022-05-19	Phillips	Untitled	1985	159.4 x 87.3	504,000
2022-05-19	Phillips	Untitled	2007	106.7 x 106.7	816,500
2022-05-13	Christie's	Untitled	1985	110.5 x 100.3	327,600
2022-05-13	Christie's	Human Landscape / Thought Trap	1983	55.9 x 41.9	90,720
2022-05-13	Christie's	The Diver	2001	152.4 x 121.9	756,000
2022-05-13	Christie's	Untitled	1984	65.4 x 54.3	163,800
2022-05-13	Christie's	French Maid with Red Hair	2005	43.8 x 38.4	327,600
2022-05-10	Area Casa d'Aste	Memorized Hall	1984	50 x 60	63,247
2022-05-10	Christie's	Tumbling forms	2015	198.1 x 188	2,820,000

거래사례 목록_04

2021-11-24	K-Auction	The Departure	2004	91.4 x 91.4	706,270
2021-11-20	Neal Auction Company	So What?	1985	21 x 16	58,750
2021-11-18	Phillips	Abstract Figure	1983	74.9 x 62.2	52,920
2021-11-18	Phillips	Untitled (Large Landscape)	1983	91.4 x 121.9	252,000
2021-11-18	Phillips	Smiling Young Woman	2008	101.3 x 91.4	604,800
2021-11-18	Sotheby's	Lion Man	2012	177.8 x 165.1	3,408,000
2021-11-17	Phillips	Collision Course	2009	182.6 x 147	2,450,000
2021-11-12	Christie's	Virgin	1987	99.4 x 72.4	150,000
2021-11-12	Christie's	Rodrigo at his Wedding	2007	127.3 x 107	1,134,000
2021-11-12	Christie's	« The Barber »	2005	50.8 x 40.3	437,500
2021-11-12	Christie's	Superman	2005	81.3 x 71.1	1,830,000
2021-11-09	Christie's	Linear Connection	2010	127 x 152	4,950,000
2021-11-06	New Auction	Little Ricky	2004	127.2 x 102	1,217,160
2021-10-26	Sotheby's	French Ecology	1989	130 x 100	378,983
2021-10-19	Christie's	Untitled		60 x 50	34,494
2021-10-16	Christie's	Anti Gravity	1984	40 x 30	60,190
2021-10-16	Christie's	Untitled	1984	80 x 65	343,949
2021-10-15	Phillips	The Showgirl	2008	203.5 x 203.5	1,695,672
2021-10-15	Sotheby's	Untitled	1985	24 x 19	104,009
2021-10-15	Christie's	Heads and Toes	2011	106.7 x 101.6	3,332,873
2021-10-14	Phillips	Gold Nude	1989	199.8 x 180	655,158
2021-10-14	Phillips	Grandpa (Old Red with Bubbles)	1996	127 x 102	1,106,982
2021-10-14	Phillips	Statue	1984	31.4 x 25.8	103,446
2021-10-13	Christie's	Rusty Skipper	2008	40 x 30	361,779
2021-10-10	Sotheby's	Untitled (Artist and Muse) 無題 (藝術家與繆斯)	2015	165.1 x 147.3	2,120,990
2021-10-09	Sotheby's	Whistler's Father 惠斯勒的父親	2019	193 x 188	1,654,654
2021-10-01	Christie's	We Are Waiting	1984	149.9 x 149.9	300,000
2021-10-01	Christie's	Jean Louis' Mother	2005	50.8 x 40.6	400,000
2021-09-30	Sotheby's	Bunny Rap	1985	100 x 70.5	214,200
2021-09-28	Phillips	Untitled	1983	134.9 x 119.7	163,800
2021-09-28	Christie's	Nun and Priest	2007	233 x 198	2,652,967
2021-08-19	Sotheby's	Untitled	1984	24.3 x 18.1	30,971
2021-07-21	Sotheby's	Homage to Manet	1985	195.6 x 96.5	151,200

거래사례 목록_05

2021-11-24	K-Auction	The Departure	2004	91.4 x 91.4	706,270
2021-11-20	Neal Auction Company	So What?	1985	21 x 16	58,750
2021-11-18	Phillips	Abstract Figure	1983	74.9 x 62.2	52,920
2021-11-18	Phillips	Untitled (Large Landscape)	1983	91.4 x 121.9	252,000
2021-11-18	Phillips	Smiling Young Woman	2008	101.3 x 91.4	604,800
2021-11-18	Sotheby's	Lion Man	2012	177.8 x 165.1	3,408,000
2021-11-17	Phillips	Collision Course	2009	182.6 x 147	2,450,000
2021-11-12	Christie's	Virgin	1987	99.4 x 72.4	150,000
2021-11-12	Christie's	Rodrigo at his Wedding	2007	127.3 x 107	1,134,000
2021-11-12	Christie's	« The Barber »	2005	50.8 x 40.3	437,500
2021-11-12	Christie's	Superman	2005	81.3 x 71.1	1,830,000
2021-11-09	Christie's	Linear Connection	2010	127 x 152	4,950,000
2021-11-06	New Auction	Little Ricky	2004	127.2 x 102	1,217,160
2021-10-26	Sotheby's	French Ecology	1989	130 x 100	378,983
2021-10-19	Christie's	Untitled		60 x 50	34,494
2021-10-16	Christie's	Anti Gravity	1984	40 x 30	60,190
2021-10-16	Christie's	Untitled	1984	80 x 65	343,949
2021-10-15	Phillips	The Showgirl	2008	203.5 x 203.5	1,695,672
2021-10-15	Sotheby's	Untitled	1985	24 x 19	104,009
2021-10-15	Christie's	Heads and Toes	2011	106.7 x 101.6	3,332,873
2021-10-14	Phillips	Gold Nude	1989	199.8 x 180	655,158
2021-10-14	Phillips	Grandpa (Old Red with Bubbles)	1996	127 x 102	1,106,982
2021-10-14	Phillips	Statue	1984	31.4 x 25.8	103,446
2021-10-13	Christie's	Rusty Skipper	2008	40 x 30	361,779
2021-10-10	Sotheby's	Untitled (Artist and Muse) 無題 (藝術家與繆斯)	2015	165.1 x 147.3	2,120,990
2021-10-09	Sotheby's	Whistler's Father 惠斯勒的父親	2019	193 x 188	1,654,654
2021-10-01	Christie's	We Are Waiting	1984	149.9 x 149.9	300,000
2021-10-01	Christie's	Jean Louis' Mother	2005	50.8 x 40.6	400,000
2021-09-30	Sotheby's	Bunny Rap	1985	100 x 70.5	214,200
2021-09-28	Phillips	Untitled	1983	134.9 x 119.7	163,800
2021-09-28	Christie's	Nun and Priest	2007	233 x 198	2,652,967
2021-08-19	Sotheby's	Untitled	1984	24.3 x 18.1	30,971
2021-07-21	Sotheby's	Homage to Manet	1985	195.6 x 96.5	151,200

거래사례 목록_06

2021-03-25	Sotheby's	Ten Small Portraits《小型肖像十幅》	2001	18.4 x 13.9	1,683,502
2021-03-12	Sotheby's	Abstract	1983	71.1 x 55.9	37,800
2021-03-09	Christie's	Girl with Green Hair	2009	101.6 x 91.4	437,500
2020-12-08	Phillips	Smiling Girl with Lilac Shirt"	2005	43.5 x 38.4	226,800
2020-12-07	Phillips	Transparent Female Forms	2009	198.1 x 289.2	4,265,000
2020-12-03	Christie's	Inside the Chambre Deux Cent-Douze	1989	127 x 177.8	150,000
2020-12-03	Christie's	Fruit Man	1983	121.9 x 91.4	200,000
2020-12-02	Christie's	The Smoking Sailor	2007	127.4 x 106.7	1,270,660
2020-12-02	Christie's	Dancing Figures	2010	152.4 x 183	3,128,274
2020-11-24	Sotheby's	These Eyes are Tired	1985	46 x 38	80,731
2020-11-24	Sotheby's	The Dream	2007	81.2 x 71.1	420,473
2020-11-24	Sotheby's	Untitled	1994	39 x 31.5	235,465
2020-11-24	Sotheby's	Girl in Striped Dress	2001	18.7 x 14.3	75,684
2020-11-17	Sotheby's	Nude on Table	1990	97.2 x 195.6	528,200
2020-11-17	Sotheby's	Jesus	2001	127 x 127	528,200
2020-10-31	SBI Art Auction Co, Ltd	B & W Series	1984	35.5 x 27.7	39,542
2020-10-28	Sotheby's	Transparent figures	2016	228.8 x 355.9	2,621,500
2020-10-23	Christie's	Untitled	1983	35.5 x 27.8	35,849
2020-10-22	Sotheby's	Untitled	1994	165.1 x 205.7	685,206
2020-10-22	Bonhams	Untitled	1989	61 x 50.8	106,489
2020-10-21	Phillips	Together on the Island	1984	45.5 x 37.5	36,505
2020-10-21	Sotheby's	Women and men	2017	233.7 x 233.7	1,613,254
2020-10-21	artnet Auctions	Improvisation IV: Animal Farm	1984	35.6 x 27.9	38,400
2020-10-21	Sotheby's	Seated female figure	2008	215.9 x 190.5	1,613,254
2020-10-20	Phillips	The Age of Reason	2010	193.7 x 198.8	2,925,535
2020-10-06	Christie's	Lost at Sea	2014	203.2 x 193	2,550,000
2020-10-06	Sotheby's	Untitled Purple and Yellow Abstraction (紫黄色抽象)	2012	145.8 x 167.8	4,081,864
2020-10-02	Sotheby's	MEMORIES OF RODRIGO	1988	203.2 x 165.1	403,200
2020-10-02	Sotheby's	The trashman	2008	20.32 x 15.24	63,000
2020-10-01	Sotheby's	Def Jammy	1984	45.7 x 35.5	60,480
2020-10-01	Sotheby's	Untitled	1989	34.9 x 24.1	35,280
2020-09-30	Phillips	Accumulated Head	1990	23.8 x 18.7	62,500
2020-09-26	Van Ham Kunstauktionen	Screaming couple	2005	81 x 71	374,954

거래사례 목록_07

2021-03-25	Sotheby's	Ten Small Portraits《小型肖像十幅》	2001	18.4 x 13.9	1,683,502
2021-03-12	Sotheby's	Abstract	1983	71.1 x 55.9	37,800
2021-03-09	Christie's	Girl with Green Hair	2009	101.6 x 91.4	437,500
2020-12-08	Phillips	Smiling Girl with Lilac Shirt"	2005	43.5 x 38.4	226,800
2020-12-07	Phillips	Transparent Female Forms	2009	198.1 x 289.2	4,265,000
2020-12-03	Christie's	Inside the Chambre Deux Cent-Douze	1989	127 x 177.8	150,000
2020-12-03	Christie's	Fruit Man	1983	121.9 x 91.4	200,000
2020-12-02	Christie's	The Smoking Sailor	2007	127.4 x 106.7	1,270,660
2020-12-02	Christie's	Dancing Figures	2010	152.4 x 183	3,128,274
2020-11-24	Sotheby's	These Eyes are Tired	1985	46 x 38	80,731
2020-11-24	Sotheby's	The Dream	2007	81.2 x 71.1	420,473
2020-11-24	Sotheby's	Untitled	1994	39 x 31.5	235,465
2020-11-24	Sotheby's	Girl in Striped Dress	2001	18.7 x 14.3	75,684
2020-11-17	Sotheby's	Nude on Table	1990	97.2 x 195.6	528,200
2020-11-17	Sotheby's	Jesus	2001	127 x 127	528,200
2020-10-31	SBI Art Auction Co, Ltd	B & W Series	1984	35.5 x 27.7	39,542
2020-10-28	Sotheby's	Transparent figures	2016	228.8 x 355.9	2,621,500
2020-10-23	Christie's	Untitled	1983	35.5 x 27.8	35,849
2020-10-22	Sotheby's	Untitled	1994	165.1 x 205.7	685,206
2020-10-22	Bonhams	Untitled	1989	61 x 50.8	106,489
2020-10-21	Phillips	Together on the Island	1984	45.5 x 37.5	36,505
2020-10-21	Sotheby's	Women and men	2017	233.7 x 233.7	1,613,254
2020-10-21	artnet Auctions	Improvisation IV: Animal Farm	1984	35.6 x 27.9	38,400
2020-10-21	Sotheby's	Seated female figure	2008	215.9 x 190.5	1,613,254
2020-10-20	Phillips	The Age of Reason	2010	193.7 x 198.8	2,925,535
2020-10-06	Christie's	Lost at Sea	2014	203.2 x 193	2,550,000
2020-10-06	Sotheby's	Untitled Purple and Yellow Abstraction (紫黄色抽象)	2012	145.8 x 167.8	4,081,864
2020-10-02	Sotheby's	MEMORIES OF RODRIGO	1988	203.2 x 165.1	403,200
2020-10-02	Sotheby's	The trashman	2008	20.32 x 15.24	63,000
2020-10-01	Sotheby's	Def Jammy	1984	45.7 x 35.5	60,480
2020-10-01	Sotheby's	Untitled	1989	34.9 x 24.1	35,280
2020-09-30	Phillips	Accumulated Head	1990	23.8 x 18.7	62,500
2020-09-26	Van Ham Kunstauktionen	Screaming couple	2005	81 x 71	374,954

거래사례 목록_08

2019-11-14	Christie's	Little Dancer	2003	127.3 x 101.6	447,000
2019-11-14	Christie's	DAY OF THE IDOL	2011	172.7 x 167.6	3,735,000
2019-11-14	Christie's	Son of Bozo	2009	20 x 14.9	225,000
2019-11-13	Bonhams	Simon Bar Sinister	2009	132 x 106.7	250,075
2019-11-13	Phillips	The Picture Gallery	2002	152.4 x 142.2	920,000
2019-11-13	Christie's	Untitled	2016	228.6 x 355.6	3,495,000
2019-11-08	David Rago	Untitled		75 x 60	25,000
2019-11-08	David Rago	Untitled	1985	40 x 26	32,500
2019-10-05	Christie's	Burning Clown	1983	35.5 x 27.8	46,250
2019-10-05	Christie's	Untitled	1984	35.8 x 27.9	58,584
2019-10-03	Phillips	The Girl from Ipanema	2000	91.6 x 91.4	410,066
2019-10-03	Phillips	Bugged Out	1984	25.8 x 19.6	85,108
2019-09-19	Christie's	After Arcimboldo	1983	60 x 45.5	49,954
2019-08-21	artnet Auctions	Untitled	1983	17.8 x 12.7 x 2.5	18,000
2019-06-28	Phillips	Untitled	1990	33 x 24.2	55,525
2019-06-27	Sotheby's	The Butler	2009	40 x 30.2	126,815
2019-06-26	Christie's	Untitled	1983	35.6 x 28	38,080
2019-06-26	Christie's	Water Did It	1983	35.6 x 28	38,080
2019-06-25	Christie's	Diagonal Portrait	2013	157 x 146	2,527,561
2019-05-29	Van Ham Kunstauktionen	The Renegade	2008	25.5 x 20	68,588
2019-05-29	Van Ham Kunstauktionen	The blue Rodrigo	2009	20 x 15	150,036
2019-05-26	Phillips	Red and green composition (紅綠構圖)	2006	157.5 x 136.5	508,330
2019-05-26	Phillips	Jean Louis/Jean Louis's wife	2005	50.8 x 40.6	477,753
2019-05-25	Christie's	The Hamptonites	2004	101.3 x 73.4	780,330
2019-05-17	Sotheby's	MARY	2004	121.9 x 91.4	375,000
2019-05-17	Sotheby's	Mary	2004	121.9 x 91.4	375,000
2019-05-17	Sotheby's	Untitled	2013	177.8 x 152.4	1,700,000
2019-05-17	Sotheby's	Orange Pod	1997	25.4 x 20.5	112,500
2019-05-16	Christie's	The Drifters	2009	170 x 139.5	1,815,000
2019-05-16	Christie's	Untitled	2006	50.5 x 40.3	162,500
2019-05-16	Christie's	Cubist Rodrigo	2008	76.2 x 61	519,000
2019-05-16	Christie's	Jean Louis' Mother	2005	50.8 x 40.6	337,500
2019-05-16	Christie's	Untitled	2005	18.1 x 12.7	200,000

거래사례 목록_09

2019-05-16	Christie's	Untitled	2005	18.1 x 12.7	200,000
2019-05-16	Christie's	Jean Louis' Mother	2005	50.8 x 40.6	337,500
2019-05-16	Christie's	Cubist Rodrigo	2008	76.2 x 61	519,000
2019-05-16	Christie's	Untitled	2006	50.5 x 40.3	162,500
2019-05-16	Christie's	The Drifters	2009	170 x 139.5	1,815,000
2019-05-17	Sotheby's	Orange Pod	1997	25.4 x 20.5	112,500
2019-05-17	Sotheby's	Untitled	2013	177.8 x 152.4	1,700,000
2019-05-17	Sotheby's	Mary	2004	121.9 x 91.4	375,000
2019-05-17	Sotheby's	MARY	2004	121.9 x 91.4	375,000
2019-05-25	Christie's	The Hamptonites	2004	101.3 x 73.4	780,330
2019-05-26	Phillips	Jean Louis/Jean Louis's wife	2005	50.8 x 40.6	477,753
2019-05-26	Phillips	Red and green composition (紅綠構圖)	2006	157.5 x 136.5	508,330
2019-05-29	Van Ham Kunstauktionen	The blue Rodrigo	2009	20 x 15	150,036
2019-05-29	Van Ham Kunstauktionen	The Renegade	2008	25.5 x 20	68,588
2019-06-25	Christie's	Diagonal Portrait	2013	157 x 146	2,527,561
2019-06-26	Christie's	Water Did It	1983	35.6 x 28	38,080
2019-06-26	Christie's	Untitled	1983	35.6 x 28	38,080
2019-06-27	Sotheby's	The Butler	2009	40 x 30.2	126,815
2019-06-28	Phillips	Untitled	1990	33 x 24.2	55,525
2019-08-21	artnet Auctions	Untitled	1983	17.8 x 12.7 x 2.5	18,000
2019-09-19	Christie's	After Arcimboldo	1983	60 x 45.5	49,954
2019-10-03	Phillips	Bugged Out	1984	25.8 x 19.6	85,108
2019-10-03	Phillips	The Girl from Ipanema	2000	91.6 x 91.4	410,066
2019-10-05	Christie's	Untitled	1984	35.8 x 27.9	58,584
2019-10-05	Christie's	Burning Clown	1983	35.5 x 27.8	46,250
2019-11-08	David Rago	Untitled	1985	40 x 26	32,500
2019-11-08	David Rago	Untitled		75 x 60	25,000
2019-11-13	Christie's	Untitled	2016	228.6 x 355.6	3,495,000
2019-11-13	Phillips	The Picture Gallery	2002	152.4 x 142.2	920,000
2019-11-13	Bonhams	Simon Bar Sinister	2009	132 x 106.7	250,075
2019-11-14	Christie's	Son of Bozo	2009	20 x 14.9	225,000
2019-11-14	Christie's	DAY OF THE IDOL	2011	172.7 x 167.6	3,735,000
2019-11-14	Christie's	Little Dancer	2003	127.3 x 101.6	447,000

거래사례 목록_10

2018-10-04	Christie's	Red and Black Diagonal Portrait	2016	213 x 208.5	2,275,195
2018-10-04	Christie's	Noble Woman	2009	183 x 147	2,743,569
2018-10-04	Phillips	The Old Sea Captain	2004	20.1 x 15.1	84,568
2018-10-04	Phillips	The Franciscan	2004	20.1 x 15.1	94,325
2018-09-30	Sotheby's	The Aztec Cosmologist	2009	127 x 127	2,468,304
2018-09-27	Christie's	Untitled	1984	29.8 x 24.1	23,750
2018-09-25	Sotheby's	Jazz Angles	2000	91.4 x 91.4	60,000
2018-09-25	Sotheby's	Untitled	1991	80.6 x 65.1	212,500
2018-09-25	Sotheby's	Girl with Ponytail	2005	215.9 x 190.5	1,695,000
2018-09-25	Sotheby's	Untitled	1991	26 x 41.3	81,250
2018-08-23	Christie's	Untitled	1983-84	35 x 25	75,000
2018-07-31	Sotheby's online	Fortune My Foe	1984	70 x 60	73,838
2018-07-20	Sotheby's online	Untitled	1982-83	25.4 x 20.3	17,500
2018-07-03	Fernando Durán	Audio	1983	64 x 53	83,887
2018-06-28	Christie's	Visitation	1992	183.4 x 91.6	122,714
2018-06-28	Christie's	The Secretary	2002	91.4 x 76.2	435,554
2018-06-27	Sotheby's	Untitled	1993	41 x 33	42,698
2018-06-27	Sotheby's	Untitled	1993	65 x 54	197,068
2018-06-27	Phillips	Collision Course	2009	182.8 x 147.3	2,218,980
2018-06-26	Phillips	Soft Green Abstraction	1983	40.6 x 30.5	46,324
2018-06-08	Christie's	Insulated female composition	1991	130 x 130	220,796
2018-06-08	Sotheby's	Joan of Arc	2003	52.4 x 44	159,329
2018-06-08	Sotheby's	Young Girl	2007	40.6 x 30.5	412,979
2018-05-27	Phillips	Writer《作家》	2006	136.6 x 157.5	410,421
2018-05-27	Phillips	Black Standing Figures《黑色站姿人物》	2000	152.4 x 254	961,047
2018-05-27	Seoul Auction	Mary Annette	2003	25.5 x 20.5	106,888
2018-05-26	Christie's	Abstract Figure Composition	1998	152.7 x 193.4	1,236,361
2018-05-18	Christie's	Choir Girl	1987	150.2 x 149.9	56,250
2018-05-18	Christie's	The Philosopher	2002	152.4 x 127	348,500
2018-05-17	Sotheby's	Little Joe	2004	140.1 x 152.4	435,000
2018-05-17	Sotheby's	Internal Dialogue	2005	165.1 x 152.4	999,000
2018-05-17	Phillips	Red Head	2012	186.4 x 173.7	1,815,000
2018-05-17	Sotheby's	Inner Turmoil	2006	76.2 x 71.1	687,000

거래사례 목록_11

2018-05-17	Phillips	Red Head	2012	186.4 x 173.7	1,815,000
2018-05-17	Sotheby's	Inner Turmoil	2006	76.2 x 71.1	687,000
2018-05-17	Sotheby's	Internal Dialogue	2005	165.1 x 152.4	999,000
2018-05-17	Sotheby's	Little Joe	2004	140.1 x 152.4	435,000
2018-05-18	Christie's	The Philosopher	2002	152.4 x 127	348,500
2018-05-18	Christie's	Choir Girl	1987	150.2 x 149.9	56,250
2018-05-26	Christie's	Abstract Figure Composition	1998	152.7 x 193.4	1,236,361
2018-05-27	Seoul Auction	Mary Annette	2003	25.5 x 20.5	106,888
2018-05-27	Phillips	Black Standing Figures《黑色站姿人物》	2000	152.4 x 254	961,047
2018-05-27	Phillips	Writer《作家》	2006	136.6 x 157.5	410,421
2018-06-08	Sotheby's	Young Girl	2007	40.6 x 30.5	412,979
2018-06-08	Sotheby's	Joan of Arc	2003	52.4 x 44	159,329
2018-06-08	Christie's	Insulated female composition	1991	130 x 130	220,796
2018-06-26	Phillips	Soft Green Abstraction	1983	40.6 x 30.5	46,324
2018-06-27	Phillips	Collision Course	2009	182.8 x 147.3	2,218,980
2018-06-27	Sotheby's	Untitled	1993	65 x 54	197,068
2018-06-27	Sotheby's	Untitled	1993	41 x 33	42,698
2018-06-28	Christie's	The Secretary	2002	91.4 x 76.2	435,554
2018-06-28	Christie's	Visitation	1992	183.4 x 91.6	122,714
2018-07-03	Fernando Durán	Audio	1983	64 x 53	83,887
2018-07-20	Sotheby's online	Untitled	1982-83	25.4 x 20.3	17,500
2018-07-31	Sotheby's online	Fortune My Foe	1984	70 x 60	73,838
2018-08-23	Christie's	Untitled	1983-84	35 x 25	75,000
2018-09-25	Sotheby's	Untitled	1991	26 x 41.3	81,250
2018-09-25	Sotheby's	Girl with Ponytail	2005	215.9 x 190.5	1,695,000
2018-09-25	Sotheby's	Untitled	1991	80.6 x 65.1	212,500
2018-09-25	Sotheby's	Jazz Angles	2000	91.4 x 91.4	60,000
2018-09-27	Christie's	Untitled	1984	29.8 x 24.1	23,750
2018-09-30	Sotheby's	The Aztec Cosmologist	2009	127 x 127	2,468,304
2018-10-04	Phillips	The Franciscan	2004	20.1 x 15.1	94,325
2018-10-04	Phillips	The Old Sea Captain	2004	20.1 x 15.1	84,568
2018-10-04	Christie's	Noble Woman	2009	183 x 147	2,743,569
2018-10-04	Christie's	Red and Black Diagonal Portrait	2016	213 x 208.5	2,275,195

거래사례 목록_12

2017-11-16	Christie's	Young Architect	2005	165.1 x 152.4	924,500
2017-11-15	Phillips	Full Figure Combination	1990	194.9 x 245.7	591,000
2017-10-06	Sotheby's	Portrait of the Unknown	1991	170 x 150	138,663
2017-10-05	Phillips	Untitled (Clown)	1984	35.1 x 28	32,829
2017-10-05	Phillips	Untitled	2000	30 x 30.5	98,486
2017-06-30	Phillips	Voyage of Sisyphus	1995	183.5 x 303.7	97,155
2017-06-30	Phillips	Dreaming Woman	2007	126.8 x 101.8	137,636
2017-06-29	Sotheby's	Purple Venus	1989	177.6 x 158	93,916
2017-06-14	K-Auction	The Woodsman	2009	101.6 x 76.2	209,496
2017-05-28	Phillips	Naked Lunch	2008	91.7 x 102	318,184
2017-05-19	Sotheby's	Nude with Voices	1998	193 x 152.4	212,500
2017-05-19	Sotheby's	Standing Nude in the Night with Bubbles	1999	152.4 x 127	187,500
2017-05-19	Sotheby's	Composition in Gray and Orange	1997	152.4 x 182.9	324,500
2017-05-18	Christie's	Untitled	1985	110.5 x 100.3	87,500
2017-05-18	Christie's	Three Figure Composition	2009	127 x 106.6	271,500
2017-05-18	Christie's	Infantile Memories	1984	106.6 x 86.3	211,500
2017-05-18	Christie's	Female Composition	2008	152.5 x 132	583,500
2017-04-12	Sotheby's	Untitled	1986	38.4 x 29	15,601
2017-04-12	K-Auction	Abstract Portrait Composition	2008	152.4 x 132	456,097
2017-03-10	Phillips	"Jean-Louis' Girlfriend"	2005	152.5 x 122	473,530
2017-03-09	Sotheby's	The Rock	2010	203.2 x 177.8	476,995
2017-03-09	Sotheby's	Nude with Purple Hair	2010	203.2 x 177.8	535,290
2017-03-08	Christie's	"Portrait en Grisaille"	2008	61 x 61	122,020
2017-03-03	Christie's	"The Midwife"	2001	50.8 x 40.3	81,250
2017-03-02	Sotheby's	Seated Figure with Abstraction	1992	194.3 x 214	162,500
2017-02-28	Phillips	Woman	1990	30.5 x 22.9	23,750
2016-12-02	Grisebach	"Rainbow Bridge"	1985	170 x 130	46,650
2016-11-27	Phillips	The Homeless Hobo	2009	216 x 190.6	474,351
2016-11-22	Christie's	Flower Painting	1988	64.5 x 46	38,715
2016-11-22	Christie's	Untitled	1989	25.5 x 20.5	20,131
2016-11-18	Sotheby's	Mother and Child	1989	173.4 x 208.9	100,000
2016-11-18	Sotheby's	The Roman	2005-2006	100.3 x 89.5	212,500
2016-11-18	Sotheby's	Female Portrait Composition	2008	182.9 x 152.4	972,500

거래사례 목록_13

2017-11-16	Christie's	Young Architect	2005	165.1 x 152.4	924,500
2017-11-15	Phillips	Full Figure Combination	1990	194.9 x 245.7	591,000
2017-10-06	Sotheby's	Portrait of the Unknown	1991	170 x 150	138,663
2017-10-05	Phillips	Untitled (Clown)	1984	35.1 x 28	32,829
2017-10-05	Phillips	Untitled	2000	30 x 30.5	98,486
2017-06-30	Phillips	Voyage of Sisyphus	1995	183.5 x 303.7	97,155
2017-06-30	Phillips	Dreaming Woman	2007	126.8 x 101.8	137,636
2017-06-29	Sotheby's	Purple Venus	1989	177.6 x 158	93,916
2017-06-14	K-Auction	The Woodsman	2009	101.6 x 76.2	209,496
2017-05-28	Phillips	Naked Lunch	2008	91.7 x 102	318,184
2017-05-19	Sotheby's	Nude with Voices	1998	193 x 152.4	212,500
2017-05-19	Sotheby's	Standing Nude in the Night with Bubbles	1999	152.4 x 127	187,500
2017-05-19	Sotheby's	Composition in Gray and Orange	1997	152.4 x 182.9	324,500
2017-05-18	Christie's	Untitled	1985	110.5 x 100.3	87,500
2017-05-18	Christie's	Three Figure Composition	2009	127 x 106.6	271,500
2017-05-18	Christie's	Infantile Memories	1984	106.6 x 86.3	211,500
2017-05-18	Christie's	Female Composition	2008	152.5 x 132	583,500
2017-04-12	Sotheby's	Untitled	1986	38.4 x 29	15,601
2017-04-12	K-Auction	Abstract Portrait Composition	2008	152.4 x 132	456,097
2017-03-10	Phillips	"Jean-Louis' Girlfriend"	2005	152.5 x 122	473,530
2017-03-09	Sotheby's	The Rock	2010	203.2 x 177.8	476,995
2017-03-09	Sotheby's	Nude with Purple Hair	2010	203.2 x 177.8	535,290
2017-03-08	Christie's	"Portrait en Grisaille"	2008	61 x 61	122,020
2017-03-03	Christie's	"The Midwife"	2001	50.8 x 40.3	81,250
2017-03-02	Sotheby's	Seated Figure with Abstraction	1992	194.3 x 214	162,500
2017-02-28	Phillips	Woman	1990	30.5 x 22.9	23,750
2016-12-02	Grisebach	"Rainbow Bridge"	1985	170 x 130	46,650
2016-11-27	Phillips	The Homeless Hobo	2009	216 x 190.6	474,351
2016-11-22	Christie's	Flower Painting	1988	64.5 x 46	38,715
2016-11-22	Christie's	Untitled	1989	25.5 x 20.5	20,131
2016-11-18	Sotheby's	Mother and Child	1989	173.4 x 208.9	100,000
2016-11-18	Sotheby's	The Roman	2005-2006	100.3 x 89.5	212,500
2016-11-18	Sotheby's	Female Portrait Composition	2008	182.9 x 152.4	972,500

거래사례 목록_14

2015-10-17	Christie's	Constructed Female Figure	1989	217 x 120	96,625
2015-10-17	Christie's	Constructed Head	2011	152.5 x 137.5	263,593
2015-10-17	Christie's	Infestation	2003	127 x 101.7	170,833
2015-10-16	Sotheby's	Barney	1996	127 x 102	154,770
2015-10-16	Sotheby's	Lord Jim	2000	30.5 x 30	77,385
2015-10-14	Phillips	Stranger on a Plane	2010	122 x 102.5	297,293
2015-09-30	Christie's	The organized defunctionalization of the state being commonly known as "Multiheaded hydratic combustion"	1995	139.7 x 121.9	100,000
2015-09-29	Sotheby's	Multi-Colored Farmer	2007	127 x 101.6	394,000
2015-09-23	Christie's	Untitled	1987	38.2 x 45.8	16,419
2015-09-23	Christie's	The Lost Missionary	2005	25.3 x 20.5	52,156
2015-07-02	Sotheby's	Nude on Purple	2007	134.6 x 116.6	318,010
2015-07-01	Christie's	Abstract Portrait	2008	203.2 x 203.2	494,677
2015-07-01	Christie's	Priest and Female Figure in Chair	2007	160 x 127	287,054
2015-07-01	Hampel	The Truth in Nature	1984	24 x 18	15,928
2015-05-13	Sotheby's	Monolithic Head	2007	203.2 x 203.2	600,000
2015-05-13	Sotheby's	Untitled	1994	91.4 x 61	87,500
2015-05-12	Christie's	Portrait of a Noble Woman	2007	127 x 106.6	269,000
2015-03-26	Christie's	After Arcimboldo	1983	60 x 45.5	18,596
2015-03-06	Christie's	Untitled	1985	132 x 101.6	25,000
2015-03-01	Lama	Untitled (Surreal Graffiti Painting)	1984	49 x 39	38,750
2015-02-13	Phillips	Smiling Young Woman	2008	101.5 x 91.5	168,999
2015-02-11	Sotheby's	Your Friendly Neighborhood Martian	1988	46 x 35.5	53,325
2014-12-06	Ketterer Kunst GmbH	Multicoloured woman	2007	61 x 76.3	146,718
2014-12-03	Christie's	Fräuen	1985	22 x 16	4,975
2014-11-29	Lempertz	Ohne Titel	1985	55 x 33	26,257
2014-11-29	Farsetti	So What?	1985	22 x 16	6,228
2014-11-13	Christie's	Untitled	1984	120.3 x 148.3	50,000
2014-11-13	Christie's	The Philosopher	1995	169.8 x 170.5	185,000
2014-11-13	Phillips	Interspersion	2004	182.9 x 152.4	605,000
2014-10-18	Sotheby's	Listen to the Voices	1990	70.5 x 60	40,220
2014-10-17	Christie's	Portrait of the Unknown	1991	170 x 150	119,297
2014-10-15	Phillips	Grey Nude/Purple Cape	1991	134.5 x 199.9	695,070
2014-09-23	Christie's	Rodrigo with Female	2007	116.8 x 133.4	221,000

거래사례 목록_15

2014-10-17	Christie's	Portrait of the Unknown	1991	170 x 150	119,297
2014-10-15	Phillips	Grey Nude/Purple Cape	1991	134.5 x 199.9	695,070
2014-10-18	Sotheby's	Listen to the Voices	1990	70.5 x 60	40,220
2014-11-13	Phillips	Interspersion	2004	182.9 x 152.4	605,000
2014-11-13	Christie's	The Philosopher	1995	169.8 x 170.5	185,000
2014-11-13	Christie's	Untitled	1984	120.3 x 148.3	50,000
2014-11-29	Farsetti	So What?	1985	22 x 16	6,228
2014-11-29	Lempertz	Ohne Titel	1985	55 x 33	26,257
2014-12-03	Christie's	Fräuen	1985	22 x 16	4,975
2014-12-06	Ketterer Kunst GmbH	Multicoloured woman	2007	61 x 76.3	146,718
2015-02-11	Sotheby's	Your Friendly Neighborhood Martian	1988	46 x 35.5	53,325
2015-02-13	Phillips	Smiling Young Woman	2008	101.5 x 91.5	168,999
2015-03-01	Lama	Untitled (Surreal Graffiti Painting)	1984	49 x 39	38,750
2015-03-06	Christie's	Untitled	1985	132 x 101.6	25,000
2015-03-26	Christie's	After Arcimboldo	1983	60 x 45.5	18,596
2015-05-12	Christie's	Portrait of a Noble Woman	2007	127 x 106.6	269,000
2015-05-13	Sotheby's	Untitled	1994	91.4 x 61	87,500
2015-05-13	Sotheby's	Monolithic Head	2007	203.2 x 203.2	600,000
2015-07-01	Hampel	The Truth in Nature	1984	24 x 18	15,928
2015-07-01	Christie's	Priest and Female Figure in Chair	2007	160 x 127	287,054
2015-07-01	Christie's	Abstract Portrait	2008	203.2 x 203.2	494,677
2015-07-02	Sotheby's	Nude on Purple	2007	134.6 x 116.6	318,010
2015-09-23	Christie's	The Lost Missionary	2005	25.3 x 20.5	52,156
2015-09-23	Christie's	Untitled	1987	38.2 x 45.8	16,419
2015-09-29	Sotheby's	Multi-Colored Farmer	2007	127 x 101.6	394,000
2015-09-30	Christie's	The organized defunctionalization of the state being commonly known as "Multiheaded hydratic combustion"	1995	139.7 x 121.9	100,000
2015-10-14	Phillips	Stranger on a Plane	2010	122 x 102.5	297,293
2015-10-16	Sotheby's	Lord Jim	2000	30.5 x 30	77,385
2015-10-16	Sotheby's	Barney	1996	127 x 102	154,770
2015-10-17	Christie's	Infestation	2003	127 x 101.7	170,833
2015-10-17	Christie's	Constructed Head	2011	152.5 x 137.5	263,593
2015-10-17	Christie's	Constructed Female Figure	1989	217 x 120	96,625

다) 국내외 증권 발행 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의 분석

1) 해외 증권 발행 사례

동일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증권 등으로 발행된 기록(2023. 2. 9. filing SEC Form 253G2, Masterworks 220 LLC)이 있습니다(이하, “해외 증권 발행 사례”). 해외 증권 발행 사례에서는 기초자산의 거래 사례와 동일 작가, 동일 재질의 약 100호 사이즈 135cm x 142cm 크기의 "Nude on Purple Chair"를 1,350,000달러에 취득한 후, 1,499,000달러를 공모 총액으로 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발행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을 해외 증권 발행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당사의 기초자산과 해외 증권 발행 사례의 작품은 작가와 재질에서 유사하며 Artificial Realism을 나타낸 것도 유사한 작품입니다. 이 때, 해외 증권 발행 사례는 미술품의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모로서 미술품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거래 1회가 완결되는 것이어서 공모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증권 발행 사례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한 요약

- 해외 증권 발행된 작가의 유사한 주제 작품들의 가격은 2009년 5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8일 까지 CAGR 12.9%를 기록하였다는 사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간 작가의 미술품들은 누적하여 총 7,660만 달러가 거래되었다는 사실

2)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동일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기록은 없습니다.

3) 기초자산, 해외 증권 발행 사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의 비교 요약

	기초자산	해외 증권 발행사례
작가	조지 콘도	조지 콘도
작품	The Horizon of Insanity	Nude on Purple Chair
크기	152.4 x 121.9 cm	134.6 x 142.2 cm
연도	2001	2007
취득가격	934,951,942	1,814,400,000(주1)

(주1) 해외 증권 발행 사례의 경우 1달러/1,344원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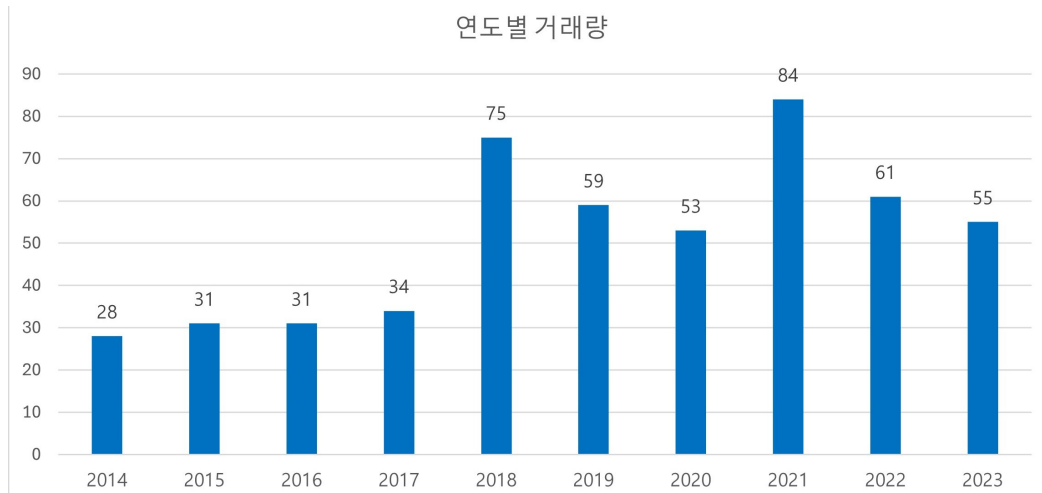
라) 기초자산의 시장성 등에 대한 분석

당사는 2014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연도별 거래량을 조사 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거래량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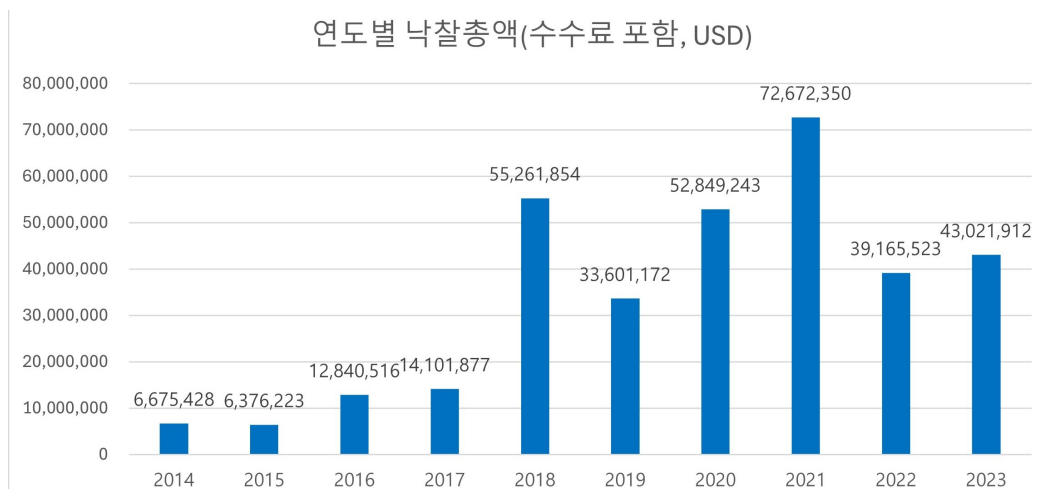
거래량(점)	28	31	31	34	75	59	53	84	61	55



기초자산의 거래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연평균 50점 이상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같은 기간 공개된 미술품 경매에서의 낙찰총액을 조사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낙찰총액(수수료 포함, USD)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낙찰 총액	6,675,428	6,376,223	12,840,516	14,101,877	55,261,854	33,601,172	52,849,243	72,672,350	39,165,523	43,021,912



기초자산은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금액의 합계가 우상향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당사는 거래 사례들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당사는 같은 기간 거래사례의 단위면적당(cm^2/USD)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cm^2/USD)변화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m^2/USD	1,663	658	828	949	5,939	5,804	3,720	14,309	9,431	4,693



(주1) 거래사례들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총계를 분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볼 때,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큰 폭의 상승 이후 일정 기간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큰 폭의 상승 후에 조정기를 거치는 일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4년에 비하여 조정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직전 3개연도에 비하여 5배 이상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이 있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2018년에 비하여 일종의 조정기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다시 2020년에 비하여 4배 이상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이 있는 후,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조정기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2018년과 2021년에서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

는 그 직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2014년에 비하여 2018년이, 2018년에 비하여는 2021년이, 각 3배 가량의 단위면적당 가치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2017년, 2020년, 2023년에서 거래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치를 살펴볼 때에는, 2020년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2017년보다 높고, 2023년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2020년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인(예술성 등)에 대한 검토

당사가 지난 10년간 분석한 511점은 동일 작가가 공개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작품으로서 주제, 기법, 표현 방식, 크기 등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 기초자산에서만 발견되는 유사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앞선 분석대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과 가치 상승 추세 분석으로 갈음합니다.

사) 직접 비교그룹 선정을 통한 분석

당사는 지난 5년간의 거래사례 중 도상이 유사하고 크기가 같은 작품들 6점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경매사	작품명	제작년도	크기(cm)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3-09-23	Christie's	Facial Composition on Green Sky	1997	152.5 x 121.5	742,335
2023-02-09 *	Masterworks	Nude on Purple Chair	2007	134.6 x 142.2	1,499,000
2022-05-13	Christie's	The Diver	2001	152.4 x 121.9	756,000
2021-11-29	Phillips & Poly	Night Portrait 《夜間肖像》	2001	152.7 x 121.7	885,283
2019-11-13	Phillips	The Picture Gallery	2002	152.4 x 142.2	920,000
2019-05-26	Phillips	Red and green composition (紅綠構圖)	2006	157.5 x 136.5	508,330

(주1) 2023년 2월 9일의 거래 사례는 해외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에서 기초자산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미국 Masterworks, LLC에서 발행 및 모집이 완료된 사례로서, USD 1,499,000는 모집가격을 의미합니다.

(주2) 선정된 작품들은 호수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80호(145.5cm x 112.1cm)에서 100호(162.2cm x 130.3cm)사이의 크기를 가졌으나, 정확하게 80호 또는 100호에 부합하는 호수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의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유사도상 거래사례글의 단위면적(㎠)당 판매가(USD)						
거래일	2023-09-23	2023-02-09	2022-05-13	2021-11-29	2019-11-13	2019-05-26
㎠/USD	40.06	78.32	40.69	47.64	42.45	23.64
호/USD	9,279.19	18,737.50	9,450.00	11,066.04	11,500.00	6,354.13

(주1) 단위면적(㎠ 및 호) 판매가(USD)의 산정에 있어 단수처리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크기 사이에서 각 작품별 판매 경매회사에서 실측한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위면적 당 판매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비교그룹 작품들 중 면적이 80호 크기에 가까운 작품들과 100호에 가까운 정도로 비교적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모든 비교그룹을 80호로 가정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을 비교그룹과 비교하기 위하여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사작품 비교그룹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정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달러 환산(1달러/1,344원)	934,951,942원	USD 695,648.77
크기	152.4 x 121.9 cm	면적: 18,577.56cm ² 호: 80호

(주1) 기초자산은 그 중 100호에 가까운 정도로 비교적 큰 작품에 속하나, 보수적으로 80호로 가정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된 기초자산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	
cm ² /USD	37.45
호/USD	10,258.02

(주1) 기초자산은 그 중 100호에 가까운 정도로 비교적 큰 작품에 속하나, 보수적으로 80호로 가정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조정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과 단위면적당 가격을 비교그룹과 비교하였습니다.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과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비교			
평균값(cm ²)[A]	환산 면적[B]	내재가치 추정액(USD) [E=AxB]	기초자산의 환산가치 (USD)[G]
45.47	18,577.56	844,721.65	695,648.77
중앙값(호)[C]	환산 호수[D]	내재가치 추정액(USD) [F=CxD]	
10,258.02	80	820,641.5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그룹의 단위면적(cm²)당 가격 평균값(average)과 중간값(median)을 기초자산 면적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E,F]이 기초자산 취득가액[G]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비교그룹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프리즈 로스엔젤레스(Frieze LA)에서 스프루스 마거스(Spruth Magers) 갤러리가 기초자산보다 작은 크기[107cm x 96.8cm, 50

호 미만]의 유사 도상 작품을 1,300,000달러를 판매가로 하여 전시되어 있으며, 해당 작품의 판매가 등은 프리즈(Frieze)의 온라인 뷰잉룸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는 125.51USD/cm² 또는 26,000USD/호에 달하여 기초자산의 환산가치에 비하여 3배 이상에 달합니다.

FRIEZE VIEWING ROOM

SPRÜTH MAGERS > OLD MAN PORTRAIT

PREV | NEXT

Save Like Share

GEORGE CONDO

Old Man Portrait, 2011
Oil on linen
42.13" x 38.11" (107 cm x 96.8 cm)
\$ 1,300,000

Now on view at Frieze Los Angeles
Frieze Viewing Room

프리즈 뷰잉룸 작품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	
cm ² /USD	125.51
호/USD	26,000

아)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에 대한 당사의 결론

내부평가 기준일 현재 작가의 작품이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증권 발행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기초자산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취득가격은 적절하게 결정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공동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을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기초자산의 예술성은 유사 작품들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사례들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에 비하여 기초

자산 취득가격이 낮으므로, 기초자산 취득가격은 적절하게 결정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공동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매도인의 수준 및 신원을 포함한 기초자산의 확실한 유통경로(provenance)는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보증과 소유권 이전을 증빙하는데 충분하며, 추후 공동사업의 청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1) 외부평가기관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소견서를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사가 선정한 외부평가기관들은 기초자산의 가치나 진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평가기관	전문성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국토교통부 선정 13대 대형감정평가법인 - 담당 : 이사/감정평가사(감정평가경력 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 거래사례법
한국기업평가(주)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소견서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상세 내용

가) 글로벌 미술 시장에 대한 조사

외부평가기관 중 한국기업평가(주)가 조사한 글로벌 미술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글로벌 미술품 시장

2.1.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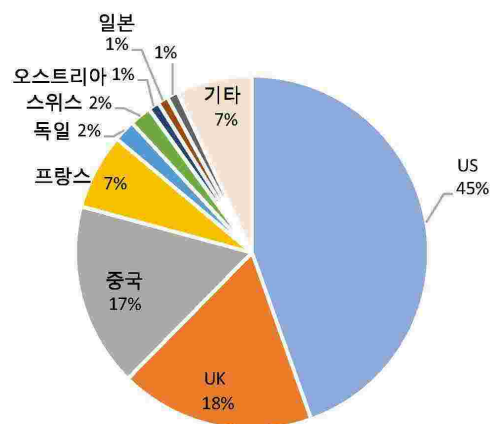
○ 글로벌 미술품 판매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영국, 중국 순이며 한국 점유율은 1% 상당

미술품 판매시장은 아트 딜러 부문과 미술품 경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2022 년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미술 판매금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아트딜러 부문은 7% 성장, 미술품 경매 부문은 2% 감소함.

2022 년 미술품 판매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점유율 45%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액은 302 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위 영국은 전년대비 약 1% 성장하여 18%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중국은 코로나 봉쇄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판매 금액이 약 14% 감소하며 2 위에서 3 위로 순위가 떨어짐.

한국 미술 시장은 전체 1%에 불과하지만 처음으로 국가별 점유율 순위에 집계되었으며, 2022 년 9 월에 개최된 Frieze Seoul 및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미술품 판매시장 국가별 점유율



자료 : Art Basel & UBS "The Art Market 2023"

글로벌미술시장(1)



2.2.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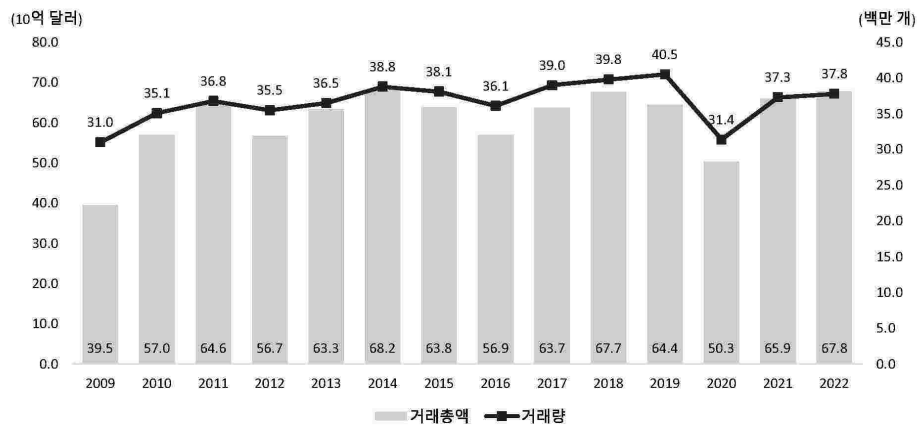
○ 글로벌 미술 시장 규모는 '22 년 678 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09 년 대비 연평균 4.2% 성장

2009 년부터 2022 년 기간동안 글로벌 미술 시장 규모는 2009 년 약 395 억 달러 규모에서 2022 년 약 678 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연평균 4.2% 성장하였으며, 2021 년(659 억 달러) 대비 약 3% 성장함. 2012 년과 2016 년에는 경기 침체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0 년 COVID-19 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시장 규모 축소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임. 따라서 미술 시장은 경기침체 등의 제약 사항에 감소세를 보이는 시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남.

한편, 미술품의 거래량 또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 년 약 3,100 만 건이었던 미술품 거래량은 2022 년 약 3,780 만 건을 기록하며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나타냄. 2012 년과 2016 년, 2020 년에는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9 년의 거래량 이하로 떨어진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22 년의 글로벌 미술 시장의 성장세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아트 성장과 고급 미술품 거래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디지털·영화·비디오 아트 거래 비중이 2021 년 1%에서 2022 년 5%로 증가하였으며, 부유층 수집가들이 코로나 19 이전보다 미술품 구매에 많은 돈을 쓰면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됨.

세계 미술시장 규모 추이 (2009~2022 년)



자료 : Art Basel & UBS "The Art Market 2023"



○ 2023 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경매 3 사의 낙찰 총액은 전년대비 18.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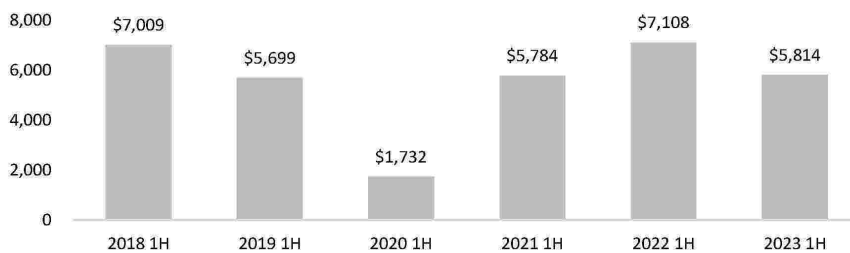
2023 년 상반기 기준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3 사의 글로벌 경매 낙찰총액은 58.1 억 달러(약 7.5 조원)으로 전년 대비 18.2% 하락함. 이는 2022 년 상반기 대비 약 13 억 달러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1 년 상반기 대비 0.5%, 팬데믹 이전인 2019 년 상반기보다 2.0% 높은 수치임.

한편, 전체적으로 낙찰 총액은 감소했으나 3 사의 경매의 횟수는 2022 년 상반기 419 회에서 2023 년 상반기에 452 회로 약 7.6% 증가했으며, 낙찰 작품 수량은 2022 년 51,073 점에서 2023 년 53,100 점으로 증가함. 이는 오프라인 경매와 함께 온라인 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됨.

미술품 거래 시장의 중심지는 뉴욕, 런던, 홍콩으로 2023 년 상반기 도시별 해외 경매 증감폭은 런던이 2022 년 상반기 대비 25.1% 감소(총매출 대비 18.9% 차지)했으며, 뉴욕은 22.0% 감소(총매출 대비 비중은 50.1%)하였고, 홍콩은 11.6% 감소세(총매출 대비 비중은 17.0%)를 보임. 한편, 밀라노, 취리히, 제네바는 경매 매출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전년대비 90.1% 증가한 5 억 460 만 달러(약 6,400 억원)을 기록함.

2018~2023 년 상반기 해외 낙찰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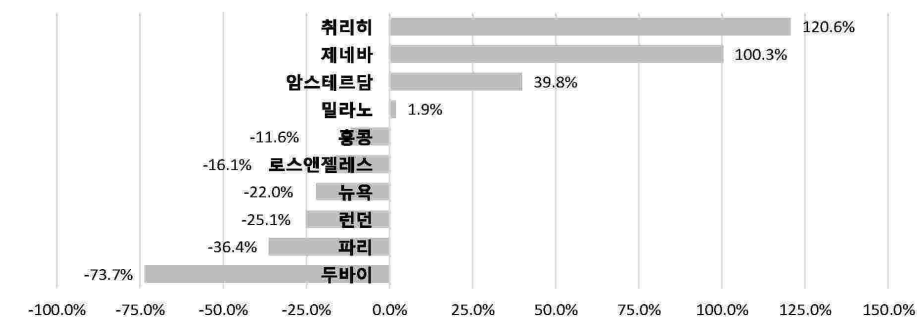
(단위: 100 만 달러)



주)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3 사의 경매 매출 총액

자료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전년동기 대비 2023 년 상반기 도시별 해외 경매 판매 증감폭



자료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글로벌 미술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세계 미술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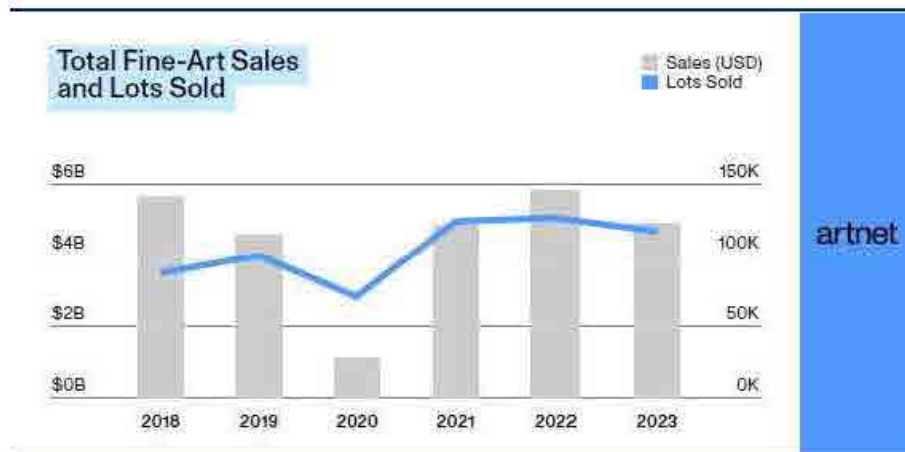


III. 미술품 시장 동향

1. 세계 미술시장(2023 상반기, 출처 : Artnet 자료 재구성)

1) 전체 경매 시장 매출액 감소

2022년 COVID-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회복됐던 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의 매출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약 50억\$(USD)로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14% 감소하였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동요를 침체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2020년 COVID-19으로 인한 봉쇄 이후 억눌렸던 물량이 2021년과 2022년 시장에 다량 출회되어 거래량 증가를 이끈 후 물량이 감소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세계미술시장(1)



위와 같은 외부평가기관의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에서, 글로벌 미술시장이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초자산의 매도인은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초자산의 유통경로(provenance)는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내 미술 시장에 대한 조사

외부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는 국내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조사한 국내 미술 시장

1.1.2. 미술품 시장 특성

○ 국내 미술품 시장은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제도적, 기술적 요인 등과 더불어 성장

국내 미술품 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반도 화랑 개관(1956년) 최초의 상업 화랑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1970년에 반도화랑을 이은 현대화랑이 상호를 바꾸어 출범함으로써 현대식 갤러리가 등장하였음.

이후,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 의무화(1984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1991년), 예술품 수출입 전면자유화(1992년)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1988년 올림픽,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성장하였음.

2000년대 이후 서울옥션 및 케이옥션 등의 양대 경매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경매도입(2006년), 최초 해외진출(2008년) 등으로 미술품 시장이 확대되었음. 다만, 2008년 및 2011년 경제위기, 2013년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기도 하였음.

2020년 이후 코로나 저금리 경제호황으로 미술시장은 호황을 맞이하였으며, 블록체인 기반 NFT 기술 도입 및 영국 Frieze 서울 아트페어 개최로 미술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내 미술품 시장 시대별 분석

구분	요약	내용
1950년대	-	- 전일화랑 전일백화점 내 개관(1954) - 서울 아트 소사이어티 조직 및 반도호텔 내 반도 화랑 개관(1956)으로 내·외빈들에게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
1970년대	미술시장 태동기	- 현대화랑(1970), 조선화랑(1971), 진화랑(1972), 동산방화랑(1975), 예화랑(1978) 등 개관으로 상업화랑(갤러리) 중심의 미술시장 형성 - 신세계미술관 '한국근대미술품 경매전' 개최(1979)로 국내 최초의 미술품 경매 실시
1980년대	미술시장 성장기	- 삼성그룹 호암미술관 개관(1982) - 건축물 미술 장식품 관련 법안 제정(1984)으로 각종 조각, 공예, 분수대, 상징탑 등 미술 조형물 시장 확대 - 88 올림픽 전후 경제성장으로 미술품 시장 활황을 맞이하여 인사동 및 압구정 중심의 화랑가 형성 - 국내 최초 아트페어 한국화랑협회 화랑미술제 출범(1986년)으로 37개 갤러리 참여 - 가나아트센터 프랑스 FIAC 참가(1985), 현대화랑 시카고 엑스포 참가(1987)으로 최초 한국 갤러리 해외 진출
1990년대	미술시장 전성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1991), 예술품 수출입 전면 자유화(1992) 등 전성기 - 청담동, 인사동, 서초동 중심의 화랑 권역 다변화 - 가나아트 주축으로 서울경매(현, 서울옥션)(1998) 설립 -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제기 및 IMF 경제위기 등으로 90년대 후반 시장 침체
2000년대	미술시장 부흥기	- 현대 갤러리, 하나은행 등의 케이옥션(05년)이 설립으로 양대 경매사 영향력 확대 - 케이옥션 최초 미술품 온라인경매 도입(2006년) - 서울옥션 국내경매사 최초 해외경매(홍콩) 진행(2008)
2010년대	미술시장 성숙기	- 2013년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 미술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7) 국무회의 의결되었으나 국회 계류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0년대	코로나 호황 미술시장 대중화	- NFT 기술 기반의 디지털 미술품 거래 시장 및 조각투자 플랫폼 활성화 - 세계 3대 아트페어 영국 Frieze 서울 개최(2022) - 코로나 저금리 호황에 따른 미술시장 활황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ARTNOW.COM, 언론보도 종합

국내미술시장(1)



1.2.2. 거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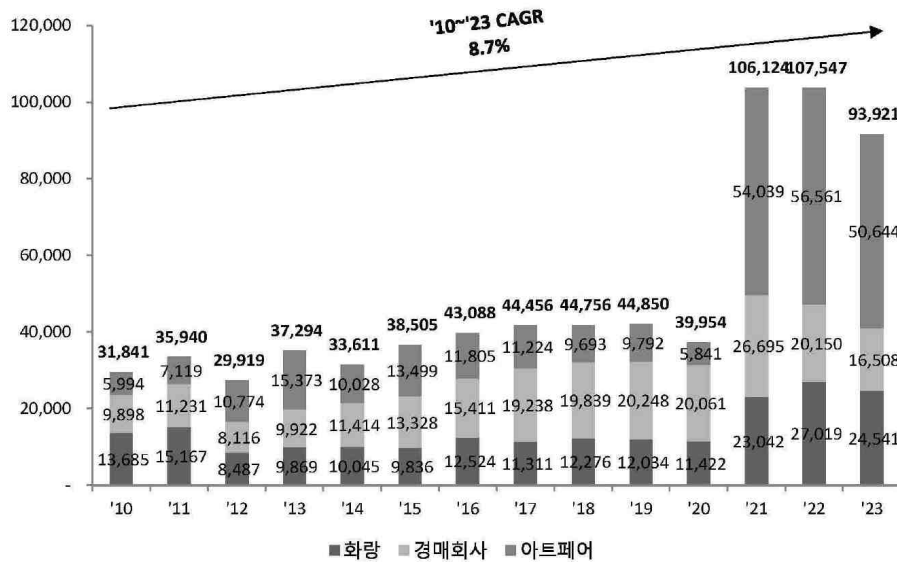
- **미술품 유통시장 작품 거래건수는 '10 년 31,841 건에서 '23 년 93,921 건까지 연평균 8.7% 증가 하였으며, 중복 제외 시 연간 5-6 만 건 수준**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거래건수는 2010 년 31,841 건에서 2023 년 총 93,921 개까지 연평균 8.7% 증가 하였음.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의 거래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온라인 경매, 아트페어 개최 등 미술품 경매 대중화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다만, 21 년 이후 아트페어 거래건수 중 화랑참가 아트페어 판매 작품으로 인한 중복 제외 시 연간 5-6 만 건 수준의 거래건수로 파악됨.

국내 영역별 미술 유통시장 작품 거래건수

(단위 : 건)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CAGR
화랑	13,685	15,167	8,487	9,869	10,045	9,836	12,524	11,311	12,276	12,034	11,422	23,042	27,019	24,541	4.6%
경매회사	9,898	11,231	8,116	9,922	11,414	13,328	15,411	19,238	19,839	20,248	20,061	26,695	20,150	16,508	4.0%
아트페어	5,994	7,119	10,774	15,373	10,028	13,499	11,805	11,224	9,693	9,792	5,841	54,039	56,561	50,644	17.8%
건축물 미술작품	852	769	619	617	490	379	319	789	901	886	782	672	738	644	-2.1%
미술관	1,165	1,387	1,642	1,367	1,393	1,097	2,662	1,625	1,703	1,576	1,506	1,460	2,808	1,304	0.9%
미술은행	247	267	281	146	241	366	367	269	344	314	342	216	271	280	1.0%
합계	31,841	35,940	29,919	37,294	33,611	38,505	43,088	44,456	44,756	44,850	39,954	106,124	107,547	93,921	8.7%
중복 제외 건수	27,725	31,297	25,195	26,865	26,912	28,415	33,348	35,712	39,367	37,930	35,097	57,563	60,782	51,590	4.9%

주) 유통경로 간의 중복거래 건수를 제외한 순거래건수의 경우 영역별 시계열자료 미공시로 총거래건수 기준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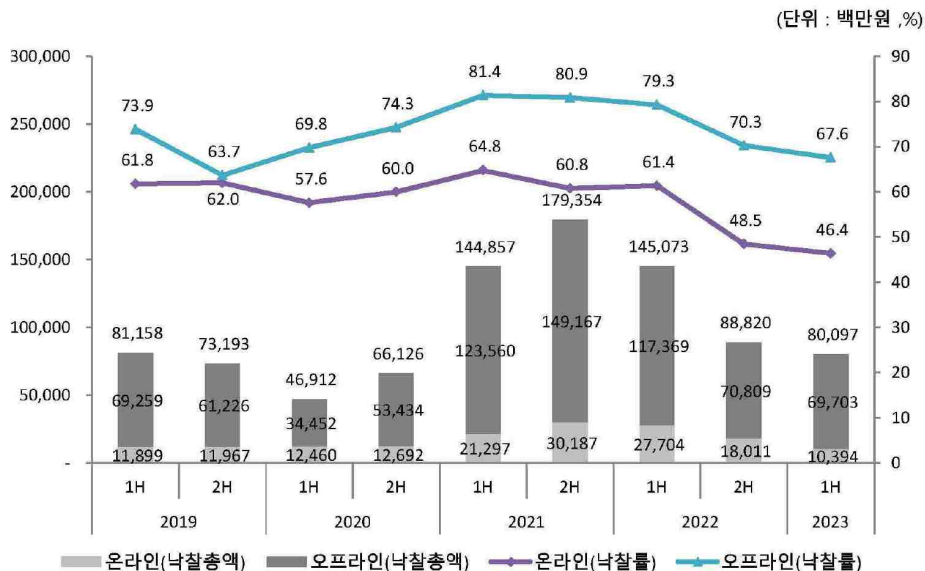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년 미술시장 결산 및 2024 년 전망'

- 2023 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출품된 14,683 점의 작품 중 7,476 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50.9%, 낙찰총액 801 억 원을 기록

2023 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10 개 경매사에서 진행한 145 회의 국내외 온·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출품된 14,683 점의 작품 중 7,476 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50.9%, 낙찰총액 801 억 원을 기록했음.

낙찰총액은 직전 반기 '22 년 하반기 888 억 원 대비 9.8% 감소, 전년 동기 '22 년 상반기 1,451 억 원 대비 44.8% 감소를 보였으며, 낙찰률을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13.8%p 가 감소하고, 직전 반기 대비 약 0.6%p 감소를 나타남.

국내 미술품 경매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H	2H	1H	2H	1H	2H	1H	2H	1H
낙찰총액	온라인	11,899	11,967	12,460	12,692	21,297	30,187	27,704	18,011	10,394
	오프라인	69,259	61,226	34,452	53,434	123,560	149,167	117,369	70,809	69,703
합계		81,158	73,193	46,912	66,126	144,857	179,354	145,073	88,820	80,097
낙찰률	온라인	61.8	62.0	57.6	60.0	64.8	60.8	61.4	48.5	46.4
	오프라인	73.9	63.7	69.8	74.3	81.4	80.9	79.3	70.3	67.6

주 1) 최초 경매결과 데이터는 총 14,814 건이나 미술작품 외(명품, 주류 등) 63 건, 출품취소 28 건, 대상 외 수집 40 건 제외
 주 2) ①교모옥션, ②라이즈아트, ③마이아트옥션, ④서울옥션, ⑤아이옥션, ⑥에이옥션, ⑦칸옥션, ⑧케이옥션, ⑨토탈아트옥션, ⑩헤럴드아트데이옥션을 분석 대상으로 하나, 교모옥션은 자료수집 기간 내 개최된 경매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국내미술시장(6)

투커다아트 2호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KOREA RATINGS

○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김환기, 박서보 등이 고정적으로 TOP 5 순위권 형성

작가별 경매 낙찰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2021 년 이후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김환기, 박서보 등이 고정적으로 TOP 5 순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 호황 2021 년 이후 전반적인 낙찰 총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작가별 경매 작품 낙찰총액 TOP 10

(단위 : 백만원)

순위	2021.1H		2022.1H		2023.1H	
	작가명	낙찰총액	작가명	낙찰총액	작가명	낙찰총액
1	이우환	39,460	이우환	20,074	이우환	7,308
2	쿠사마 야요이	36,628	쿠사마 야요이	13,815	김환기	4,121
3	김환기	21,653	박서보	8,402	유영국	3,767
4	박서보	20,241	김환기	4,960	박서보	3,709
5	김창열	19,356	아아코 록카쿠	4,726	쿠사마 야요이	3,421
6	정상화	8,369	이네	4,299	이네	2,198
7	마르크 사갈	7,122	김창열	3,842	김창열	1,881
8	이네	5,978	윤형근	3,076	박수근	1,728
9	윤형근	5,394	이건용	2,647	윤형근	1,623
10	우국원	4,896	스텐리 휘트니	2,520	장욱진	1,328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KR 재구성

국내 경매 시장 주요 작가 현황

구분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김환기	박서보
이미지				
대표 작품				
	'점으로부터'(1975)	'호백'(1981)	'고요'(1973)	'묘법'(1985)

KR
한국가평평가
KOREA RATINGS

8

국내미술시장(7)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국내 미술품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국내 미술품 시장 요약



2. 국내 미술시장 (2023 결산,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1) 주요 미술 유통/기반영역의 연도별 업체 수

2010년 이후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미술관 등의 국내 주요 미술 유통/기반영역의 업체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추정치는 전년 대비 약 6.3%의 증가를 기록함.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트페어 수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화랑은 7.7% 증가, 경매회사와 미술관 수는 보합을 기록함.



2) 미술시장 규모 추정(작품 거래 금액 기준)

2023년 작품 거래금액 기준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6,694억 원으로 나타남.

2023년 미술시장규모(추정)

구분	거래금액(백만원)	비고
주요 유통 영역	화랑	419,801
	경매회사	149,906
	아트페어	4,093
	소계	573,801
기반 영역	건축미술작품	83,545
	미술은행	1,286
	미술관	10,860
	소계	95,691
합계	669,491	-

※ 각 금액은 영역별 중복 금액 제외한 순 거래금액임.





5) 2023년 미술시장 결산

미술시장 전체 규모는 중복거래 제외 기준 거래금액 6,694억 원, 거래 건수에서 51,590 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17%, 약 15% 감소하여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부진에 영향을 받은 모습임. 영역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2차 시장인 미술품 경매 부문이 전년 대비 약 36.1% 감소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으며, 1차 시장인 화랑과 아트페어 부문은 각각 약 5.6%, 약 5.5% 감소하여 비교적 낮은 하락 폭을 나타냄. 기반영역에서는 미술관 작품 구입 금액이 전년 대비 32.2% 감소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임.

위와 같은 외부평가기관들의 국내 미술품 시장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

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더불어, 기초자산의 작가인 조지 콘도(George Condo)의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조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통화의 대 원화 환율과 주요 물가지수 등을 별도로 조사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주요 통화의 대 원화 환율과 주요 물가지수 등



IV. 감정평가액 산출

1.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1) 주요 통화 월 평균 환율

[대 원화(KRW), 월 평균 매매기준율]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미국달러	1,194.01	1,188.34	1,221.03	1,232.34	1,288.88	1,277.35	1,307.4	1,318.44	1,391.59	1,428.66	1,364.1	1,285.22
원/일본엔(100엔)	108.85	108.85	108.85	977.38	985.49	951.34	955.93	975.17	973.2	969.36	956.51	959.12
원/유로	1,353.2	1,388.9	1,346.33	1,394.03	1,342.43	1,348.6	1,332.91	1,334.63	1,377.09	1,404.83	1,388.29	1,371.13
원/홍콩달러	153.24	153.66	156.09	157.17	161.79	162.75	166.57	168.02	177.29	181.75	174.18	166.45

구분	2023년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원/미국달러	1,194.01	1,188.34	1,221.03	1,232.34	1,288.88	1,277.35	1,307.4	1,318.44	1,391.59	1,428.66	1,364.1	1,285.22	1,347
원/일본엔(100엔)	108.85	108.85	108.85	977.38	985.49	951.34	955.93	975.17	973.2	969.36	956.51	959.12	905.1
원/유로	1,353.2	1,388.9	1,346.33	1,394.03	1,342.43	1,348.6	1,332.91	1,334.63	1,377.09	1,404.83	1,388.29	1,371.13	1,442
원/홍콩달러	153.24	153.66	156.09	157.17	161.79	162.75	166.57	168.02	177.29	181.75	174.18	166.45	1633

2) 주요 통화 일 평균 환율

[대 원화(KRW), 일 평균 매매기준율]

구분	2024년								
	01/17	01/18	01/19	01/22	01/23	01/24	01/25	01/26	01/29
원/미국달러	1,329.00	1,343.20	1,342.40	1,336.50	1,334.70	1,336.00	1,339.10	1,335.70	1,336.60
원/유로	1,445.69	1,461.67	1,460.26	1,456.25	1,452.35	1,450.63	1,457.61	1,448.43	1,449.34
원/홍콩달러	169.79	171.72	171.65	170.94	170.73	170.81	171.29	170.84	171.05

구분	2024년								
	01/30	01/31	02/01	02/02	02/05	02/06	02/07	02/08	02/13
원/미국달러	1,336.90	1,330.60	1,333.50	1,332.50	1,325.10	1,334.60	1,329.60	1,325.30	1,327.20
원/유로	1,448.73	1,443.10	1,442.11	1,449.23	1,427.53	1,433.76	1,430.12	1,427.94	1,429.66
원/홍콩달러	171.10	170.21	170.58	170.39	169.43	170.62	169.97	169.50	169.77

구분	2024년								
	02/14	02/15	02/16	02/19	02/20	02/21	02/22	02/23	02/26
원/미국달러	1,328.40	1,336.90	1,333.20	1,333.00	1,333.80	1,337.90	1,335.00	1,331.00	1,329.30
원/유로	1,422.78	1,434.49	1,436.59	1,436.71	1,437.57	1,446.00	1,444.80	1,440.74	1,438.57
원/홍콩달러	169.88	170.99	170.49	170.43	170.54	171.07	170.70	170.15	169.90

환율과물가지수1

1. 환율	
1) 환율	
2) 물가	
3) 환율	
4) 물가	
5) 환율	
6) 물가	
7) 환율	
8) 물가	
9) 환율	
10) 물가	
11) 환율	
12) 물가	
13) 환율	
14) 물가	
15) 환율	
16) 물가	
17) 환율	
18) 물가	
19) 환율	
20) 물가	
21) 환율	
22) 물가	
23) 환율	
24) 물가	
25) 환율	
26) 물가	
27) 환율	
28) 물가	
29) 환율	
30) 물가	
31) 환율	
32) 물가	
33) 환율	
34) 물가	
35) 환율	
36) 물가	
37) 환율	
38) 물가	
39) 환율	
40) 물가	
41) 환율	
42) 물가	
43) 환율	
44) 물가	
45) 환율	
46) 물가	
47) 환율	
48) 물가	
49) 환율	
50) 물가	
51) 환율	
52) 물가	
53) 환율	
54) 물가	
55) 환율	
56) 물가	
57) 환율	
58) 물가	
59) 환율	
60) 물가	
61) 환율	
62) 물가	
63) 환율	
64) 물가	
65) 환율	
66) 물가	
67) 환율	
68) 물가	
69) 환율	
70) 물가	
71) 환율	
72) 물가	
73) 환율	
74) 물가	
75) 환율	
76) 물가	
77) 환율	
78) 물가	
79) 환율	
80) 물가	
81) 환율	
82) 물가	
83) 환율	
84) 물가	
85) 환율	
86) 물가	
87) 환율	
88) 물가	
89) 환율	
90) 물가	
91) 환율	
92) 물가	
93) 환율	
94) 물가	
95) 환율	
96) 물가	
97) 환율	
98) 물가	
99) 환율	
100) 물가	

라)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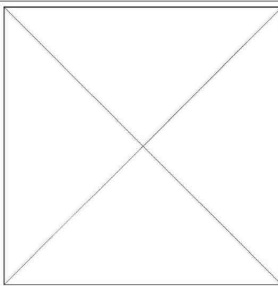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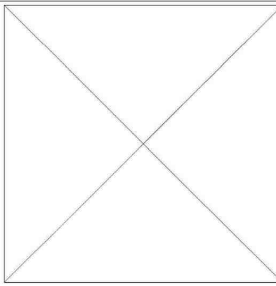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동일 작가의 최근 10년간 거래 동향, 최근 거래 사례와 거래 사례 분석,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기초자산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4. 감정평가액 산출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상기 조사된 유사 거래사례 중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서 대상물건과 작품의 크기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Artificial Realism이라는 George Condo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초상화로써 색감과 도상, 제작 시기, 기법 등에서 유사한 거래사례는 [거래사례 7], [거래사례 8]임. 그중 최근의 거래인 [거래사례 7]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구분		사례 기호	사례 기호
		7	8
이 미 지			
		2022-05-13	2021-11-29
		The Diver	Night Portrait 《夜間肖像》
		2001	2001
재 질		acrylic on canvas	acrylic on canvas
규 격 (세 로 x 가 로 cm)		152.4x121.9	152.7x121.7
면 적 (cm²)		18,577.56	18,583.59
거 래 가 액	낙 찰 가 (USD)	756,000	885,283
	낙 찰 단가(USD/cm²)	40.694	47.653
경 매 사 / 도 시		Christie's / New York	Phillips&Poly / Hong Kong
L o t N u m b e r		112	161

2)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비교적 최근의 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사례로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별도의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은 행하지 아니함.



V.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구분	수량	감정평가액(원)
1	회화	1점	1,090,000,000

2. 결정 의견

대상물건은 조지 콘도(作)의 회화로서 대상물건의 제 특성을 감안하고, 미술품 시장 동향, 최근 동 작가 작품의 낙찰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제 3 장 본건 미술품 가치평가

1. 평가방법론

1.1. 본건 적용 평가방법론

본건 미술품 지적재산권의 평가방법은 미래현금흐름에 의한 추정이 제한되고, 유사 자산 거래사례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선정하였음.

본건 적용 평가방법론

평가방법	적용근거
평가방법론	<pre> graph TD A{미래현금흐름 추정 가능?} -- YES --> B{직접한 할인율 추정 가능?} A -- YES --> C{비교가능한 Multiple유무?} A -- NO --> D{유사한 자산 거래사례 유무?} B -- YES --> E[DCF 현금흐름 할인법] C -- YES --> F[Multiple 비교법] D -- YES --> G[거래사례 비교법] D -- NO --> H[원가접근법 등] </pre>
DCF 현금흐름 할인법	-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
Multiple 비교법	-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자산 혹은 기업이 존재하여 유사한 자산 또는 기업의 토대로 산정된 시장배수(Multiple)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 대상자산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자산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통해 가치를 산정
원가접근법	-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산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

감정평가이



○ 본건 거래사례 분석

본건 작품 거래사례 분석결과와 지난 5 개년 기간별 면적당 낙찰가격은 2021 년 하반기-2023 년말 42.8 USD/㎡, 2019 년-2021 년 상반기 45.0 USD/㎡ 등으로 파악되어 본건 작품 면적을 감안한 추정 공모가액은 1,057,218,437 ~1,110,520,784 원 수준으로 평가됨.

본건 거래사례 분석

구분	거래건수	면적당 가격 (USD/cm²)	면적(㎠)	추정 공모가액	
				USD	원
비교사례(5개년)	7	43.9	18,577.6	815,983	1,083,869,611
'21년 하반기-'23년(2.5년)	4	42.8	18,577.6	795,918	1,057,218,437
'19년-'21년 상반기(2.5년)	3	45.0	18,577.6	836,047	1,110,520,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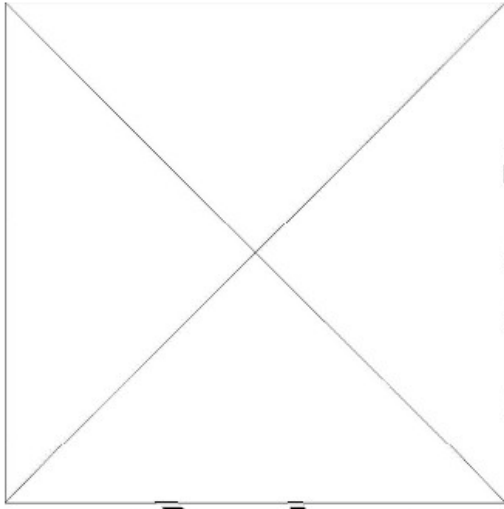
주) 회사제시 본건 작품 매입시점 기준 환율 1,328 원/USD 기준 환산

마) 진위에 대한 소견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초자산이 조지 콘도의 작품으로 진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에 대하여 감정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한국화랑협회 화랑협회의 감정 소견

03 감정소견

평가번호 001	
	
작가명	조지 콘도(George Condo, 1957~)
작품명	The Horizon of Insanity
제작연도	2001
재료기법	캔버스에 유채
크기(HxWxD)	152.4x121.9 cm
비고	- 작품 후면 우측 상단에 작가 서명, 작품명, 제작연도 있음. - 작품 후면 캔버스 틀에 작품 관련 넘버, 태그 있음.
감정소견	
작품 실사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기 작품을 검토해본 결과, 본 작품은 조지 콘도(George Condo, 1957~)의 작품으로 사료됩니다.	

감정소견결과

(5) 외부평가기관의 기초자산 평가 결과 요약 및 결론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결과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 모수	평가액	비고
	직접 비교대상		
(주)제일감정평가법인	533건	1,0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2건(최종 1건)		
한국기업평가(주)	645건	1,057,218,437~1,110,520,784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 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7건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작품 실사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기 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작품은 조지 콘도(George Cond, 1957~)의 작품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934,951,942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1,028,000,000 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들의 평가서와 보고서 원문은 첨부서류 「기초자산 관련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저작물인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은 감정평가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KOREA RATIN

부제: 대외 2 조 미술물 가치평가 보고서

H-520240228001

한국화랑협회
Korea Association of Korea

03 감정소견

평가번호 001

작가명	조지 콘도(George Condo, 1957~)
작품명	The Horizon of Infinity
제작연도	2001
재료기법	캔버스에 유채
크기(HxWxD)	152.4x121.9 cm
비고	- 작품 후면 유채 상단에 작가 서명, 작품명, 제작연도 있음. - 작품 후면 캔버스 등에 작품 관련 넘버, 태그 있음.

감정소견

작품 실사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기 작품을 검토해본 결과, 본 작품은 조지 콘도(George Condo, 1957~)의 작품으로 사료됩니다.

2.2. 가치평가

2.2.1. 거래사례 비교법

○ 본건 작품 가치평가액은 1,057,218,437 ~ 1,110,520,784 원 수준

본건 작품 거래사례 비교법 가치평가액은 1,057,218,437 ~ 1,110,520,784 원 수준으로 평가됨.

본건 거래사례 평가결과

구분	본건 비교사례 평가결과	
	최소	최대
면적당 가격(USD/cm²)	42.8	45
면적(cm²)	18,577.6	18,577
작품가액(USD)	795,318	856,04
작품가액(원)	1,057,218,437	1,110,520,784

본건 비교사례 평가결과

(미술품)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평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 합니다.

감정평가사 인명			
(의뢰인)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신종호 (인)			
감정평가액	일일익구현만원 (₩1,090,000,000,-)		
의뢰인	(의뢰인)대우	감정평가목적	일반거래
		제출처	(의뢰인)대우
소유자	(의뢰인)대우	가중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가중사실	조사기간
		2024.02.26.	2024.02.07~2024.02.26.
		작성일자	2024.02.26.
총 부 (회 회)	사 정	감정평가액	
총액	면적 또는 수량(m²)	총액	면적 또는 수량(m²)
미술품	1점	미술품	1점
		단 가(원/m²)	금 액(원)
			₩1,090,0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평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심사확인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의뢰인)감정평가법인 The First Appraisal & Consulting Co.

감정소견결과

가치평가결과(1)

감정평가액(2)

당사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 평가 방법에 대한 적절성 및 매매계약의 재무적 적절성 등에 관하여 외부평가법인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바. 기초자산 매도인에 관한 정보

위 기초자산의 매도인은 소더비(Sotheby's, Inc.)사입니다. 매도인은 이른바 세계 3대 미술품 경매회사(Sotheby's, Christie's, Phillips) 중 하나로, 기준일 현재 전세계 미술품 경매회사 중 수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기초자산 매도인	
매도인	소더비 경매사(Sotheby's, Inc.)
당사의 취득가액(원)	934,951,942

사. 기초자산의 진위성

(1) 기초자산의 유통경로(Provenance) 등

당사는 기초자산이 “작가의 컬렉션(Collection of the artist)”으로부터 “매도인의 전 소유자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Acquired directly from the above by the present owner)”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은 매도인으로부터 당사가 직접 매입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액자 후면에는 작가의 서명, 날짜,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보증서 등

매도인과 발행인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 관련 서류에는 매도인이 발행인에게 제공한 기초자산의 진위를 보장(authenticity guarantee)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조지 콘도의 작품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소견을 받았습니다.

(3) 기초자산의 상태

매도인은 당사에 기초자산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인 Condition Report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Condition Report에는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상태가 “훌륭하고 안정적인 상태(The work is in excellent and stable condition overall)”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Condition: The work is in excellent and stable condition overall.

(4) 당사의 확인과 검증, 진위에 대한 판단

당사는 기초자산의 유통경로가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교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동일 작가의 작품을 최근 10년 동안 공개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수십 회 이상 확인되며, 매도인은 작품의 직전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매도인의 동일 작가 매매 사례에 대한 검토, 매도인의 전 소유자 소장 경로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행인에게 유통경로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회신합니다. 발행인은 추가로 매도인에게 fact sheet 등 매매 관련 서류에 기재된 유통경로(provenance)의 확인 경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실물 작품 상태가 제공된 Condition Report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고화질 이미지 촬영 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자산은 세계 3대 미술품 경매회사 중 1개 경매회사로부터 진품임을 확인을 받았고, 매도인이 직접 취득한 상태에서 당사가 취득한 작품으로 그 유통경로에 있어 기초자산의 진위를 의심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을 취득한 매도인은 세계 3대 미술품 경매회사 중 1곳으로서 기초자산을 포함한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보증 능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당사가 제공 받은 매도인의 보증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Fact Sheet의 내용은, 당사가 미술품 유통 전문 DB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에 부합합니다.

또한, 당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산에 대한 Condition Report는 기초자산 실물 작품의 상태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으며, 기초자산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가격 전부를 직접 외환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품으로 당사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미술품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기초자산은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할 수 있어, 기초자산의 가치와 공동사업의 청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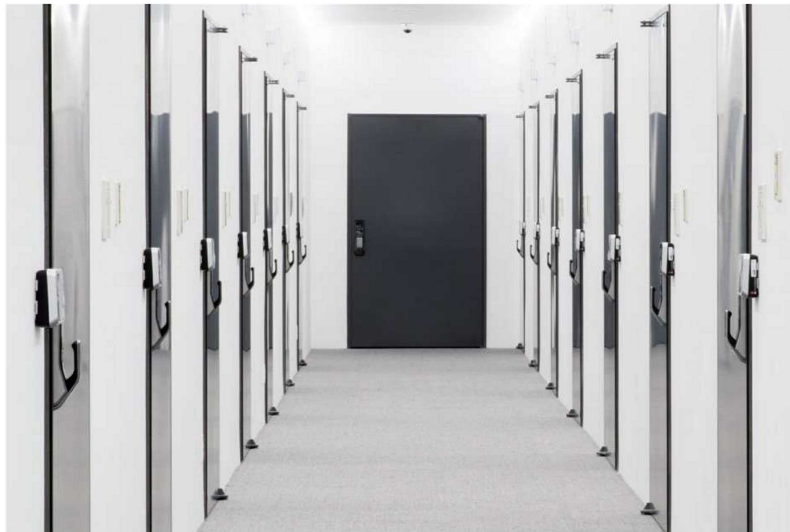
매매계약서 등

판매 목적의 전시 외에는 별도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미술품 렌탈업/대여업을 운영하거나 겸영하지 아니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내부

■ 개 요

3) 내부 사진



복도

8

첨부_케이아트스페이스 소개서_8

■ 개 요

3) 내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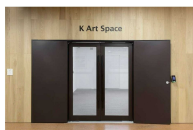


수장고

9

첨부_케이아트스페이스 소개서_9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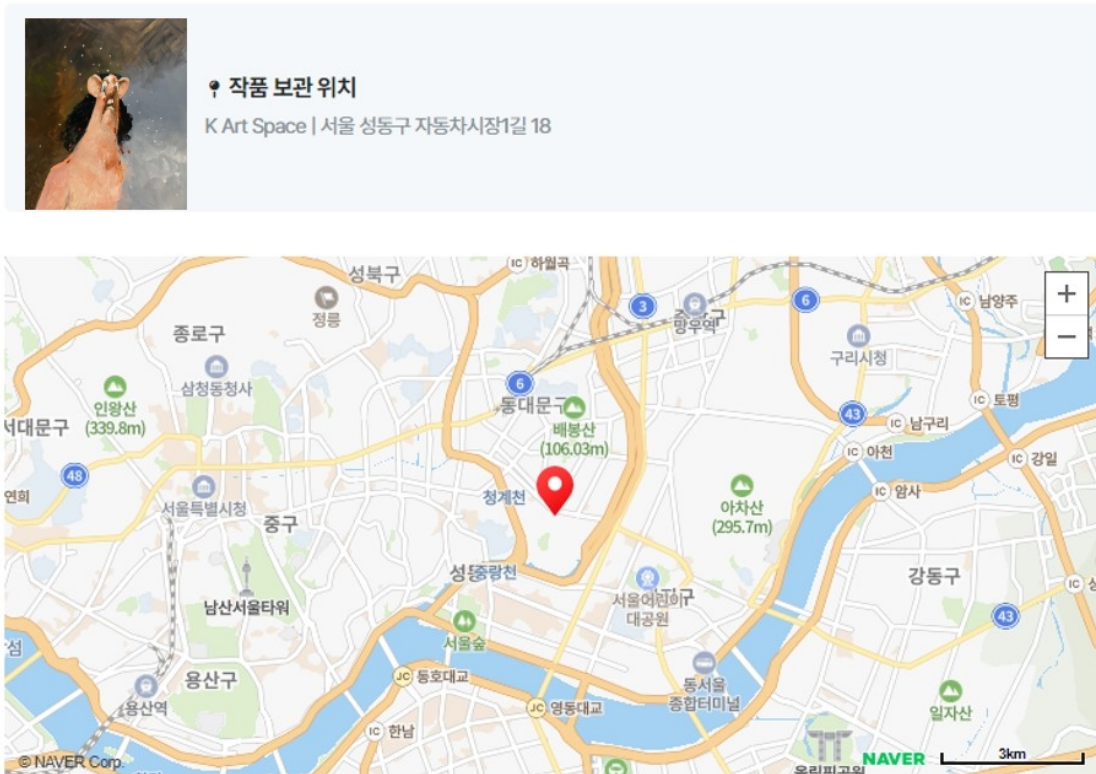


0000

(2)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보관되는 기초자산은 (주)케이옥션과 동일한 미술관 보험에 부보됩니다. 해당 보험은 (주)케이옥션의 도산사유가 발생하여도 보험기간 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 화면(예시)



작품 보관 위치 게시례

미술품 보관과 관련된 계약의 세부 내용, 보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식에 대한 정보는 거래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약정, 미술품 보관에 따르는 보안 정책 등으로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미술품 보관료와 보험료를 당사의 부담으로 지출합니다.

11.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

(1) 기초자산의 처분방법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 당사에 위임된 권한으로 기초자산의 처분시기와 처분 상대방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나 거래상대방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5년 이내에 기초자산을 처분하나 부득이한 경우 청산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4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작성·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열람·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비용·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선정에 있어 공동사업 참여자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고려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전문가인 제3자 등을 이용할 때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수료 등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지를 고려한다. 이 때, 비용과 수수료 등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미술품 전시 판매 또는 경매 판매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의 매각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한다.

② 전 항의 기간은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③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은 기초자산의 보유기간, 매각 예상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 경기 변동,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향후 전망,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 기타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 항에 있어 동종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의 모집 사례, 국내외의 미술품 판매업자나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익률, 공동사업에 소요 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처분 가액, 시기, 매수자의 결정
2.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운송, 전시
3.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의 지출
4. 기타 상기 각 호에 부수하는 권한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처분에 관한 권한
-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기초자산의 처분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처분에 앞서 처분계획을 공시하고 투자자총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총회에서 처분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처분을 중단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모총액 100%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처분에 관한 권한
-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12. 기타 중요사항

(1)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관련 사항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위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도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타 증권의 양도와 양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 양도 통지 및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에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에 대한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에 대한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에 대한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에 대한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⑦ 증권에 대한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초자산의 분할 가능 여부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 전원 및 당사와의 사이에서 기초자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특약은 5년을 기한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증권에 대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당사는 해당 특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해, 증권에 대한 양도 및 양수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및 연장에 대한 특약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양수인이 이에 동의하여야 증권이 양도됩니다.

[투자계약서]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용어의 정의는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 1. 용어의 정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 경기 불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주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한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위한 물색,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를 거쳐 기초자산의 처분과 투자계약의 청산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순환적 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이나 경기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투자자 심리 위축, 기초자산 수요 침체에 따르는 회수 및 청산 가능성의 축소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성 및 당사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시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계 경기 동향

IMF가 2024년 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1%, 2025년 3.2%로 예상됩니다. 2024년 전망치는 2023년 10월 IMF의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데, 이는 미국과 여러 거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2024~25년 전망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높은 부채, 낮은 기초 생산성 증가율로 과거(2000~19년) 평균인 3.8%보다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측면의 이슈 완화와 통화 긴축 정책에 기인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융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 10월 전망치 대비 0.6% 상향된 2.1%로 전망되며 선진국은 2023년 10월 전망치 대비 0.1%p 높은 수준인 1.5%, 신흥국은 2023년 10월 대비 0.1%p 높은 수준인 4.1%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E)	2024년(E)			2025년(E)		
			2023년 10월	2024년 1월	조정폭	2023년 10월	2024년 1월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5	3.1	2.9	3.1	0.2	3.2	3.2	-
선진국	2.6	1.6	1.4	1.5	0.1	1.8	1.8	-
미국	1.9	2.5	1.5	2.1	0.6	1.8	1.7	-0.1
유로존	3.4	0.5	1.2	0.9	-0.3	1.8	1.7	-0.1
일본	1.0	1.9	1.0	0.9	-0.1	0.6	0.8	0.2
영국	4.3	0.5	0.6	0.6	-	2.0	1.6	-0.4
캐나다	3.8	1.1	1.6	1.4	-0.2	2.4	2.3	-0.1
신흥국	4.1	4.1	4.0	4.1	0.1	4.1	4.2	0.1
러시아	-1.2	3.0	1.1	2.6	1.5	1.0	1.1	0.1
중국	3.0	5.2	4.2	4.6	0.4	4.1	4.1	-
인도	7.2	6.7	6.3	6.5	0.2	6.3	6.5	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01)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전망의 주요 전제로, 세계경제성장률을 2023년 2.9%, 2024년 2.8%, 2025년 3.0%로 전제하며, 제조업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반면 서비스 수요가 고금리 영향과 펜트업 수요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였고, 세계 교역 성장률은 2023년 0.8%에서 2024년 3.4%, 2025년 3.6%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IT경기 개선, 주요국 신성장산업 및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망의 주요 전제

	2022	2023			2024(E)			2025(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주1)	3.4	2.9	2.9	2.9	2.4	3.1	2.8	3.0
미국	1.9	2.0	2.7	2.7	1.8	0.9	1.3	1.8
유로지역	3.4	0.8	0.1	0.1	0.5	1.3	0.9	1.6
중국	3.0	5.5	5.0	5.0	4.6	4.7	4.6	4.5
일본	0.9	1.9	1.5	1.5	0.7	1.2	1.0	0.9
세계교역 신장률(%)(주1)	5.1	0.4	1.1	1.1	3.6	3.3	3.4	3.6
국제유가(달러/배럴)(주2)	101	80	85	86	86	85	85	81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11)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브렌트유, 기간 평균 기준

②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2년에는 2.6%였으며, 연초 부진했던 국내경기는 하반기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로 당초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소비, 건설투자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 2023년 8월 전망치인 2.2%를 소폭 밀돌지만, 내년중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3.6%에서 2024년 2.6%로, 근원물가는 2023년 3.5%에서 2.3%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는 금년중 300억달러, 내년중 590억달러로 흑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2.6	0.9	1.8	1.4	2.0	2.1	2.3
민간소비	4.1	3.0	0.7	1.9	2.2	1.9	2.2
설비투자	-0.9	5.3	-5.8	-0.4	7.5	4.1	3.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1.3	2.1	2.1	2.4	3.4
건설투자	-2.8	1.8	-3.6	2.7	-3.7	-1.8	-0.7
재화수출	3.6	-0.9	5.4	2.3	2.7	3.3	3.3
재화수입	4.3	1.9	-2.1	-0.2	4.1	2.4	2.9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11)

주(1) 전년동기대비 수치

이처럼 국내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은 비용인상압력의 영향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추세적으로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내외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고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지속, 금리인상,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실물 경기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미술품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거래의 축소와 함께 미술품 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해당 미술품을 재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판매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 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계약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술품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소득 구분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양도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와 배치되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법규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미술품 매매거래 시 양도 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항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2020. 12. 29.>

(출처: 소득세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 차익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2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율 비교]

종합소득세율		기타소득세율(주)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6%	20%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과세표준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과세표준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과세표준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과세표준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과세표준 1,000,000,000원 초과	45%	

(주)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에 의거 20%로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과 국내 생존 원작자의 작품의 경우 비과세 되며,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9000만원+ 1억원 초과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90%까지)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과세 당국은 미술품에 대한 세율 완화를 통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미술품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이 상승할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시에 는 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소득세의 적용 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에 대하여 미술품의 양도소득과 달리 투자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 실무의 전문가인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법률 해석에 관한 전문가인 법무법인(유)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납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안원 기준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추고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 시스템 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당사가 계좌관리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정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으로 고객 가입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이 운영되는 당사의 특성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모니터링 및 인프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당사의 IT팀 등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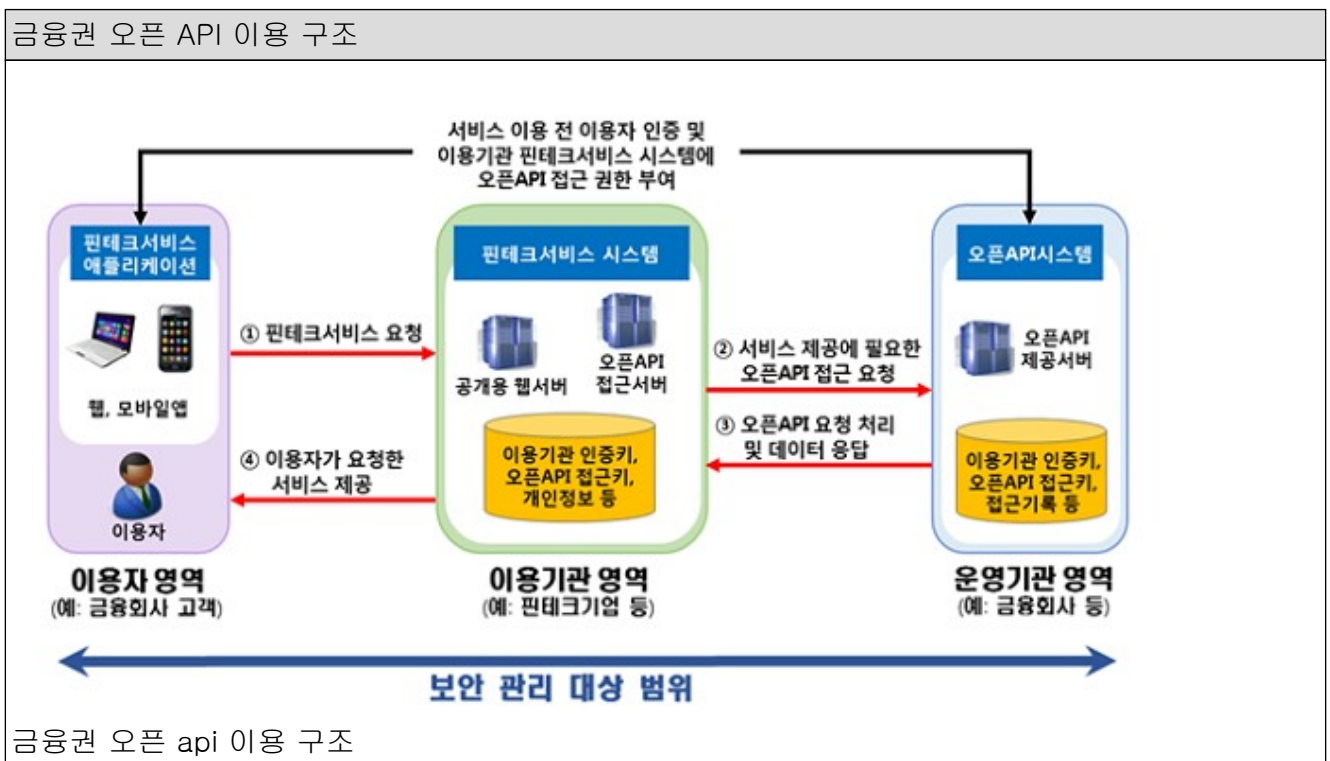
당사는 다음과 같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CTO가 IT팀을 맡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서버 및 인프라 엔지니어가 안정적인 서버 관리 및 네트워크 관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사 IT팀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	업무경력	총 경력 (년)	담당 분야	자격증
백승한 (1982)	1. SK C&C 주식회사 4.1년	11.8	매니저(IT팀장)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보처리기사
	2. SK 주식회사 0.5년			
	3. 주식회사 미드레이트 4.9년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			
김희철 (1976)	1. 에디슈 0.6년	12.4	서버 및 인프라 엔지니어	-
	2. 나루씨큐리티 11.6년			
	3.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2년			
박형민 (1993)	1. 엠지엠엘 1.5년	5.7	풀스택 개발	-
	2. 비즈앤테크컨설팅 2.0년			
	3. 지에스아이티엠 0.9년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3년			
노상문 (1991)	1. 코익스텍 2.7년	5.4	풀스택 개발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2. 애플 시스템 1.1년			
	3.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6년			
최정아 (1995)	1.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4.3년	4.3.	퍼블리싱	-

당사는 금융보안원의 기준에 따르는 전산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보보호정책 제정, 위험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침해사고 대응, IT재해복구 모의 훈련, 서버와 네트워크의 완전 클라우드화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합보안장비(UTM)의 폐쇄적 구

성을 통하여 불법적 외부 침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권 오픈 API 운영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와 당사와 같이 이용기관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의 가이드 2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본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실명계좌 체계를 지원받는 당사는 금융권 오픈 API의 이용기관이 되어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을 만족하는 전산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에 실명 계좌 체계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은 당사의 전산 보안 체계가 금융권 오픈 API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금융권 오픈 API 운영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가이드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 인증 및 오픈API 접근 권한 부여, 이용기관 인증키, 오픈 API 접근키, 개인정보, 접근기록 등이 모두 보안 관리 대상 범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가이드를 만족하는 전산 보안 체계를 갖추고 본 청약에 있어 NH투자증권 으로부터 실명계좌체계를 지원받고 있으며, 향후로도 위 가이드에 따라 전산 보안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보안원,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한편,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유출 등 배상책임을 대비하여 매 사업연도 매출액과 홈페이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개인정보유출책임공제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보안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부정행위,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미술품 구매 기록이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영업비밀 등 당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과 상당한 법률 및 재정 상의 위험 및 평판 실추로 인하여 당사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 규제 당국의 조사, 책임 및 규제 관련 과징금이 뒤따를 수 있어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IT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관리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

실시간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청약에 의한 투자자 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재산적 피해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장애로 인한 면책 조항을 추가하고 서버와 네트워크의 완전 클라우드화, 매 청약 기록에 대한 백업 시스템, 매 청약 트래픽 대비 2배 이상의 네트워크와 UTM 용량의 상시 유지 등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에 관하여서는 이용자가 별도의 분쟁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사실조사 의뢰, 이용자 이의제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처리 절차

분쟁처리절차

분쟁처리절차

1. 이용자(고객) – 사실조사의뢰

-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접수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합니다.

2.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

- 당사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외부 전문위원에서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합니다.
- 당사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투게더아트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3. 이용자 이의제기

-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의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분쟁처리 완료)

- 고객님의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분쟁처리가 최종 완료 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처리절차 요약.png

다만, 예상하지 못한 프로그램 버그 등의 오류나 일시적인 트래픽 급증,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해 모든 오류 또는 결함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예상 수준을 넘는 당사 청약 참여자 수

의 급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청약 참여자들의 응찰 지연으로 인한 청약 참여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사업의 관련법령 위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소송·분쟁의 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과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는 민법상 공유 및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인 경우)·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사업의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한있는 유관기관에 의하여 그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준법감시인력 및 당사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관련 소송·분쟁 제기 가능성을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합니다. 즉 투자계약 및 이로 인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법률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영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민법상의 공유물과 위임 법리에 근거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 보관, 관리, 매각, 배분 등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단, 매각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된 경우 매각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물 매각에 대한 원칙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 투자자들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과 함께 동산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투자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기초자산을 공유하는 공유 지분권에 해당합니다. 공유 지분권자로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이 제3자에게 보관되는 경우 그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준공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유 지분권로서 투자

자는 어떠한 물건을 단독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관리와 처분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에 해당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 역시 공동사업 운영자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증권을 취득하며 얻게 된 기초자산의 공유 지분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업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본 공동사업 구조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판단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당사는 종전에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조건부 제재면제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위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사업구조재편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업구조 재편 완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 2023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위와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반영한 것이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 및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NH농협금융지주 및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장(CDO) 부행장을 역임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가.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재승 사내이사를 준법지원담당임원 전무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운영담당임원을 선임하여 공동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법무법인들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의 적법한 수행을 위해 상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는 법무법인(유)지평으로부터 공동사업 구조의 적법성,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 및 양도 방식,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공유 구조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위험 및 그 해결방안,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법률검토의견을 받아 증권신고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당사는 공동사업의 구조, 저작권법의 준수, 투자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발행 후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서 법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의 변경이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법률검토와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법원에 의한 법 해석 변경, 소송 제기 등 요인으로 인하여 공동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 의사표시, 공동사업의 탈퇴 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공동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시까지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되,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권한은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합니다.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체결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투자자 총회를 두고, 투자자 전원(공동사업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가 공모총액의 100%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기초자산 처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관련 위임계약을 취소하거나 기초자산의 분할청구 등으로 공동사업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운영자로서 당사는 본 공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들 전원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기초자산을 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된 경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투자자들 전원은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약정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 총회가 구성되며, 투자자 총회가 당사에 의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기초자산 처분과 관련된 반대를 하는 등 소수 투자자에 의한 반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일부 투자자가 투자계약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탈퇴하고자 당사 또는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관·관리 및 처분 관련 위임계약의 취소를 하거나, 투자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나 과정에 따라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공동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 또는 공동사업의 중단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의 사유로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사업의 구조는 해외에서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와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사례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시마다 특수목적 법인(SPC)를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당국

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의 안정적이고 계속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술한 법률상, 제도상 문제나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공동사업의 중단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

1. 「사업중단」 사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다. 회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당사 공동사업 중단시를 대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공동사업의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와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중단사태시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할 독립적 제3자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원리금, 상환금, 투자금의 배분과 장부의 작성
2. 전 호의 대금에 대한 지급
3. 예치기관에 대한 송금 지시
4.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5. 전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요청
6. 전5호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권한
7. 전6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지, 공지, 공시, 고시
8. 위탁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그럼에도 국내에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공동사업이라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당사의 준비가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서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모델 관련 위험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는 다수 있으나 국내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사업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술품을 취득·보관·관리·매각(공모총액 대비 100%이상인 경우)하고 그 처분에 따르는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모집 또는 매출된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사례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각 투자계약증권 발행시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당사의 사업모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국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않은 모델로서,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예측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미승계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투자자와 당사 간 체결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26%, 당좌비율 59%, 부채비율 122% 등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요약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당사의 당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2020년부터 2022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단위: 원

과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2020.12.31)
자산				
1. 유동자산	2,060,151,102	1,485,329,469	353,576,124	159,237,205
현금및현금성자산	848,049,767	353,189,139	299,902,815	96,913,691
기타유동자산	1,212,101,335	1,132,140,330	53,673,309	62,323,514
2. 비유동자산	906,535,960	1,054,713,908	551,833,642	153,384,874
자산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부채				
1. 유동부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2. 비유동부채	-	-	-	-
부채총계	1,630,487,604	42,073,501	591,406,914	181,230,099
자본				
1. 자본금	1,132,501,500	1,070,703,100	55,833,000	52,499,000
2. 자본잉여금	5,640,010,609	4,507,004,840	1,522,863,590	1,026,637,590
3. 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1,264,693,738	947,744,610
자본총계	1,336,199,458	2,497,969,876	314,002,852	131,391,980
부채및자본총계	2,966,687,062	2,540,043,377	905,409,766	312,622,079

과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3.12.31)	(2022.12.31)	(2021.12.31)	(2020.12.31)
매출	77,728,954	395,825,636	318,977,462	105,250,064
영업이익(손실)	(2,437,739,124)	(1,852,233,748)	(331,247,933)	(252,984,956)
당기순이익(손실)	(2,356,574,587)	(1,815,044,326)	(316,949,128)	(273,271,567)
이자비용	9,237,704	18,261,638	2,249,705	20,433,537

한편, 당사의 **2024년 2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연간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2백만원, 영업손실 347백만원**입니다.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유동비율	126%	3530%	60%	88%
당좌비율	59%	3530%	60%	88%
부채비율	122%	2%	188%	138%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또한 당기의 사업재편안에 대한 제재 면제에 따라, 사업재개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상, 당사의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신용 등급 등의 하락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1,630,487,604원은 당사의 기초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일상적 운전자금에 속하는 미지급비용, 당기에 매각된 미술품들의 판매대금으로서 종전 공동구매 구매자들에게 분배될 예수금,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단기대여금 653백만원은 당사의 종전 자회사였던 (주)엡플렉스에 대여되었으나 2023년말 현재 모두 변제되었고 당사는 2023년 3월 경 해당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말 현재 당사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 약39백만원은 결산시점에서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에 따르는 미술품 보관료나 임원 보험 등 당사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을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말 당사 당좌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미수금 420백만원은 당사가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미정산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투자자 예치금 등을 외부 에스프로 제공 기관인 (주)나이스페이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2023년말 현재 당사가 투자자 예치금 등을 모두 반환한 이상 같은 목적의 미수금은 없습니다. 2023년말 현재 당사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 140백만원은 위 미수금 420백만원 중 당사가 참여한 공동구매나 수수료 등으로, 당사가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사업만을 영위하는 이상 향후로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등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고,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하였던 기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 체계 등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잉여금이 결손금을 초과하고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우선주 주주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회사인 아트폼스(주)와 아트네이티브(주) 으로부터 2023년말 현재 합계 3,500백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받아 유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자산의 적절한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빠르게 결손금을 해소하며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말 기준 당사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1개월동안 매출액 1,152백만원, 영업손실 347백만원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따라 빠르게 재무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 청약계좌를 통하고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100%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 대금이 미납입될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 미달된 실권주에 대해 전액 당사가 인수하게 되며, 이 때 당사는 매우 양호한 수준

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도산 위험 발생시에는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된 미술품은 회사의 재산과 별개로 취급되어 투자자는 보호되며,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 (주)케이옥션의 청산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신용 등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회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이행, 공시 등의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위 구매고객 이탈 시 매출 하락 위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있거나, 고가 미술시장의 불황이 도래하여 미술품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종전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부터 당사와 거래관계를 이어온 주요 투자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사가 약 1년 가까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금융규제당국에 대한 사업구조재편 완료 보고를 거쳐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당사의 서비스에서 탈퇴한 회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참여하는 고객들은 소액의 투자자이자 미술품에 대한 선호라는 특수한 선호도를 보이므로, 당사는 주요 고객 이탈로 인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위 구매고객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술품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한 미술품 공급 축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물색과 취득에 필요한 능력(미술품 소싱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주)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미술품 소싱을 포함하는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술품 소싱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미술품 시장은 그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 작고한 작가의 경우 작품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일반 산업군의 제품 및 상품과는 달리 미술품의 양과 품질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술품의 공급 측면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존 작가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공급과 기존 미술품 보유자가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입니다.

작가의 작품 활동은 매 해 작가의 작품활동에 따라 출품되는 작품의 수가 다르며, 일정하지 않아, 시장의 수요에 맞춘 공급이 어렵습니다. 보유자의 판매로 인한 공급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보관하고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발행사인 당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미술품 소장, 관리, 처분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주)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미술품 소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를 2022년 3년부터 구축하여 미술품 소장이나 관리, 처분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와 케이옥션과의 업무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부 II. 사업의 내용 3.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과 당사의 경쟁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품의 소장, 관리, 처분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 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장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장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축소 위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의 진입이 늘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술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로 인해 국내 미술품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역시, 소액 투자와 새로운 유형의 투자에 관심 있는 MZ세대의 유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향후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금융규제당국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시도하려는 업체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금융규제당국의 실사 등을 수검한 업체는 4개이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수반되는 투

자자 보호장치의 완비 등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신생 업체의 진입이 단기간에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유입되는 경쟁업체들로 인하여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자산 거래 및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

고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 또는 매출이 계속되는데 비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은 지연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투입되는 당사 자금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 받고, 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또 당사는 투자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고가의 대규모 작품인 경우,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기까지 해당 자금의 활용이 어렵게 됩니다.

한편,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 그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 작품을 원하는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경기 변동에 따라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자산가들에게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산 매각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축소위험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 인력 유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물색한 후, 잠재적인 판매자 및 구매자와의 관계를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으로 구조화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로 일반투자자를 공동사업 투자자로 유치하는 임직원들의 능력이 회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그 인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종	비고	근속연수 (개월)
투자자 보호인력 (공동사업 관리 총괄)	도현순 (1967)	대표이사	1. 한국은행 4.6년(외화자금과) 2. 리만브라더스 홍콩 0.5년 3. 페레그린증권 홍콩/서울 3.8년 4. 맥킨지 서울 1.9년 5. 리만브라더스 서울 6.9년 6. 주식회사 케이옥션 14.6년(현재/ 대표이사) 7.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대표이사)	-	책임담당자	10
투자자 보호인력 (준법지원담당임원)	주재승 (1962)	사내이사/ 준법지원담당임원 전무	1. NH농협금융지주 및 NH농협은행 38년(디지털금융부부장 부행장) 2. ㈜농협캐미컬 1년(전무이사) 3. 라온시큐어(주) 1년(부사장) 4. 라온화이트햇(주) 2.8년(부사장) 5. ㈜투게더아트 0.4년 (현재/ 사내이사 전무)	-	-	5
투자자 보호인력 (기초자산 검증)	김보름 (1979)	사외이사	1. 서울문화재단 11.3년(문화사업팀장) 2. 세종대학교 3년(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3. 한성대학교 1년(현재/문학문화컨텐츠학과 조교수) 4. ㈜투게더아트 0.4년(현재/ 사외이사)	AAA	(주1)	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지승현 (1993)	사외이사	1. 삼정회계법인 4년(IM4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1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년 (Deal 1본부 공인회계사) 4. KT&G 1.6년(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5. ㈜로보에테크놀로지 0.7년(현재/ 재무기획담당) 6. ㈜투게더아트 0.4년(현재/ 사외이사)	공인회계사	-	5
투자자 보호인력 (감사)	박준원 (1983)	감사	1. 안진회계법인 8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4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LG 에너지솔루션 1.6년(정도경영팀) 4. 에안회계법인 1.4년(현재/대표자 공인회계사) 5. ㈜투게더아트 0.4년(현재/ 감사)	공인회계사	-	9
투자자 보호 인력 (사업운영담당임원)	이관재 (1965)	사업운영담당임원 전무	1. 금융감독원 33.8년(조사기획국, 기업공시국 등)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사업운영담당임원 전무)	-	-	9
투자자 보호 인력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백승한 (1982)	매니저(IT팀장)	1. SK C&C 주식회사 4.1년 (물류서비스운영팀) 2. SK 주식회사 0.5년 3. 주식회사 미드레이트 4.9년(개발팀)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IT팀장 매니저)	-	-	27
투자자 보호 인력 (이해관계인 거래 통제/준법지원)	문대영 (1982)	매니저	1. 변호사문대영법률사무소 8년(변호사) 2. ㈜케이옥션 1년(법무팀장)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4.9년(현재/이사) 4.(주)투게더아트 0.8년(현재/ ISC팀 매니저)	변호사 /CAMS /투자자산운용사	(주2)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승형 (1983)	매니저(O&CS팀장)	1.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1년 (해외계약팀) 2. 주식회사 엔에이치리사이텍컴퍼니 3년 (해외계약팀) 3. 주식회사 미드레이트 4.5년(운영총괄팀) 4. 한국피투피(P2P)금융협회 1년(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핀테크블록체인학회 1.8년(현재/ 부회장) 6.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0.4년(현재/ 전문위원) 7.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O&CS팀장 매니저)	-	책임담당자	27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공시)	신규식 (1984)	매니저(ISC팀장)	1.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4.7년(플랜트계약팀, 해외계약팀, 토건계약팀)2. 주식회사 미드레이트 4.1년(운영총괄팀) 3.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ISC팀장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및 투자자 명부 관리)	이유정 (1992)	매니저	1. 주식회사 미드레이트 4.4년(경영지원팀)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경영지원부문)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홍보)	손이천 (1976)	매니저	1. 주식회사 인큐브테크 2.4년(마케팅/홍보/기획) 2. 다올갤러리&아트컨설팅 2.4년(Art Advisor) 3. 주식회사 케이옥션 14.3년(현재/ 마케팅(IR)그룹장)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매니저)	-	-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지현 (1983)	매니저	1.주식회사 케이옥션 14.3년(현재/ 경매팀 팀장)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매니저)	-	-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윤희재 (1990)	매니저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Arthur Ross Gallery 1.2년(연구) 2. Keystone Education Ltd.(서울/충북) 3.2년(건설팀, 마케팅) 3. 프리랜서 2.3년(전시자료 번역, 유학컨설팅) 4. 케이옥션 3.8년(현재/경매팀 P파트)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6년(현재/ ISC팀 매니저)	-	-	7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세라 (1989)	매니저	1. 제일메디칼 주식회사 2.2년(무역관리부) 2. 주식회사 메타브랜딩 1.7년(경영지원실) 3. 주식회사 참피온 1.7년(재무팀) 4. 주식회사 케이옥션 3.5년(현재/ 재무그룹 회계팀)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6년(현재/ 재무팀 매니저)	-	-	7

AAA는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약자로 미국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통일 표준(USPAP: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에 의하여 미술품
(주1) 등 동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AAA에 회원자격(membership)을 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CAMS는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에 주관하는
(주2) 시험에 합격하고 ACAMS 회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를 말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적절한 평가와 물색, 취득, 처분을 위하여는 미술품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미술품 거래에 관한 노하우를 갖춘 미술품 경매회사 경력 또는 미술 전공자, 사업구조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나 준법 감시 전문가, 공인회계사, 공시 및 증권 분야에서 전문가, 투자자 보호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등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확장에 따르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비하여 인력을 선제적으로 충원하여 왔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핵심 인재 채용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다양한 인재 유치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세 내역은 「제2부 VII. 임원의 보수 2. 임원의 보수 등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이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인력 유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위험 및 공동사업 운영자의 겸영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는 과거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해 본 경험이 충분치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에 따르는 손익을 배분해 본 경험 역시 없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운영이 검증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공동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구조는 실무적으로 사례가 충분치 않으며,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지속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 사업성이나 법제상 차이 등으로 완전히 당사와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증권신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 그에 기한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영위하며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노력할 뿐, 미술품 렌탈(대여)업 또는 미술품과 관련된 대부업 등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술품에 대하여 공유 지분권을 기초로 하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당사가, 점유로 그 소유권 이전이 표상되는 동산인 미술품에 관하여, 점유 이전을 수반할 수 있는 미술품 렌탈업 또는 역시 미술품의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기초자산의 혼장 가능성을 야기하는 미술품 양도담보·근질권 설정을 수반하는 대부업을 겸영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동사업의 운영 외에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미술품의 점유를 전제나 기초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이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계약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가 외부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의 목적인 공동사업의 적법성,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투자계약에 비추어 진실한지와 정확한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그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계약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산의 위치와 주요 변경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weshareart.com>)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2023년 기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향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 또는 반기 검토 보고서나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를 각 첨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을 위하여 미술관 보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합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준법지원담당임원을 사내이사로 두어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이 담당하는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며, 대표이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기초자산의 선정,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사후관리에 있어 투자자보호 관련 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내부점검 등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자체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외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당사가 마련한 체계의 적절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의 주된 운영자가 되며,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대상자의 재무상황과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을 고려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고려하고, ②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수료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하며, ③ 거래 유형(미술품 전시 판매 또는 경매 판매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의 매각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을 투자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사업 참여자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선정과 전문가인 제3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공동사업 참여자 상호, 공동사업 참여자가 위탁 등으로 분담하는 공동사업의 내용,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관계(지분관계와 특수관계인 여부 포함), 공동사업 관련 경력(내용 및 기간),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수, 수수료 기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옥션을 미술품 보관에 있어서의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① 케이옥션은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서울옥션과 더불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로 미술품 시장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으며, ② 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는 미술품 전문 수장고로 24시간 CCTV와 미술품 보호를 위한 가스 소방 설비, 방화 철문, 각 호실별로 불연소재로 구획된 격벽, 항온항습기, 미술품 입출고를 위한 K-Office 지원이나 미술품 보험 등 미술품 보관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재단이나 국내외 주요 컬렉터가 이용하고 있고, 당사 역시 케이옥션의 다른 중요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약 300점 이상의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③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초자산 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케이옥션을 공동사업 참여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기초자산의 판매시에는 케이옥션을 포함하여 소더비 등의 해외 경매회사나 갤러리 등까지 기초자산 판매를 위한 최적의 판매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의 전시 외에는 별도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미술품 렌탈업/대여업을 운영하거나 겸영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거나 당사가 제시한 기준이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에 부족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소송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아닌 공동사업 참여자가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 참여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제기나 분쟁의 발생은 그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소송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보증을 매매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고,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팩트 시트(Fact Sheet)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비한 공제와, 임원책임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은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미술품 보험에 부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전문가인 사외이사와 역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분쟁의 해결과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공동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카. 공동사업자의 도산 관련 위험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당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한 독립적 제3자와의 청산 업무 관련 위탁계약, 청산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마련, 동산인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등을 통하여 도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도산 위험은 모든 사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계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을 청약 기간 내에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 보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도산 위험에 대비합니다. 당사는 도산을 포함하는 당사의 사업중단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독립적 제3자로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계속적 보관 및 처분노력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과 사업중단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로서 소유권의 이전이 표창되는 동산으로서 미술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당사가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함으로써, 당사의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도 당사 소유 재산과 기초자산이 혼장될 위험 또는 당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산채단에 포함되는 위험을 관리합니다.

특히 당사는 불연 소재와 방화문으로 구획된 케이아트스페이스의 개별 호실을 특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어서 케이옥션의 다른 미술품들과 혼장될 위험이 없으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공동구매 미술품 외에 투자계약증권 발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다른 자산과 혼장될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이용하는 호실은 등록된 인원만이 출입하고, 출입하는 인원의 기록 및 미술품의 입출고 기록은 모두 K-Office에 보관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의 호실별 구획 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호실별 구획 분리



케이아트스페이스 구획분리(1)



케이아트스페이스 구획분리(2)

위와 같이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은 2022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로서 체계적인 위험 관리 정책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내재된 도산 위험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 역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동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영위나 공동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공동사업의 운영·성공·실패·청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투자계약증권의 시장가격이나 공동사업의 청산가치가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수리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공동사업의 투자계약서, 당사 반기 감사보고서,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의견서, 기초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기초자산에 대한 보증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당사의 확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해당 정보를 모두 참조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의 수리 과정에서 정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설명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정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투자계약증권 청약 시 일반청약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발행인인 당사의 현황, 기초자산의 상세한 내역, 투자계약의 조건과 중요한 권리 의무, 발행인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와 의무,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바.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공모가격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희망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약 90.95%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5%를 차지합니다. 발행인은 발행제비용을 자신의 위험으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발행인의 이익으로 삼으므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며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금액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의 평가의견서를 통하여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공모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에 필요한 금액과 발행에 있어 부담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비용, 외부전문가들에게 지출하는 비용, 법률검토비용,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래의 미술품 보관비용이나 보험료, 기타의 비용 등을 조사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액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AV)는 약 90.95%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5%를 차지합니다. 당사는 발행인 매매차익의 100%를 예비비로 삼아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분쟁 처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유보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상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청산시 남은 비용은 당사로 귀속되며 부족한 경우 당사가 추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하

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금액(원)	비고
컨디션리포트 발급비	8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디션 체크와 컨디션리포트 발급 비용
작품보증서 발행비	700,000	전문기관
전시 및 운송비	12,000,000	미술품 해외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항공 운송 기준, 회당 500만원 가정) 2회 + 미술품 국내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미술품 운송용 무진동 탑차 편도 1회당 20만원 가정) 10회
작품관리비(액자, 보존처리, 촬영 등)	5,0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액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등
뷰잉 및 전시비용	10,000,000	청약 전 프리뷰를 위한 인력배치 및 인쇄비용을 포함한 전시비용 일체, 청약 종료 후 전시 부대비용, 작품 관람을 위한 인력배치 비용 등
기타비용	8,730,679	기초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기타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합계	37,230,679	

한편, 공동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이나 수수료의 지출은 투자자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우선 부담한 후, 기초자산의 매각 후 그 매각대금에서 공제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청산으로 인한 청산손익이 본 공모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비율에 따라 투자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수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청산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원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당사의 공모가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어서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 등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장래 평가나 청산손익에 있어 공동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장래 지출될 금액이 현재의 공모가 산정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예측진술의 포함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 환경, 공동사업의 운영 경과,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이 포함된 시장의 추세나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의 실제 실적이나 공동사업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가치,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운영 또는 청산 계획, 기초자산의 향후 가치,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 계획 등 공동사업과 관련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 당사가 발표·공시한 당사 또는 공동사업의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 당사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 기초자산의 생산자인 작가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평판 또는 거래량, 거래가격 추이 등)
- 기초자산이 포함된 미술품의 판매 시장 또는 미술품 경매 시장의 상황 및 전망
- COVID-19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감염병
-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 향후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
-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 기초자산에 내재된 위험(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당사 기업 정보 공시서류와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시서류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위축, 미술품 판매 시장 또는 미술품 경매 시장의 거래액 감소, 환율 변동으로 해외 미술품 시장에의 접근성 약화, 기초자산의 생산자인 작가의 평판 위험, 기초자산의 거래량 매출액 감소, 공동 사업 운영 중의 비용 증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당사 또는 공동사업의 추정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반기 감사보고서,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의견서, 기초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기초자산에 대한 보증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당사의 확인서 등이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일반청약자에게 증권을 배정함에 있어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배정, 추첨 배정, 균등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하나 청약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 1인의 본 증권 청약한도는 3,000만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역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위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준용하여 일반청약자로부터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되,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정 방식을 달리 합니다.

또한,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의 동의가 없는 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300주를 초과하는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청약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청약된 증권 수량을 모두 배정하나,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균등 배정 방식, 비례 배정 방식, 추첨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합니다.

당사는 위에서 서술한 증권의 배정방식에 따라 배정한 결과 모집예정증권 총액에 미달하는 증권을 배정 받거나, 증권의 청약에 일반투자자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식 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 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매각시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 참여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원칙과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통제 규정, 분쟁해결기구를 두는 등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공동사업의 수행과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 보유로 인하여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당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당기
최상위지배기업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중간지배기업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지배기업	(주)케이옥션
종속기업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아트폼스(주) 등
기타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그리고 당사의 관계회사를 기타 관계회사까지 포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업종
상장	1	주식회사 케이옥션	도현순	2005. 9. 15.	미술품 경매
		-			
비상장	8	투게더아트 주식회사	도현순	2018. 8. 1.	기타 상품 중개업
		티에이매니지먼트 유한회사	강수진	2015. 6. 18	경영자문
		티에이파트너 유한회사	강수진	2015. 6. 18	경영컨설팅
		티에이어드바이저 유한회사	강수진	2010. 12. 6	사업구조자문
		아트네이티브(주)	이지현	2015. 4. 8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아르떼케이(주)	김형준	2017. 1. 4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아트폼스(주)	이상진	2018. 6. 8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아트큐브플러스㈜	강수진	2013. 9. 5	소매업

당기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기타비용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54,585
아트폼스(주)	기타	9,238
합계		63,823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에 잔존한 임직원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 100,000,000원은 임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가게 대여금입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주임종단기채권	2022	상환시	-	-	100,000	-	100,000
아트폼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단기차입금	2023	1년	4.6%	-	1,500,000	-	1,500,000
합계						-	1,600,000	-	1,600,000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선급비용	임차보증금	미지급비용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12,914	60,000	-
아트폼스(주)	기타	-	-	9,238
합계		12,914	60,000	9,238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또는 상품·서비스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약관에 의한 거래인 경우 해당 약관을 준수하고,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 주요 규정]

구분	내용

제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1억원 이상의 매출/매입거래 2. 건당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자산의 구입/처분 3.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 4. 연구개발의 이전 5. 면허 약정 6. 건당 1억원 이상의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복리후생(주거 안정,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를 제외한다] 7. 담보 또는 보증 8. 경영위탁계약 9. 기타 위와 유사한 정도의 거래
제5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7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중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약관 또는 약관과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응찰·낙찰·위탁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2.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약관 또는 약관에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3. 기타 상관습이나 상대방인 관계회사가 전 2호에 의한 거래로 보는 거래(경매약관, 정형화된 판매계약서, 임직원 복리후생에 따르는 대여금, 파트너 수수료, 할인이나 우대 정책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자 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한 통제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를 불요로 하나, 이러한 동등 또는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래 당시나 거래 전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것이어서 결국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기초자산에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결의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의 관계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이해관계자 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거래로 이사회를 생략한다 하여도 당사의 거래 상대방이 관계회사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계약을 계약의 중요한 조건과 금액을 동일하게 당사와 체결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기초자산의 보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관계회사인 아트폼스(주)와의 사이에서 미술품 구매대금으로 금 1,500,000,000원, 아트네이티브(주)와의 사이에서 미술품 구매대금으로 금 2,000,000,000원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

초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당사 최대주주가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사 최대주주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탁하여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소명하여 이사회에 통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당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금액을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이 때, 당사는 발행제비용 중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항목들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발행제비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당사의 이익으로 하는 공모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는 당사와 계좌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에 당사 투자계약증권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그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청약을 수령하거나 당사를 위하여 청약금, 청약증거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예치금도 대신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청약전용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한 금원을 청약을 위하여 당사가 특별히 개설한 집금계좌에 납입하고, 당사는 청약기간이 종료되어 투자자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한 후,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계약에 기재한 바에 따라 사용하거나 투자자에게 환불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투자자로부터 납입받는 예치금 성격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청약기간 중 당사의 도산위험과 절연하고 투자자 명부 확정 후의 적법한 자금 사용과 투자자에 대한 환불 정책 이행을 위하여, 각일에 청약증거금을 수탁사인 NH투자증권에 특정금전신탁합니다. 당사와 수탁사 사이에서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투자자 명부 확정일에 해지되고, 당사가 계좌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금융투자업자와의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당사 운영자금 계좌, 투자자 환불 계좌로 나뉘어 출금됩니다.

기초자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기초자산을 선매입하였기, 기초자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따르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제비용 중 확정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당사의 이름으로 계약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는 그 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사가 그러한 매매대금 또는 비용의 지급 의무를 공모자금의 사용용도로 기재된 내역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금전의 지출을 본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자금을 제외한 발행제비용 중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따르는 분담금, 사서인증에 따르는 수수료와 비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는 비용,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기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고 그 남은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르는 당사의 이익으로 삼습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료와 보험료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본 증권신고서의 정정 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검토비용의 증가 역시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공모 자금 사용목적의 상세 내역은 「제1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모자금의 보관과 사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공모자금의 보관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 있어 투자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금번 공모로 조달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전산 시스템 등 지원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증권화나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발행,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등이 법제화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4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3)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함

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 「전자등록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7호) 제1-3조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13일자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나 양식의 사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활성화된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증권의 양도와 양수 방법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양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의 양수도에 따르는 승낙에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따르는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확정일자에 관한 비용은 양수도 당사자인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초자산의 처분과 공동사업의 청산으로 인한 기대이익 이외에 증권의 유통 가능성은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전매 방식 제한과 증권의 환금성 저하가 곧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특정 작가 1인의 단일 미술품을 대상으로 기초자산을 취득·보관·관리·매각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인 작가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과 그에 대한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아래 기초자산에 관한 공동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작가명	조지 콘도(George Condo, b. 1957~)
작품명	The Horizon of Insanity
재질	캔버스에 오일(oil on canvas)
작품 크기	152.4 x 121.9 cm
제작년도	2001년
기타	작품 후면에 작가 서명 및 제목 표기

위 기초자산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에 해당합니다. 위 기초자산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3조에서 말하는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예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 The Horizon of Insanity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존재적 초상화 (Existential Portraits) 연작 중 한 점으로, 초상화라는 전통적인 회화 장르와 허구의 초현실주의적인 캐릭터들을 결합함으로써 인물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그러진 표정의 캐릭터는 형태가 왜곡되고 비틀려 있으며, 인물의 구도와 배경과의 조합은 유럽의 고전 초상 회화 요소를 담으면서도 콘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초현실적인 형태의 기괴한 형상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여과 없이 투영하며, 동시에 미묘한 유쾌함과 장난스러움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요소들을 가상의 캐릭터에 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아름다움 대한 개념과 초현실주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도의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1) 거래 사례 선정 기준 가) 작가 및 재질 : 기초자산과 동일한 작가(George Condo,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 중 공개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작품 나) 주제와 구성 : 주제, 기법, 표현 방식, 크기 등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 기초자산에서만 발견되는 유사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다만, 거래사례의 시장성을 확인하거나 주제와 구성에 대한 대조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사례들을 대조군으로 추가 라) 해외나 국내에서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에 대한 증권 발행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그 발행 사례에 포함된 거래 사례들이나 주된 기재사항들 마) 동일한 작가와 재질, 주제와 구성을 가진 미술품으로 평가일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10년간 ARTPRICE.COM과 ARTNET.COM에 의하여 공개된 거래사례들

당사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4년 1월 부터 2023년 12월까지 동일 작가(George Condo)의 낙찰 작품 511점을 1,700만점 이상의 해외 미술품 거래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인 Artprice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11건	934,951,942 (1,028,000,000)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 (2014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의 거래사례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
	6건	1,037,929,764~ 1,135,305,898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외부 평가기관인 (주)제일감정평가, 한국기업평가(주) 감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예술창작품인 기초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된 거래 사례는 유사한 작품일 뿐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 가격은 아니고, 분석의 방식이나 심미적 차이에 따라 당사 뿐 아니라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래사례를 판단하는 안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평가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주)제일감정평가법인	533건	1,0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2건(최종 1건)		
한국기업평가(주)	645건	1,057,218,437~1,110,520,784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 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7건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진위 소견		- 1982년부터 미술품 감정 시행, 국공립 기관 및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감정 - 미술품 감정위원 4인 참여

당사의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II. 9.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초자산에 관한 입수 가능한 최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거래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공모총액을 산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창작품인 기초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된 거래사례는 유사한 작품일뿐 기초

자산 자체의 거래 가격은 아니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조사한 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보장할 통일적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자산인 미술품 거래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기초자산이 유통되고 현금화되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기초자산의 청산 가능성이나 청산시기, 또는 청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술품 시장의 회복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가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 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가능성과 수익률, 공동사업의 청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과거 미술품 거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미술품의 시장의 범위, 수요층에 따라서도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는 미술품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미술품을 거래되는 시장은 주로 1차 시장으로 불리는 미술품 판매시장으로 화랑 또는 아트페어가 있고, 2차 시장으로 불리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와 같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이 기존 미술품 시장에 참여하여 상당한 인지도와 시장 참여도를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사는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 중에서 먼저 어느 시장에 있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것인지 혹은 다수의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기초자산이 미술품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는 가능성, 즉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공동사업의 청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로 나타납니다. 미술품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과거 경매 거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시행하는 미술품 시장 실태 조사에 대한 미술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응답, 그 외 한국시가감정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가 자발적 응답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일적이고 완결성 있는 시장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7월 26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나 시행령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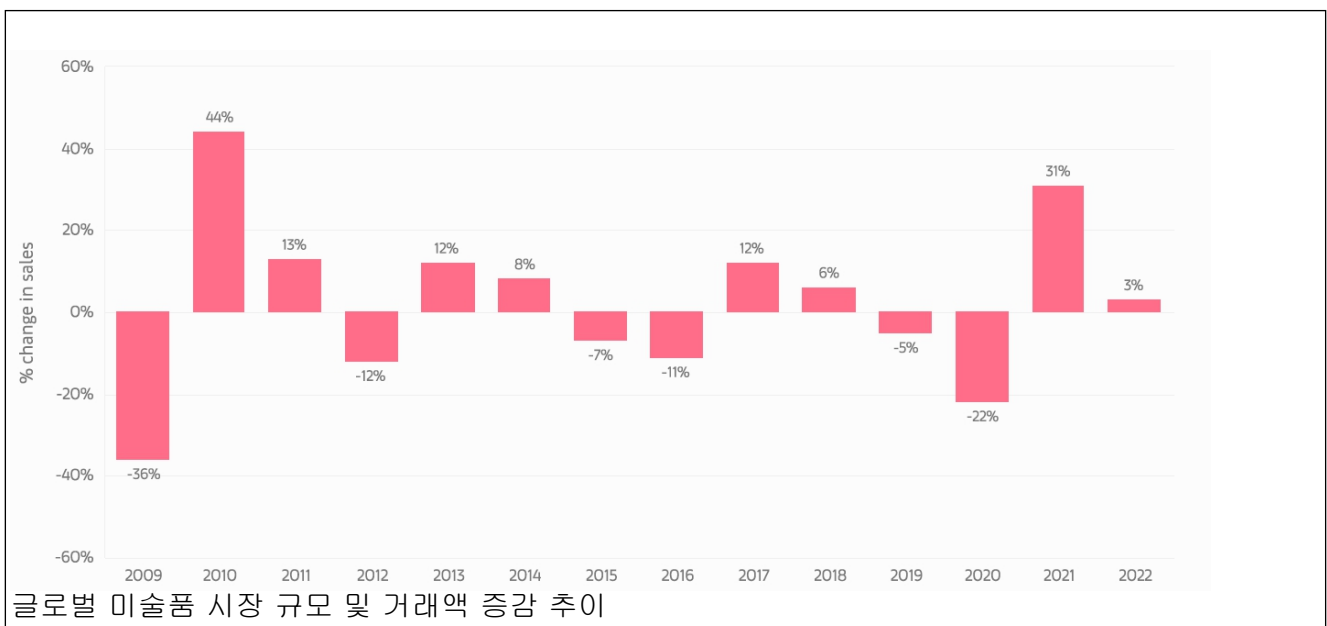
해외의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 UBS와 세계적 아트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이 매년 세계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딜로이트(Deloitte)나 기타 시장조사 업체, 소더비(Sotheby's)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세스 아트 인덱스(Mei & Moses Art Index) 등도 미술품 거래 시장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자료나 분

석이 제공될 수 있으나, 미술품 경매회사의 기록에 의존하는 거래 사례 이외에는 대부분 자발적 응답으로 작성된다는 한계점은 동일합니다.

이렇듯 자료의 신뢰성 한계를 전제하고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와 변동을 살펴보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거래시장은 먼저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Art Basel과 UBS가 발행한 The Art Market 2023에 따르면, 전체 미술품 시장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 시기에 급격한 시장 축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글로벌 미술품 시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년도 대비 역성장 하였습니다.

2008년 620억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미술품 시장은 2018년 11월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 395억달러로 감소하여 직전연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COVID-19 발생으로 2019년 644억달러 규모였던 미술시장은 2020년 503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22%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가 진정세인 2021년 및 2022년 글로벌 미술품 시장은 각각 31%와 3%의 성장을 보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 규모 및 거래액 증감 추이(직전연도와 비교)]



(출처: The-Art-Market-2023, UBS & Art basel)

미술품 경매 시장 또한 미술품 시장 및 경기흐름과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The Art Market에 따르면, 2008년 280억달러의 규모였던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09년 183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275억달러였던 시장은 2020년 210억달러로 23.6%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은 다시 2021년 312억달러, 2022년 306억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미술품 시장 침체 이후 2010년 미술품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도 거래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OVID-19 이후의 시장 또한 2020년 503억달러에서 2021년 659억달러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글로벌 미술품 판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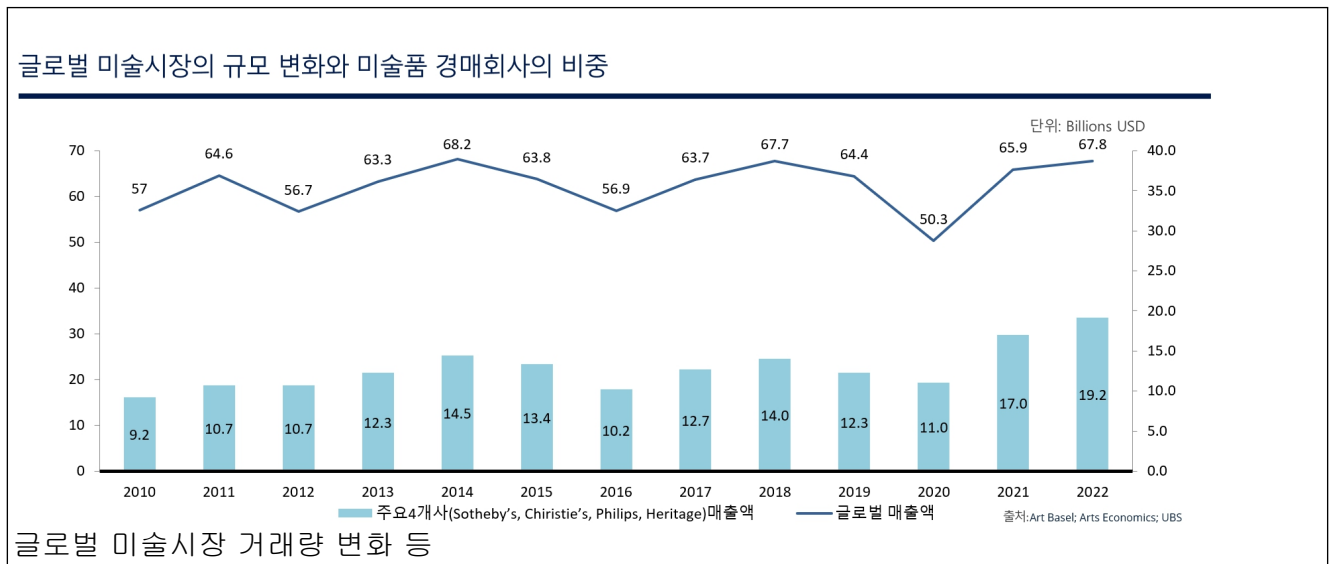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	57.0	64.6	56.7	63.3	68.2	63.8	56.9	63.7	67.7	64.4	50.3	65.9	67.8

(출처: The-Art-Market-2023, UBS & Art basel, Value 기준)

즉,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미술시장의 규모 변화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 거래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나, 곧 빠르게 회복하여 6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술 시장 중에서 미술품 경매회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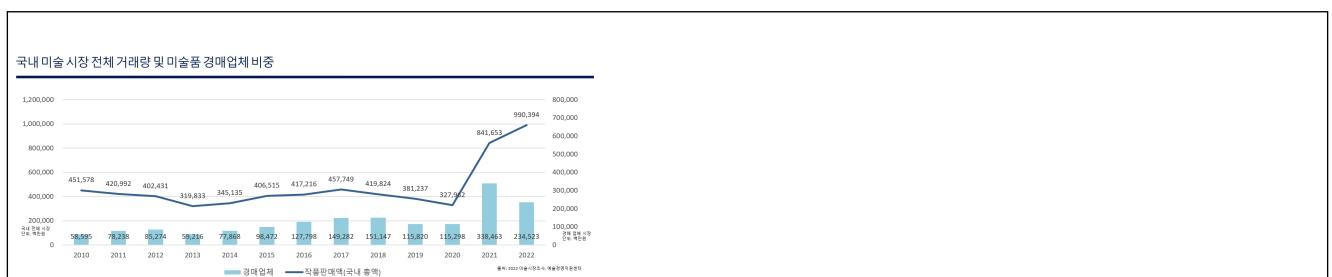
글로벌 미술시장의 규모 변화와 미술품 경매회사 비중



(출처: The-Art-Market-2023, UBS & Art basel, 자체가공)

국내 미술 시장 역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기 변동에 따라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다, 2021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022년에도 상승세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미술품 경매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이 있으나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 전체 거래량과 미술품 경매업체의 비중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미술시장조사, 자체가공)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20년 COVID-19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26.2% 감소하였다가 2021년도에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국내 미술품 낙찰총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
케이옥션	72,088	56,952	(21%)	50,607	(11%)	136,520	170%
서울옥션	112,363	80,619	(28%)	43,228	(46%)	158,544	267%
기타	15,605	16,781	8%	20,111	20%	29,148	45%
합계	200,056	154,351	(23%)	113,946	(26%)	324,211	185%

(출처: K-ART Market, 연도별 경매시장 분석)

(주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며, 2018년도는 2017년 자료의 부재로 증감률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2 미술시장조사」 자료에서는

(주2) 2021년 12월 말까지의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전체 낙찰액을 약 3,354억원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곧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규모가 회복하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세스 아트 인덱스는 1950년을 1로 보았을 때, 세계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가 2021년까지 연 평균 8.5%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The Art Market 2023에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계 미술품 거래시장이 2009년의 약 33억 달러에서 2019년 40.5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하였다가 다시 2020년 31.4억 달러, 2022년에는 37.8억달러로 상승하여 시장의 회복가능성과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은 COVID-19 이후 대중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2021년 약 1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에는 걸쳐 시장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금번 공모를 포함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여 미술품 전체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미술품 시장의 수요자 다변화로 국내 미술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미술 전문가로서의 소견 제시,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검토하여 줄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용역범위와 주요 분석 사항들

외부평가기관명	용역범위	주요 분석 사항들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기초자산 감정평가	-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조사 - 기초자산 가액의 감정평가액 산정
한국기업평가(주)	기초자산 가치검증	-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조사 - 기초자산 가치검증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기초자산 진위소견	- 기초자산 진위소견

외부평가기관의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II. 9.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및 본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외부평가기관의검토의견」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의 방법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초자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세계적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by's)로부터 프라이빗 세일의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추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처분의 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경매 방식	프라이빗 세일 방식

내용	- 소장자의 미술품을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위탁 받아 일정기간 전시한 후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공개된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때, 경매회사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자를 경매사(auctioneer)라고 하며, 경매에 응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bidding), 경매에 응하는 사람을 응찰자 또는 입찰자(bidder)라고 합니다. 응찰자가 경매에 응하는 가격은 응찰가 또는 호가(bidding price)이며, 각 경매가 이루어지는 미술품은 '랏'(Lot)이라고 합니다. - 경매회사는 매 랏의 미술품에 경매를 시작하는 추정가(estimate)를 제공하고 경매사는 낮은 추정가(low estimate)부터 호가 단위(bidding increment)에 따라 점점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응찰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랏에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랏의 미술품은 유찰이 되나, 여러 명의 응찰자가 계속하여 호가 단위를 높여 가면 경매사가 최고가에 응찰한 응찰자가 낙찰자(winning bidder)로 결정합니다. 만약 같은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호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 전에 서면 응찰(written bidding)을 제시한 응찰자를 1순위로 합니다. - 미술품 경매회사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미술품을 인도하고, 위탁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의 전시, 보관, 신뢰와 보증의 제공, 대금의 수령과 지급, 경매의 진행 등에 걸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이처럼 미술품 경매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지기는 하나, 대중에게 공개되고 여러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가격이 보다 더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술품의 경매가 대면 또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완전히 동일한 작품이 있기 힘든 미술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대금(hammer price) 이외에 미술품 경매회사에 지급되는 구매수수료(buyer's premium)나 위탁수수료(seller's premium)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 위탁자가 미술품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공개 경매에서 유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하여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산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세일 방식은 미술품 경매와는 달리, 응찰자 사이에서의 호가 경쟁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구매 희망자가 검토하고, 그 가격을 받아 들이거나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또는 판매 희망자가 작품가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경매를 위한 위탁수수료나 낙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적절한 시세를 모르는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미술품의 진위나 미술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컨디션, 유통 경로(provenance), 색상, 그 외 여러 요소 등에 대한 판단이 미술품 경매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 시장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회복의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미술품 경매회사와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등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반의 계획을 세워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거래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미술품의 매각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또는 심미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미술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미술품거래시장에서의 실제 수요층이 한정될 수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미술품 시장 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한정된 미술품 시장 내에서의 수요층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전에 이러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과 그 유동성의 증가 또는 감소, 과거 거래 데이터 신뢰도의 한계, 시장과 수요층이 폭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에 따르는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하며,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발행제비용 등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거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는 주로 국내 또는 국외의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실패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패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상품 또는 제품과는 달리 생산자인 작가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가법 등 정형화된 가격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미술품은 그 자체로 생산자가 단 하나만 제작하여 시장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어 그 가치가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자 의지와 사람의 가치 판단 척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품의 경매는,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매희망자(응찰자)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지가, 다른 구매희망자들보다 얼마나 더 크냐에 따라 최종 낙찰가액이 결정되고 그 낙찰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대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와 유사하게 미술품의 객관적 가격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동일한 작가에 대한 미술품 경매가격은 그 거래 사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유사한 작품에 대한 유의미한 거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 생산자인 작가의 약력,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품의 재질, 주제와 화풍, 보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동일 작가의 미술품에 대하여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거래사례들이나 국내에서 모집이 계획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거래사례들,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10년간의 공개된 거래사례 511건에 대하여 공개된 거래 가격, 거래량과 거래 가격들의 변동 추이, 단위가격(㎠/호)당 면적 등을 분석하여 내재가치를 산정하고, 그 내재가치에 비추어취득금액과 공모총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총액)(원)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11건	934,951,942 (1,028,000,000)
	6건	1,037,929,764~ 1,135,305,898

한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동산인 미술품의 소유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는 채권과 증권, 기타의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산의 가치 범위를 검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요약

평가기관	평가액(원)
(주)제일감정평가법인	1,090,000,000
한국기업평가(주)	1,057,218,437~1,110,520,784

이처럼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과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보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합니다. 하지만 당사의 기초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는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사례는 유사한 미술품에 관한 것일 뿐, 해당 미술품에 관한 거래가격이 아니며, 재판매시에도 그와 같은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에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거래사례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한 거래사례 분류법 혹은 분석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여러 요인들에 따라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제시하는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자산 가격의 입증에 관한 위험은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 기초자산인 미술품 투자에 있어 내재적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미술품의 위작 위험, 작품의 손상 위험, 분실 위험, 도난 위험 등 기초자산인 미술품 자체에 내재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유통되는 미술품의 대부분은 진품으로, 미술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화랑 및 경매회사들은 각자 나름의 진위 판별 기준 및 데이터 검증을 통해 위작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작품이 미술시장에 판매되어 미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미술품 시장에서는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작 논란 발생 시 국내 미술품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동 작품을 판매한 화랑 또는 경매회사는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청산 전까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나, 미술품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공동사업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동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전 매도인으로부터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보증서, 미술품의 유통경로와 상세한 설명을 담은 팩트 시트(Fact Sheet), 미술품의 손상여부 등 거래 시점에서의 작품 상태를 표시한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매도인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사와 더불어 매도인이 미술품의 진위에 대하여 판단한 절차까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가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부터 시작하여 당사와 관련되어 최근 3년 이내 위작으로 인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케이옥션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로서 1회 경매 시 수십 ~ 수백점의 작품이 판매되며, 경매 작품 중 위작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케이옥션을 선정하고, 케이옥션이 제공하는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술품 전문 수장고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주요 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펫,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보험한도 1,900억원)

케이옥션은 작품 입고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작품 감정을 진행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에 입고되는 작품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작품 감정 절차]

감정단계	감정 과정
입고진행	위탁 작품 수량 및 작품 이미지, 컨디션 확인
정보확인	작가정보, 작품명, 작품 카테고리, 재료, 사이즈 등 작품 정보 확인
리서치	진본성이 공인된 작품, 정확한 전시이력 및 문헌정보 확인되는 작품 정보 확인
내부감정	경매기록, 출처, 문헌 등 재확인, 작품 실사 후 진본 여부 확인
외부감정	외부 전문가 감정, 내부의견 전문가와 논의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케이옥션의 미술품 종합유통체계인 K-Office는 7,671명의 작가에 대하여 카테고리, 작가명 (영문/중문), 생년월일, 학력, 전시, 작가설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작가 DB와 작품의 표현법에 따라 15,798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총 3,746종의 작품 재료 또는 분류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의 진위에 대한 기록과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출판되거나 알려진 대부분의 미술 관련 지식정보를 누적시킨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72명의 주요 거래 미술 작가들에 대하여 7,057건의 서명 DB와 3,666종의 주요 미술 제작기법 및 재료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사는 경매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 이내 당사나 케이옥션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위작으로 인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미술품이 위작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위작의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술품의 손상·분실·도난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관련 손해를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사는 투자자 위험의 현실화나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적립하고,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증권 청약 누적잔액(당사가 종전 발행하여 청산되지 않은 미술품들을 포함합니다)의 5%를 적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총액을 합하여 누적잔액 7,916,330,000원에 대하여 5%에 해당하는 투자자보호기금 447,216,500원을 초과하는 453,546,000원(원금 기준, 이자가 추가되어 증가될 수 있습니다)을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금번 공모 후에는 공모총액의 0.3%에 해당하는

3,084,000원을 추가로 투자자보호기금에 적립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가증권 상세내역

고객성명 :	주식회사 두게더아트	발급일시 :	2024-02-28	11:48:24
계좌번호 :	207-01-887728	기준일자 :	2024-02-28	
상품유형	상품명	잔 고	기준가	평가금액(₩)
금전신탁	M099-001 두게더아트 MMT 1호	453,546,000		463,511,659

투자자보호기금 적립기준과 실제 적립액

금회 모집액(원)	종전 누적잔액(원)	합계(원)	적립기준(5%, 원)	실제적립액(원)	금회 추가 적립액(원)	추가 적립 후 투자자 보호기금(원)
1,028,000,000	7,916,330,000	8,944,330,000	447,216,500	463,511,659	3,084,000	466,595,659

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위험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내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인한 장기 보유 위험 및 투자계약증권 만기 연장 위험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 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이룬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시장 가치와 수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판매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이 자계약증권의 만기인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하게 되실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 연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청산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이룬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즉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하고, 기초자산의 관리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기초자산의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시장 가치로 처분하여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직접 처분 노력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을 비롯하여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기초자산 처분을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취할 수 있는 성과보수는 기초자산의 매각대금과 본 공모로 인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총 공모금액과의 차이에 연동되므로 당사의 영업이익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조기 청산에 연동되기도 합니다.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 중 일부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증권에 대하여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 청산을 위한 이해관계를 투자자와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당사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이 그 경제적 가치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선호도가 시장원리보다 구매자의 예술적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이 적시에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을 투자자 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것이나, 위에서 기재한 위험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년의 기간 동안 만기가 연장되어 최초 투자자 명부 확정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투자계약증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면,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가 1회에 한하여 갱신 확약에 따르는 갱신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합계 10년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 2개사[(주)서울옥션 및 (주)케이옥션]의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재고자산 변화 등을 기초로 추정한 해당 회사들의 미술품 재고자산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평균 보유기간(재고자산 회전을 일 단위로 변환)은 케이옥션이 약 519일, 서울옥션이 약 749일로 나타났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전체 146점의 평균 보유일수는 899일, 매각이 완료된 38점의 미술품 평균 보유기간은 약 478일이며, 매각되지 않은 미술품 108점의 평균 보유일수는 1,047일, 최장 보유기간은 1,947일입니다.

한편, 해외, 특히 미국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대표적 사업자의 경우, 기초자산의 처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위험

공동사업은 생산자이자 창작자인 작가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전 과정에서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작자이자 생산자인 작가에게 소유권과 다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기초자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와 제3항은 저작물인 미술품의 원본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저작물의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는 복제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작자이자 생산자인 작가에게 소유권과 다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기초자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작자이자 생산자인 작가에게 소유권과 다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기초자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저작권법 준수 방안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과 관련된 위험

미술품은 2027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대상("재판매보상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가능성은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제25조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매보상금은 동법 부칙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서는 그 요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매각이 2027년 7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매보상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금 미보장과 관련된 위험

본 공모에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회원에 대하여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거칠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 그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에게만 청약에 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니시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2등급 내지 5등급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투자자에게는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 전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와 투자계약은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의 처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이후 기초자산의 내재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 건 공모 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 기초자산의 내재가치, 투자계약의 청산손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증권의 시장가격이나 청산손익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되어 있는 본 공시서류 관련 사항과 당사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되어 있는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 관련 주요 사항들을 투자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공모를 통하여 취득한 증권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당사는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므로 동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 금액

구분	금액
기초자산 취득금액	934,951,942
발행제비용	93,048,058
모집 또는 매출 총액[(1)+(2)]	1,028,000,000

(주1)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상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금액(원)	산정근거
발행분담금	925,200	공모총액 대비 0.09%
자문 수수료(VAT 포함)	16,461,500	감정평가보고서, 법률검토의견서,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감정보고서
사서인증	1,200,000	공증인
예비비	37,230,679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전시, 분쟁 처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등을 위하여 유보된 예비비
발행인 매매차익	37,230,679	작품 선매입에 따른 발행인 매매차익
총계	93,048,058	

(주1)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보관기간 동안 미술품 보관료(보험료)를 당사의 부담으로 보관합니다.

(주2)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선매입하며,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우선 배정 받습니다. 또한, 당사는 청약 미달시 잔여 투자계약증권을 당사가 취득하고, 장래의 미술품 장기 보관 가능성에 따라 소요되는 보관 비용(보험료 포함)을 모두 당사의 부담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주3) 당사는 발행인 매매차익의 100%를 예비비로 삼아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분쟁 처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유보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상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청산시

남은 비용은 당사로 귀속되며 부족한 경우 당사가 추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금액(원)	비고
컨디션리포트 발급비	8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디션 체크와 컨디션리포트 발급 비용
작품보증서 발행비	700,000	전문기관
전시 및 운송비	12,000,000	미술품 해외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항공 운송 기준, 회당 500만원 가정) 2회 + 미술품 국내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 (판매자 부담시, 미술품 운송용 무진동 탑차 편도 1회당 20만원 가정) 10회
작품관리비(액자, 보존처리, 촬영 등)	5,0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액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등
뷰잉 및 전시비용	10,000,000	청약 전 프리뷰를 위한 인력배치 및 인쇄비용을 포함한 전시비용 일체, 청약 종료 후 전시 부대비용, 작품 관람을 위한 인력배치 비용 등
기타비용	8,730,679	기초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기타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합계	37,230,679	

(주4) 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실명계좌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투자자가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 전용 계좌가 아닌 다른 투자를 위하여 개설하는 실명계좌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주5) 청약금 분리 보관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2 (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	-	93,048,058	-	-	934,951,942	1,028,000,000

(주1)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 등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1. 법률검토의견의 제출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공동사업구조의 적법성 또는 법률적 위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규 및 계약관계 서류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 법률검토의견의 요약 기재

법률검토의견의 요약

본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본 법무법인’)의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검토 의견(이하, ‘법률의견서’, 전문은 첨부서류 법률검토의견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 겸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귀사는 다수의 투자자(이하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투자자’)와 투자계약(이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조지 콘도(George Condo) 작가가 2001년 창작한 작품 The Horizon of Insanity을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2회차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제3항에서 기재한 전제와 제5항에서 서술할 일정한 단서 하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견을 개진합니다.

1. 귀사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4조 제22항 제44호의 투자계약증권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의 목적은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다른 증권의 발행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공동사업의 구조는 민법, 자본시장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본 법률의견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여하한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이하 총칭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공동사업의 구조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행사가 일정하게 제한됨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분쟁은 통상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분쟁의 유형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구조상 기초자산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귀사 또는 투자자에 대한 강제집행,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투자계약의 내용은,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동사업의 구조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관하여 투자계약에 따라 부여받는 권리인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취득·보유·행사 또는 처분 양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의 내용 및 공동사업의 구조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도록 구성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됩니다. 단,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는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고지되는 투자위험과 투자계약에 기재된 공동사업 운영자 및 투자자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끝.

3. 법률검토의견의 전문

법률검토의견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법률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1. 용어의 정의

용어	상세한 설명
발행인/당사/ 공동사업 운영자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로서, 당사를 말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발행인, 당사, 공동사업 운영자는 모두 (주)투게더아트를 의미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이 구성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투자계약으로 정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 등은 투자계약에 따릅니다.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주 또는 주수를 증권 1단위로 하며, 1좌 또는 좌수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초자산	공동사업으로 투자하는 대상자산을 말합니다.
진위(眞僞)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판단합니다.
보증서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취지는 미술품이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Fact Sheet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출처(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Condition Report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기재한 문서입니다.
(미술품) 1차 시장	화랑(Gallery) 또는 아트페어(Art Fair) 등 미술품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말합니다. 이 때 전시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작가들이 창작(생산)한 경우를 주로 하되, 컬렉터로부터 위탁된 작품들에 대한 전시 또는 판매도 함께 합니다.
(미술품) 2차 시장	미술품 경매회사 등 미술품을 소유자로부터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말합니다.
미술품 경매	미술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미술품을 전시한 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응찰자(bidder)들로부터 호가를 제시 받아 주로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이 미술품 경매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Sotheby's, Christie's, Philips 가 미술품 경매시장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컬렉터(Collector)	미술품 수집가로서 개인인 미술품의 최종 소비자이자,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에서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미술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내정가	미술품 경매에서 미술 작품의 경매가 시작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합니다.
낙찰가 (Hammer Price /Realized Price)	미술품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응찰자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가격을 말합니다. 위탁자에게서 경매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낙찰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차순위 응찰자 (Under Bidder)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자가 제출한 낙찰가격보다 바로 한 호가 밑의 가격을 제출한 응찰자를 말합니다. 차순위 응찰자가 제출한 가격은 자유경쟁 원칙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미술품 경매에서 해당 미술품의 가격과 수요로 받아들여집니다.
위탁수수료	미술품의 판매를 위하여 미술품 소유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구매수수료 (=낙찰수수료)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낙찰받은 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발행제비용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증·공시·심사·평가 기타 제반 비용, 기초자산의 보관 또는 처분과 관련된 보관료·보험료·운송료·수수료 등의 비용,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그리고 발행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사서인증	공증인법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유관계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5년 내, 최대 10년까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본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지명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를 금지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를 위한 통지, 승낙절차 및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는 투자계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를 말합니다.
점유개정	동산에 있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로 인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도방법을 말합니다.
기준일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보기로 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청산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보수	발행인이 청산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사업중단 사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당사의 서비스이용약관(투자자회원)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당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계좌관리기관	발행인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합니다.
호	미술품의 캔버스 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세기 중후반 무렵 인상파 화가들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유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미술품의 크기나 면적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으나 관행적으로 인물, 풍경, 해경,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호수’ 또는 ‘호수표’에 의한 호당 가격이 산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보호기금	투자자 위험의 현실화나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적립하고, 특정금전신탁하여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기금입니다.
(증권의)모집/매출/모집 또는 매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모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매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뿐, 당사가 이미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배정받는 투자자가 이전 받는 권리에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1. 2. 공모방법」에서 일반공모에 의한 "모집"으로 공모방법을 확정하여 기재하되, 본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에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모집과 함께 기재합니다.

2. 공동사업의 내용

2-1. 공동사업의 개요

본 공동사업은 투자자가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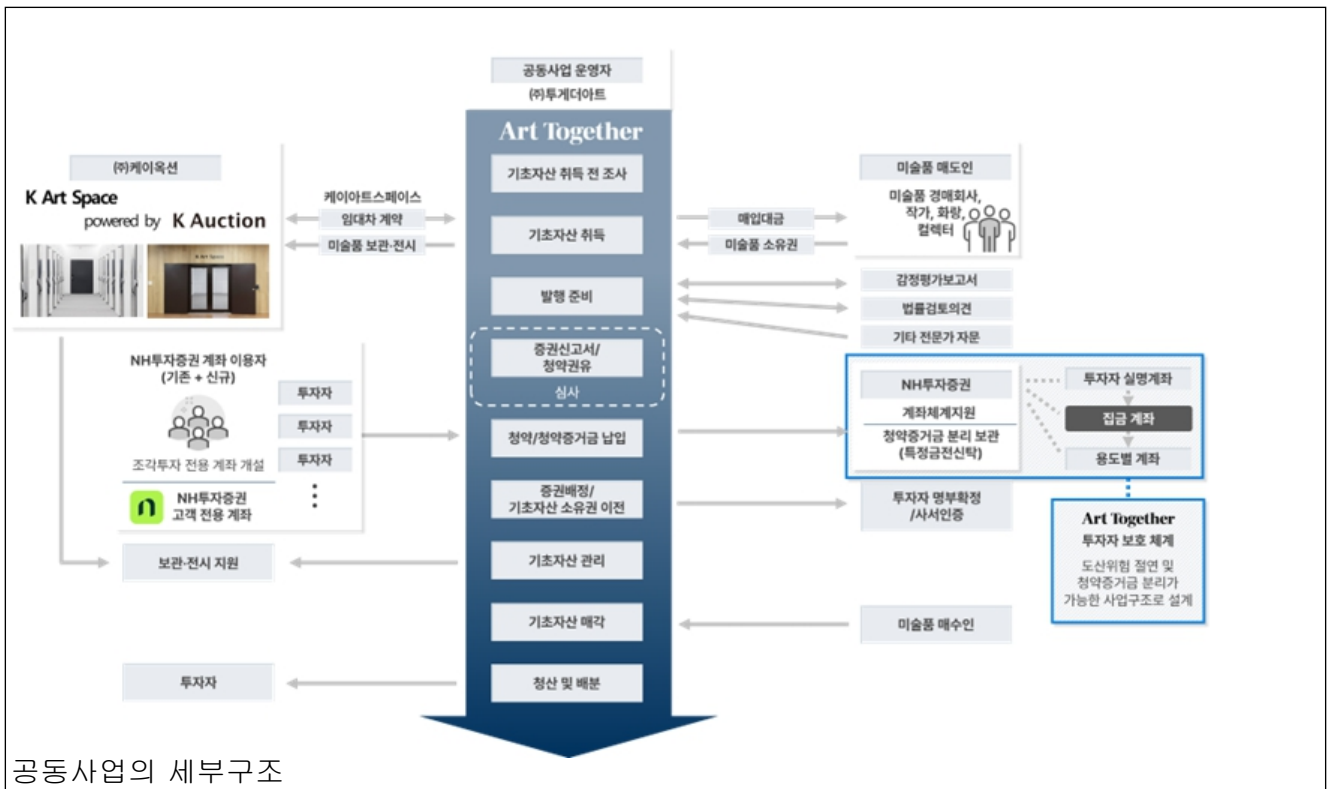
을 취득하고 그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귀속받는 것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취득·관리·처분(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모총액의 100%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제외) 기타 그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2.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계약에 기한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초자산을 매도인으로 부터 선매입하였고, 공동사업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중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을 청약하고, 계좌관리기관의 개설한 전용 계좌를 통해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동 청약증거금은 별도의 집금계좌로 납입받아 청약기간 동안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보관되고, 당사는 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이 모집되는 공모총액 중 기초자산의 선매입에 대한 매매대금, 발행분담금, 자문 수수료(감정평가, 법률검토, 기타), 사서인증 수수료 등 발행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발행인 이익으로 삼습니다. 이 때, 당사는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지출될 수 있는 운송료, 분쟁처리, 기타 비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초자산 보관, 관리, 처분, 손익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시점에 이를 매각, 청산하여 투자자에게 처분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주)케이옥션은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기초자산 보관을 담당하며, 향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유)세종은 당사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당사에 사업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관리, 처분 및 손익배분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에 있어 각 당사자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미술품 기반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에 참여하고, 보유 증권의 지분에 비례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을 배분받고, 투자계약증권에 따르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입니다.

(계좌관리/신탁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 및 청약 신청을 위하여 당사와 계좌지원에 대한 계약 및 청약증거금 보관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의 지원과 청약증거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입니다(NH투자증권).

(공동사업 운영자)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미술품 경매회사, 작가, 화랑, 수집가 등으로부터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물색하여 매입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기초자산의 매각과 공동사업의 청산을 수행하는 자(당사, ㈜투게더아트)

(공동사업 참여자/미술품 보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와 미술품 보관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미술품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케이옥션).

2-3.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 계획

(1) 공동사업의 구체적 내용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한 후, 최종적으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처분손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당사가 되며,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으로 하며, 기초자산의 상세내역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9.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8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수행한 기초자산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중요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다른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투자자와 운영자, 참여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 가능성과 종국적인 처분시점에서의 기초

자산 가치, 즉 처분시의 매매대금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 공모 총액에 비하여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물색과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초자산의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증권의 효력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의성실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도록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에 매각을 위한 위탁 출품, 미술품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활용, 기초자산 및 작가의 미술품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매각시기와 매각가액을 판단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동, 미술시장의 변동,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이나 기초자산의 제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 등 제반 환경의 변동으로 기초자산의 매각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초자산의 매각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증권의 효력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여도 기초자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매 1년마다 투자자 총회를 통하여 공동사업의 운영경과와 매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규모와 특성, 기초자산 거래사례에 대한 당사의 분석에 기초한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9.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아래와 같이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술품 재고자산의 변동과 상품 매출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판매 사업 분야의 상품(미술품) 매출액, 매출원가,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 기준), 재고자산 보유기간(재고자산회전율을 일 단위로 환산)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케이옥션의 5개년 상품매출, 상품매출원가, 상품매출 총이익률]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상품매출	10,994,674	8,093,742	12,491,373	12,491,373	12,572,360	18,886,181	8,679,307
상품매출원가	9,283,033	7,143,106	11,721,866	11,721,866	12,206,514	15,657,045	7,611,174
상품매출 총이익률	15.6%	11.7%	6.2%	6.2%	2.9%	17.1%	12.3%

[(주)서울옥션의 5개년 상품매출, 상품매출원가, 상품매출 총이익률]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상품매출	30,392,460	29,860,062	46,149,651	41,514,731	16,669,297	15,408,432	25,118,762	11,719,554	36,046,750	14,770,608

상품매출원가	24,050,026	23,649,583	38,936,235	34,192,067	14,090,845	12,982,924	20,549,144	10,710,992	29,132,629	12,729,868
상품매출 총이익률	20.9%	20.8%	15.6%	17.6%	15.5%	15.7%	18.2%	8.6%	19.2%	13.8%

[(주)케이옥션의 5개년 기초재고, 재고매입, 기말재고, 평균재고,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기간]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기초재고	19,655,077	17,858,914	18,460,762	18,460,762	24,007,864	16,152,344	15,236,549
재고매입	19,689,784	16,467,817	12,916,181	11,120,018	6,659,412	23,512,565	8,526,969
기말재고	30,061,828	27,183,625	19,655,077	17,858,914	18,460,762	24,007,864	16,152,344
평균재고	24,858,452	22,521,269	19,057,919	18,159,838	21,234,313	20,080,104	15,694,447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기준)	0.52 회	0.48 회	0.84 회	0.88 회	0.72 회	0.92 회	0.66 회
재고자산보유기간	704 일	765 일	437 일	416 일	507 일	399 일	549 일

[(주)서울옥션의 5개년 기초재고, 재고매입, 기말재고, 평균재고,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기간]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기초재고	67,299,452	58,915,645	67,240,612	55,124,944	57,143,813	47,790,104	61,902,879	47,587,321	54,016,434	44,596,076
재고매입	40,322,287	39,750,196	38,995,075	37,982,768	24,187,644	20,317,763	15,790,078	10,913,775	37,019,074	15,721,113
기말재고	83,571,713	75,016,257	67,299,452	58,915,645	67,240,612	55,124,944	57,143,813	47,790,104	61,902,879	47,587,321
평균재고	75,435,582	66,965,951	67,270,032	57,020,294	62,192,213	51,457,524	59,523,346	47,688,713	57,959,657	46,091,699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기준)	0.49 회	0.54 회	0.75 회	0.80 회	0.32 회	0.35 회	0.47 회	0.30 회	0.63 회	0.37 회
재고자산보유기간	739 일	671 일	489 일	459 일	1158 일	1044 일	782 일	1214 일	576 일	990 일

위 표에서 케이옥션의 5개년 평균 상품 판매 이익률은 약 10.8%,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약 519일이며, 서울옥션의 같은 기간 상품 판매 이익률은 약 17.9%,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약 749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사 모두 상품 판매에 있어 적자를 기록한 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 사의 미술품 판매 사업 분야에서 미술품의 평균 보유기간을 비교적 짧게 운용하는 케이옥션과 미술품 보유기간이 비교적 긴 서울옥션의 운용 방식 차이가 있으나, 미술품 판매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당사는 미술품의 취득과 판매를 기본적인 공동사업 구조로 하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이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기초자산과 동일한 작가에 관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미술품 시장의 전망과 기초자산의 전망을 조사하고 당사의 인용, 추정, 판단을 거쳐 「제1부 II. 증권지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에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적절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청산금(배당)으로 지급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과거 배당(수익지급) 이력

당사는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운영하며 공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종전 운영하였던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사업의 배당(수익지급)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사업 이력]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신데렐라	2019-01-11	2,680,000	2019-05-14	7,000,000	124	161%
Ecriture No.2-06	2020-09-21	8,130,000	2021-04-27	19,383,000	219	138%
Flowers (F. & S. II .64)	2022-10-12	40,800,000	2023-09-20	90,000,000	344	121%
Un Passage	2018-11-26	1,500,000	2021-01-05	3,150,000	772	110%
Happy	2019-01-01	13,980,000	2023-12-19	29,000,000	1814	107%
An Homage to monopink 1960 A	2019-04-22	1,700,000	2020-12-31	3,200,000	620	88%
From an Island-03060	2021-05-12	44,620,000	2022-06-17	80,000,000	402	79%
Quadriptyque 4-3	2019-07-09	30,000,000	2021-11-10	49,000,000	856	63%
Work	2021-06-29	117,130,000	2022-12-19	190,000,000	539	62%
Flower(set of 2)	2019-04-08	2,000,000	2020-06-25	3,000,000	445	50%
Sea	2020-10-14	26,780,000	2021-11-10	40,000,000	393	49%
[핑크애플 전용] Love 311	2020-05-08	22,270,000	2022-10-13	33,000,000	889	48%
물방울	2020-06-14	50,000,000	2021-05-12	71,994,000	333	44%
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	2020-10-22	80,000,000	2022-12-19	115,000,000	789	44%
풍경	2020-12-31	55,780,000	2021-07-27	80,000,000	209	43%
무제	2021-02-17	17,650,000	2022-07-07	25,200,000	506	43%
Quadriptyque 4-4	2019-08-04	30,000,000	2021-07-22	42,000,000	719	40%
Red Hat	2019-08-15	5,990,000	2021-01-05	8,300,000	510	39%
물방울	2021-03-18	217,530,000	2021-08-20	295,000,000	156	36%
An Island - 07015	2022-01-26	90,360,000	2023-09-20	120,000,000	603	33%
Eve of Distruction	2021-03-24	122,710,000	2022-05-02	160,000,000	405	30%
Evolution, Revolution, Resolution (complete set of 8 prints)	2022-06-03	70,000,000	2022-08-16	89,500,000	75	28%
Pumpkin	2020-12-15	133,860,000	2021-08-23	170,000,000	252	27%
무제	2021-09-15	35,700,000	2022-02-21	45,000,000	160	26%
With Winds	2021-10-14	223,100,000	2022-10-11	280,000,000	363	26%
Elftermarzzweitausendundsechzehn	2021-09-08	106,410,000	2022-05-17	130,000,000	252	22%
Dialogue	2020-01-01	260,060,000	2020-09-04	313,820,000	248	21%
Real to virtual transition	2020-07-06	20,000,000	2020-07-10	24,200,000	5	21%
Taboo Yogini - Scarlet F1002	2020-07-10	23,000,000	2020-07-13	27,830,000	4	21%
Water	2020-10-30	22,310,000	2023-02-21	27,000,000	845	21%
Pain and sorrow	2021-06-16	223,100,000	2022-06-17	270,000,000	367	21%
Reencontrarme Reconocerme	2020-01-16	12,530,000	2022-08-10	15,000,000	938	20%
Pumpkin(White T)	2020-07-07	46,500,000	2021-05-26	56,000,000	324	20%
Blah, Blah, Blah	2020-12-15	44,620,000	2022-05-30	53,500,000	532	20%
무제	2021-01-18	13,720,000	2023-03-02	16,500,000	774	20%
점으로부터(From Point)	2020-01-01	312,340,000	2021-04-27	360,000,000	483	15%
Butterfly Effect	2020-07-24	10,410,000	2021-05-10	12,000,000	291	15%
봇질 268	2022-07-06	139,800,000	2024-02-29	152,800,000	604	9%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였던 전체 미술품 146점 중 당사가 일시 사업을 중단하였던 2022년 11월 이전까지 매각되었던 32점과, 2023년 상반기에 매각된 2점, 당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 결정을 받은 2023년 7월 13일 이후 매각된 4점 합계 38점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과거 배당 이력 중 수익률 상위 3작품과 수익률 하위 3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진 작품들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47%입니다.

과거 배당 이력: 수익률 상위 3작품 (상위 3작품 평균140%)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일)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신데렐라	2019-01-11	2,680,000	2019-05-14	7,000,000	124	161
Ecriture No.2-06	2020-09-21	8,130,000	2021-04-27	19,383,000	219	138
Flowers (F. & S. II .64)	2022-10-12	40,800,000	2023-09-20	90,000,000	344	121

과거 배당 이력: 수익률 하위 3작품 (하위 3작품 평균13%)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일)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Butterfly Effect	2020-07-24	10,410,000	2021-05-10	12,000,000	291	15%
점으로부터(From Point)	2020-01-01	312,340,000	2021-04-27	360,000,000	483	15%
붓질 268	2022-07-06	139,800,000	2024-02-29	152,800,000	604	9%

다. 진행중인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현황

당사가 진행중인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 현황은 종전 운영하였던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 108점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공동사업 보유 미술품1점, 총 109점으로 투자자를 위하여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중인 공동구매 사업 현황] 기준일: 2024년 2월 29일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사업기간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보유기간)
Untitled (2022)	2022-11-29	174,750,000	458
무제(1960s)	2022-11-04	395,500,000	483
Spring 21-03	2022-10-18	88,000,000	500
Flowers (F. & S. II .66)	2022-10-12	79,000,000	506
산월	2022-09-07	58,250,000	541
묘법 No. 950618	2022-08-31	34,950,000	548
Study (22)	2022-08-16	116,500,000	563

Vierundzwanzigsterjunizweitausendundzwanzig	2022-07-21	93,200,000	589
목고 23206	2022-07-21	26,800,000	589
World Champion	2022-07-11	81,550,000	599
The Method of Drawing 76-1-8-1	2022-06-23	52,800,000	617
무제 (2013)	2022-06-16	16,000,000	624
Dreiundzwanzigstermarzzweitausendundeinundzwanzig	2022-06-14	75,000,000	626
Nintendo Ghost Abduction with Sweet Pink Clouds	2022-06-09	11,900,000	631
Bodyscape 76-1-2016	2022-05-24	78,000,000	647
The Presentation(2019)	2022-05-19	38,340,000	652
Pumpkin(1982)	2022-05-13	143,760,000	658
Sun 4	2022-05-10	34,950,000	661
회귀(Recurrence) SA95018	2022-05-06	41,940,000	665
점으로부터(From Point, 1978)	2022-05-03	311,480,000	668
Stadion 17/VII	2022-04-20	29,950,000	681
선으로부터(From Line, 1977)	2022-04-12	383,360,000	689
청명(淸明)-18042	2022-04-06	83,880,000	695
Let's Go to Seattle!	2022-04-01	39,610,000	700
In Between - Spring Series	2022-03-30	27,960,000	702
The Couch Unsent Piano	2022-03-23	8,500,000	709
검재예찬 M II 225	2022-03-17	34,160,000	715
Pumpkin(1983)	2022-03-10	165,100,000	722
물방울 SN2014	2022-03-03	58,870,000	729
Two Chairs with People	2022-02-18	88,000,000	742
묘법 시리즈 V-17	2022-02-11	37,930,000	749
무서운 바다	2022-02-07	35,700,000	753
음양7-S. 169	2022-01-14	100,400,000	777
Oleandrin	2022-01-03	256,300,000	788
무제 (2006)	2021-12-27	128,290,000	795
Wildflowers	2021-12-13	17,850,000	809
Vivien with Hat	2021-12-09	44,620,000	813
Untitled (c)	2021-12-06	267,720,000	816
내재율(Internal Rhythm) 2014-3	2021-11-28	53,550,000	824
Internal Rhythm 2017-76-P, 2016-23-P, 2011-58-P(Set of 3)	2021-11-23	21,000,000	829
Karma	2021-11-19	42,000,000	833
Tagger	2021-11-16	39,900,000	836
Untitled No.13 from "The Yosemite Suite"	2021-11-10	110,680,000	842
무제 (2002)	2021-11-04	18,060,000	848
Lemon Squash	2021-10-29	33,470,000	854
Coca-Cola Girl 9	2021-10-25	44,620,000	858

Ecriture No.010409	2021-10-25	96,600,000	858
Gateway to East (Set of 3)	2021-10-20	30,000,000	863
무제 (2000)	2021-10-18	98,170,000	865
Up to You	2021-10-07	44,620,000	876
Perspective Should be Reversed	2021-09-27	142,000,000	886
Julian Opie 법인 전용 블라인드 작품	2021-09-16	32,000,000	897
Frog B, Frog O	2021-09-01	50,000,000	912
Untitled 84-7-B	2021-08-24	379,270,000	920
Ecriture No.120228	2021-08-11	102,900,000	933
\$ (Quadrant)	2021-08-04	169,800,000	940
Curare	2021-07-29	14,000,000	946
Fenbufen	2021-07-29	14,000,000	946
[emart24 이벤트] 줄리안오피_Running women	2021-07-21	44,000,000	954
물방울 P.A. 84016-84	2021-07-21	178,500,000	954
Still Life with Picasso from Homage to Picasso	2021-07-15	44,620,000	960
Oiseaux	2021-07-08	115,470,000	967
Just a Little Bit	2021-06-21	100,400,000	984
Love is what you want	2021-06-01	3,400,000	1,004
Save The Amazon (Blue)	2021-05-27	3,400,000	1,009
Cage 6	2021-05-20	42,000,000	1,016
무제	2021-05-04	46,860,000	1,032
You Wanna Take Me To A Kung Fu Movie?	2021-04-14	2,100,000	1,052
Shelf Still Life	2021-04-07	32,350,000	1,059
Maternite Rouge	2021-03-31	54,660,000	1,066
물방울	2021-01-28	48,000,000	1,128
Wouldn't it be nice if we could do such a thing?	2021-01-07	10,000,000	1,149
New York Couples 5	2020-10-23	21,070,000	1,225
화동의 꽃은 무궁화처럼 질기다	2020-10-23	4,080,000	1,225
고양이	2020-09-28	18,410,000	1,250
The Seers III	2020-09-16	6,810,000	1,262
Spirit of Freedom	2020-09-11	8,170,000	1,267
Doraemon's Daily Life	2020-09-08	2,150,000	1,270
Benzyloxyurea, from 40 Woodcut Spots	2020-09-07	9,070,000	1,271
Dora Maar au Chat II	2020-08-24	2,500,000	1,285
Portrait of an artist (pool with two figures) II	2020-08-24	4,000,000	1,285
Blame game(complete set of 10 prints)	2020-08-20	157,020,000	1,289
Ika(1)	2020-08-10	32,000,000	1,299
Le Beau Temps	2020-07-16	4,790,000	1,324
Still Life with Blonde	2020-07-10	6,840,000	1,330
Flowers From the Village of Ponkotan	2020-06-18	1,940,000	1,352
Stars and Stripes	2020-05-22	3,350,000	1,379

Untitled(middle panel from Triptych August 1972)	2020-04-24	9,740,000	1,407
Blame game	2020-04-09	16,740,000	1,422
산(山)	2020-01-20	5,140,000	1,502
Commune with...	2019-11-01	10,000,000	1,582
Commune with...	2019-10-14	50,000,000	1,600
Untitled	2019-09-09	10,000,000	1,635
A Dream	2019-08-30	13,170,000	1,645
JUST ANOTHER CROCODILE BIRD	2019-07-15	7,000,000	1,691
The Boundary of Fantasy	2019-05-21	10,000,000	1,746
Sara Dancing 1	2019-05-09	97,810,000	1,758
Cohesive Sphere - 0026	2019-04-18	5,000,000	1,779
Untitled	2019-04-01	21,180,000	1,796
Instant Landscape	2019-02-22	13,000,000	1,834
시고(詩稿)	2019-02-12	20,970,000	1,844
해피월드	2019-01-30	18,000,000	1,857
목란도(墨蘭圖)	2018-12-25	5,010,000	1,893
Seen 201212	2018-12-09	8,000,000	1,909
Follow Your Dreams	2018-11-23	15,000,000	1,925
Stone Book	2018-11-16	50,000,000	1,932
Love Is The Answer	2018-11-06	15,000,000	1,942
Halte de Comediens ambulants avec Hibou	2018-11-01	28,100,000	1,947

[진행중인 공동사업 현황]

기준일: 2024년 2월 29일

사업명	취득일	공모금액(원)	사업기간
(증권명칭)	(배정공고일)	[모집(매출가액) (원)]	(보유기간)
AT-KUSAMA-001	2024-01-25	1,182,000,000	36일

당사는 109점을 케이아트스페이스에 중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 참여 투자자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 재개에 발맞추어 매각에 대한 경매, 전시, 홍보 기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술품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3.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항

3-1. 공동사업자의 개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운영할 공동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자명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업무	분류
(주)투게더아트 (당사)	공동사업의 운영,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기초자산의 취득·보관·처분, 공동사업의 청산	공동사업 운영자
(주)케이옥션	기초자산의 보관, 기초자산의 처분(미확정)	공동사업 참여자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업자(미확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인 기타	기초자산의 처분	공동사업 참여자

- 당사와 (주)케이옥션은 확정금액에 의한 미술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결과에
- (주1) 따라 (주)케이옥션의 손익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보관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에 따라 기초자산의 훼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의 처분 방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
- (주2)로서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업자(미확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업자 등을 통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때, 당사는 (주)케이옥션에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개요는 「제2부 I. 회사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주요 사업, 연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옥션에 관한 기재사항은 케이옥션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케이옥션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1) 주요사업

케이옥션은 크게 ① 미술품 판매 사업, ② 미술품 경매 사업, ③ 미술품 중개 사업, ④기타 사업의 4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은 동일한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만 시장 등이 상이합니다.

미술시장은 창작된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하는 화랑(Gallery)이나 화랑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아트페어(Artfair)로 구성되는 1차 미술 시장(Primary Art Market)과, 당사와 같은 경매 회사처럼 미술품의 재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2차 미술 시장(Secondary Art Market)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 1차 시장에 비하여, 케이옥션이 속해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은 양질의 미술품 확보 및 연속적인 경매 진행 능력 보유 여부 자체가 미술품 경매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케이옥션은 수

년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경쟁업체인 (주)서울옥션과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케이옥션은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인 K-Office를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Office는 현존하는 국내 미술품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방대한 유통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미술품 종합 관리 시스템이며, 미술품 유통 관리의 표준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케이옥션의 미술품 경매는 K-Office를 활용하여 관리되는 미술품 데이터들과 미술품의 입·출고 프로세스들을 통하여 정교하게 분류되고 설계된 상품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케이옥션은 미술품 판매, 미술품 중개 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미술품 보관업이나 미술품에 관련 여신 또는 수신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옥션은 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와 주요 갤러리들 사이에서 미술품과 관련된 구조화 매매거래 등을 수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혁

연월	주요 내용
2005.09	(주)케이옥션 설립
2005.11	제1회 미술품 경매
2006.08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실시(최초의 본격적인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07.09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15
2009.02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0-6,7 (현재 본점 주소지)
2011.03	조정열 대표이사 취임
2012.04	이상규 대표이사 취임
2012.09	보물 제585호 퇴위이선생진적첩 낙찰(34억원, 국내 고미술 최고 낙찰가 갱신)
2013.11	예금보험공사 미술품 분야 공매대행기관 선정
2013 - 2014	전재국 컬렉션(전두환 전 대통령 미남 추징금 환수) 경매 100% 낙찰
2015.03	제1회 홍콩 단독 미술품 경매 실시
2016.11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230,769주/ 증가한 자본금: 1,353,845,000원/ 총 자본금: 4,153,845,000원
2016.11	제17회 한국메세나협회 창의상 수상(미술계 최초)
2017.04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단독선정 김환기 “고요” 65.5억원 낙찰(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갱신)
2018.05	도현순 대표이사 취임
2018.04	자선경매와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연중 개최
2019.04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연속선정
2020.12	상환전환우선주 (72,627주) 상환(자본금 변화 無)
2021.02	상환전환우선주 (113,142주) 보통주 전환(자본금 변화 無)
2021.04	잔여 상환전환우선주 (45,000주) 보통주 전환(자본금 변화 無)
2021.07	보통주 1:10 액면분할, 분할 후 1주당 액면 5백원 (주식총수 758,142주에서 7,581,420주)

2022.01	코스닥 상장
2022.07	보통주 1:2 무상증자(주식총수 27,174,135주)
2022.09	제1회차 전환사채(CB)발행/조달금액 295억원

(3) 조직구성

케이옥션의 2022년말 사업보고서에서는 이사회 이외에 연구개발조직으로 경매그룹과 기획 운영그룹을 두고 있고, 판매조직으로는 고객그룹을 두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 직원 현황은 104명입니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동사업 참여자의 2023년말 재무제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산총계	217,552
부채총계	91,373
자본총계	126,179
매출액	27,716
영업이익	5,820
당기순이익	4,027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초자산 처분을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들)은 미확정입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3-2. 공동사업자의 연혁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주 공동사업자인 당사의 연혁은 「제2부 I. 회사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주)케이옥션의 연혁에 관한 사항은 위 「제1부 VI. 3-1.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3-3.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매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재무정보 등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4.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당사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제2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연혁에 관한 사항은 위 3-1.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중 (주)케이옥션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인력에 한하여 아래 3-5. 공동사업자 담당인력 나. 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케이옥션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 「제2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5. 공동사업자 담당인력

가. 당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공동사업 담당인력 중 운영인력과 투자자 보호 인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	업무경력	비고	근속연수 (개월)	자격증	비고	근속기간 (개월)
투자자 보호인력 (공동사업 관리 총괄)	도현순 (1967)	대표이사	1. 한국은행 4.6년(외화자금과) 2. 리만브라더스 홍콩 0.5년 3. 페레그린증권 홍콩/서울 3.8년 4. 맥킨지 서울 1.9년 5. 리만브라더스 서울 6.9년 6. 주식회사 케이옥션 14.6년(현재/ 대표이사) 7.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대표이사)	-	책임담당자	10
투자자 보호인력 (준법지원담당직원)	주재승 (1962)	사내이사/ 준법지원담당직원 전무	1. NH농협금융지주 및 NH농협은행 38년(디지털금융부문장 부행 정) 2. ㈜농협캐미컬 1년(전무이사) 3. 라온시큐어(주) 1년(부사장) 4. 라온화이트햇(주) 2.8년(부사장) 5. ㈜투게더아트 0.4년 (현재/ 사내이사 전무)		-	5
투자자 보호인력 (기초자산 검증)	김보름 (1979)	사외이사	1. 서울문화재단 11.3년(문화사업팀장) 2. 세종대학교 3년(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3. 한성대학교 1년(현재/문학문화컨텐츠학과 조교수) 4. ㈜투게더아트 0.4년(현재/ 사외이사)	AAA	(주1)	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지승현 (1993)	사외이사	1. 삼정회계법인 4년(IM4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1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년 (Deal 1본부 공인회계사) 4. KT&G 1.6년(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5. ㈜로보에테크놀로지 0.7년(현재/ 재무기획담당) 6. ㈜투게더아트 0.4년(현재/ 사외이사)	공인회계사	-	5
투자자 보호인력 (감사)	박준원 (1983)	감사	1. 안진회계법인 8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4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LG 에너지솔루션 1.6년(정도경영팀) 4. 예인회계법인 1.4년(현재/대표자 공인회계사) 5. ㈜투게더아트 0.4년(현재/ 감사)	공인회계사	-	9
투자자 보호 인력 (사업운영담당직원)	이관재 (1965)	사업운영담당직원 전무	1. 금융감독원 33.8년(조사기획국, 기업공시국 등)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사업운영담당직원 전무)	-	-	9

투자자 보호 인력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백승한 (1982)	매니저(IT팀장)	1. SK C&C 주식회사 4.1년 (물류서비스운영팀) 2. SK 주식회사 0.5년 3. 주식회사 마드레이트 4.9년(개발팀)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IT팀장 매니저)	-	-	27
투자자 보호 인력 (이해관계인 거래 통제/준법지원)	문대영 (1982)	매니저	1. 변호사문대영법률사무소 8년(변호사) 2. ㈜케이옥션 1년(법무팀장) 3. 티에이어드바이자(유) 4.9년(현재/이사) 4.(주)투게더아트 0.8년(현재/ ISC팀 매니저)	변호사 /CAMS /투자자산운용사	(주2)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승행 (1983)	매니저(O&CS팀장)	1.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1년 (해외계약팀) 2. 주식회사 엔에이치리사이텍컴퍼니 3년 (해외계약팀) 3. 주식회사 마드레이트 4.5년(운영총괄팀) 4. 한국피투피(P2P)금융협회 1년(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핀테크블록체인학회 1.8년(현재/ 부회장) 6.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0.4년(현재/ 전문위원) 7.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O&CS팀장 매니저)	-	책임담당자	27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공시)	신규식 (1984)	매니저(ISC팀장)	1.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4.7년(플랜트계약팀, 해외계약팀, 토건계약팀) 2. 주식회사 마드레이트 4.1년(운영총괄팀) 3.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ISC팀장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및 투자자 명부 관리)	이유정 (1992)	매니저	1. 주식회사 마드레이트 4.4년(경영지원팀)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2.3년(현재/ 경영지원부문)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홍보)	손이천 (1976)	매니저	1. 주식회사 인큐브테크 2.4년(마케팅/홍보/기획) 2. 다올갤러리&아트컨설팅 2.4년(Art Advisor) 3. 주식회사 케이옥션 14.3년(현재/ 마케팅(IR)그룹장) 4.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매니저)	-	-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지현 (1983)	매니저	1.주식회사 케이옥션 14.3년(현재/ 경매팀 팀장)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8년(현재/ 매니저)	-	-	10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윤희재 (1990)	매니저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Arthur Ross Gallery 1.2년(연구) 2. Keystone Education Ltd.(서울/홍콩) 3.2년(컨설팅, 마케팅) 3. 프리랜서 2.3년(전시자료 번역, 유학컨설팅) 4. 케이옥션 3.8년(현재/경매팀 PI파트)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6년(현재/ ISC팀 매니저)	-	-	7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세라 (1989)	매니저	1. 제일메디칼 주식회사 2.2년(무역관리부) 2. 주식회사 메타브랜딩 1.7년(경영지원실) 3. 주식회사 참피온 1.7년(재무팀) 4. 주식회사 케이옥션 3.5년(현재/ 재무그룹 회계팀)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6년(현재/ 재무팀 매니저)	-	-	7

(주1) AAA는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약자로 미국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통일 기준(USPAP: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에 의하여 미술품 등 동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AAA에 회원자격(membership)을 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2) CAMS는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에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ACAMS 회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를 말합니다.

나. 공동사업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자 참여자 중 기초자산의 보관과 관련된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운영에 관한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정임 (1972)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장 상무	1. (주)케이옥션 6.7년(현재 / 기획운영그룹)	-	책임담당자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형준 (1984)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 작 품관리팀 팀장	1. (주)케이옥션 9.8년(현재 / 기획운영그룹 작품관리팀)	-	책임담당자/미술학 석사

(주1) 위 인력들은 당사나 본 공모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들입니다.

(주2)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 작품관리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의 미술학 전공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술학 석사 이상 학위자는 3명입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담당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6.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

가. 당사에 관한 사항

아래에서는 주로 당사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공동사업의 수익구조를 기술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수익구조는 아래 기재 이외에도 「제2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미술품 시장과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전략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물색하고 평가하며, 공동사업의 구조에 부합하는 거래 상대방의 선정, 미술품에 대한 조사,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정 등을 수행합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으로서 미술품 진위의 중요성과 진위 여부에 따르는 거래상대방의 보증 능력을 공동사업에 있어 가장 큰 투자위험요소 또는 손실가능성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미술품의 장래 가치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입증되는 유통경로나 첨부되는 거래상대방의 보증서로 현재 또는 장래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위와 유통경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미술품은 장래를 향한 위험성으로 가치의 온전한 보전이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입증해 주는 유통경로나 발급받은 보증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재무상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미술품의 위작 위험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진위 보증 책임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보안 시설과 내화 시설이 갖추어진 미술품 보관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는 기초자산이 최종적인 매각까지 취득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며 온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도난 위험, 화재 위험, 훼손 위험 등에서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보관 중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범위의 보험이 확보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전략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보관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업전략은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인도 받은 후, 위와 같이 안전한 보관장소에서 미술품을 보관해 줄 제3자를 선정하여 동산인 기초자산을 인도한 후, 최종 매각시까지 기초자산의 판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나 판매를 위한 실물 확인 목적 등 공동사업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미술품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일체의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적절한 보관자에게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점유를 인도한 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목적물로 하는 반환청구권을 준공유할 수 있게 된 후에는,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으로 가지게 되는 공유 지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예를 들어 미술품의 점유 이동을 수반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여/렌탈업, 미술품 근질권 또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당사가 직접 보관함으로써 인하여 당사의 다른 자산과 혼장될 위험이나, 이동이 쉬운 미술품의 점유가 계속 이전되어 투자자들의 권리가 불안해지거나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 보관에 관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주)케이옥션을 선정하여 미술품의 진위 보증 및 보관에 관한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케이옥션은 미술품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당사 이전에도 문화재단이나 주요 컬렉터 등에 대하여 케이아트스페이스 미술품 보관 프로그램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미술품 보험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 등과 관련된 사업전략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주요 갤러리나 미술품 경매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기초자산과 작가 또는 가격대가 유사한 작품에 대한 매각 경험, 기타 거래에 관한 조건 등을 비교하여 공동사업의 목적달성과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지속적인 물색과 조사를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초자산 매각에 관한 거래 상대방이나 공동사업 참여자는 미정입니다. 만약 (주)케이옥션을 다시 매각에 관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술품 경매회사로 가지는 시장에서의 지위나 거래조건 등이 타사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며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의 방법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초자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세계적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로부터 프라이빗 세일의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추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처분의 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경매 방식	프라이빗 세일 방식

내용	- 소장자의 미술품을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위탁 받아 일정기간 전시한 후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공개된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때, 경매회사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자를 경매사(auctioneer)라고 하며, 경매에 응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bidding), 경매에 응하는 사람을 응찰자 또는 입찰자(bidder)라고 합니다. 응찰자가 경매에 응하는 가격은 응찰가 또는 호가(bidding price)이며, 각 경매가 이루어지는 미술품은 '랏'(Lot)이라고 합니다. - 경매회사는 매 랏의 미술품에 경매를 시작하는 추정가(estimate)를 제공하고 경매사는 낮은 추정가(low estimate)부터 호가 단위(bidding increment)에 따라 점점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응찰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랏에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랏의 미술품은 유찰이 되나, 여러 명의 응찰자가 계속하여 호가 단위를 높여 가면 경매사가 최고가에 응찰한 응찰자가 낙찰자(winning bidder)로 결정합니다. 만약 같은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호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 전에 서면 응찰(written bidding)을 제시한 응찰자를 1순위로 합니다. - 미술품 경매회사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미술품을 인도하고, 위탁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의 전시, 보관, 신뢰와 보증의 제공, 대금의 수령과 지급, 경매의 진행 등에 걸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이처럼 미술품 경매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지기는 하나, 대중에게 공개되고 여러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가격이 보다 더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술품의 경매가 대면 또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완전히 동일한 작품이 있기 힘든 미술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대금(hammer price) 이외에 미술품 경매회사에 지급되는 구매수수료(buyer's premium)나 위탁수수료(seller's premium)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 위탁자가 미술품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공개 경매에서 유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하여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산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세일 방식은 미술품 경매와는 달리, 응찰자 사이에서의 호가 경쟁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구매 희망자가 검토하고, 그 가격을 받아 들이거나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또는 판매 희망자가 작품가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경매를 위한 위탁수수료나 낙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적절한 시세를 모르는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미술품의 진위나 미술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컨디션, 유통 경로(provenance), 색상, 그 외 여러 요소 등에 대한 판단이 미술품 경매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보관에 관하여 (주)케이옥션 이상의 미술품 진위 보장 능력,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시장적 지위와 건전한 재무 상황, 미술품 유통에 관한 충분한 거래 사례, 미술품 보관에 관한 안전한 시설과 보험의 적용, 대금이나 수수료를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등 이상의 거래조건을 제시 받는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렇듯 당사의 중요 사업전략이 될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케이옥션 이외에 같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서울옥션,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또는 근현대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필립스(Phillips)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사와 미술품 전문 매체 등에서 선정되는 국내외 주요 갤러리들에 대한 접촉 역시 늘려가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당사는 외화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환헤지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진위, 보관, 검열 등에 관한 위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구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매각되면, 매각까지 공동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대한 성과보수, 제세공과금을 각 순서대로 공제하고 난 금원을 1주당 처분손익으로 하여 배분 받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까지 소요되는 미술품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의 부담으로 할 뿐,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삼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당사가 수취할 수 있는 성과보수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처분손익이 증권 취득금액을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손익이 높아지는 비율에 따라 수취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원본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주1)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모집 총액

상세한 성과보수 발생 가능한 경우 및 예상액 등은 본 증권신고서 「투자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별지 성과보수 부분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에 관하여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당사는(주)케이옥션으로부터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미술품 보관을 제공받고 있으며, 미확정된 장래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케이옥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 관련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는 당사가 구체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당사는 1실당 연 3,000만원 (VAT 별도)의 확정금액에 의한 미술품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주)케이옥션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 「제2부 I. 회사의 개요 및 II. 사업의 내용」에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담당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4-1. 투자자 총회 및 의결권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하고, 증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①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자총회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특정한 투자자 총회를 위하여 또는 모든 투자자 총회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고 그 위임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38조 제5항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투자자는 투자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4-2. 투자수의 등 분배

기초자산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잔여부분 없이 중국적으로 매각)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대로 귀속되고, 처분손익은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1) 청산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 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주1)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모집 총액

상세한 성과보수 발생 가능한 경우 및 예상액 등은 본 증권신고서 「투자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별지 성과보수 부분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과 관련된 서류, 청산과 청산손익에 관련된 장부, 투자자 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의2(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 계약 또는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공동사업의 목적상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의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공개를 유보하거나, 미공개, 일부 공개할 수 있다.
- ② 투자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련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투자자명부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 ④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영업시간 내에 공동사업 운영자 본점 주소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실비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투자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하는 문서가 그 출력 시점에서 본 조에서 정하는 문서들의 등본 또는 초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
- ⑥ 본 조에 의한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본 투자계약, 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의 내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조에서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

-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4-4. 투자대상 기초자산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투자자는 투자계약에 따라 기초자산 처분 및 손익배분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위임하고 당사가 이 청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고지한 처분계획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이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된 처분계획 대로 기초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한다.
- ② 전 항의 기간은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 ③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은 기초자산의 보유기간, 매각 예상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 경기 변동,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향후 전망,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 기타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 항에 있어 동종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의 모집 사례, 국내외의 미술품 판매업자나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익률, 공동사업에 소요 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처분 가액, 시기, 매수자의 결정
 2.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운송, 전시
 3.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의 지출
 4. 기타 상기 각 호에 부수하는 권한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

1. 기초자산의 매각

: 기초자산이 잔여 부분 없이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매각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 의무

: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이 확정되거나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 사항

: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 결과의 요지에, 청산까지의 비용, 성과보수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처분에 관한 권한
-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종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4-5.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과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등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손해배상책임)

- 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인 공동사업 운영자와 신고 당시의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4-6. 재판관할 등

투자계약에 의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행인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7.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

분을 취득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 처분손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소유자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에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에 대한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에 대한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에 대한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에 대한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⑦ 증권에 대한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② 투자자는 증권에 대한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에 대한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에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에 대한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⑤ 투자자는 증권에 대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5.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5-1.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발행인의 도산위험과 법적 절연 관련

가. 공유지분(소유권)의 입증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에 수반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보관을 위탁한 (주)케이옥션이 점유하게 되는데,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비율, 기초자산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사서인증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wesahreart.com>)에서 투자자 명부 중 투자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나 사서인증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제도나 도산절연이 인정되는 신탁제도와는 다르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당사가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때에는 당사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산절연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케이옥션과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기초자산을 점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도산 등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관리, 처분을 위하여 법무법인(유)세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계속적 보관 및 처분노력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과 사업중단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제17조(증권의 배정, 실물증권의 미발행 등)

-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한 투자자는 [별첨 2] 증권의 배정방법에 따라 증권을 배정받는다.
- ② 관련 법령에서 증권 전자등록 등 발행 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은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한다. 실물로 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에 따라 증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투자자가 증권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30조(투자자명부의 확정과 작성)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청약에 대한 배정 및 증권 취득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투자자명부”)를 확정하여 작성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3. 투자자가 취득하는 증권 수와 비율
 4. 전3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사유와 변경일시, 변경된 내용
- ③ 투자자명부가 확정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취득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위 및 부대되는 의사표시, 기초자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그에 부대되는 행위 등에 대한 권한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공동사업과 본투자계약을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 모집 이전에 한 행위들은 투자자에 의하여 추인 받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를 부인·해지·철회할 수 없다.

제32조(확정된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

공동사업 운영자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제16조에 따라 사서인증의 방식으로 공증하고 이후 변경되는 투자자명부는 확정일자인의 방법으로 한다.

제33조(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

-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투자자명부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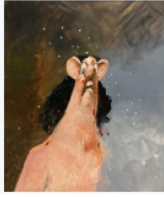
- ① 투자자명부가 확정된 후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는 양도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고 양도 승낙을 한 경우, 투자자명부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투자자명부의 변경사항을 사서인증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명부의 변경 사항만을 사서인증하여 변경 전 투자자명부에 첨부함으로써 유효한 투자자명부의 확정 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기초자산의 보관위치 제공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보관위치를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전시기간이 종료되면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할 계획이며, 향후 그 보관장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그 변경된 보관위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8조의3(취득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등)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기초자산을 투자자를 위하여 보관·관리·매각한다. ② 전항의 보관·관리·매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미술품 전문 수장고 등)의 이용과 그 변경 2. 기초자산의 상태와 시가에 대한 조사 3.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촬영, 홍보, 전시 4.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금의 지급청구 5. 기초자산의 훼손 또는 파손이 있어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경우, 그 수리 또는 복원 6. 기초자산의 처분 시기, 처분 상대방, 처분 가액의 결정 7. 전 1호 내지 6호의 업무를 위한 전문가 등 제3자나 시설의 활용 8. 전 1호 내지 7호의 업무를 위한 기초자산의 운송과 운송업체의 사용 9. 전 1호 내지 8호의 업무를 위한 비용·보수·수수료의 지출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전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일체를 취소·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단,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의 해지·철회는 가능) 받는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모총액 대비 [100]%(이하 “최소 청산목표액”) 이상을 매매 대금으로 하여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 약정되거나 최소 청산목표액 이상으로 미술품 경매에 출품하기 위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투자계약에 의해 투자자들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한 권리, 권한 일체를 취소·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외의 기초자산 처분은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본 조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 관련 업무규정」의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기초자산 보관장소 확인방법(예시)



작품 보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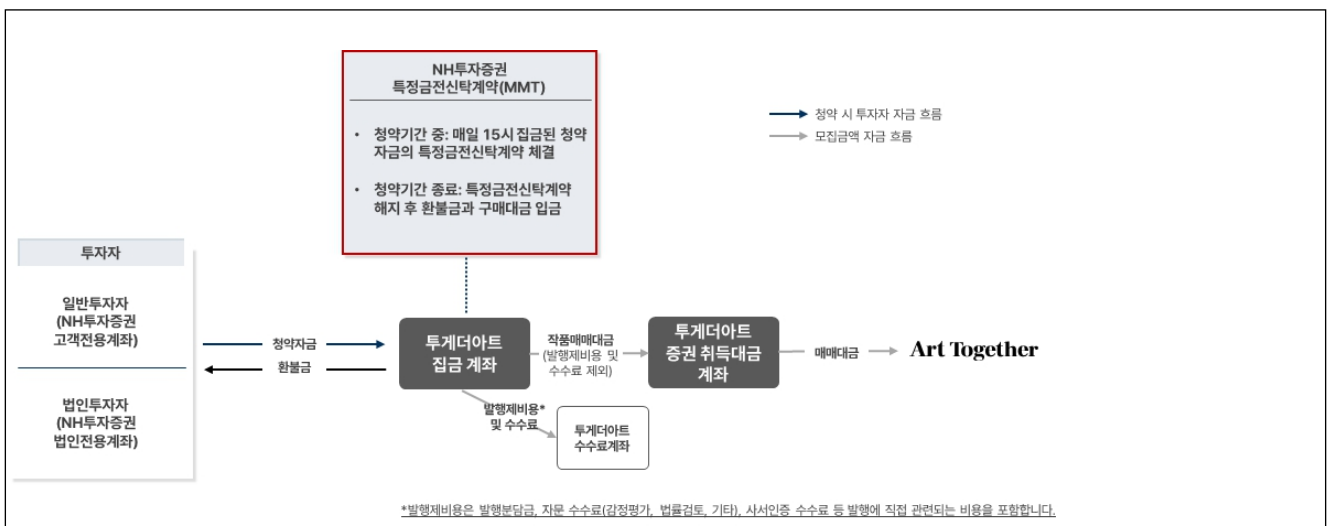
K Art Space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보관장소 확인방법

5-2. 투자자 예치금 보관 관련

본 공모로 인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기간 중 당사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집금계좌에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는 경우, 당사는 그 예치금에 대하여 NH투자증권을 수탁사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기간 중 매일 오후 3시까지 모집된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좌에 분리하여 예치함으로써 청약기간 내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도산절연 효과를 가집니다. 당사는 청약기간 종료 후 투자자 명부가 확정되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배정된 증권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하며, 배정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환불하며, 공모총액에서 기초자산 취득금액 및 발행제비용 등을 각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 (주1)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에 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본 투자계약증권의 첨부서류로 제공됩니다.
- (주2)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청약기간 중 매일 오후3시를 기준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위 제공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계약서입니다.

5-3. 유통시장 관련

본 공모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법한 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적법한 유통시장의 개설 시기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12월 종전 운영하던 미술품 '조각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유통시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각거래소 폐쇄 시점에서의 미술품 조각거래 기록을 모두 DB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향후 납세 의무 등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시장 폐쇄에 따르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본 공모로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는 그 양도 및 양수를 위한 양도 통지 및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나, 양도 및 양수에 따르는 수수료와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위 조각거래소 폐쇄 당시의 당사 조각거래소를 이용하였던 고객이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시장 폐쇄로 인한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양도 및 양수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조각거래소 폐쇄 전까지 당사가 모집한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의 대상인 미술품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관 및 처분 노력을 계속하여 투자자 보호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시장이 개설되는 경우, 해당 유통시장에서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노력과 투자자의 협조에도 유통시장의 개설 시기나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이 그러한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에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에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3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

지는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533)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이러한 유통시장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참고하시어 청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증권의 시장성 제한과 유통 노력 등) ① 증권 모집 시점에 증권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다수 당사자에 의하여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유통 또는 양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적법한 양도가 가능한 공개 또는 비공개 시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하 “유통 노력”)을 다한다. ③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유통 노력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는 증권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증권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발행의 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5-4.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 관련

가. 투자자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기초자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따르는 위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에 따르는 위험, 매각기간의 장기화에 따르는 위험 등 당사가 공동사업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기재하고,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예상되는 투자위험요소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기재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세한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당사가 기재한 위험의 현실화, 당사가 미처 기재하지 아니한 위험이나 당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전에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46조(위험의 고지)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본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하 “투자위험”)으로 고지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을 증권의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도 기재 할 수 있다.

1. 본 투자계약은 투자에 따르는 손해와 이익에 따라 처분손익의 유무와 처분손익 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 처분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 또는 증권의 모집 시에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투자자성향진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약 또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성향진단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 중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
3. 기초자산의 판매 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장기간 동안 증권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4. 기초자산의 판매가액 또는 투자의 처분손익 합계가 증권 공모총액보다 낮을 가능성과, 비용을 공제한 후 전혀 청산금이 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5.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본 투자계약 체결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시장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6.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본 투자계약에 따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기초자산을 유지·보관·관리·처분하고 투자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이 처분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
8. 투자자총회 결의 등 본 투자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행위와 청산 절차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여 청산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합리적이라 판단 하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공동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
9.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10. 기초자산의 진위와 평가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의존하며, 기초 자산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제3자의 평가나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11.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2.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상황과 국내 또는 국외의 경제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기초자산 시장의 침체는 증권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13.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기초자산 유지·보관·관리·처분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본 투자계약서,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집되는 증권,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 일체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15. 본 투자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은 본 투자계약, 기초자산, 본 증권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
17.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를 포함한 어떠

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18.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또는 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매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법상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 체결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검토한 세법의 적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추후 공동사업 운영자가 확인하지 못한 세법의 적용이나 기타 세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손익금 혹은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세금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과 투자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9. 최종적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신고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타소득세,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타 조세나 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투자위험과 다른 사유로도 처분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투자자는 전항과는 별개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직접 수행한 투자성향분석이나, 계좌관리기관, 예치금 보관업자,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위임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의하여 수행된 투자성향분석 기타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의 노력을 함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술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고지받고,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나. 광고기준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당사의 브랜드 광고 등에 대해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광고 지침」 ("광고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광고는 광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고 배포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광고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광고"란 회사가 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다음 각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회사, 제휴관계에 있는 타 회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포함) 또는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자 등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3)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금융투자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

4) 회사가 발행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5)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가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

라.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이란 회사가 미술품조각투자를 위하여 발행·판매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표시사항) ① 투자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회사의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가.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나. 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다.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라.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마. 세제(稅制)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제도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시행 시점 및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제도 관련 중요사항

바. 해당 투자광고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상품의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 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사실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사항

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나. 과거 수익률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

4.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5. 해당 광고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6.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7.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8.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② 제1항의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별표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사항(즉, 이 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 각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투자광고의 글자크기, 폰트, 글재색 및 배치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험고지내용을 포함한 투자광고의 주요한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영상매체 또는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고지내용을 포함한 투자광고의 주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재생 속도를 조절하고, 음성 정보는 자막으로도 표시할 것

제5조(금지행위) 투자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다. 금융투자상품의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4.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5. 개별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6.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 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 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7.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8. 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9.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0. 투자광고에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유관 금융기관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판매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12.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13. 기타 [별표 2]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제6조(온라인 투자광고)

회사는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1]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필의 표시)

①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준법지원부서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사실과 투자광고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준법지원부서의 사전심을 받은 투자광고물의 경우: "준법지원부서(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호 (20 . . ~ 20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경이 없이 투자광고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의 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별표1]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투자광고지침][별표 1]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1. 온라인 투자광고의 종류

가.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시스템(HTS, MTS 등),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

나. 소셜미디어 광고: 소셜미디어 등(가입자간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 글자수 또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온라인 매체)을 이용한 투자광고

다. 검색광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 시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광고문구 등이 표시되는 투자광고

라. 배너광고: 주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한정된 공간에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마. PUSH 메시징 광고: 이메일, 메신저, 알람 등을 이용하는 투자광고

바. 이용후기 광고: 회사가 특정인(해당 서비스를 이용 해본 경우에 한 함)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온라인 매체에 이용후기(단, 개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는 불가)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사. 기타 온라인 광고: 기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광고

2. 온라인 투자광고 종류별 심의기준

종류	심의기준
가. 공통	○ 온라인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 의무표시사항 등은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셜미디어 광고,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면이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 광고	○ 회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타 회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일부 공간에 대해 회사가 실질적인 게시 및 삭제 등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가 가능하다.
다. 소셜 미디어 광고	○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 투자자 유형별 금융투자상품 추천 등 투자유인성이 높은 표현의 경우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지원부서 사전심의가 완료된 이미지 파일(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은 본문에 게시할 수 있다. ○ 회사가 운영 중인 매체 내 광고물은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색 광고	○ 회사의 명칭, 로고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이 지침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투자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광고면적상 제약을 고려하여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배너 광고	○ 정지형 배너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에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결화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배너광고의 경우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해당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광고면적상 제약을 고려하여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바. PUSH 메시	○ 광고면적상 제약에 따라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

징 광고	에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 회사가 운영 중인 매체(단, 이메일은 제외)를 통한 광고물은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이용 후기 광고	○ 해당 게시물에는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작성하였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시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투자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온라인 광고	○ 기타 상기 매체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심의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정보공유 및 전달과정의 책임 소재

- 가. 회사는 최초 게시한 내용과 해당 회사가 직접 정보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나. 해당 온라인 매체 참여자간 공유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다.

[투자 광고 지침] [별표 2]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 나.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의 금융투자상품, 영위 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다. 특정시점, 특정기간 또는 특정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4.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광고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나. 제휴상품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휴회사 등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다. 절세금액을 금융투자상품 자체의 성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5-5.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및 분쟁처리 절차

가. 보험 및 공제 등

당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 손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및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 ① 당사는 (특)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의 사이에서 1억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개인정보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 ② 당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하여 10억원을 한도로 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③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프로그램인 '케이아트 스페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주)케이옥션이 부보하는 총 한도

1,900억원,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 보관 미술품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미술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건당 30억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케이아트스페이스와 동일한 요율에 따라 개별 미술품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로 인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타의 손해 또는 손실의 보상체계

본 공모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원금의 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원금 보장이나 공동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르는 처분손익이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전에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 투자위험요소의 현실화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위험요소가 현실화된 경우에 있어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	
제4조(투자자보호기금의 인출과 사용)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인출하고 사용한다.
②	투자자보호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인출하고 사용된다.
1.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4.	전 1호 내지 전3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투자자보호기금은 기초자산의 시가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용도로는 인출되고 사용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보호기금의 인출과 사용은 본조 제2항 각호의 사유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위험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사 서비스약관에 의한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회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공시)	
회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총액, 관리방법, 인출사유 발생, 사용처에 대하여 회사의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공시한다.	

- (주1) 증권신고서 발행일 현재 당사가 적립하고 있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총액은 금 453,546,000원(원금 기준, 이자가 추가되어 증가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 (주2) 본 공모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청산되지 아니한 기초자산(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모집된 기초자산과 본 증권 신고서로 발행되는 공모총액을 포함한다.) 잔액의 5%에 해당하는 투자자 보호기금은 금 447,216,500원입니다.
- (주3) 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모집되어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기초자산은 109점, 금 7,916,330,000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총액을 합하여 누적잔액 8,944,330,000원에 대하여 5%에 해당하는 투자자보호기금 447,216,500원을 초과하는 453,546,000원(원금 기준, 이자가 추가되어 증가될 수 있습니다)을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금번 공모 후에는 공모총액의 0.3%에 해당하는 3,084,000원을 추가로 투자자보호기금에 적립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보호기금 적립기준과 실제 적립액

금회 모집액(원)	중전 누적잔액(원)	합계(원)	적립기준(5%, 원)	실제적립액(원)	금회 추가 적립액(원)	추가 적립 후 투자자 보호기금(원)
1,028,000,000	7,916,330,000	8,944,330,000	447,216,500	463,511,659	3,084,000	466,595,659

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보증

당사는 매도인인 소더비(Sotheby's)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위작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 받습니다. 보증에 관한 내용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라. 민원 처리 내규 및 분쟁처리기구

당사는 본 공모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당사의 회원이자 고객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의 전반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외부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를 두고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자율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절차의 안내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민원처리지침,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분쟁처리기구의 외부전문위원을 당사 홈페이지(www.weshareart.com)에 공시 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지침]

제 1조 (목적)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 ① 회사의 대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 ② 민원인이라 함은 회사의 회원(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를 포함한다)으로 감독당국 또는 회사에 민원 또는 분쟁을 제기한 고객을 포함하며,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 3조 (업무분장)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토록 한다.

제 4조 (민원처리 보고체계)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은 회사의 평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 5조 (민원처리의 종류 및 방법)

- ① 자율조정: 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해명 요구 등으로 회사 혹은 감독 당국에 민원제기 된 건으로 회사가 처리함이 적절한 건
- ② 직접처리: 법규위반 및 부당행위 고발성 민원으로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는 건
- ③ 이첩처리: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 요청 등 이의 신청성 민원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직접 민원 신청한 것으로 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아 처리하는 건

제 6조 (민원의 단계별 관리 및 처리)

모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규 미비, 제도 정비 등과 관련된 건은 예외로 한다.

- ① 1단계(접수일+1영업일): 민원인의 불만/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 향후처리과정을 안내하여 신뢰감을 형성한다.
- ② 2단계(접수일+3영업일): 민원처리부서 지정 후 내용을 전달한다.
- ③ 3단계(접수일+7영업일): 사실조사 및 자율조정 단계로 불만/요구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관계확인 및 자율조정을 시도한다.
- ④ 4단계(접수일+14영업일): 민원처리부서에서 조사된 사실을 재검토 및 필요시 협의회 구성. 최종 검토내용을 유선 안내하여 자율조정 시도하고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서로 안내문을 작성한다.
- ⑤ 5단계(접수일+30영업일): 안내 회신단계로 민원인 및/또는 감독당국에 안내문 발송 및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제 7조 (분쟁처리기구)

- ① 회사는 민원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분쟁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 1.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1인
 - 2. 민원을 담당하거나 그 민원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1인
 - 3. 외부전문위원 1인 이상 3인 이하
- ③ 분쟁처리기구에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자율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절차의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 ④ 분쟁처리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외부전문위원에게는 회사의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상한으로 하여 실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분쟁처리기구의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정으로 그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 ⑤ 분쟁처리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한다.
1.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 상장회사에서 10년 이상 재무에 관한 경력이 있는 자
 2. 미술품 판매회사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등기된 임원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투자자산운용사, CFA, FRM의 자격을 가지고 금융투자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협회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사의 이사회가 인정한 자

[분쟁처리절차]



(주1)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절차 구조도입니다.

(주2) 당사는 민원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처리기구에서는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합니다. 분쟁처리기구의 외부 전문위원 성명과 주요 약력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5-6.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청산업무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적 제3자를 선임하여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업무 처리규정 및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은 공시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하여서는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 증권의 첨부서류 및 「제1부V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49조(사업중단시의 청산 업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을 공시한다.

[청산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중지」 사태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그에 수반하는 투자계약 관련 업무의 수행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정지되는 사태를 말한다.
2. 「사업중단」 사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다. 회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라 함은 회사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자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예치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 회사의 계산으로 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예치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위탁계약」이라 함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회사가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를 위임하는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 각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4조(독립적 제3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를 대비하여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위탁계약은 복수로 체결될 수 있다.
- ③ 회사는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해제,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이 때의 공시는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의 예에 의한다.
- ④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10인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2. 회계법인
 3.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업종으로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4. 기타 전3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회사의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탁계약에 포함되는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에서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에 의한 업무를 위탁한다.
- ② 사업중단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가 우선한다.
- ③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원리금, 상환금, 투자금, 예치금 등(“예치금 등”)의 배분과 장부의 작성
 2. 전 호의 대금에 대한 지급
 3. 예치기관에 대한 송금 지시
 4.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5. 전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요청

6. 전5호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권한

7. 전6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지, 공지, 공시, 고시

8. 위탁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④ 전 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투자자명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한 공시)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예정된 서비스 재개 일정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②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사업중단 일자 및 사유,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즉시 공시한다.

③ 전 2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④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공시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공시에는 예치금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투자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등재된 투자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 사업중단 사태 이후의 통지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한 통지는 사업중단 사태 발생 전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전 항의 통지에는 예치금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발행 후 공시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공시 규정"). 당사의 공시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www.weshareart.com)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하는 공시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eshareart.com)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공시업무의 수행,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정관에 정하여진 것, 투자계약서나 투자계약증권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공시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법률상·계약상 권한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시사항으로 지정된 사항들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회사의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각 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 각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9조(공시방법)

- ①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 ② 회사의 공시는 회사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전자공시

6-1. 정기공시

당사는 아래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매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들도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준일 중 각 사업연도 12월 31일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중 하나를 기준일로 하여 하는 공시는 정기공시로 봅니다. 기준일에 하는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보고서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8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주1)

(주1)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포함한다.

(나) 분·반기 보고서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한편, 당사는 2023사업연도 상반기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또는 매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에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이 발행인으로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5조(정기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이하 “사업보고서 공시”).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8.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다만, 투자계약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포함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이하 “분·반기 보고서 공시”).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 ③ 회사는 투자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정기공시 사항 또는 기준일이 있는 경우 그기준일에 정기공시를 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

제35조(기준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볼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 투자계약에 기한 처분손익을 받을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추가·포기·정정·수정을 포함한다)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공시할 때 직전 사서인증일과 공시일 이후 사서인증 일 사이에서 증권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변경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 없이도 확정된 투자자명부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준일로 볼 수 있다.

1. 증권의 모집이 완료되어 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
2. 각 사업연도의 12월 31일
3. 기초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2. 증권의 순자산가치(NAV)
3. 전 2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4.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사용, 적립, 잔액, 기타
5.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6-2. 수시공시 등

당사는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조치나 처분,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발행인이 하는 사업중단시의 청산 업무에 관한 공시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수시공시로 봅니다.

다만, 당사는 아래 수시공시의 공시사항에 대하여서는 정하여진 공시 시기에 관계 없이 가능한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향후 당사가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KRX)에 본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수시공시 시한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주1) 수시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 (주2)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 (주3)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6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전 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 ④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투자계약서]

제35조(기준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볼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 투자계약에 기한 처분손익을 받을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추가·포기·정정·수정을 포함한다)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공시할 때 직전 사서인증일과 공시일 이후 사서인증 일 사이에서 증권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변경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 없이도 확정된 투자자명부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준일로 볼 수 있다.

1. 증권의 모집이 완료되어 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
 2. 각 사업연도의 12월 31일
 3. 기초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일로 본다.
-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2. 증권의 순자산가치(NAV)
 3. 전 2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4.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사용, 적립, 잔액, 기타
 5.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사업종단시의 청산 업무)

- ①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사업종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사업종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른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을 공시한다.

6-3. 기타공시

당사는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아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가) 자율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	

(나) 조회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 (주1)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주2) 회사는 조회공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 규정]

제7조(자율공시)

회사는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8조(조회공시)

- ①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공시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추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예비)투자설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이 첨부서류로 제출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첨부된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서비스 약관과 당사가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규정들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weshareart.com>)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결정 전에 참고하시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공개)

가. 정관

나. 투자계약관계서류

(1)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2) 투자계약서 및 [별첨] 일체

다. 업무위탁 관련 서류 : 특정금전신탁계약(안)

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마. 이사회 의사록

바. 감사보고서 : 2023년말 감사보고서

사.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

(1)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2) 한국기업평가(주) 미술품 감정평가보고서

(3)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소견서

라. 특정금전신탁계약서(안)

마. 기타

(1) (기초자산에 대한) Fact Sheet

(2) (기초자산에 대한) Condition Report

(3) 공동사업 운영자 진술서 일체[미술시장, 기초자산, 기초자산 가격 적정성 등]

(주1)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청약기간 내에 당사와 수탁사 사이에서 매일 오후 3시에 체결되며 사전계약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에 따라 위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계약서입니다.

(주2)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제공한 것으로 계약의 주요 조건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3) 투자계약서는 청약기간에 투자자가 청약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류로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투자계약서입니다.

(주4) 투자계약서의 첨부서류인 [별첨]에는 발행인에게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공유자가 되는 경우 투자자가 발행인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초자산의 보관과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그 위임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에 청약을 하며 해당 위임장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투자계약서입니다.

(주5) 투자계약서의 첨부서류인 [별첨]에는 청약 일정, 청산의 절차와 방법, 기초자산의 주요 내역, 성과보수율과 성과보수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6) 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는 발행인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2023년도말 기준으로 금 453,961천원을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2부 III. 5. 재무제표 주석 9.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7) 첨부서류 중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팩트 시트(Fact Sheet),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중 기초자산의 상세한 사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의 URL 주소에서 기초자산의 사진과 해당 서류들을 투자자 명부 확정시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 등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사진 등에 관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금지됩니다.

8. 이해상충 가능성 및 방지체계

당사는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 사이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방지체계를 투자계약서와 당사 자체 규정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민원처리지침"을 두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지침"과 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서는 「제1부VI. 5-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투자자-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에는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사업의 성공보다는 당사의 이익이나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조달하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투자자에 대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공동사업의 수행을 확약하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참여합니다. 당사가 발행제비용에서 발행시까지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사의 이익으로 한다는 점이나, 공동사업의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 보관료나 보험료 등을 당사가 부담한다는 점, 당사가 수취하는 성과보수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통하여만 수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투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을 설명해 줍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당사가 선정하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이나 공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두고 당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2.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에 참여한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조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민원처리지침을 통하여 투자자 사이의 민원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5조 (공동사업 참여자)

- ①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계약이나 위탁 등으로 분담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 1. 공동사업 참여자의 상호
 - 2. 공동사업 참여자가 위탁 등으로 분담하는 공동사업의 내용
 - 3.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관계(지분관계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포함한다)
 - 4. 공동사업 관련 경력(내용 및 기간)
 - 5.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수, 수수료 기타 계약의 중요한 내용
- ③ 전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투자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 공동사업 참여자가 공개할 수 없거나 공개를 거절한 정보, 공동사업 참여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기타 관련 계약이나 법령에서 보호되는 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 ④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8조(이해상충 방지체계)

- ① 공동사업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공동사업 운영자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함)와 투자자,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령 또는 규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투자자 전원 또는 다수 의결권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가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3.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율한다.

제51조(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

-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하여 청산되지 아니한 기초자산(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모집된 기초자산과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총액을 포함한다) 잔액의 [5]%에 해당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누적적으로 적립한다. 또한 본 투자계약에 있어서는 모집예정금액의 0.3%를 기존 적립금에 추가하여 적립한다.
-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과 사용, 분리보관 등의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거나 공시한다.
-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분실, 도난, 훼손,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초자산의 보관 시 미술품에 관한 보험에 가입된 미술품 보관시설을 사용한다.
-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침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임원의 손해배상위험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52조(분쟁조정절차)

공동사업 운영자는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투자자 민원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처리한다. 이 때, 민원처리지침에는 투자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방법과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3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2. “최대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3. “주요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명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9(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5 및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1억원 이상의 매출/매입거래
2. 건당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자산의 구입/처분
3.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
4. 연구개발의 이전
5. 면허 약정
6. 건당 1억원 이상의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복리후생(주거 안정,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를 제외한다]
7. 담보 또는 보증
8. 경영위탁계약
9. 기타 위와 유사한 정도의 거래

제5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6조 (이사회 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

제7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중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약관 또는 약관과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응찰·낙찰·위탁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2.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약관 또는 약관에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거래를 말한

다)

3. 기타 상관습이나 상대방인 관계회사가 전2호에 의한 거래로 보는 거래(경매약관, 정형화된 판매 계약서, 임직원 복리후생에 따르는 대여금, 파트너 수수료, 할인이나 우대 정책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9. 본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 유형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여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이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일반 투자자가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사례에서 최소투자한도와 최대투자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계약증권 사례 검토(미국)				
발행사 (서비스명) [기초자산 종류]	1주당 금액 (USD)	최소투자한도 (1건, USD)		최대투자한도 (1건, USD)
		최초 투자자	계속 투자자	
Masterworks [미술품]	20~100	15,000	500	100,000~ 250,000
RoyaltyTraders (서비스명: SongVest) [음악 저작권(료)]	100~150	1주 이상	1주 이상	없음
Otis Gallery [동산(미술품, 만화책, 신발, 카드 등)]	1~100	1주 이상	1주 이상	최대 공모액의 20%
RSE Collection [동산(스타워즈 피규어 등)]	10~212.5	1주	1주	2,000주~5,000

당사가 검토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들을 요약하면, ① 1주의 금액을 미화 2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고 1인당 미화 15,000달러(최초 투자자) 또는 500달러(계속 투자자; 종전 투자계약증권을 1회 이상 동일한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한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Minimum purchase)과 투자자 1인당 1건당 미화 100,000달러에서 250,000달러 사이의 최대투자한도(Maximum purchase)를 두고 있는 사례, ② 투자자 1인의 1건당 최소투자한도를 1주의 금액으로 하고 최대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사례, ③ 최소투자한도를 1주로 하되 투자자 1인이 공모총액의 20% 까지의 증권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 ④ 최소투자한도를 1주로 하되 1건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2,000주에서 5,000주까지의 취득 수량을 제한한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모든 투자계약증권에서 전문투자자(qualified investors)가 아닌 이상 투

자자 연소득의 10% 또는 순자산의 10%를 넘는 투자는 발행인이 적격 투자(qualified purchase)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 전문투자자는 ① 최근 2년간 1인 평균 연소득 200,000달러 이상 또는 가구 평균 연소득 300,000달러 이상인 자, ② 1,000,000달러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자, ③ 관련 미국 법률(Rule 501, Regulation D)에 의하여 투자가 가능한 법인 등을 말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주당 가액인 100,000원을 최소투자금액으로 하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서는 투자자 1인에 대하여 [300]주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최대 청약 한도로 하고, 증권의 배정 이후에도 1인의 투자자가 당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1)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동조 제6항에 의한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

(주2) 당사는 투자자의 청약 전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공격투자형 투자자에게 부합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그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수령합니다.

(주3) 당사는 미국에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허용하는 Reg. A. 및 Reg. A.의 수정안(Amendment)에 따라 SEC의 검토를 받아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 1인당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00달러의 투자한도 제한을 두되, 일반 투자자의 순자산가액 또는 연 수입 대비 10% 이하의 금액만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순 자산 1,000,000달러 또는 연 수입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인이거나 발행인 임직원, 법인, 금융회사, 공익투자자, 투자신탁, 연기금 또는 5,000,00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사나 그 고객이어야 합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Together Art,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8년 7월 30일에 미술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02-6959-1909	https://weshareart.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발급번호 제 20221207010067 호

벤처기업확인서

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확인유형
- 유효기간

주식회사 두게더아트

221-87-01096

도현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삼성동) 4층(위즈빌딩)

벤처투자유형

2022년 11월 15일 ~ 2025년 11월 14일

위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벤처기업확인기관

이 확인서는 「벤처기업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이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확인하고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기간: '20.7.1~'23.6.30)

벤처기업 해당사유: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23

발급번호 : 0010-2023-446537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업명 :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사업자등록번호 : 221-87-01096 법인등록번호 : 110111-6827096
대표자명 : 도현순
주 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
유효기간 : 2023-04-01 ~ 2024-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a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

당사는 미술품(회화 등)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그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전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다수의 분할된 소유권을 소규모 매수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공모를 포함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 이를 보관 및 관리한 후, 기초자산을 처분하여 그 투자에 따르는 처분손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공동사업을 주로 영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제2부 - I. 회사의 개요. 5.정관에 관한 사항, 다. 사업목적현황 및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의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부문별 비중]

사업부문	2023년 매출 비중	비고
수수료 수익	-	-
미술품 대여수입	1%	-
기타 수익	99%	-
합계	100%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본지에 따라 미술품의 점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술품 대여업(미술품 렌탈 등)을 영위하지 아니합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상법 제290조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연월	내역
2018년 07월	(주)투게더아트 법인 설립 * 발행주식수 : 300,000원 / 총 자본금: 30,000,000원
2018년 10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 증가한 주식수: 75,000주 / 증가한 자본금: 7,500,000원 / 총 자본금: 37,500,000원
2018년 11월	국내 최초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오픈
2019년 08월	특허등록(제10-2013526호예술품대여서비스시스템및방법)
2019년 09월	제 4회 '한경 핀테크 컨퍼런스 2019' 특별상 수상
2019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5층
2020년 04월	아트투게더 플랫폼 대규모 리뉴얼 오픈
2020년 10월	특허 등록(제10-2169669호 예술품 거래 중개 시스템 및 방법)
2020년 12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149,990주 / 증가한 자본금: 14,999,000원 / 총 자본금: 52,499,000원
2021년 04월	특허 등록(제10-2245845호 소유권 지분 분할 및 거래가 가능한 예술품 거래 중개 시스템 및 방법)
2021년 06월	제1회 대한민국 스마트 금융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1년 07월	상환전환우선주(75,000주)의 보통주 전환 * 증가한 주식수: 0주 / 증가한 자본금: 0원 / 총 자본금: 52,499,000원
2021년 08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33,340주 / 증가한 자본금: 3,334,000원 / 총 자본금: 55,833,000원
2021년 11월	삼성전자 C-lab Outside 선정
2021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
2022년 03월	아트폼스(케이옥션 자회사) 지분투자 유치(최대주주 주식 일부 양수도) 및 업무협약 체결
2022년 03월	김항주 대표이사 취임
2022년 04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출자전환) * 증가한 주식수: 26,023주 / 증가한 자본금: 2,602,300원 / 총 자본금: 58,435,300원
2022년 04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55,763주 / 증가한 자본금: 5,576,300원 / 총 자본금: 64,011,600원
2022년 05월	롯데카드 '디지로카' 제휴 서비스 출시/ 제3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스타트업 선정
2022년 07월	PCT 출원 (PCT/KR2022/009501 미술품 거래 관련 데이터 처리 방법)
2022년 08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66,915주 / 증가한 자본금: 6,691,500원 / 총 자본금: 70,703,100원
2022년 08월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 * 증가한 주식: 10,000,000주 / 증가한 자본금: 1,000,000,000원 / 총 자본금: 1,070,703,100원

2022년 10월	제3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우수상 수상/ 교보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휴
2022년 11월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휴
2022년 12월	NH투자증권 미술품 조각투자 업무 협약 체결/ 카카오페이 아트워크 공동구매 및 카카오 아지트 전시회/ 카카오브레인 karlo's Moment 전시회
2023년 01월	아트투게더x카카오브레인 온라인 경매/ 한국판테크산업협회 '핀테크 ESG 위원회' 기업위원 위촉
2023년 02월	카카오브레인 공동 기획 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
2023년 02월	케이옥션 및 아트폼스(케이옥션 자회사) 지분투자 유치(최대주주 주식 일부 양수도) 및 업무협약 체결
2023년 03월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 그룹' 결성/ 도현순 대표이사 취임
2023년 04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504,777주 / 증가한 자본금: 50,477,700원 / 총 자본금: 1,121,180,800원
2023년 04월	NH농협은행(주) 업무 제휴
2023년 05월	케이옥션[케이아트스페이스] 미술품 보관 계약 체결
2023년 06월	NH투자증권(주) 업무 제휴
2023년 09월	상환전환우선주(1,857,792주) 보통주 전환
2023년 10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 증가한 주식수: 113,207주 / 증가한 자본금: 11,320,700원 / 총 자본금: 1,132,501,500원
2023년 11월	한국기업평가 업무 제휴
2023년 11월	나이스피앤아이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발족 및 업무 제휴
2023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현재 본점 주소지)
2023년 12월	하이투자증권 미술품 기반 STO사업 업무 제휴
2023년 12월	신한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 업무 제휴
2023년 12월	KB증권 토큰증권 사업 업무 제휴
2024년 01월	투게더아트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내용	소재지
2018년 07월 30일	설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4, 5층(역삼동)
2019년 12월 02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5층(논현동)
2021년 12월 06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삼성동)
2023년 12월 01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주1) 회사는 2023년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07-05	임시주총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승현	-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상준
2019-12-06	임시주총	사내이사 이승행	-	사내이사 류진혁
2020-07-30	임시주총: 주총이 아닌 임기만료	-	-	사내이사 김항주
2020-12-23	임시주총: 주총이 아닌 사임	-	-	사내이사 이승현
2021-03-31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은우	-	사내이사 이승행
2022-03-15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항주	-	-
2022-04-24	임시주총	감사 이상화 사외이사 김동선	대표이사(사내이사) 김항주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은우	-
2022-08-26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남경희 감사 신규식	-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은우
2023-03-30	정기주총	대표이사(사내이사) 도현순 사내이사 손이천 사내이사 이지현 감사 김병수	-	대표이사(사내이사) 김항주 감사 신규식
2023-08-29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	기타비상무이사 남경희
2023-09-20	임시주총	사내이사 주재승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 감사 박준원	-	사내이사 손이천 사내이사 이지현 사외이사 김동선 감사 김병수

- (주1) 2023년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남경희 기타비상무이사가 중도퇴임하고, 박지현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주2)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손이천, 사내이사 이지현, 사외이사 김동선, 감사 김병수가 사임하고, 사내이사 주재승,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 감사 박준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2023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김항주에서 (주)케이옥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등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과거 미술품 중개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고,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종류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6기 (2023년말)	제5기 (2022년말)	제4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325,015	11,325,015	8,849,239	558,330
	액면금액	100	100	100	100
	자본금	1,132,501,500	1,132,501,500	884,923,900	55,833,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1,857,792	-
	액면금액	-	-	100	-
	자본금	-	-	185,779,200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자본금	-	-	-	-
합 계	발행주식총수	11,325,015	11,325,015	10,707,031	558,330
	액면금액	100	100	100	100
	자본금	1,132,501,500	1,132,501,500	1,070,703,100	55,833,000

- (주1) 당사가 2018년 10월 11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5,000주는 2021년 5월 1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2) 당사는 2022년 8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 1,000,000,000원을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3)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4월 29일자로 보통주 504,77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 (주4)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는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5)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100,000,000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325,015	1,932,792	13,257,807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932,792	1,932,792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1,932,792	1,932,792	보통주 전환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11,325,015	-	11,325,015	-
V. 자기주식수	-	-	-	-
VI. 유통주식수 (IV-V)	11,325,015	-	11,325,015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수는 정관 제5조의 범위
- (주1) 내로 발행하며, 정관 제11조의2에 따라 우선주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000,000주로 합니다.
- (주2)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4월 29일자로 기명식 보통주 504,77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 (주3) 당사가 2018년 10월 11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5,000주는 2021년 5월 1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4)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는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5)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4. 주식의 총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3년 9월 20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직전 3사업연도 정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2월 07일	제5기 1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 추가 -휴게음식사업
2022년 06월 02일	제5기 4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류,잡화 포함) -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022년 08월 26일	제5기 6차 임시주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70,000,000주로 변경
2023년 07월 28일	제6기 1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제4조(공고방법) 제11조의 7(주식매수선택권)	1.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미술품 판매업 -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원칙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2023년 09월 20일	제6기 3차 임시주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24조(주주총회 소집) 제25조(소집통지) 제31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제33조의 2(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신설 제36조(업무집행) 제45조(감사의 직무)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47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0주로 변경 2. 코스닥 협회 표준 정관 준용하여 정비 3.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등 내부통제제도의 정관 명시

다. 사업목적현황 및 변경 사항

(1) 사업목적 현황

구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미술품 중개업	영위
2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영위
3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위
4	박물관 운영업	미영위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6	모바일 상거래 및 컨설팅업	영위
7	전자상거래업 관련 유통업 및 자문업	영위
8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위
9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미영위
10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영위
11	휴게음식점영업	영위
12	인터넷 전자상거래	영위
13	중고품 위탁매매업	미영위
14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미영위
15	수선업(의류, 잡화 포함)	미영위
16	대여업(의류, 잡화, 귀금속 포함)	미영위
17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영위
18	미술품 판매업	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 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2년 02월 07일	-	11.휴게음식사업
추가	2022년 06월 02일	-	12.인터넷 전자상거래
			13.중고품 위탁매매업
			14.무역업(패션잡화 포함)
			15.수선업(의류,잡화 포함)
			16.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17.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추가	2023년 07월 28일	-	18.미술품 판매업

2) 변경 사유

- 휴게음식사업 : 사옥 내 커피점 운영
- 인터넷 전자상거래 : (중전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류,잡화 포함), 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 중고명품 사업 진출 계획이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지 않으며, 관련 자회사 지분은 2023년 2월 지분 매각 완료

-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기타
- 미술품 판매업 :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 추가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1(주1)	11.휴게음식사업	2022년 02월 07일
2(주1)	12.인터넷 전자상거래	2022년 06월 02일
3(주2)	13.중고품 위탁매매업	2022년 06월 02일
4(주2)	14.무역업(패션잡화 포함)	2022년 06월 02일
5(주2)	15.수선업(의류,잡화 포함)	2022년 06월 02일
6(주2)	16.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2022년 06월 02일
7(주2)	17.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022년 06월 02일
8(주3)	18.미술품 판매업	2023년 07월 28일

휴게음식사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 기존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부대사업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해당사항 없음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사항 없음

- (주1)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위험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사항 없음
 - 미추진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류, 잡화 포함), 대여업(의류, 잡화, 귀금속 포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중고명품 조각투자 목적의 사업 추가하였으나, 자회사(엡플렉스)가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회사는 2023년 02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중고명품 조각투자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주2)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위험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미추진 사유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미술품 판매업 : 기존 미술품 중개업(조각투자 판매)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업 개편에 따른 판매구조 변경에 따라 사업목적 추가하였습니다.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기존 중개업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판매구조 변경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 하였으며,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간의 범위를 좁혀 전체 세계 미술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약 45.3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의 시장에서 약 678억 달러(약 77.8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약 503억 달러(약 57.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해지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간 미술 시장 규모는 평균 660억달러(약 75.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매하는 사업 또한 미술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주3)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 사업은 투자계약증권 공모 후, 미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소요액, 투자자금조달원천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2019년부터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특허번호 제10-2013526호, 제10-2169669호, 제10-2245845호)을 연구개발 하였으며, 당사의 전 인원은 이러한 연구개발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본 건 공모로 최초 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매출 및 수주상황은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종전에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해당 한다는 판단과 함께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조건부 제재면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적법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미술품 판매사업을 영위 할 계획입니다.

- 주요 위험 : 상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8월 본 건 투자계약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술품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미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미술품 중개업의 일종으로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청산손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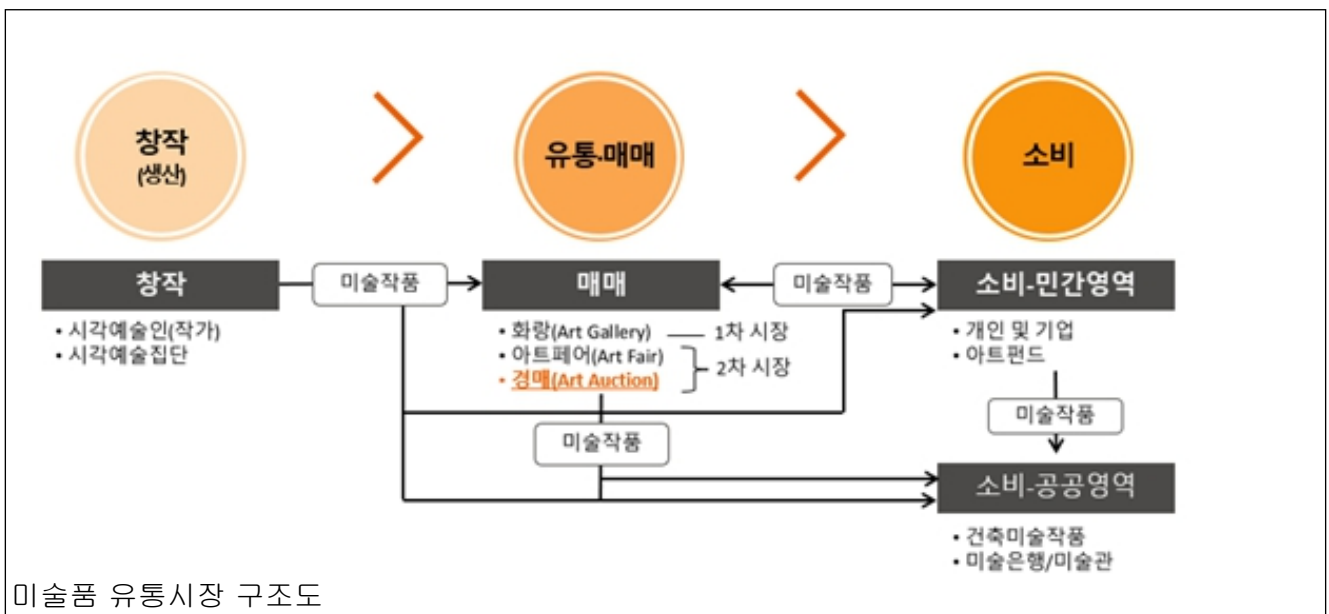
※ 당사가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제공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는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술품 시장과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시장

(1) 전통 미술품 시장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투자계약의 기초로 합니다. 그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중요한 만큼, 기초자산인 미술품 시장이 당사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시장은 창작된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하는 화랑(Gallery)이나 화랑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아트페어(Artfair)로 구성되는 1차 미술 시장(Primary Art Market)과, (주)케이옥션이나 (주)서울옥션과 같은 경매회사처럼 미술품의 재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2차 미술 시장(Secondary Art Market)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 1차 시장에 비하여, 2차 시장인 미술품 경매 시장은 양질의 미술품 확보 및 연속적인 경매 진행 능력 보유 여부 자체가 미술품 경매 시장의 진

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수 년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주)서울옥션과(주)케이옥션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해외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도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200년 가까이 사실상 과점 체제를 형성하다 2000년대에 들어선 최근에 와서야 필립스(Phillips)가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정도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미술품 보관자로서 공동사업자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은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인 K-Office를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면서 2차 시장인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케이옥션을 당사 최대주주로 두고, 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확고한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케이옥션이 보유한 K-Office는 방대한 유통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미술품유통 체계로, 미술품 유통 관리를 표준화 하였습니다. 케이옥션은 국내 미술품 시장에서 수 십년간 명성을 쌓은 전문가들이 해당 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에 매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술품 시장

당사가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토큰증권(ST) 등을 통한 미술품 취득과 판매는 미술품 시장 중 1차 시장과 2차 시장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미술품 시장에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개념이 물리적 관점에서 개별 미술품에 대한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비하여, 당사가 금번에 공모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 등은 1:1의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술품을 법률적 또는 경제적 개념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재원으로 취득하여 그 운용과 청산에 대한 수익을 나누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장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다수 투자자로부터의 재원 조달이라는 점에서 공동사업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증권성을 가지게 됩니다.

2. 당사가 종전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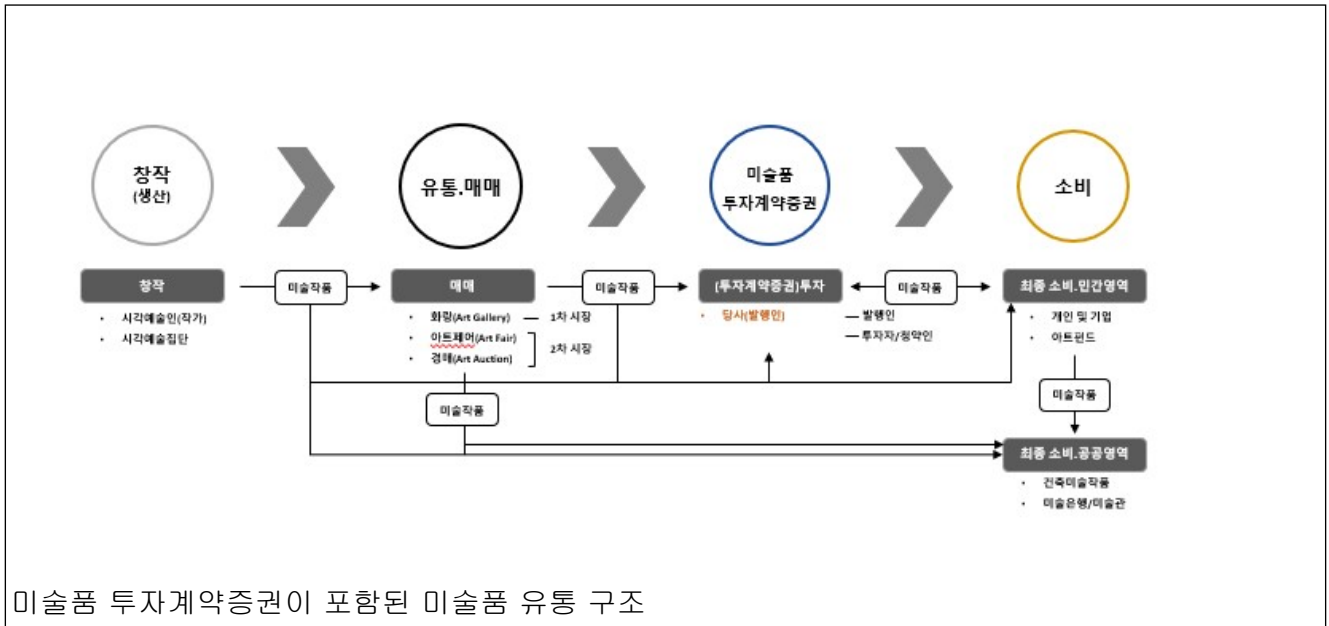
당사는 2022년 11월까지 미술품의 지분소유권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개별 투자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그 미술품의 판매 등으로 개별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을 얻도록 한 후, 그 판매에서 오는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이른바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종전 당사가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운영하며, 2022년 11월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준비하기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6점의 미술품에 대하여 누적 투자자 약 23,350명(중복 참여 포함)을 기록한 바 있으며, 미술품의 공동 소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3.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과 당사의 경쟁력

(1)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변경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유통과 소비구조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활성화 됨으로 인하여, 종전 미술품 유통 시장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러한 투자자들은 대체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 뿐 아니라 미술품 자체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거나, 소비층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가. 진입장벽에 대한 요약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① 가격경쟁력과 시장성, 그리고 향후의 잠재적 가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소싱(Sourcing)과 판매 역량
- ② 미술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미술품 유통의 노하우
-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나. 미술품 소싱 역량

미술품의 소싱 역량은,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 미술품 취득가액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역량, 미술품의 출처(provenance)와 직전 유통경로에의 검증,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과 그 매매계약의 완결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선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미술품 시장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신용을 쌓지 않은 이상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품 소싱 역량은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한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며,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미술품을,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증명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경우 미술품 소싱과 판매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동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동사업에 있어 필요한 노하우

1) 권리관계에 대한 노하우

미술품 유통의 노하우는, 동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취득·보관·처분에 있어서의 권리관계를 오랜 기간 다루어 본 경험과 노하우로부터 출발합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점유로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면서도, 부동산에 비할 정도로 큰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 되지 않은 종류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동일한 규격을 가지는 공산품과는 달리 재고자산의 관리에 있어 평균법을 사용하기 어려워 개별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고,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유체동산 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하나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점유관계를 확정하고 보관이나 매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구조인 공유관계 측면에서는, 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인 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공유지분권자의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또는 그러한 특약이 승계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권리관계상 특수성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예술창작품이나 동산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여러 권리관계상 특수성들은 미술품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점인데, 이는 미술품에 관한 유통 노하우를 가지거나 이전 받을 방법이 있고, 동산의 공유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거쳐, 동산의 지분소유권자로서 마주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지 않고서는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2)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와 유통 노하우

미술품은 그 경제적 가치가 미술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물감과 캔버스, 종이, 액자 등 소재와 구성에 따라 물리적인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노하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유화 물감을 캔버스에 그린 미술품과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미술품, 종이에 수채화로 그린 미술품, 부조가 붙어 있는 미술품, 한지 등을 캔버스에 접착한 미술품, 먹물과 한지에 그려진 미술품, 조각 형태를 가진 미술품 등은 모두 그 보관에 따라 별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 운송이나 설치를 위해서도 무진동 탑차를 사용하여 미술 전공자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등 별도의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오랜 유통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관이나 운송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보유와 미술품 유통 노하우 유무는 미술품의 보관 기간이 오래될 수록 더욱 더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단기간이 아닌 연 단위의 미술품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미술품을 재차 판매하였을 때 종국적 판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술품의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미술계의 상식입니다. 운송이나 설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당사의 관점에서 미술품의 소싱이나 판매 역량이나 미술품의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유통 노하우는 모두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와 유통 노하우는, 취득하는 미술품 각각의 개별적 특성을 확

인하고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미술 전문인력 확보, 미술품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조사 역량, 미술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관장소의 확보, 그 보관장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별 미술품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미술품의 거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가 쌓인 인적 자원과 이를 위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주)케이옥션을 미술품 보관에 있어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2022년 3월 2일자로 미술품 구입과 판매에 대한 조언과 조력 제공, 제3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우대수수료율의 제공, 준법경영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케이옥션-투게더아트 업무협약서

제3조 상호 협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 (1)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한다는 문언 및 본 협약서의 주요 내용과 제한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2) 주요참여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미술품 구입과 판매[경매, 중개 또는 Private Sale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한다.
- (3) 이해관계인은 미술품의 구입과 판매를 주요참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완전 위탁할 수 있다.
- (4) 주요참여자는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우대수수료율을 제공할 수 있다.
- (5) 이해관계인은 주요참여자 또는 매수인을 미술품 구입 또는 판매에 있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중개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6) 매수인과 이해관계인은 미술품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 사업부류에 해당하는 분야의 온라인 판매, 분할소유권 유통, 렌탈, 개인정보보호, 준법경영 등에 있어 필요한 IT와 보안 시스템 개발 등에 협력할 수 있다.
- (7) 매도인, 매수인, 이해관계인, 주요참여자는 준법경영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케이옥션_투게더아트 mou

이를 통하여 당사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진위 보증을 제공받음은 물론, 케이옥션이 가진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케이옥션이 가진 미술품 종합유통체계 K-Office를 통한 미술품 관리, 미술품의 유통 경로 확인과 가치 추정에 대한 기본 정보, 거래 상대방 물색 등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던 당시부터도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금융보안원의 보안 점검을 수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증권회사나 은행 등과 함께 상품개발과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 발행제비용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이익,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권의 처분손익 귀속에 따르는 이익,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청산하여 수취하는 성과보수를 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당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양수도대금의 지급과 매매계약의 완결을 확약하고 미술품의 인도를 보장받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미술품을 당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비용에 따라 미술품의 공유 지분권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주요 매입 품목인 미술품의 가격은 각 제품별로 상이하여 가격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는 미술품 매입에 있어 해당 미술품의 작가나 유사 작품에 관련된 정보, 해당 시점에서 당사 고객그룹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당사 전문인력들의 경험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미술품 가격의 변동 추이를 추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입처

당사는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주요 컬렉터, 당사 회원들로부터 미술품의 매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나, 당사에 미술품에 대한 확고한 보증능력과 신용도를 보장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만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매입합니다.

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 발행제비용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이익,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권의 처분손익 귀속에 따르는 이익,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청산하여 수취하는 성과보수를 각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마. 생산 및 설비

당사는 용역에 해당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수수료와 그 처분손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생산과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보관에 최적화된 (주)케이옥션의 미술품 수장고 공간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임차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2024년 1월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 **2024년 2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익은 매출액 1,152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그로 인한 기초자산의 양도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가. 매출실적

(1)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매출유형	품목	2024년 2월말 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증권발행부문	상품, 용역매출	기초자산(미술품)	1,150,978	-	-	-
기타 부문(주1)	용역 및 기타매출	조각투자 중개 등	1,502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2,480	77,729	395,826	318,977

(주1) 기타 부문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중개업을 통한 매출 등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로 조각투자 중개를 하고있지 않으며, 관리중인 잔존 조각투자의 매각(청산손익 분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매출유형별 매출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월말 현재	제 6기	제 5기	제 4기
상품	1,150,978	-	-	-
용역 및 기타매출	1,502	77,729	395,826	318,977
합계	1,152,480	77,729	395,826	318,977

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상황

(1)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증권명칭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증권교부일	운영기간(주1)	청약금액	발행총액(주2)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KUSAMA-001	2024-01-16	2024-01-23	2024-01-25	5년	1,014,500	1,182,000

(주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기간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이며 당사는 5년 이내에 기초자산을 처분하나, 부득이한 경우 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 결의에 의하여 청산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2) 청약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잔여증권은 당사가 전부 인수 후, 10%를 선배정 받은 공동사업운영자에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2) 투자계약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증권명칭	발행총액	기초자산취득자금	운영자금(주)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KUSAMA-001	1,182,000	1,094,030	87,970

(주) 운영자금에는 외부평가비용, 발행인 매매차익, 발행분담금, 사서인증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이나 이자율,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격 같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리위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증가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주요 발생 원인은 수금차질등으로 인한 Cash-Flow불일치, 금융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금융권 유동성억제 등으로 인한 외부자금 조달 차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외환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요성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외환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가격 위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손익의 변동에 대한 위험, 기초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위험, 재고의 부담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다. 신용위험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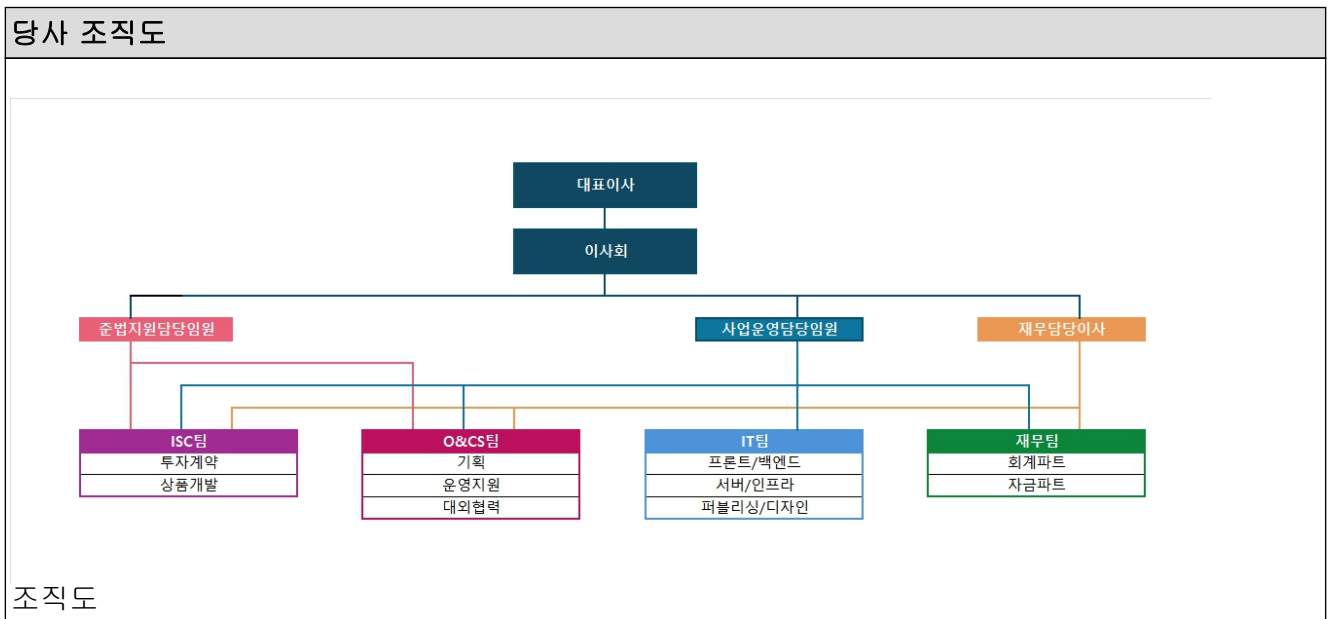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기초자산으로 취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인 미술품은 각각 모두 개별적인 제조처(작가), 재질, 제작연도, 크기, 가격, 주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위 판단 방법이나 가격의 증감 변동폭이나 가능성이 모두 다르며, 상품(미술품)의 판매가능성이나 유통 경로가 동일한 제조처에서 나온 상품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품(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단일하거나 독점적인 유통망을 가진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상품(미술품)별로 제조처의 제조이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ISO나 KS같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품(미술품)을 포장하는 규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품(미술품)의 재질과 설치법, 운반법, 무게, 보관, 판매 방법이 상품(미술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최대주주와의 협업 이외에, 독자적인 미술품 조사 및 분석,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보유하는 방법이나 기타 유통 노하우 획득, 주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당사가 취득한 미술품 공유지분권(분할소유)에 대한 특허권 등에서 잘 드러나며, 당사의 전 인원은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영업비용의 직접 계정(급여,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처리 및 개발비의 자산화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며, 소규모 회사로서 당사 구성원 전원은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1) 투자계약증권

1)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사업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2022년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18호로 당사가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5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3. 주요내용

가. 한우 및 미술품 관련 5개 조각투자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

5개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 거래의 실질 고려시 동 조각투자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함

나. ㈜스탁키퍼 등 5개사에 대한 조치안

본건 조각투자 서비스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인 점, 아직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점,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 및 제재절차의 개시 보류(㈜스탁키퍼 등 4개사) 및 진행을 유예(㈜열매컴퍼니)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려는 것임

2) 당사에 대한 조치

당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별지4> (주)투게더아트에 대한 조치안

2. 조치내용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5.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5.에 따라 (주)투게더아트의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는 다음 항목의 이행을 조건으로 보류하고, 해당 조건의 이행 완료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

☐ (주)투게더아트가 별도의 사정변경 없이 하기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 및 제재절차를 개시한다.

한편, 당사에 부여된 제재절차 개시 보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별지4> (주)투게더아트에 대한 조치안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

- ①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완료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 (i)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공유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물건의 보관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수단·방법을 증권신고서에 명시)하거나,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시킬 것
 - (ii) 투자자 예치금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업자 도산 시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iii) 물건 공유지분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개월내 물건 공유지분의 유통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 및 유통시장 폐쇄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4.28.) : 발행인의 유통시장 운영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부재하고, 유통시장의 존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iv) 물건의 가치평가 방법*, 주요 투자위험**, 수수료, 매각기간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
 - * 예) 사업자가 진품임을 확인한 방법·절차 등 포함
 - ** 예) 보관·관리 도중 손상 위험, 미매각 위험, 위작 위험 등
 - (v)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
 - * 예) 미술품의 손상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및 위작 피해에 대비한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등
 - (vi) 사업자의 도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물건의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②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 및 광고 집행은 불가
- *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3) 당사의 금융감독원 사업재편 완료 보고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당사는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 한 후, 2023년 5월 31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사업구조재편 완료보고를 마치고, 그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23년 7월 12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당사에 대한 제재면제 안전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위 사업구조 재편 완료보고와 동 실사 과정,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건부 제재면제, 기타 감독당국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한 본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본 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당사의 경쟁력 확보

한편,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종전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당사가 영위해 왔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업구조재편 완료보고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인정받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본 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1. 에서 말씀드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이나 당사가

확보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계기로 하여 당사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에 있어서는 국내 미술품 시장과 해외 미술품 시장에서 중요한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당한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토큰증권(ST) 시장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가장 적합한 방식의 증권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미술품 및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미술품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과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제1부 II. 증권 주요 권리 내용 6.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다른 자산과 달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그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와 원천징수 가능여부가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원천징수 가능여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라. 시장진입장벽 등

시장진입장벽에 대하여는 「II. 1. 사업의 개요 및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요약 재무정보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당 기 재 무 상 태 표

제 6(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목	제 6(당)기말		제 5(전)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산				
Ⅰ. 유동자산		2,060,151,102		1,485,329,469
(1) 당좌자산		966,120,847		1,485,329,4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848,049,767		353,189,139	
2. 기타단기금융상품	-		50,000,000	
3. 외상매출금	-		6,465,250	
4. 단기대여금	-		653,950,000	
5. 미수금	1,957,774		420,424,304	
6. 선급금	51,840		1,182,256	
7. 미수수익	3,793,424		-	
8. 선납세금	5,054,600		118,520	
9. 선급비용	38,921,969		-	
10. 부가세대금	68,291,473		-	
(2) 재고자산(주석4)		1,094,030,255		-
1. 상품	1,094,030,255		-	

II.비유동자산		906,535,960		1,054,713,908
(1) 투자자산		457,394,151		521,180,000
1. 매도가능증권 (주석3)	-		104,500,000	
2. 기타투자자산 (주석11)	457,394,151		416,680,000	
(2) 유형자산(주석5)		249,414,816		159,375,255
1. 비품	54,951,820		76,070,433	
감가상각누계액	(33,573,671)		(32,017,956)	
2. 시설장치	152,000,000		212,6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425,333)		(97,277,222)	
3. 건설중인자산	87,462,000		-	
(3) 무형자산 (주석6)		39,726,993		73,858,653
1. 상표권	292,655		523,915	
2. 소프트웨어	39,434,338		73,334,738	
(4) 기타비유동자산		160,000,000		300,300,000
1. 임차보증금	60,000,000		300,000,000	
2. 주.임.중 단기채권	100,000,000		-	
3. 기타보증금	-		300,000	
자 산 총 계		2,966,687,062		2,540,043,377
부 채				
I.유동부채		1,630,487,604		42,073,501
1. 미지급금(주석16)	27,816,511		11,296,761	
2. 미지급비용(주석16)	46,376,117		17,366,933	
3. 단기차입금(주석7,16)	1,500,000,000		-	
4. 예수금	54,644,059		11,100,370	
5. 선수금	1,650,917		2,309,437	
II.비유동부채		-		-
부 채 총 계		1,630,487,604		42,073,501
자 본				
I.자본금 (주석8)		1,132,501,500		1,070,703,100
1. 보통주자본금	1,132,501,500		884,923,900	
2. 우선주자본금	-		185,779,200	
II.자본잉여금		5,640,010,609		4,507,004,840
1. 주식발행초과금	5,640,010,609		4,507,004,840	
III.이익잉여금(결손금)(주석 9)		(5,436,312,651)		(3,079,738,064)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자 본 총 계		1,336,199,458		2,497,969,8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966,687,062		2,540,043,377

당 기 손 익 계 산 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I. 영업수익		77,728,954		395,825,636
1. 수수료수익	-		350,099,401	
2. 미수품대여수입	840,000		6,263,729	
3. 기타수익	76,888,954		39,462,506	
II. 영업비용(주석10,12)		2,515,468,078		2,248,059,384
1. 급여	1,045,466,699		943,699,777	
2. 상여금	121,500,000		22,050,455	
3. 퇴직급여	165,562,487		28,711,854	
4. 복리후생비	40,934,772		73,198,825	
5. 여비교통비	11,898,363		6,393,267	
6. 접대비	24,714,040		31,043,199	
7. 통신비	2,232,670		6,297,779	
8. 수도광열비	8,894,000		8,237,000	
9. 세금과공과	64,239,970		34,675,090	
10. 감가상각비	79,231,922		115,611,858	
11. 지급임차료	213,397,466		195,377,200	
12. 보험료	15,937,876		53,142,537	
13. 차량유지비	645,765		11,264,536	
14. 운반비	9,788,600		4,574,000	
15. 교육훈련비	1,476,000		-	
16. 도서인쇄비	2,760,996		3,638,789	
17. 사무용품비	-		1,239,043	
18. 소모품비	21,117,509		65,776,807	
19. 지급수수료	615,323,936		306,593,660	
20. 광고선전비	13,065,347		179,073,469	
21. 판매촉진비	23,148,000		39,979,207	
22. 무형자산상각비	34,131,660		34,133,660	
23. 외주용역비	-		83,347,372	
III. 영업이익(손실)		(2,437,739,124)		(1,852,233,748)
IV. 영업외수익		168,019,476		71,651,967
1. 이자수익	27,038,592		801,298	
2. 투자자산처분이익	861,719		-	
3. 잡화투자이익	-		1,738,512	
4. 잡이익	140,119,165		69,112,157	

V. 영업외비용		86,854,939		34,462,545
1. 이자비용	9,237,704		18,261,638	
2. 유형자산처분손실	77,276,449		-	
3. 기부금	-		15,000,000	
4. 잡손실	340,786		1,200,907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2,356,574,587)		(1,815,044,326)
VII. 법인세비용		-		-
VIII. 당기순이익(손실)(주석13)		(2,356,574,587)		(1,815,044,326)

당 기 자 본 변 동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1.1(전기초)	55,833,000	1,522,863,590	(1,264,693,738)	369,835,852
유상증자	2,602,300	696,370,850	-	701,575,450
무상증자	1,012,267,800	2,287,770,400	-	4,312,306,000
당기순이익(손실)	-	-	(1,815,044,326)	(1,815,044,326)
2022.12.31(전기말)	1,070,703,100	4,507,004,840	(3,079,738,064)	2,497,969,876
2023.1.1(당기초)	1,070,703,100	4,507,004,840	(3,079,738,064)	2,497,969,876
유상증자	61,798,400	1,133,005,769	-	1,194,804,169
당기순이익(손실)	-	-	(2,356,574,587)	(2,356,574,587)
2023.12.31(당기말)	1,132,501,500	5,640,010,609	(5,436,312,651)	1,336,199,458

당 기 현 금 흐 름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62,293,177)	(2,089,149,242)
1. 당기순이익	(2,356,574,587)	(1,815,044,326)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90,640,031	149,745,518
감가상각비	79,231,922	115,611,858
무형자산상각비	34,131,660	34,133,660
유형자산처분손실	77,276,449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861,719)	-
투자자산처분이익	(861,719)	-
4.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695,496,902)	(423,850,434)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6,465,250	(2,033,26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3,793,424)	3,892,362
미수금의 감소(증가)	418,466,530	(386,266,471)
선급금의 감소(증가)	1,130,416	(792,333)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38,921,969)	9,306,424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68,291,473)	-
선납세금의 감소(증가)	(4,936,080)	1,376,260
재고자산의 증가	(1,094,030,255)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6,519,750	(9,357,589)
예수금의 증가	43,543,689	2,410,85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9,009,184	(44,696,111)
선수금의 증가(감소)	(658,520)	2,309,43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2,349,636	(1,356,575,78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30,328,083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00	-
투자주식의 처분	105,361,719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416,68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653,950,000	-
비품의 처분	3,636,364	-
시설장치의 처분	4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300,000,000	-
기타보증금의 감소	3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67,978,447)	(1,356,575,78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	653,95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3,500,000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457,394,151		406,025,000	
시설장치의 취득	152,000,000		95,100,000	
비품의 취득	11,122,296		48,000,78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87,462,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60,000,000		-	
주.임.종 단기채권의 증가	1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4,804,169		3,499,011,35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94,804,169		3,999,011,350	
단기차입금의 차입	1,500,000,000		700,018,700	
유상증자	1,194,804,169		3,298,992,6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494,860,628		53,286,32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53,189,139		299,902,815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4)		848,049,767		353,189,139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라 함)는 201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신사동, 남강빌딩)

(2) 주요사업 내용 : 미술품의 자기판매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3) 대표이사 : 도현순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1,325,015주이며, 납입자본금은 1,133백만원입니다. 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당기		전기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	-
(주)케이옥션	2,498,702	22.06		
아트폼스(주)	1,859,201	16.42	1,690,183	15.79
김항주	1,119,161	9.88	4,147,892	38.74
기타	5,847,951	51.64	3,011,164	28.12
보통주 계	11,325,015	100.00	8,849,239	82.65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	1,857,792	17.35
우선주 계	-		1,857,792	
합 계	11,325,015	100.00	10,707,031	100.00

(주1) 2022년 08월 27일 회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 주식 707,031주를 10,707,031주로 기존 주식 1주당 1,414.36%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주2) 2023년 09월 27일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는 설립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신규로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개정 - 수익관련보조금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I(금융업)' 개정 -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1)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합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상품이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거나 대손상각비(손상차손)와 관련된 추정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한편,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가결정방법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고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항목별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으며, 이후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하였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동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장부상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

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시 설 장 치	5년
집 기 비 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방법 등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각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 목	상각연수
상 표 권	5 년
소 프 트 웨 어	5 년

최근 보고기간 이후 무형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연수 등에 대한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표시방법

상각액과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하고 정부보조금은 해당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제거하며,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총당할 정부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조건이 충족되어 사용되는 시점에 관련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리스

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회사에 대부분 이전된 리스의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거나,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영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상당부분(※또는 7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또는 90%)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리스자산의 범용성이 없는 경우의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금융리스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총당부채

회사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존재하는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총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발부채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우발부채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인 경우

②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3) 우발자산

회사는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의 회수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거래와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자산손상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및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거래(2006년 12월 31일 이후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하고 있으며,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발행의 경우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니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내용

구 분	1차	2차	3차
부여일	2022년 05월 31일	2022년 08월 09일	2023년 08월 31일
부여대상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부여주식의 종류와 수량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96,952주	436,291주	315,000주
약정의 유형	신주발행방식	신주발행방식	신주발행방식
행사가격	1,776원/주당	1,776원/주당	1,777원/주당
행사가능기간	2023년 06월 01일~	2023년 08월 10일~	2025년 9월 01일~
	2031년 06월 01일	2031년 08월 10일	2028년 08월 31일

②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

(단위 : 주)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차	2차	3차	1차	2차
기초잔여주	96,952	436,291	-	-	-
부여	-	-	315,000	96,952	436,291
행사	-	-	-	-	-
소멸	96,952	242,387	-	-	-
기말잔여주	-	193,904	315,000	96,952	436,291

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랐습니다.

6)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전기재무제표는 당기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3)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산및 부채의 금액 및 총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및 총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가증권

(1) 매도가능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 사 명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가치	장부금액	지분율 (%)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가치	장부금액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주식회사 아인투게더(주1,2)	-	-	-	-	10	4,500	-	4,500
주식회사 엡플렉스(주1,3)	-	-	-	-	100	100,000	(1,116)	100,000
합계		-	-	-		104,500	(1,116)	104,500

(주1)시장성없는 지분증권으로서 순자산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입수가능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2)주식회사 아인투게더는 2023년 7월 9일 청산종결되었습니다.

(주3)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당기중 처분되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상품	평가전금액	1,094,030	-
	평가충당금	-	-
	장부금액	1,094,030	-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54,952	(33,574)	21,378	76,070	(32,018)	44,052
시설장치	152,000	(11,425)	140,575	212,600	(97,277)	115,323
건설중인자산	87,462	-	87,462	-	-	-
합계	294,414	(44,999)	249,415	288,670	(129,295)	159,375

(2)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감가상각(주1)	기말
비품	44,052	11,122	(13,666)	-	(20,129)	21,379
시설장치	115,323	152,000	(67,646)	-	(59,102)	140,575
건설중인자산	-	87,462	-	-	-	87,462
합계	159,375	250,584	(81,312)	-	(79,231)	249,416

(주1)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감가상각(주1)	기말
비품	18,802	48,001	-	-	(22,751)	44,052
시설장치	113,084	95,100	-	-	(92,861)	115,323
합계	131,886	143,101	-	-	(115,612)	159,375

(주1)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금액
상표권	1,161	(869)	292	1,161	(637)	524
소프트웨어	169,507	(130,073)	39,434	169,507	(96,172)	73,335
합계	170,668	(130,942)	39,726	170,668	(96,809)	73,859

(2)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주1)	기말
상표권	524	-	-	(232)	292
소프트웨어	73,335	-	-	(33,901)	39,434
합계	73,859	-	-	(34,133)	39,726

(주1) 무형자산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전액 계상됩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주1)	기말
상표권	756	-	-	(232)	524
소프트웨어	107,236	-	-	(33,901)	73,335
합계	107,992	-	-	(34,133)	73,859

(주1) 무형자산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전액 계상됩니다.

7. 차입금

회사의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	이자율(%)	당 기	전 기
단기차입금	아트폼스(주)	2024-11-13	4.6%	1,500,000	-
합계				1,500,000	-

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발행할주식의 총수(주)	100,000,000		70,000,000	
1주당 액면금액(원)	100	100	100	100
발행한 주식수(주)	11,325,015	-	8,849,239	1,857,792
자본금(원)	1,132,501,500	-	884,923,900	185,779,200

(주1) 2022년 09월 02일 회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 주식 707,031주를 10,707,031주로 기존 주식 1주당 1,414.36%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주2) 2023년 09월 27일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천원)

구분	일자	보통주식수 증감	우선주식수 증감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전기초	2022-01-01	558,330	-	-	55,833	1,522,864
유상증자	2022-04-25	26,023	-	26,900	2,602	696,370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2022-04-25	-	55,763	26,900	5,577	1,494,448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2022-08-27	-	66,915	26,900	6,692	1,793,322
무상증자	2022-08-27	8,264,886	1,735,114	-	1,000,000	(1,000,000)
전기말	2022-12-31	8,849,239	1,857,792	80,700	1,070,704	4,507,004
<당기>						
당기초	2023-01-01	8,849,239	1,857,792	80,700	1,070,703	4,507,004
유상증자	2023-04-28	504,777	-	1,777	50,478	846,511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	2023-09-27	1,857,792	(1,857,792)	-	-	-
유상증자	2023-10-20	113,207	-	2,650	11,321	286,495
당기말	2023-12-31	11,325,015	-	85,127	1,132,502	5,640,010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5,640,010	4,507,004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507,004	1,133,006	-	5,640,010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522,864	3,984,140	(1,000,000)	4,507,004

9. 결손금

(1)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결손금	(5,436,313)	(3,079,738)
합계	(5,436,313)	(3,079,738)

(2) 결손금처리계산서

제6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5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30일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미처리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079,738,064		1,264,693,738	
당기순손실	2,356,574,587		1,815,044,326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436,312,651		3,079,738,064

(3)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배당금의 산정내용은 없습니다.

10.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당기
최상위지배기업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중간지배기업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지배기업	(주)케이옥션
종속기업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아트폼스(주) 등
기타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2) 당기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기타비용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54,585
아트폼스(주)	기타	9,238
합계		63,823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주임종단기채권	2022	상환시	-	-	100,000	-	100,000
아트폼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단기차입금	2023	1년	4.6%	-	1,500,000	-	1,500,000
합계						-	1,600,000	-	1,600,000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단기차입금	2021	45일	8.0%	50,000	-	50,000	-
임직원	임직원	단기차입금	2022	3개월	-	-	700,019	700,019	-
합계						50,000	700,019	750,019	-

(4) 당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선급비용	임차보증금	미지급비용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12,914	60,000	-
아트폼스(주)	기타	-	-	9,238
합계		12,914	60,000	9,238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 · 운영 ·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510,879	235,800
퇴직급여	80,085	-

11.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우발상황 및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미술품 공동구매 물품소유자 회원과 미술품에 대한 관리위탁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약정을 통해 총 110점의 미술품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관리 중인 미술품을 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 시설은 미술품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보안 설비, 화재 등 재난 대비 시설, 특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 및 요율로 미술품 전문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사용이 제한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예금종류	금융기관명	금액		사용제한내용
			당기말	전기말	
기타투자자산	특정금전신탁	NH투자증권	457,394	-	투자자보호기금

(3) 제공받은 보증

당기말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없습니다.

(4)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 및 전기 중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12. 부가가치계산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구 분	영업비용	
	당기	전기
급 여	1,166,967	965,750
퇴 직 급 여	165,562	28,712
복 리 후 생 비	40,935	73,199
임 차 료	213,397	195,377
감 가 상 각 비	79,232	115,612
무형자산상각비	34,132	34,134
세 금 과 공 과	64,240	34,675
합 계	1,764,465	1,447,459

13.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의 포괄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6기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기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순손익	(2,356,575)	(1,815,044)
기타포괄손익	-	-
당기포괄손익	(2,356,575)	(1,815,044)

1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당기	전기
차입금의 자본대체	-	700,019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300,000	-

15. 종업원 복지 및 사회에 대한 기여금

회사는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식당, 장학제도, 의료보험, 재해보상, 유급휴가 및 체육시설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은 각각 40,935천원 및 73,199천원입니다.

16. 유동성위험 관리방법 및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1)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회사의 운영팀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채 상황을 포함하여, 상당기일의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3개월 이하	3개월~1년	1년~5년
미지급금	27,817	27,817	-	-
미지급비용	46,376	-	46,376	-
단기차입금	1,500,000	-	1,500,000	-
합계	1,574,193	27,817	1,546,376	-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3개월 이하	3개월~1년	1년~5년
미지급금	11,297	11,297	-	-
미지급비용	17,367	-	17,367	-
합계	28,664	11,297	17,367	-

17. 보고기간 후 사건

(1) 투자계약증권 발행

회사는 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AT-KUSAMA-001)을 일반공고의 방법으로 모집하였습니다. 1회차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 작가의 "호박(Pumpkin)"으로, 2024년 1월 16일 청약이 개시되었으며, 청약 종료 후 2024년 1월 25일 증권명부가 확정되었습니다.

1회차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및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구 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공동사업운영자	1,182	10	-	-	-	1,675	167,500	14
일반투자자	10,638	90	10,145	1,014,500	95	10,145	1,014,500	86
합계	11,820	100	10,145	1,014,500	95	11,820	1,182,000	100

(2)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주)

주식발행(감소) 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2022년 04월 25일	출자전환	기명식 보통주	26,023	100	26,900	제3자배정
2022년 04월 25일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55,763	100	26,900	RCPS 발행
2022년 08월 27일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66,915	100	26,900	RCPS 발행
2022년 08월 02일	무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8,264,886	100	-	무상증자

2022년 08월 27일	무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1,735,114	100	-	RCPS 무상증자
2023년 04월 28일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504,777	100	1,777	주주배정
2023년 09월 27일	전환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	100	-	RCPS 전환
		기명식 보통주	1,857,792	100	-	
2023년 10월 20일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113,207	100	2,650	제3자배정

(주1) 2022년 4월 25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당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금은 당사 전 대표이사 김항주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되어, 김항주가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3문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에 상환권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공시기준 제5-7-2조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그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2년 8월 27일 무상증자를 통하여 1,857,792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출자전환	1	2022. 04. 24	채무상환	700,018,700	채무상환	700,018,700	
상환전환우선주	2	2022. 04. 24	운영자금 등	1,500,024,700	운영자금 등	1,500,024,700	
상환전환우선주	3	2022. 08. 26	운영자금 등	1,800,013,500	운영자금 등	1,800,013,500	
유상증자	4	2023. 04. 28	운영자금 등	896,988,729	운영자금	896,988,729	
유상증자	5	2023. 10. 19	운영자금 등	299,998,550	운영자금	299,998,550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실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제작성 등 유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재고자산	1,869,904	1,094,030	-	-	-
합계	1,869,904	1,094,030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40.1%	36.9%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 }÷2]	0.74회	0.00회	-	-	-

※ 상기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은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실사내역 등

당사는 연 1회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재고자산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하였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검토)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6기(당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

(주1) 기타사항으로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표시 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당기에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최초 선임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6기(당기)	삼덕회계법인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감사,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3년 연간 재무제표 감사	32	350	32	350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4.19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감사계획
2	2023.07.13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수행 및 종결단계에서의 주요 협의 사항
3	2023.10.20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감사수행 및 종결단계에서의 주요 협의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무가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 1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표이사 도현순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2	2	-	1

(주1) 김동선 사외이사는 2023년 9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였습니다.

(주2) 지승현, 김보름 사외이사는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김항주	-	-	남경희	김동선
			출석률: 100%	-	-	출석률: 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2-09	제1호 의안 : 2023사업연도 (2023.1.1.~2023.12.31)외부 감사인 선임	가결	찬성	-	-	-	찬성
2023-03-29	제1호 의안 :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찬성	-	-	-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손이천	이지현	남경희	김동선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37.5%	출석률: 87.5%
			찬반여부				
2023-03-30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2023-04-03	제1호 의안 : 겸직승인의 건(도현순, 김병수, 손이천, 문대영, 이지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5-10	제1호 의안 :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분쟁처리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기타)의 건 제2호 의안 : 공시 관련 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투자광고 지침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5-16	제1호 의안 : 투게더아트 조직개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7-13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7-26	제1호 의안 : 임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이승행, 신규식) 제2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이사회 운영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민원처리지침)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8-10	제1호 의안 : 매도 약정서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8-11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손이천	이지현	박지현	김동선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9-04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9-14	제1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9-20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주재승	박지현	지승현	김보름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9-26	제1호 의안 : 신주식 발행 제3자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0-04	제1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감사직무규정, 사외이사직무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01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29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권한 위임의 건 제3호 의안 : 경영 보고 제4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5호 의안 : 본점 이전 등기 변경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2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2-18	제1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06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06	제1호 의안 :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29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인사와 직급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협약서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29	제1호 의안: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성명	임기	연임횟수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	도현순	23.03~26.03	-	이사회	경영	최대주주의 임원
사내이사	주재승	23.09~25.09	-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지승현	23.09~25.09	-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김보름	23.09~25.09	-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23.08~25.08	-	이사회	경영자문	주요주주의 임원

(주1)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은 2023년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2) 사내이사 주재승, 사외이사 지승현, 김보름은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주 사업목적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있으며,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2	2	-	1

(주1) 김동선 사외이사는 2023년 9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였습니다.

(주2) 지승현, 김보름 사외이사는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당사 경영지원부문 운영팀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

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경력	비고	결격요건 여부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박준원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삼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LG Energy solution 現 예인회계법인 대표	2023.09.20 (신규선임)	부	없음

나.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신규식
			출석률 50%
1	2023-02-09	제1호 의안 : 2023사업연도 (2023.1.1.~2023.12.31) 외부 감사인 선임	찬성
2	2023-03-29	제1호 의안 : 유상증자의 건	불참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김병수
			출석률 91%
3	2023-03-30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불참
4	2023-04-03	제1호 의안 : 경직승인의 건	찬성
5	2023-05-10	제1호 의안 :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의 건	찬성
		제2호 의안 : 공시 관련 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투자광고 지침 제정의 건	
6	2023-05-16	제1호 의안 : 투게더아트 조직개편의 건	찬성
7	2023-07-13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8	2023-07-26	제1호 의안 : 임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찬성
		제2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이사회 운영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민원처리 지침)	
9	2023-08-10	제1호 의안 : 매도 약정서 체결의 건	찬성
		제2호 의안 :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10	2023-08-11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1	2023-09-04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2	2023-09-14	제1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건	찬성
13	2023-09-20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찬성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박준원
			출석률 87.5%
14	2023-09-26	제1호 의안 : 신주식 발행 제3자배정의 건	불참
15	2023-10-04	제1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감사직무규정, 사외이사직무규정)	찬성
16	2023-11-01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찬성
17	2023-11-29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권한 위임의 건 제3호 의안 : 경영 보고 제4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5호 의안 : 본점 이전 등기 변경에 대한 건	찬성
18	2023-11-2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찬성
19	2023-12-18	제1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 보고	찬성
20	2024-02-06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찬성
21	2024-02-06	제1호 의안 : 계약 체결의 건	찬성
22	2024-02-29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인사와 지급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협약서 체결의 건	찬성
23	2024-02-29	제1호 의안 :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찬성

(주1)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병수 감사는 중도퇴임 하였습니다.

(주2)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준원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독립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재무회계 전문가로 충분한 역량 보유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O&CS팀	2	매니저(3)	직무수행 보조

바. 준법지원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미도입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 혹은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325,01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325,015	-
	우선주	-	-

바. 주식사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상 주식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주인수권	제10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 중
주주명부폐쇄시기	사업연도 종료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주권의 종류	기명주식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해당사항 없음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종류	개최일자	주요안건	결의내용
임시주주총회	2018년 08월 16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2호 의안 : 기타 정관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8년 12월 28일	제1호 의안 : 기타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법인카드 사용 및 자금 지출 관리 규정 승인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19년 03월 29일	제1호 의안 : 영업 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9년 07월 05일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9년 12월 06일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0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영업 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0년 12월 17일	제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제3자배정)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1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1년 07월 28일	제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1년 12월 15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2월 07일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3월 15일	제1호 의안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2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4월 24일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6월 02일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목적추가)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8월 09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8월 26일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3년 3월 30일	제1호 의안 :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손이천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지현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07월 28일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08월 29일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9월 20일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박준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규정보완의 건 제5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케이옥션	최대주주	보통주	-	-	2,498,702	22.06%	신규취득
아트폼스(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1,690,183	15.79%	1,859,201	16.42%	-
아르떼케이(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	-	832,901	7.35%	신규취득
계		보통주	1,690,183	15.79%	5,190,804	45.83%	-
		-	-	-	-	-	-

(주1) 아트폼스(주)는 (주)케이옥션이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주2) 아르떼케이(주)는 (주)케이옥션이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케이옥션	18,919	도현순	-	-	-	티에이어드바이저(유)	48.07
		-	-	-	-	-	-

(주1) (주)케이옥션의 출자자수(주주수)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케이옥션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주2) (주)케이옥션의 출자자수(주주수)의 기준일은 2023년 9월 30일입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케이옥션
자산총계	217,552
부채총계	91,373
자본총계	126,179
매출액	27,716
영업이익	5,820
당기순이익	4,027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이어드바이저(유)	2	강수진	-	-	-	티에이매니지먼트(유)	51.0
		-	-	-	-	-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자산총계	75,046
부채총계	17,016
자본총계	58,030
매출액	2,263
영업이익	-1,905
당기순이익	-563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2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이매니지먼트(유)	3	강수진	-	-	-	도현순	52
		-	-	-	-	-	-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자산총계	2,739
부채총계	2,032
자본총계	707
매출액	-
영업이익	-13
당기순이익	-13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마.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0-07-01	김항주	160,500	42.80%	주식양수도 계약	-
2020-12-23	김항주	160,500	30.57%	유상증자	-
2021-08-06	김항주	160,500	28.75%	유상증자	-
2021-12-30	김항주	365,490	65.46%	주식양수도 계약	-
2022-03-04	김항주	253,880	45.47%	주식양수도 계약	-
2022-04-24	김항주	279,903	43.73%	유상증자	-
2022-08-26	김항주	279,903	39.59%	유상증자	-
2022-08-27	김항주	4,238,754	39.59%	무상증자	-
2022-09-22	김항주	4,216,217	39.38%	주식양수도 계약	-
2023-02-10	(주)케이옥션	4,718,914	44.07%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
2023-04-28	(주)케이옥션	5,190,804	46.30%	주주배정 유상증자	-
2023-10-19	(주)케이옥션	5,190,804	45.83%	제3자배정 유상증자	-

5.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케이옥션	2,498,702	22.06	-
	아트폼스(주)	1,859,201	16.42	-
	아르떼케이(주)	832,901	7.35	-
	김항주	1,119,161	9.88	(주1)
	Republic AEG Arttogether LP	1,013,337	8.95	

	이승행	567,887	5.01	(주2)
우리사주조합		-	-	-

(주1) 당사 종전 최대주주 겸 종전 대표이사입니다.

(주2) 당사 미등기 임원입니다.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6	22	27.27	376,666	11,325,015	3.33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동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도현순	남	1967.01.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前 한국은행 외화자금과 前 리만브러더즈 홍콩/서울 前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現 ㈜케이옥션 대표이사 現 (주)투게더아트 대표이사	-	-	계열회사 대표이사	10	2026-3-29
주재승	남	1962.08	전무	사내이사	상근	준법지원	前 NH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前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장(CDO) 前 농협계미컬 전무이사 前 라온시큐어, 라온화이트넷 부사장 前 넥스원소프트(주) 부사장 現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 現 (주)투게더아트 사내이사/준법지원담당임원 전무	-	-	-	5	2025-09-19
지승현	남	1983.05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상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한국인삼공사 재무실 과장 前 KT&G 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과장 現 로보에 테크놀로지 재무기획팀장 現 (주)투게더아트 사외이사	-	-	-	5	2025-09-19
김보름	여	1979.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문화사업)팀장 前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객원연구원 前 세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前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現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조교수 現 (주)투게더아트 사외이사	-	-	-	5	2025-09-19
박준원	남	1983.04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상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LG Energy solution 現 에인회계법인 대표 現 (주)투게더아트 감사	-	-	-	5	2026-09-19
박지현	여	1995.01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Emory University 前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前 Nomura International Plc 現 Republic 이사 現 (주)투게더아트 기타비상무이사	-	-	-	6	2026-08-28

이관재	남	1965.02	전무	미등기	상근	투자자보호	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 現 (주)투게더아트 사업운영담당임원 전무	-	--	-	9	-

(주1) 당사 2024년 2월 29일자 당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미등기이사 이승행, 백승한, 신규식은 각 미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매니저(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원)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도현순	대표이사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박지현	기타비상무이사	REPUBLIC AEG	이사

(주1) 종전 타회사 겸직이 있었던 손이천 전 사내이사, 이지현 전 사내이사, 김병수 전 감사는 2023년 9월 20일로 당사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였습니다.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합계							
사무직	남	9	-	-	-	9	1.37	117	13	-	-	-	-
	여	10	-	-	-	10	1.57	48	5				-
합 계		19	-	-	-	19	1.48	160	9				

주1) 미등기임원은 포함, 등기임원은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인원수와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직자 기준입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78	19	-

(주1) 당사 2024년 2월 29일자 당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미등기이사 이승행, 백승한, 신규식은 각 미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매니저(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와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공시서류작성일인 2023년 2월 29일까지 사임한 미등기이사들을 포함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2,000	-
감사	1	200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18	3	-

주1)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임자 기준입니다.

주2) 보수총액은 보고기간 동안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가 지급받은 소득 금액입니다.

(2) 유형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4	4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3	2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2	2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2	15	-
계	2	15	-

(주1)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은 K-IFRS기준이며, 본 증권신고서의 『Ⅲ.재무에관한사항-4.재무제표』는 K-GAAP기준 재무제표로서, 주식보상비(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비용)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2>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부여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 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이은우 (주1)	등기임원	2021.12.15	신주발행	보통주	33,499	-	-	-	33,499	-	2021.12.15 ~ 2023.12.14	1,776	-	-
김동선 (주1)	등기임원	2022.05.31	신주발행	보통주	96,952	-	96,952	-	96,952	-	2024.05.31 ~ 2031.05.30	1,776	-	-
이상화 (주1)	등기임원	2022.05.31	신주발행	보통주	6,401	-	-	-	6,401	-	2024.05.31 ~ 2031.05.30	1,776	-	-
이승행 (주2)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193,904	-	193,904	-	193,904	-	2024.08.09 ~ 2031.08.08	1,776	-	-
백승한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193,904	-	-	-	-	193,904	2024.08.09 ~ 2031.08.08	1,776	-	-
신규식 (주2)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48,483	-	48,483	-	48,483	-	2024.08.09 ~ 2031.08.08	1,776	-	-
이관재	미등기임원	2023.08.31	신주발행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5.09.01~ 2028.08.31	1,777		
***외 12명	직원	2023.08.31	신주발행	보통주	265,000	-	-	-	-	265,000	2025.09.01~ 2028.08.31	1,777		
합계	-	-	신주발행	보통주	888,143	-	339,339	-	379,239	508,904	-	-	-	-

(주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가득기간 전 퇴사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주2)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진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에는 부여시점 이후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부여받은 자와의 관계는 부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	1	8	9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도현순	대표이사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주1) 종전 계열회사와 겸직하였던 손이천 전 사내이사, 이지현 전 사내이사, 김병수 전 감사는 2023년 9월 20일로 당사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신용공여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백만원

거래대상회사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대여기간	이자율	목적	거래내역				승인기관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아트포스 주식회사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자금대여	2023.11.13 ~ 2024.11.13	4.6%	운영자금	-	1,500	-	1,500	이사회
아트네이티브 주식회사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자금대여	2024.02.06 ~ 2024.02.05	4.6%	운영자금	-	2,000	-	2,000	이사회
합계							3,500		3,500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보증을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증권 등 매수 또는 매도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무형자산의 매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건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장,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2022년 11월 29일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불제출한 이유 등으로 조건부 제재면제 등을 받은 바 있으나, 2023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와 제재면제 등에 관하여서는 「II. 1. 사업의 개요와 II.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연도	2022.01.01 - 2022.12.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투게더아브 221-87-01096

구분	①요건		②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중 소 기 업	◎ 사 업 요 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17)	(26)	
			업태별	가중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01) (도매및상표중개업)업	(04) 511115			(07) 395,825,636
			(02)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395,825,636					
◎ 규 모 요 건	○아래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함) 이내일 것 ②자산총액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출액 - 당 회사 (10) (4.0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11) (1,000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25.4 억원)		(18)	(적 (Y))		
				(적 (Y))			
◎ 특 성 요 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 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영의(가)준) 이내일 것		(19)	(적 (Y))		
				부적합 (N)	부 (N)		
◎ 유 예 기 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영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별표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년		(20)	(적 (Y))		
소 기 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출액 - 당 회사 (14) (4.0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15) (50.0 억원) 이하		(22)	(적 (Y))	
				(Y) (N)	(부 (N))		

210mmX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분	①요건	②검토내용	③적합여부	④적정여부
중 견 기 업	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인증을 주원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인증 행을 주원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㉕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 호에 적합할 것	• 「특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특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제2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 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적 (Y)
	㉖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부 (N)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 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 기업에 한함)	직전 3년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제1 항제1 호기목2) : 5 천억원 미만	직전 2년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	직전 1년	평 균	
		억원	억원	억원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사)

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식회사 케이옥션	110111-3306861
		-	-
비상장	8	투게더아트 주식회사	110111-6827096
		티에이매니지먼트 유한회사	110114-0163763
		티에이파트너 유한회사	110114-0163804
		티에이어드바이저 유한회사	110114-0096592
		아트네이티브(주)	110111-5690030
		아르떼케이(주)	110111-6279495
		아트폼스(주)	110111-6771392
		아트큐브플러스(주)	110111-5221207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천원, 천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아인투게더	비상장	2021.09.16	일반투자	4,500	45	10.0	4,500	(45)	(4,500)	862	-	-	-	231	(4)
(주)엣플러스	비상장	2022.08.24	종속회사	100,000	100	100.0	100,000	(100)	(100,000)	-	-	-	-	662,158	(102,117)
합 계					145	-	104,500	(145)	(104,500)	862	-	-	-	662,389	(102,121)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타법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